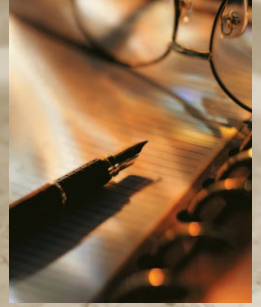


선거행정간행물등록번호
34 - 9760799 - 060016 - 14

第 4 回 全國同時地方選舉總覽

(2006. 5. 31. 施行)

中央選舉管理委員會



우리나라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 대표자를 뽑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거의 전 과정을 통하여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정당 및 후보자가 정견, 정책으로堂堂히 경쟁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여준 공명선거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 확대, 정책선거구현과 선거사무 간소화, 돈 선거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 모든 면에서 한층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후보자 선택에 혼란을 주었다는 등 일부 드러난 문제점은 법적·제도적 차원의 보완과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마감하면서 선거관련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한 권의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정치·선거분야를 연구하는 많은 분과 선거에 관심있는 국민께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창달에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국민과 선거법을 지키고자 노력한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애쓰신 선거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
●
간
●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지열

2006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발간사	3
5. 31 지방선거 화보	11

Part 1 제4회 지방선거, 어떻게 추진되었나

제1절 ▶ 선거사적 의의	42
---------------	----

제2절 ▶ 선거관리 준비	47
---------------	----

정치관계법 개정	47
----------	----

(1) 개정 배경 및 경과 · 47 (2) 개정의견 작성 방향 · 48 (3) 개정의견에 대한 국회심의 · 50 (4)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 · 52

선거구 및 정수 조정	58
-------------	----

당내경선 위탁관리	60
-----------	----

(1) 당내경선 위탁관리 안내 준비 · 60 (2) 당내경선 · 61

조직정비 및 인력확보	62
-------------	----

(1) 위원회 조직정비 · 62 (2) 선거관리인력 확보 · 62

선거관리요원 교육 · 훈련	65
----------------	----

(1) 위원 · 직원교육 · 65 (2) 정당관계자 · 여론형성층 및 외국선거관계자 등 연수 · 66

선거관리 장비 및 용구 · 용품 확보	67
----------------------	----

선거관리경비 납입 · 집행	70
----------------	----

선거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1

- (1) 선거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71 (2) 선거관리프로그램 개발·운영·71
(3) 정보통신망·72 (4) 정보시스템 보안관리·73

종합안내센터운영 73

제3절 ▶ 선거사무관리 76

선거일 76

선거인 76

- (1) 선거인명부 작성·80 (2)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83

예비후보자 85

후보자 87

- (1) 후보자등록·87 (2) 후보자 정보공개·90

기탁금 95

- (1) 기탁금 납부·96 (2) 과태료 징수·97 (3) 기탁금 반환·귀속·98

선거운동 100

-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102 (2)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신고·102 (3)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105 (4)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109 (5) 대담·토론회·112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115
(7)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116

선거비용 117

- (1) 선거비용제한액·117 (2) 선거비용 지출·119 (3) 선거비용 보전·121
(4) 선거비용 확인·조사·123

정당활동 규제 126

(1) 정강·정책 신문광고·127 (2) 정강·정책 방송연설·127 (3) 정강·정책 홍보물 및 정당 기관지·128

투 표 129

(1) 투표소 설치·130 (2) 투표관리요원·131 (3) 투표용지 작성·136 (4) 투표안내문 발송·138 (5) 부재자 투표관리·138 (6) 투표관리·142 (7)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156

개표 157

(1) 개표소 설치·158 (2) 개표관리요원·158 (3) 개표관리·161 (4) 개표결과 자료제공·163

당선인 163

선거쟁송 165

(1) 선거소청 제기 및 결정·165 (2) 증거보전 신청·169 (3) 선거소송 진행·169

제4절 ▶ 위반행위 감시·단속 171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 171

(1) 위반사례 예시 안내·홍보·172 (2)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방침 안내·173 (3) 포상금 및 50배 과태료제도 적극 홍보·173

위반행위 감시·단속반 편성·운영 174

(1) 단속반 편성·운영·174 (2) 선거부정감시단 편성·운영·175 (3) 광역조사·단속을 위한 TF팀 편성·운영·177

위반행위 단속·조치결과 177

(1) 선거범죄단속·177 (2) 정치자금범죄 단속·184 (3) 50배 과태료 부과·185 (4) 신고자포상금 제도·188

사이버 감시·단속 190

- (1) 위반행위 발생현황 · 190 (2) 선거범죄 예방활동 · 190 (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 · 191 (4) 선거범죄 조치 · 191 (5) 통신자료제출 요구 · 192 (6) 인터넷실명제 · 192

인터넷선거보도심의 194

- (1) 사전예방 활동 및 피해구제 안내 · 194 (2)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편성·운영 · 195 (3)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조치 · 195

제5절 ▶ 공명선거 추진활동 198

대언론활동 198

-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획보도 · 198 (2)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자료발간·제공 · 200

대국민 홍보 201

- (1) 홍보추진 방향과 및 성과 · 201 (2)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 201 (3) 각종 매체·계기 이용 홍보 · 203 (4) 홍보실적 · 207 (5) 시도 특화사업 · 208

공명선거실천 범국민 참여분위기 조성 209

- (1) 위원장 담화 발표 · 209 (2) 종교·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지원 · 214

제6절 ▶ 정책선거 추진활동 215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추진 216

- (1) 인프라 구축 · 216 (2) 집중지원 선거구 지정·운영 · 220 (3) 정당·후보자의 참여 분위기 조성 · 224 (4) 유권자의 참여 분위기 조성 · 228 (5) 공약 작성·검증활동 지원 · 230 (6) 매니페스토 추진단체의 활동 · 233 (7) 매니페스토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 235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개발·운영	236
------------------	-----

(1) 개발경과·236 (2) 정책 이슈 개발·237	
-------------------------------	--

정책정당 기반조성	238
-----------	-----

(1) 정책연구소 활동지원·238 (2) 정책연구개발 실적 공개·238	
-----------------------------------------	--

Part 2 통계로 본 제4회 지방선거

제1절 ▶ 도표로 이해하는 통계 243

인구수, 선거인수 및 세대수	244
후보자	248
투표	258
개표	262
당선인	269

제2절 ▶ 선거관련 주요통계 277

인구수 및 선거인수	278
선거구현황	304
예비후보자 등록	310
후보자 등록 및 당선인	311
선거비용	391
투표	423
개표	434
무효투표분석	441

Part 3

선거별·후보자별 득표

제1절 ▶ 당선인 명부(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447

제2절 ▶ 시·도지사 선거 481

제3절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489

제4절 ▶ 시·도의원 선거(지역구·비례대표) 551

제5절 ▶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 709

제6절 ▶ 구·시·군의원 선거(지역구·비례대표) 713

Part 4

부 록

제1절 ▶ 제4회 지방선거 사무일정 1297

제2절 ▶ 제3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1311

5 · 31 지방선거 화보

- ① 선거일반
- ② 선거위반행위 감시·단속
- ③ 공명선거 홍보



1963년 1월 창설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문화와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어가는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일반

- ① 풀뿌리 민주주의
-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발표
- ③ 위원 전체 회의
- ④ 종교지도자 회의



선거일반



매니페스토 캠페인



정책선거협약식



선거인명부



예비후보자입후보안내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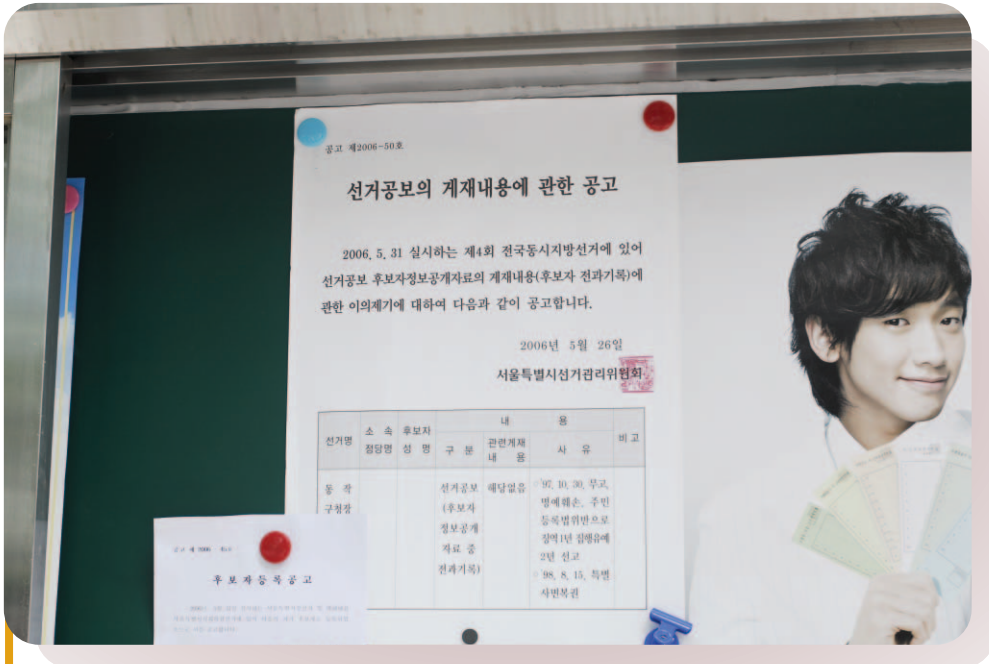
선거일반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각종 공고



선거운동용 차량



후보자 토론회 개최

선거일반



선전벽보



유세장에서 박수치며 점프하고 있는 어린이



선거운동



나홀로 선거유세



예쁜세상을 바라요



선거운동

선거일반



선거공보



부재자투표(독도)



투표장 가족나들이



우리의 표는 소중한 것이어



개표

선거일반



투표지 분류



투표지 분류기



당선증 교부식 1



당선증 교부식 2



선거위반행위 감시·단속

- ① 선거부정감단원의 감시·단속 장면
- ②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 ③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 ④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1



2



3



4

선거위반행위 감시·단속



선거부정감시단회의



감시·단속(선거부정감시단 활동)



감시·단속



감시 · 단속(일단 찍자)



선거부정감시단 공명선거 캠페인



공명선거 홍보

- ① 애드벌룬
- ② TV광고(티저광고)
- ③ TV광고(공명선거편)
- ④ TV광고(국가대표 투표참여편)
- ⑤ TV광고(영화패러디편)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2



3



4

월드컵 대표선수들도 부재자 투표로
5.31 지방선거에 참여합니다



5



공포의 외인구단



착한 사람만 보여요



특종! 니블니블



현대 생활백수



문화살롱





태극편



인물편



1인 6표제 홍보편



투표일 안내편



청사내벽



엘리베이터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ride 5.31 - 함께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전화
1588-3939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시민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날 - **Pride 5.31**



선거범죄 신고전화
1588-3939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ride 5.31 - 함께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전화 :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월 31일은

Beautiful day -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투표안내 :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작은 투표용지 한 장에 **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전화 :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 & 육교 현판



전광판(서울시청 앞 월드컵 응원시)



서울 세종로, 선전탑



버스광고



고속도로광고



대상







장나라 투표 장면



비 투표 장면



홍명보 투표 장면



투표참여 캠페인



여성유권자연맹



마라톤



가로기



제 4 회 전 국 동 시 지 방 선 거 총 램 

P | A | R | T | 1

● ● ● 제4회 지방선거, 어떻게 추진되었나

제 1 절 | 선거사적 의의

제 2 절 | 선거관리 준비

제 3 절 | 선거사무관리

제 4 절 | 위반행위 감시·단속

제 5 절 | 공명선거 추진활동

제 6 절 | 정책선거 추진활동

제1절

선거사적 의의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마련된 돈 안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이번 선거는 물론 내년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선거에서도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사 이래 최초 6개 선거 동시 실시¹⁾, 모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허용,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기초의원 제도 신설, 지방의원의 유급화,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변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되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문제 개선, 역대 선거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지역·연고주의 등 그릇된 선거폐습을 타파하고 정책경쟁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진 선거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치른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1) 제3회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시·도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5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를 추가하여 6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됨.



는 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던 기초의원선거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민주주의 확립과 책임정치 구현을 시도하였으며, 기초의원 정수축소 및 선거구를 광역화하고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의 보수를 유급화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모든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결과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의 이유로 기초 자치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정당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상향식 공천 및 공천권의 지방이양, 당내경선 실시 및 경선불복 금지, 당내경선 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위탁 및 비용의 국가부담 등 공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그러나 당원경선을 실시한 정당에서는 당비대납 문제가, 공천심사기구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정당에서는 공천헌금문제가 드러나는 등 민주적 경선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긴 선거이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지역·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정책경쟁을 통한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하여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이 시민단체·언론의 주도로 적극 추진되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언론·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당·후보자의 매니페스토 동참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억제하는 한편,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정책선거’로 변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과거의 낙천·낙선운동 등 네거티브운동 대신 후보자들에게 ‘갖춘 공약’,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제시토록 촉구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포지티브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를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정당 간의 과열경쟁과 지방의원 유급화, 정당추천제의 전면 허용 등으로 인하여 공정성 시비 빈발,



금품·향응 제공, 관권선거 등 또다시 과거의 악습이 재현될 우려가 매우 높았으나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인상과 함께 50배 과태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였고, 선거 초기 정치·선거부패의 근원인 5대 중대범죄²⁾를 선정·공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들었다(8,685건 → 5,914건). 특히 금품·음식물 제공(△40%), 비방·흑색선전(△52%) 등 중대 선거범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마련된 공명선거 기조가 더욱 유지·발전되었다. 그러나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막판 금품 살포 등의 돈 선거 폐습과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가 잔존하였고, 과잉·편파단속 및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이용인구의 증가로 선거를 거둬들일수록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가고, 그에 비례해서 시공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예·인신공격을 차단하여 사이버 공간을 선거운동의 유용한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로 인하여 선거 때마다 증가해 온 사이버상의 위법행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폭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의 비방·흑색선전을 예방하고 표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 도입한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상당수의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설득을 통하여 모든 인터넷 언론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유권자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60여만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3년 이상의 영주체류 외국인 6,700여명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며, 거소에 관계없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

.....

2) 5대중대범죄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매수 및 향응제공,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임.



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교부, E-mail 발송, 홍보물 발송 등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정치신인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 선거운동방법에서도 거리현수막 게시, 인터넷 광고 등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확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 착용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을 항목별 산정방법에서 총액 산정방법으로 변경하여 후보자 등이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하여 진정한 선거공영제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확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과열경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대규모 청중 동원이 예상되는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연설회를 대담·토론회 등 미디어 선거와 인터넷 선거로 전환시켜 건전한 선거운동의 장을 마련하였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주는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고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 혼탁선거의 상징이었던 불법정치자금 차단에 일조하였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선거를 거둬할수록 투표율이 계속 낮아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및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성 논란이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지자 투표율이 선거사상 최저에 머물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정책선거추진 등에 따른 관심 증대와 위원회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 등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투표율이 소폭이나마 다시 반등하였다(48.9 → 51.6%).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6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조합장 등 위탁선거관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업무량이 가중되었으나 정치관계 법규의 조기 개



정과 치밀한 사전준비로 대과없이 선거를 관리하였다. 특히 E-선거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등 각종 신고·신청업무를 접수·처리하여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독도·개성공단·금강산·월드컵축구대표팀 부재자투표 실시, 후보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 위치 게재, 인주내장형 기표용구 전면 도입, 외국인선거권자용 투표안내문 발송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행정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엄숙하고 다소 경직된 투표소 분위기를 클래식 음악 방송, 화분과 꽃 비치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기초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시행함에 따라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어 앞순위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가 유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2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함으로써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지가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20.1 → 42.9%)되었으며, 6개 동시선거 실시로 후보자 수가 너무 많아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없이 투표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의한 선택보다는 정당선호도에 따른 선택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2절

선거관리 준비

정치관계법 개정

(1) 개정 배경 및 경과

2002년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거진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개혁 입법으로서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정치관계법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으로써 신진 정치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정경유착과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온상이 되어왔던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면서 소액 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과 그 지출 통로를 투명하게 하는 등 1994년 3월 16일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가장 진전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관계법은 돈 안 드는 선거의 실현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이상에 치우쳐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정치자금의 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기조는 유지·발전시키
되 2004년 4월 15일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선·보완하여 성숙된 선진 정치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2005년 3월 10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4년 7월 9일 제17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개정안과 우리위원회 정치관계법개정 의견을 종합심
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위원회의 개혁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법제사법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치관계법은 2005년 6월 30일에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고 2005년 8월 4일에 공포·시행되었다.

(2) 개정의견 작성 방향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의견 작성 방향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 확대, 정
책선거의 구현과 미디어 이용 선거운동 확대, 절차사무의 개선에 집중되었다.

구체적 작성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의 선거운동자유 확대를 위하여 어깨띠 등 소품 이용, 거리에서의
인사, 향우회·동창회 등의 각종 집회 개최, 유사 학력 게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고, 후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선전벽보를 대체하여 현수막을 게
시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
하도록 하였다.

둘째, 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거주자의 부
재자투표를 허용함과 동시에 국내부재자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업상 선
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책선거 구현을 위하여 선거공보와 소형 인쇄물을 1종의 정책공약집으로 통합하고, 선거방송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개선하며, 초청 대상 후보자가 불참하는 경우 이를 대담·토론회 개시 직전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도안료 등 통상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상한액을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사직한 자 등 보궐선거 등의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절차사무의 간소화와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실효성 없는 선거인명부 공람제도를 인터넷 열람제도로 대체하고, 투표용지 인쇄·납품·송부 과정에 정당대리인 입회제도를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입회제도로 대체하며, 읍·면·동단위의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당법

정당법 개정의견은 정책정당의 육성과 시·도당 운영방법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성하였다.

첫째,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선거가 없는 연도에도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둘째, 2004년도 3월의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시·도당의 기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늘리고 당내경선의 의미와 당내경선 낙선자에게 입후보가 금지되는 공직선거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방향은 정치자금 조달방법 확대와 정치자금 수입·지



출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게 선거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국민들이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을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영수증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둘째,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내역의 공개방법을 다양화하고, 공천등과 관련한 고액당비 납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비 납부 상한 제도를 도입하며, 후원금 등으로 지출한 기탁금·선거비용을 반환·보전 받은 때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의 잔여재산 등의 합리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다.

셋째, 국고보조금의 배분과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당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한 안정적·정기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지급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넷째, 후원회의 금품모집광고 횟수를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의 회계처리 및 보고 방법, 회계서류의 보존 등 정치자금의 회계사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3) 개정의견에 대한 국회심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제24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7. 9)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54회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05. 6. 2)에서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내지 제8차(2005. 6. 7, 6. 9, 6. 10, 6. 14, 6. 17, 6. 21,



6. 23, 6. 24)선거법소위원회와 제1차 내지 제4차(2005. 6. 8, 6. 10, 6. 15, 6. 24)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과 각 당의 의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제254회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05. 6. 29)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사·의결되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계류 중 국외부재자투표³⁾에 관한 특례규정은 삭제되었다.

■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제25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2005. 6. 30)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2005년 7월 21일 정부로 이송되어 2005년 8월 4일 공포·시행되었다.

.....

3) 우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규모, 국제교류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국외부재자투표를 추진하였는바, 2003년과 2005년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의를 제출함에 따라 2005년 6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당의 의견과 우리위원회 개정의견을 종합하여 대통령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법사위계류중 삭제됨.

※ 외국사례 : 미·영·프·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재외공관 직원, 군인 등에 대한 해외부재자투표실시

※ 재외국민 수 : 국외체류자 115만명, 영주권자 170만명(2005년 1월 기준).

(4)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투표참여의 확대,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의 활성화, 절차사무의 간소화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졌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자유 확대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2인을 연설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지된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확장장치는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일에 교체가 불가능했던 사회자는 당일에도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를 선거별로 조정하여 대통령선거는 10인,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예비후보자가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수행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이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우편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재산, 병역, 납세 및 체납실적, 전과, 직업, 학력, 경력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보궐선거에



서만 게시가 허용되었던 현수막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도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사무관계자에게도 어깨띠 착용을 허용하여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제한된 인원의 선거운동관계자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광고를 허용하여 후보자가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하였다.

유권자 등의 투표 참여 확대

선거권 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투표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였다.

정책선거의 구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담·토론회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



한 경우에는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선거공영제의 보완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등 선거비용 중 보전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신설하였다.

선거사무관리의 간소화

동시선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하였고, 개표시 법원공무원·교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한정하였던 집계사무 담당제한을 폐지하여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케 하였으며, 선거인명부를 통·리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권자의 명부열람을 쉽고 간편하게 하였다.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시기가 종전에는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통일되어 있었던 것을 선거별로 조정하여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각각 예비후보자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선거의 공정성 강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언론사의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그 보도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을 명하도록 하였고,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하던 것을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로 제한을 완화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였다.

한편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에 있어 종전에는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수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선거기간중에만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개선하였다.

기타 제도개선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하였다.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의 공정한 확립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대리인의 입회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도록 하였다.

보궐선거⁹⁾ 등의 투표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일을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하였고, 비례대표국회의



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선거권자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무소속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정당법

정당법의 개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정당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회주관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상시화하였다.

정당활동의 자유확대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총 100인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책정당 구현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 있는 정책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4) 보궐선거와 (일부)재선거 비교

- 보궐선거(제200조)는 당선자가 임기 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함.
- 재선거(제195조)는 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없거나,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피선거권상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때에 실시함.
 - * 임기 개시 전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이라는 점에서 보궐선거와 구별되고, 선거구내 전 투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일부 재선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와 구별됨.
- 일부 재선거(제197조)는 선거의 일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될 때 실시함.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방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선거방송토론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였다.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개정은 법의 제명을 기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변경하고,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확대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확대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되,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지출용도를 제한하였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적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대여,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와 지원경비, 개인간의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고,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하였으며,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보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선거구 및 정수 조정

선거구와 정수는 선거과정에서 어떤 지역단위로 몇명을 뽑을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에서는 기초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⁵⁾를 도입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 수는 2,180개로 축소되었으며 정수도 3,872명으로 감축되었다.

선거구와 정수의 감축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구기초의원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2~4명 선출)로 변경함에 따라 선거구수가 2,431개 축소되었고, 의원정수는 기초의원선거에서 972명의 감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반면 증가요인은 기초의원비례대표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신설 등이며 선거구와 정수의 구체적 내용은 [표 2-1]과 같다.

이번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구 획정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 9월중 구성된 각 시·도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도별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시·도의회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사이에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조례제정과정에서 대부분의 시·도

5) 중선거구제 실시사례 : 국회의원선거중 제9대('73년)~제12대('85년)까지 1선거구제에 2명 선출



[표 2-1] 선거별 선거구 수 및 정수

(단위: 명, 개)

구 분	합 계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 의원			구·시·군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수	제4회	2,180	16	230	655	16	5	1,028	230
	제3회	4,332	16	232	609	16	-	3,459	-
	증감	Δ2,152	-	Δ2 ²	46	-	5 ³	Δ2,431 ⁴	230
정 수 ¹	제4회	3,872	16	230	655	78	5	2,513	375
	제3회	4,415	16	232	609	73	-	3,485	-
	증감	Δ543	-	Δ2 ²	46	5	5 ³	Δ972	375

주1, 기초의원 지역구는 현행(제3회) 시·도별 정수 20%를 감축, 비례대표(신설)는 정수상한의 10% 내임.

주2, 제주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른 구·시·군의 장 폐지(Δ4)+자치단체신설(계룡시 1, 증평군 1)=Δ2

주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신설) 주4,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 변경으로 선거구수 감소

[표 2-2] 선거구획정안 수정의결 현황

(단위: 개)

구 분	획정위안(A)	조례확정(B)	증감(B-A)
합 계	906	1,028	122
2인선출	366	610	244
3인 "	379	379	-
4인 "	161	39 ¹	Δ122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원안통과시킨 시·도는 광주, 울산임.

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선거구(122개)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여 의결함으로써 중선거구제 도입취지에 역행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표 2-2])



당내경선 위탁관리

(1) 당내경선 위탁관리 안내 준비

■ 당내경선 위탁관리범위 등 협의·조정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 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6개 정당에 당내경선회탁제도를 안내·협의하였는 바, 당내경선의 위탁범위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본 선거의 일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량, 정당의 공천과정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위탁범위는 단체장선거로, 위탁사무는 투·개표관리로 한정하였고, 위탁시기는 각 정당이 후보자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기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기로 협의·조정하였다.

■ 당내경선 위탁관리를 위한 준비

사실상 처음 실시하는 당내경선사무의 공정하고 깨끗한 관리를 위하여 당내경선 위탁사무관리절차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한 사무편람 발간·배부, 경선사무관리지침 시달, 경선관리보고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당내경선 위탁관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일선위원회로 하여금 관할 위탁대상 시·도당과의 사전 안내·협의를 통해 정당별 위탁경선의 종류 및 일정(예정상황)을 파악토록 함으로써 위원회별로 위탁관리의 수용가능성을 예측하고 정당별 경선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 당내경선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 당내경선

■ 당내경선 위탁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한 당내경선은 총 117건으로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선거 3건, 기초단체장선거 114건이었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83건, 한나라당 20건, 민주당 14건이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본 선거에서의 당선경쟁력과 경선후유증 등을 우려한 전략공천의 확대,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의 어려움에 따른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선으로의 경선방식의 변경 등을 사유로 총 110건의 위탁신청을 철회하였다.([표 2-3])

■ 당내경선 실시

당내경선 위탁철회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위탁관리한 당내경선은 총 7건으로 선거별로는 시·도지사 선거 1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6건이었고,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4건, 한나라당 3건이었으며, 선거인단 구성별로는 국민참여경선 1건, 당원경선 6건이었다.([표 2-3])

[표 2-3] 당내경선 위탁신청·철회 및 실시

(단위 : 건)

구 분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합 계	위탁	117	83	20	14
	철회	110	79	17	14
	실시	7	4	3	-
시·도지사 선거	위탁	3	2	1	-
	철회	2	2	-	-
	실시	1	-	1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위탁	114	81	19	14
	철회	108	77	17	14
	실시	6	4	2	-

주)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은 자체관리, 전략공천 등으로 위탁신청이 없었음.

조직정비 및 인력확보

(1) 위원회 조직정비

제4회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선거관리체제에 적합하도록 각급 위원회 및 사무처 조직을 정비하였다.

위원회정비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투표구별로 설치되었던 투표구위원회(13,461개)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위원회(3,579개)를 신설함으로 9,882개의 위원회 축소를 가져왔으며, 폐지된 투표구위원회 업무는 투표관리관을 위촉하여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한편 개표업무 등 선거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구·시·군위원회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제3회 지방선거의 243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47개에 이어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250개가 되었다.(표 2-4)

사무처는 선거시마다 별도로 편성·운영되던 선거관리단을 구성하지 않고 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여 상시조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는 바, 재편된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제실, 공보관, 선거국, 정당국, 조사국, 전자선거추진단, 총무과, 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이다.

[표 2-4] 각급위원회 및 의원 정수

(단위 : 개, 명)

구 분	합계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투표구
제4회 지방선거	3,846	1(9)	16(8)	250(8)	3,579(6)	-()
제3회 지방선거	13,721	1(9)	16(8)	243(8)	-()	13,461(6)
증 감	△9,875	-()	-()	7()	3,579(6)	△13,461(△6)

주) () 는 각급위원회별 정수이며 제4회 지방선거의 운영인력은 [표 2-5] 참조

(2) 선거관리인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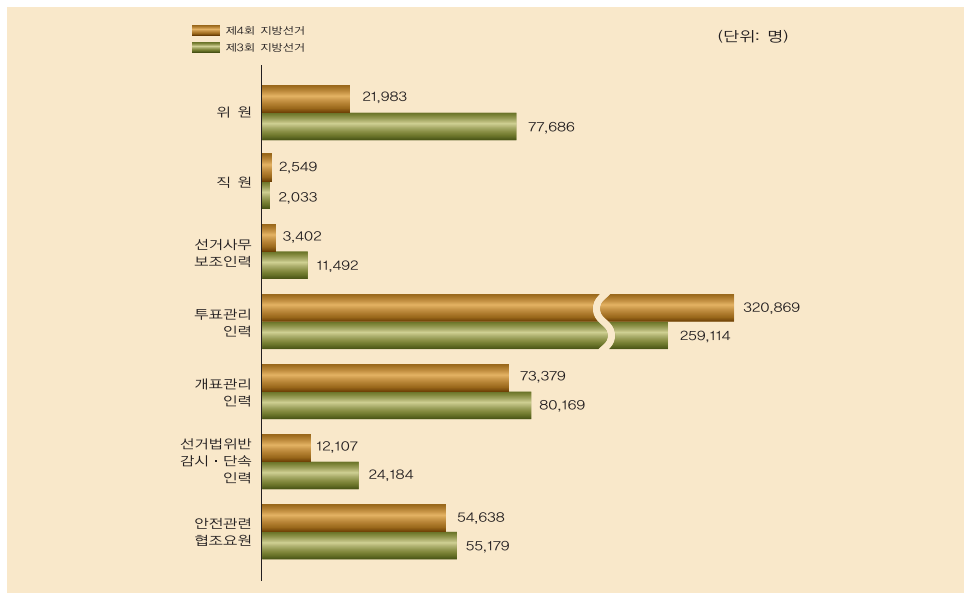
이번 선거는 6개선거를 동시실시했음에도 투입된 인력은 총 489천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의 510천명보다 오히려 21천명 정도(4.3%) 줄어들었다. 이는 후보자⁶⁾ 및 선거거수의 증가(5→6개 선거)에 따른 증원요인을 조직정비로 흡수한데 기인한 것으로, 투표구위원회 폐지에 따라 76천명의 투표구위원을 해촉하고 그 업무를 13천명의 투표관리관과 20천명의 읍·면·동위원이 대신하게 함으로 약 43천명 정도의 인원이 감축되었으며, 감축된 인원과 6개 선거실시에 따른 투·개표분야의 인력증원 등을 가감하면 선거에 투입된 실제 인원은 21천명 정도 줄어들었다.

또한 투·개표선거사무원의 위촉범위를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만 특정하지 않고 일반인까지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중 일반인의 비율이 투표사무원이 30.9%(41,664명), 개표사무원은 45.9%(26,998명)를 차지하여 공무원, 교직원들로만 위촉하던 편중 현상을 완화⁷⁾하였다.([표 3-64], [표 3-87] 참조)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의 파견을 자제하는 대신 1만여명의 장기선거사무보조원을 선발하여 지방공무원 파견인력소요를 대체하였다. 장기선

[그림 2-1] 선거인력 운영 총괄



6) 후보자수는 제4회 지방선거 12,227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 10,918명보다 1,309명이 증가함.

7) 공무원 등의 편중현상 완화율 : 투표사무원 30.7%(98.1 → 67.4%), 개표사무원 46.5%(91.6 → 45.1%)

[표 2-5] 선거관리인력 세부내역

(단위 : 명)

구 분	제4회 지방선거(A)	제3회 지방선거(B)	증감 (A-B)	비고	참고
합 계	488,927	509,857	△20,930		
(협조요원 제외시)	(434,289)	(454,678)	(△20,389)		
• 위원	21,983	77,686	△55,703		
- 중앙	9	9	-		
- 시·도	128	127	1		
- 구·시·군	1,983	1,932	51	• 개표관리	표 3-86
- 읍·면·동	19,863	-	19,863	• 투표관리(신설)	표 3-63
- 투표구	-	75,618	△75,618	• 투표관리(폐지)	표 3-64
• 직원	2,549	2,033	516		
- 중앙	256	177	79	• 위탁·전자선거추진단 등 신설	
- 시·도	452	375	77		
- 구·시·군	1,841	1,481	360	• 위원회수 : 243 → 250개	
• 선거사무보조	3,402	11,492	△8,090		
- 파견공무원	1,387	10,216	△8,829	• 지방공무원 파견 자체	
- 장기선거사무보조원	957	-	957		
- 공익근무요원	1,058	1,276	△218	• 병무청 협조	
• 투표관리	320,869	259,114	61,755		
(투표관련 위원 포함시)	(340,732)	(334,732)	(6,000)	(투표구 → 읍·면·동위원)	
- 간사·서기	7,158	-	7,158	• 읍·면·동위원회 서기·간사	표 3-63
- 투표관리관	13,106	-	13,106	• 신설	표 3-64
- 투표사무원	134,678	91,016	43,662	• 제4회 일반인위촉 : 41,652	"
- 도우미	51,741	51,458	283		표 3-65
- 참관인	114,186	116,640	△2,454	• 정당·후보자 추천	표 3-66
• 개표관리	73,379	80,169	△6,790		
(개표관리위원 포함시)	(75,362)	(82,101)	(△6,739)		
- 사무원	58,786	61,596	△2,810	• 제4회 일반인위촉 : 26,998	표 3-87
- 참관인	14,593	18,573	△3,980	• 개표소 15개 감소와 연동됨	표 3-88
• 선거법위반 감시·단속	12,107	24,184	△12,077		그림 4-1
- 선거부정감시단	10,023	11,352	△1,329		"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287	-	287	• 신설	"
- 공명선거자원봉사자	1,797	12,832	△11,035		"
• 안전관련 협조요원	54,638	55,179	△541		
- 경비·경찰공무원(1)	34,124	27,728	6,396	• 투표소	표 3-65
- 경비·경찰공무원(2)	15,826	22,535	△6,709	• 개표소	
- 전기·소방·의류 등	4,688	4,916	△228	• 개표소	

주, 각 분야별 인력은 현원(2006. 5. 31) 기준임. 단, 직원만 정원임



거사무보조원은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였고, 선발된 인원은 각급 위원회 별 3~4명씩으로 해당위원회에서 최대 6개월 정도 E-선거도우미, 투표지분류기 전담운영, 투표용지 검수·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사무처 직원은 총 2,459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시보다 516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즈음한 정치자금조사분야, 최근의 위탁선거 및 전자선거추진 등에서 업무영역이 확대한 때문이다.



선거관료요원 교육·훈련

(1) 위원·직원교육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료요원들이 선거 및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의 연수회를 전문인력개발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최근 신규임용된 직원(273명) 등 선거 무경험자에 대하여 사례·실습위주의 집중교육을 2005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실시하여 실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 대한 교육은 중앙위원회 주관 전국단위 교육을 지양하고 각급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중앙주관 교육은 시·도간부소집에 의한 지침 시달회의, E-선거도우미 실무교육 등 꼭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일선위원회 직원교육은 시·도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 재량권을 높여주었다.

각 시·도위원회는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실무연수회, 개표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6개 동시선거관리 및 읍·면·동단위 개표 등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한 최적의 선거관리모형을 모색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6] 선거관리연수회 개최 및 선거관리교육 실시

구 분	개최시기	대상	방법	교육내용
• 선거관리연수회				
- 변화와 혁신 워크숍(1차)	2005. 6월	중간관리자 123명	현대인력개발원 위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및 토의·발표 -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사례 발표를 통한 혁신의식 함양 - 지방선거 단위업무별 선거관리추진대책 등
- " (2차)	2005. 7월	4·5급관리자 302명		
- " (2차)	2005. 11~12월	6급 이하 공무원 1,698명		
• 교육				
- 신규 임용·전입자	2005. 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임용 273명 • 신규전입 62명 	사례·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 법규이해 및 선거절차사무의 분야별 실습
- 간부회의(2회)	2006. 1, 3월	시·도위원회 간부 일선 사무국장	설명 및 질의·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관리계획·종합지침 • 현안사항 처리방향 등
- 시·도 자체 교육(2회)	2006. 1, 3월	소속 전직원	관리·지도·홍보 분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 방침 • 실무처리 요령 등
• 시·도주관 시연회 등	2006. 3~4월	소속 전직원	개표시연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동시선거, 읍·면·동단위 개표 등에 대한 최적 모델 도출

(2) 정당관계자·여론형성층 및 외국선거관계자 등 연수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거사무관계자, 여론형성층, 교원, 대학생, 일반유권자 등 각 계각층을 대상으로 총 7,577회에 걸쳐 409천명에게 맞춤형 교육·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거관련업무를 원활히 함은 물론 민주시민의식을 꾸준히 개선하였다.

연수내용은 선거·정당관계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관계법을 주요내용으로 한 입후보 준비, 선거운동 방법 및 지방선거관련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통·리장과 시민단체회원 등 여론형성층은 공명선거추진활동방안 안내와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제고를, 교원과 대학생은 민주시민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을, 청소년 등 미래유권자는 선거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소



[표 2-7] 선거·정당관계자 등 연수(각급위원회 실시분 포함)

(단위: 회, 명)

구 분	횟수	인원
합 계	7,577	409,882
선거관계자 등	4,265	246,494
여론형성층	2,990	135,184
교원 및 대학생	305	26,770
일반 유권자	17	1,434

개와 의식형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외국인유권자, 새터민(북한 이탈주민) 등 지방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계층도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익숙할 수 있도록 투표시연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표 2-7])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4개국 19명⁸⁾의 외국 선거관계자를 초청하여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16일간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를 통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한국의 선거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추구하여야 할 선거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선거와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선거관리장비 및 용구·용품 확보

이번 선거에 대비하여 일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선거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추가보급 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선거장비 및 용구·용품 제작계획」을 시달하여

.....

8) 아시아 : 7개국 10명(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각 2명, 동티모르, 몽골, 방글라데시, 중국 각 1명),

아프리카 : 5개국 7명(콩고, 우간다 각 2명, 이집트, 나이지리아, 르완다 각 1명),

기타 : 2개국 2명(우즈베키스탄, 파나마 각 1명)

[표 2-8] 역대 지방선거별 투표함 제작·보유

(단위 : 개)

구 분	철 제			알루미늄 을 호	플라스틱(각 4색상)		종이투표함
	갑 호	을 호	병 호		갑 호	을 호	
1994이전	4,000	2,906	13,655	15,880	-	-	-
제 1 회	3,625	2,878	11,368	15,659	-	-	40,130
제 2 회	3,945	2,732	3,546	15,637	-	48,398	-
제 3 회	3,681	2,248	1,169	14,909	-	65,812	-
제 4 회	-	-	-	13,248	18,123	41,853	23,000

주) 음영부분은 해당 선거에서 실제 사용한 투표함임.

각급위원회별로 제작·보급의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중 중앙에서 제작·보급하는 투표함, 기표대, 기표용구 등 주요품목은 최상의 품질을 공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일선위원회 관리계장을 기술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이들의 평가에 의하여 제품을 선정하였다. 다년간의 선거경험이 있는 기술평가위원들이 각 제품의 장·단점은 물론 개선할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진 결과 실용성, 편의성, 간편성 등을 갖춘 우수한 제품이 확보되었다.

중앙위원회에서 제작·보급한 주요장비중 투표함은 선거별로 각각 사용했던 종전 선거와 달리 2개의 투표함을 색상(광역은 흰색, 기초는 연두색)만 달리하여 사용하였는 바, 이는 선거인의 편의도모, 투표함의 배분·보관, 수·회송 및 개표관리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였으며, 선거인수 2천인 투표구를 기준으로 선거인수 2천인 이하인 3,462투표구는 기존 플라스틱투표함(을호)을, 2천인 이상인 9,620개 투표구는 최대 12,000매의 투표지 투입이 가능(72×40×71cm)한 종이투표함 23,000개를 제작·배부하였다.

또한 장애인 기표대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소당 3대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27천대를 추가 보급하고, 대신 제1회 지방선거부터 사용하여 노후화된 탁상용 기표대 52천개는 폐기하였다.

개표상은 경량화(15→10kg), 높이조절가능 등 기능을 개선하여 2.5천대를 추가 보급하였으며, 투표지분류기는 추가구입 소요를 성능향상(220→350매/분)과 부품교환



[표 2-9] 역대 지방선거별 기표대 및 개표상 제작·보유

(단위 : 개)

구 분	기 표 대				개 표 상			
	계	입식용	탁상형	장애인용 (신형)	계	구형 (목재)	신형 (플라스틱)	개표기전용 (플라스틱)
1994이전	62,100	62,100	-	-	6,138	6,138	-	-
제1회	130,371	61,971	68,400	-	12,778	6,078	6,700	-
제2회	116,497	60,753	55,744	-	15,797	6,544	9,253	-
제3회	109,916	57,543	52,373	-	21,502	5,832	15,670	-
제4회	101,144	50,572	-	50,572 (27,000)	22,982	3,396	16,740 (2,500)	2,846

주, ()내는 2006년 제작분이며, 기표막 재질은 천에서 부직포로 변경함.

으로 대체하여 24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다.

한편 총 59개 품목에 이르는 선거관리 용구·용품 중 전국 공통적이며 일괄제작이 유리한 품목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제작·보급하였고 제작수량이 소량이거나 PC출력이 효율적인 서식 등은 일선위원회가 자체 제작토록 하였는바, 인주내장형 기표용구 외 15개 품목은 중앙위원회에서, 투표안내문 외 29개 품목은 시·도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외 12개 품목은 구·시·군위원회에서 각각 제작하였다. 특히, 인주내장형으로 개발하여 200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주민투표 등에서 그 유용성을 검증받았던 기표용구(108천개, 투표소당 8개 정도)의 보급은 선거인의 투표편의뿐만 아니라 개표시 무효투표율, 투표지분류기 미인식률¹⁰⁾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9) 투표지분류기는 금융권의 수표 등 장표류를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스캐너를 이용한 분류기술을 응용한 것으로서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사용함. 사용대수는 제3회 지방선거 650대,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377대임.

10) 최근 선거미분류율 : 제3회 지방선거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10%, 제4회 지방선거 3%

선거관리경비 납입 · 집행

지방선거관리경비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선거에 관한 통일적인 선거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가 부담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위원회는 지방선거경비의 합리적인 산출과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산출기준을 마련하여 2005년 9월 14일 시달함으로써 선거관리경비뿐만 아니라 선거비용보전제도가 항목별 보전에서 총액보전으로 변경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보전경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일 후에 후보자 보전비용에 대한 청구내역을 엄정히 심사하여 실소요액을 파악한 후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국비 113억 43백만원과 지방비 4,699억 54백만원 총 4,812억 97백만원을 배정 또는 납부받아 그중 82.4%인 3,967억 7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지방선거관리경비 납입 · 집행(2006. 9. 18.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납입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481,297	469,954	11,343	396,779	386,439	10,340	84,518	83,515	1,003
선거관리일반	41,678	37,130	4,548	45,456	41,640	3,816	△3,778	△4,510	732
선거운동관리	57,059	56,996	63	35,104	35,041	63	21,956	21,955	-
투·개표관리	62,278	59,696	2,582	59,793	57,230	2,563	2,485	2,466	19
계도·홍보	11,469	8,181	3,288	12,122	8,958	3,164	△653	△777	124
단속경비	98,003	97,185	818	44,008	43,315	693	53,995	53,870	125
소청·소송경비	549	505	44	97	56	41	452	449	3
보전비용	207,989	207,989	-	199,274	199,274	-	8,715	8,715	-
예비경비	2,272	2,272	-	925	925	-	1,347	1,347	-



선거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선거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후보자 선택 지원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납세실적 등의 정보제공, 정당·후보자의 정견·정책 비교자료의 게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의 공개를 유도하였고, 웹상으로 접수된 자료를 위원회 홈페이지, 정치포탈사이트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및 선거사무의 편의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후보자의 홍보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온라인으로 각종 신고·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후보자 편의성을 한층 제고하였고 위원회 업무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후보자 또는 유권자 등이 간편하게 질의와 자료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 인터넷 질의응답 시스템을 사용자 편의중심으로 개편하였다.

투표지분류기는 성능향상 사업과 전국통합모의시험운영, 지속적인 기기점검과 유지·보수, 운용요원 사전확보 등 각급위원회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색상이 다른 6개의 투표지의 분류를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였다.

(2) 선거관리프로그램 개발·운영

‘선거관리전산프로그램(NECIS)’은 6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른 선거업무 간소화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능 위주로 개발·운영하였다.

특히 E-선거도우미 시스템과 동시 운영함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정보조회 시스템’ 과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관리 시스템’ 을 개발하여 각종 현황과 보고 자료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택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후보자정보공개서비스 시스템’, 투·개표자료의 정확·신속한 집계를 위한 ‘투·개표집계시스템’ 및 ‘인터넷선거정보시스템’ 을 개발하여 방송 및 언론사에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개표방송 및 보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에게도 실시간으로 투·개표 상황을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3) 정보통신망

완벽한 선거관리 전산운영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지방선거정보 제공 기반 확보를 목표로 선거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산장비를 새로 도입·임차하고 통신시스템의 보강으로 선거정보통신시스템의 성능 및 운영역량을 강화하였다.

먼저 인터넷 선거정보시스템의 성능 제고를 위하여 선거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대용량 저장장치의 도입 및 이중화 구축, 웹 서버 임차 등 전산장비를 보강하고 전문업체에 의한 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전산 운영능력을 배가하였다.

또한 인터넷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폭주 및 선거업무 처리시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여 통신회선의 용량을 증속하고 통신장비를 정비하여 선거자료의 안정적 전송기반을 확보하였다. 특히, 개표결과 전송을 위한 통신망을 국가기관 전용의 전자정부통신망 인터넷 회선으로 단기 구축하여 선거일에 전국의 개표소에서 전송하는 개표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 받아 인터넷 및 방송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4)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비하여 선거정보통신시스템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 침투 등 보안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최신 보안장비인 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및 보안관제 전문업체에 의한 24시간 보안 감시로 선거정보통신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선거관리전산시스템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보한 결과 선거기간중 한 건의 침해사고도 없이 원활한 전산운영 지원이 가능하였음은 물론 개표실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구의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자동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합안내센터 운영

법규에 관한 질의를 집중 처리하여 일선 위원회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법규해석의 통일성, 일관성, 신속성을 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인터넷·방문 질의를 전담 처리하는 중합안내센터를 2006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였다.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화민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용전화회선이 각 상담원에게 자동으로 배분되는 IP콜센터(Information Provider Call Center) 시스템을 갖추어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으며, 전화응대는 규제위주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제한·금지사례와 함께 허용되는 사례를 적극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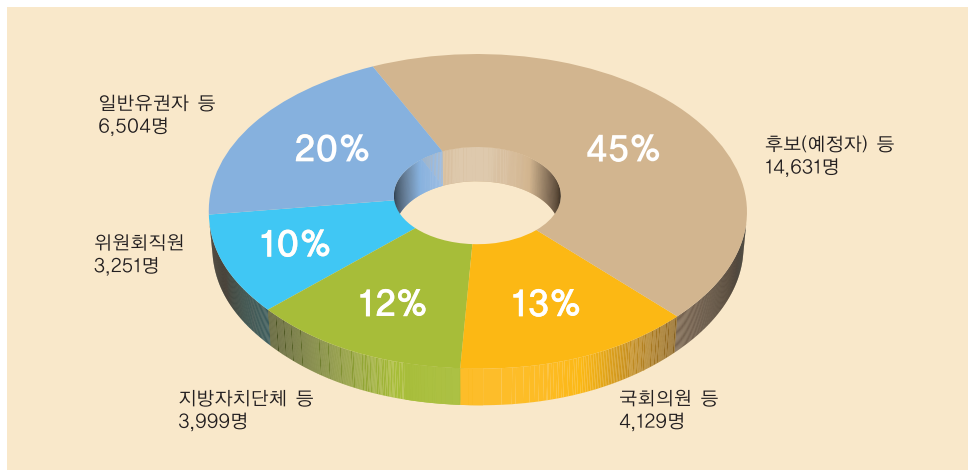
인터넷관련 질의는 중앙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즉, 선거일정에 따라 예상되는 질의 또는 쟁점사

향을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들의 E-mail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직원의 업무수행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 인트라넷인 그룹웨어에 직원 전용 「묻고답하기」코너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그룹웨어 법규코너란에 전국적인 현안사항 및 주요 전화질의응답사례 등을 실시간 게시하여 전 직원들이 적기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법규운용에 통일을 기하는 한편 중앙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기존 질의선례와 선거자료를 게시하고,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유사사항이나 간단한 질의는 민원인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월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 전화질의 26,928건(82.8%), 인터넷질의 5,375건(16.5%), 방문 질의 211건(0.6%) 등 총 32,514건의 질의를 처리하여, 종합안내센터를 이용한 선거관련 민원질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이를 대상별로 보면 선거와 직접 관계가 있는 후보자 등이 45%(14,631명), 이들을 측면 지원하는 정당 등이 13.0%(4,129명)로 정당·후보자 측의 질의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일반 유권자도 전체 질의건수의 20%(6,504명)를 차지했다.

[그림 2-2] 주요 대상별 질의건수





[표 2-13] 민원질의 처리실적(2006. 1월~5월)

(단위:건)

월 별	계	전 화	인터넷	방 문
합계	32,514	26,928	5,375	211
1월	4,029	3,570	449	10
2월	4,917	4,286	597	34
3월	6,391	5,361	988	42
4월	6,430	5,081	1,296	53
5월	10,747	8,630	2,045	72

주, 1일 평균처리 건수 : 291건(전화 : 240건, 인터넷 49건, 방문 2건)

한편, 종합안내센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후보자 등의 준법 선거의식이 함양되어 사소한 것에 대하여도 일일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당내경선 및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질의 폭주로 민원인들의 전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선거가 있는 5월에 총 전화상담의 32.0%에 해당하는 8,630건을 처리하기에 이르러 장시간 전화대기로 인한 민원인들의 항의가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일선위원회에서 답변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에 재차 질의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 인터넷민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해 행정력 낭비가 많았던 점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제3절

선거사무관리

선거일

1996년부터 선거일은 공고주의에서 선거일 법정주의로 변경되었다. 이는 과거 선거일 공고주의 채택시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자의적으로 조절한 병폐를 시정하고자 한 산물이다. 선거일을 법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선거관계 주요 일정을 미리 알 수 있어 그만큼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거일 법정주의에 따라 제4회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었다.([표 3-1])

선거인

2006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19세 이상의 선거인수는 전국 인구수



[표 3-1] 역대지방선거 선거일

구 분	선 거 일		선 거 구 수		정 수	
	연 월 일	요일	대 상	실 시		
선 거 일	시·읍·면의회의원	1952. 4. 25	금	1,542	1,397	17,559
	도의회의원	1952. 5. 10	토	9	7	306
	시·읍·면의회의원	1956. 8. 8	수	1,491	1,458	16,961
	시·읍·면의 장	1956. 8. 8	수	1,491	580	1,491
	시·도의회의원	1956. 8. 13	월	10	10	437
	시·도의회의원	1960. 12. 12	월	10	10	487
	시·읍·면의회의원	1960. 12. 19	월	1,518	1,468	16,909
	시·읍·면의 장	1960. 12. 26	월	1,468	1,468	1,468
	서울시장·도지사	1960. 12. 29	목	10	10	10
	구·시·군의회의원	1991. 3. 26	화	3,562	3,562	4,304
	시·도의회의원	1991. 6. 20	목	866	866	866
	제1회 지방선거	1995. 6. 27	화	4,885	4,885	5,758
	선 거 일 법 정	제2회 지방선거	1998. 6. 4	화	4,347	4,347
제3회 " "		2002. 6. 13	목	4,332	4,332	4,415
제4회 " "		2006. 5. 31	수	2,180	2,180	3,872

48,855,598명의 75.9%에 해당하는 37,064,282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의 선거인수 34,744,232명보다 2,320,050명(증 6.7%)이 증가하였다. 선거인수 증가요인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1,696,480명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와 더불어 19세 선거권자 616,844명, 외국인 선거권자 6,726명이 각각 증가되었다.([표 3-2], [표 3-4])

이번 선거에서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선거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 경향¹⁰⁾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¹¹⁾되었고, 또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

10) 최근 5년간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국가

• (19→18세) 오스트리아, (21→17세) 수단, (21→20세) 튀니지, (21→18세) 파키스탄·세네갈 외 8개국

※ (17세) 이란 등 4개국, (18세)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144개국, (20세) 일본 등 6개국, (21세) 싱가포르 등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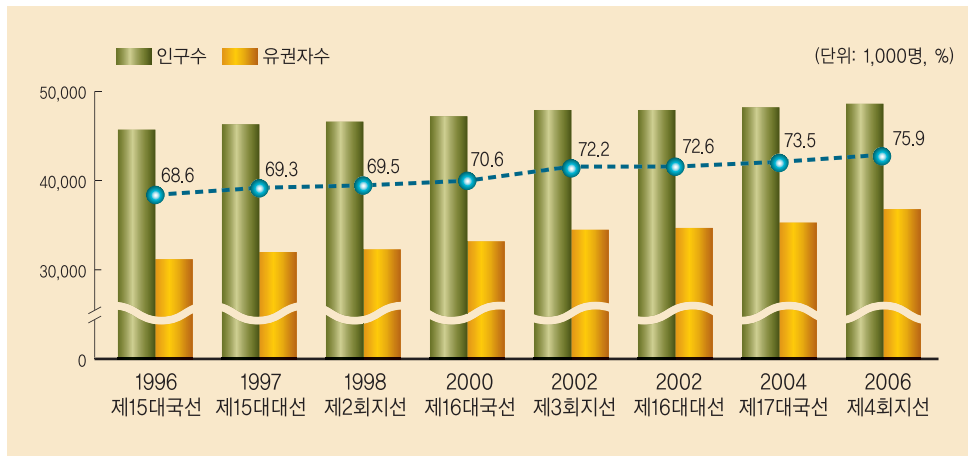
과한 19세 이상인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유럽연합국가에서는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할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자를 국민으로 한정해 왔다. 국가선거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 까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을지라도, 지방선거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거주권자에 대하여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선거에 한하여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선거인수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전체 선거인의 21.4%(7,983,648명), 경기도가 21.4%(7,918,828명)순이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선거인수가 전체의 48.1%(17,842,879명)을 차지하며(표 3-3), 성별 분포는 남자가 49.2%(18,241,193명), 여자가 50.8%(18,823,089명)으로 나타났다.(표 3-4)

[표 3-2] 인구수 및 선거인수 변화 추이

(단위:명)

구 분	1996. 제15대국선	1997. 제15대대선	1998. 제2회지선	2000. 제16대국선	2002. 제3회지선	2002. 제16대대선	2004. 제17대국선	2006. 제4회지선
인구수	45,928,048	46,562,835	46,818,901	47,424,300	48,139,782	48,191,877	48,426,757	48,855,598
유권자수	31,488,294	32,290,416	32,537,815	33,482,387	34,744,232	34,991,529	35,596,497	37,064,282



.....

1) 우리나라 선거권연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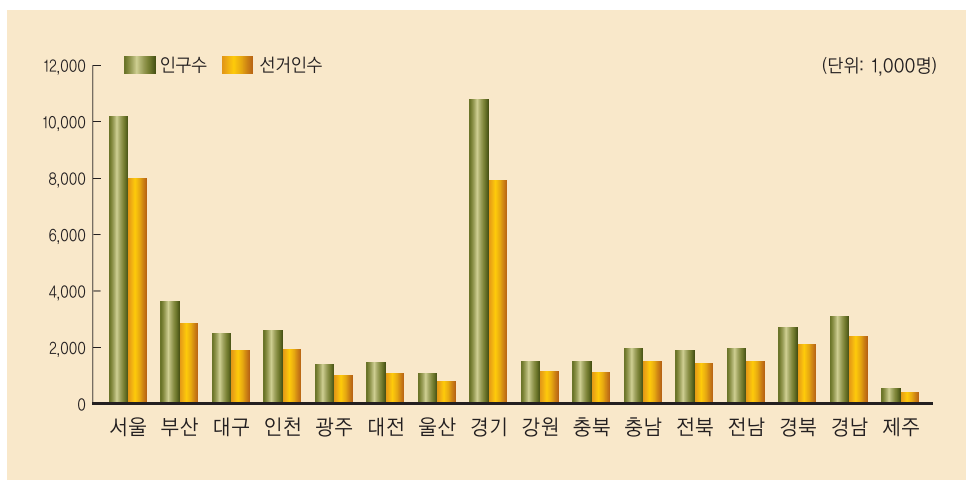
- 1948. 제헌 헌법~1954. 제2차 개헌(21세 이상), 60년 3차개헌~80년 5공화국(20세 이상), 87년 개정 헌법 법률위임(20세 이상) → 2005. 8. 4 개정 공직선거법(19세 이상)



[표 3-3] 선거인의 지역별 분포

(단위:명)

구 분	인구수	선거인수
합 계	48,855,598	37,064,282
소계(7대도시)	22,869,729	17,536,575
서울	10,188,035	7,983,648
부산	3,626,260	2,845,104
대구	2,500,788	1,885,043
인천	2,605,983	1,940,403
광주	1,401,212	1,014,620
대전	1,458,581	1,077,468
울산	1,088,870	790,289
소계(9개도)	25,985,869	19,527,707
경기	10,771,743	7,918,828
강원	1,509,405	1,160,977
충북	1,489,576	1,126,282
충남	1,963,679	1,503,240
전북	1,877,995	1,429,632
전남	1,960,028	1,513,912
경북	2,692,505	2,087,709
경남	3,162,483	2,375,265
제주	558,455	411,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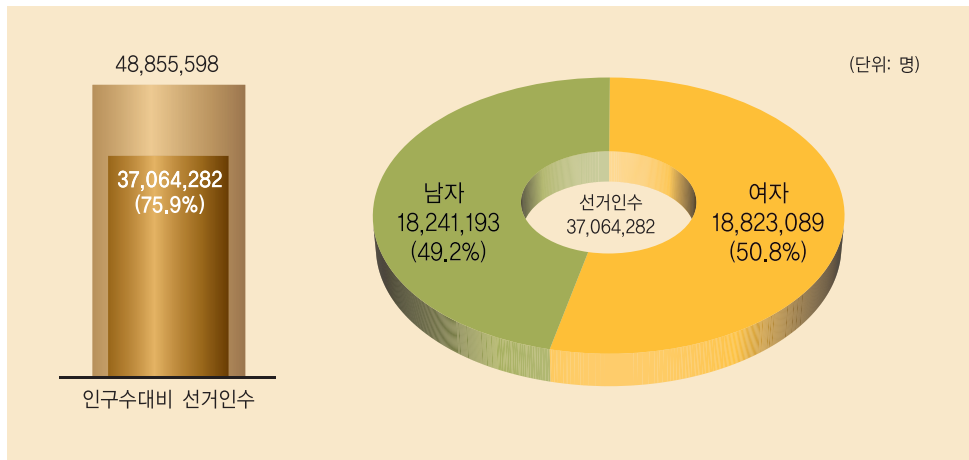


[표 3-4] 인구수대비 선거인수 및 선거인의 성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제4회 지방선거		
인구수	48,855,598		
선거인수	37,064,282		

구 분	제4회 지방선거	외국인	내국인
선거인수	37,064,282	6,726	37,057,556
남	18,241,193	3,641	18,237,552
여	18,823,089	3,085	18,820,004



(1)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투표구별로 선거인 명부를 직권으로 작성하는바, 지방선거는 선거일전 19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1987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2006년 5월 12일부터



[표 3-5] 선거인명부 작성·감독 결과

(단위: 건)

구 분	계	누 락	사 망	전 출	연령미달	결격자	기 타	위장전입 조사대상자
제4회 지방선거	9,318	109	2,326	4,053	-	1,982	293	555
제3회 지방선거	10,243	146	2,642	4,250	59	2,585	561	-
증감	△925	△37	△316	△197	△59	△603	△268	555

5월 16일까지 5일간 전산조직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감독은 형식적인 현지 출장감독보다는 위장전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서면감독 위주로 실시하여 9,318건의 시정조치가 있었다.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오기 등을 수정하고 등재누락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2006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선거권자 등 관계인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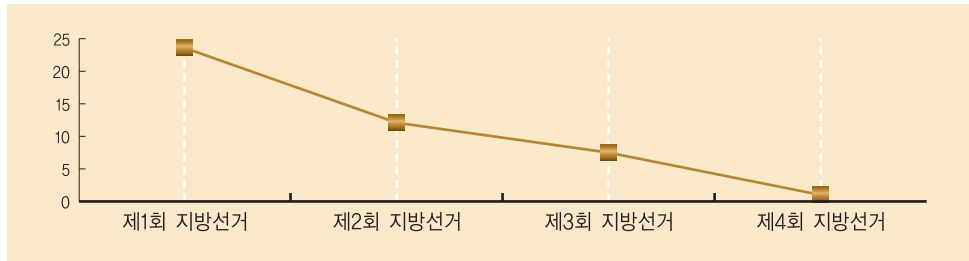
종전에는 오기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열람과 통·리단위의 공람을 병행하여 운용했으나, 이번 선거는 통·리단위 공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인터넷(구·시·군청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열람토록하였다. 공람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선거인명부 작

[표 3-6] 명부누락자 구제 제도

구 분	이의신청	불복신청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신청주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
신청기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다음날 까지	이의신청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신청방법	구술 또는 서면	서 면	서 면
신청처	구·시·읍·면의 장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위원회
처리기간	신청 다음날까지	신청 다음날까지	신청 다음날까지

[표 3-7]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추이

구 분	제1회 지방선거	제2회 지방선거	제3회 지방선거	제4회 지방선거
비율(%)	23.6	12.1	7.5	1.0



성수량은 4통에서 3통으로 감축되었고, 인터넷 열람제도 신설은 네티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불복신청, 명부누락자 등재신청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게 작성되었다.([표 3-6])

또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중 4,223개 구·시·읍·면·동사무소와 인터넷상에서 선거인수의 1.0%인 348,580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1,71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1,172건을 수정하였다. 이는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3회 지방선거의 이의신청 6,930건보다 5,213건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선거인명부를 종전선거시보다 정확하게 작성한데 기인 한 것이다.([표 3-7])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는 명부누락자의 등재신청이

[표 3-8] 등재신청 및 결정

(단위 : 명)

구 분	신청건수	명부누락자수	추가 등재자수	결정서 지참 투표자수
제4회 지방선거	120	136	121	18
제3회 지방선거	238	342	340	16
증 감	△118	△206	△219	2



가능하다. 이에 따라 120건에 131명의 구제신청이 있어 구·시·군위원회별로 심사·결정한 결과 121명이 추가 등재되었다. 한편, 구·시·군위원회가 이유가 있다는 결정서를 지참토록 하여 투표하게 한 자는 18명이었다.

■ 선거인명부 확정

이의신청·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등 구제절차를 거쳐 선거일 전 7일 전인 2006년 5월 24일 선거인명부는 확정되었다. 확정된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작성시 등재된 선거인수 37,074,061명보다 9,779명이 감소¹²⁾된 37,064,282명이었으며 이는 제3회 지방선거보다 2,320,050명(6.7%)이 증가되었다.

[표 3-9] 선거인명부 확정

(단위 : 명)

구 분	선거인명부등재 (A)	직권수정·이의 신청 등 (B)	확정된 선거인수		
			계(A-B)	남	여
제4회 지방선거	37,074,061	9,779	37,064,282 ¹⁾	18,241,193	18,823,089
제3회 지방선거	34,761,463	17,231	34,744,232	17,065,714	17,678,518
증 감	2,312,598	△7,452	2,320,050	1,175,479	1,144,571

주, 제도 변경에 따른 19세 선거인이 616,844명, 외국인선거권자 6,726명(대만국적 6,580명, 기타 146명) 포함

(2)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영내·합정, 구치소, 수용소, 병원 등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미결수 등과 선거사무종사자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신고요건을 특정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확대하였다.

.....

12) 9,779명의 감소내역은 직권에 의한 수정 9,115명 감소와 이의·불복신청 등 결정에 의한 644명 감소(증 254, 감 918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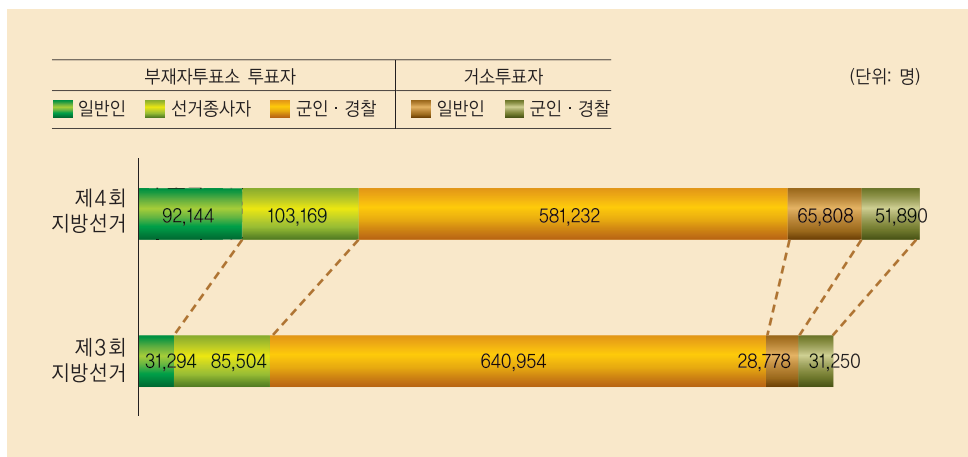
우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허위·대리 부재자신고 및 사위투표 예방을 위하여 거소투표 신고수가 지난 선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동일필적의 거소투표 신고수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경우 반드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사위투표를 예방하는 한편 장애인보호시설·요양소 등에는 허위·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투표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해 시설·기관의 장에게 철저히 안내하였다.

한편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인 2006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서를 접수받아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였으며,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5월 17일에 명부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수는 894,243명(선거인수의 2.7%)으로 제3회 지방선거 817,780명보다 76,463명(9.4%)이

[표 3-10] 부재자신고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부재자투표소 투표자				거소투표자		
		소 계	일반인	선거증사자	군인·경찰	소 계	일반인	군인·경찰
제4회 지방선거	894,243 (100.0)	776,545 (86.8)	92,144 (10.3)	103,169 (11.3)	581,232 (65.0)	117,698 (13.2)	65,808 (7.4)	51,890 (5.8)
제3회 지방선거	817,780 (100.0)	757,752 (92.7)	31,294 (3.8)	85,504 (10.3)	640,954 (78.4)	60,028 (7.3)	28,778 (3.5)	31,250 (3.8)
증 감	76,463	18,793	60,850	17,665	△59,722	57,670	37,030	20,640





증가되었는바, 이는 부재자신고요건 완화에 따른 일반인의 신고수가 60,850명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란 선거일 전 일정한 시기부터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예비후보자제도는 현역정치인과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의 형평성을 맞추고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04년 4월 13일을 불과 한달 남겨둔 3월 12일에 예비후보자관련 규정이 입법화됨에 따라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예비후보자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은 이번 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다.

[표 3-11]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록 비교

구분	등록신청기간	제출서류	정당·선거권자의 추천 ³⁾	기탁금	비고
예비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 : 선거일 전 120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선거에 관한 증명서류만 제출 	필요없음	필요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적이탈 등은 등록무효가 아님 신분보장이 안됨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신고서, 병역 사항 등 	필요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적이탈 등은 등록무효사유 일정한 범죄에 대해 체포구속되지 않고 병역소집 유예됨

13) 후보자의 경우 정당·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후보자가 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 등록단계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거권자는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의 후보자(무소속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표 3-12] 예비후보자등록

(단위: 명, %)

구 분	정 수 (A)	총등록수 (B)	사퇴·사망·등록무효 (C)	최종 예비후보자 (D=B-C)	경쟁률 (D/A)	본선 후보자 등록 (E)	등록률 (E/D)
합 계	3,419	13,680	2,072	11,608	3.4	10,991	94.7
시·도지사	16	119	25	94	5.9	66	70.2
구·시·군의장	230	1,399	410	989	4.3	848	85.7
지역구 시·도의원	655	2,694	529	2,165	3.3	2,068	95.9
지역구 구·시·군의원	2,513	9,454	1,108	8,346	3.3	7,995	95.8
제주도교육의원	5	14	-	14	2.8	14	100.0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그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일정 수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홍보물과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등록관련 차이점은 [표 3-11]과 같다.

예비후보자등록은 시·도지사선거는 1월 31(화)부터, 기타 지방선거는 3. 19(일)¹⁴⁾부터 등록하였으며,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수는 총 13,680명이었으나 사퇴·사망·등록무효 등 2,072명을 제외한 최종 예비후보자는 11,608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3.4대 1이었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이 상실되는데 최종 예비후보자의 94.7%인 10,991명이 후보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617명(5.3%)은 본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표 3-12])

14) 구·시·군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시작일이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22%(2,918명)에 이릅니다.



후보자

(1) 후보자 등록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간은 종전 17일간에서 14일간으로 단축되었으며 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6개 시·도위원회와 250개 구·시·군위원회에서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았다.¹⁵⁾

이번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총 12,227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3.2대 1이었다. 이 중 10,991명은 예비후보자를 거쳐 등록하였고 1,236명은 예비후보자를 거치지 않고 본선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표 3-13] 후보자등록

(단위 : 명)

구 분	제4회 지방선거			제3회 지방선거			
	정 수	후보자수	경쟁률	정 수	후보자수	경쟁률	
합 계	3,872	12,227	3.2	4,415	10,918	2.5	
시·도지사	16	66	4.1	16	55	3.4	
구·시·군의장	230	848	3.7	232	750	3.2	
시·도 의원	지역구	655	2,068	3.2	609	1,531	2.5
	비례대표	78	211	2.7	73	209	2.9
	교육의원	5	14	2.8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7,995	3.2	3,485	8,373	2.4
	비례대표	375	1,025	2.7	-	-	

.....

15) 시·도위원회 접수 :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위원회 접수 : 구·시·군의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정당별 후보자등록

정당별 후보자등록은 8개 정당이 전체 등록 후보자의 66.3%(8,102명)를 추천하였다. 이번 선거부터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허용된 점을 감안하면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제3회 지방선거의 10개 정당이 추천한 등록후보자의 69.7%(기초의원선거 제외)보다 정당공천율이 3.4% 낮아진 것으로, 이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3,253명¹⁶⁾에 이른 것 등에 기인한 것이다.

[표 3-14] 정당별 후보자등록

(단위 : 명)

구 분	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 회당	무소속	
합 계	12,227	2,391	3,217	1,234	802	426	7	13	12	4,125	
시·도 지 사	66	16	16	8	13	7	1	2	-	3	
구·시·군의 장	848	185	197	90	56	37	1	4	-	278	
시·도 의원	지역 구	2,068	521	565	235	97	69	-	-	4	577
	비례대표	211	58	65	28	42	11	2	1	4	-
	교육의원	14	-	-	-	-	-	-	-	-	14
구·시·군 의원	지역 구	7,995	1,303	1,944	749	467	266	3	6	4	3,253
	비례대표	1,025	308	430	124	127	36	-	-	-	-

■ 여성후보자 추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당추천 후보자의 추천방법·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 후보자등록은 제2회 지방선거의 2.3%(239명), 제3회 지방선거의 3.6%(394명)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11.5%(1,411명)로 대폭 증가했다.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2002년 3월 7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시·도위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

16) 지역구기초의원은 전체 후보자의 65.4%로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무소속후보자 3,253명(정당미추천율 40.3%)가 많아 전체 정당공천율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됨.



고, 추천순위의 부여에도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여성의 정치참여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 시·도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도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그 후보자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경우 여성을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을 노력하도록 하였다. 이들 법조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여성추천비율 50%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는 한편, 여성후보자의 추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구지방의원의 여성추천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표 3-15]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

(단위: 명, %)

구 분	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 사회당	무소속
추천후보자(A)	12,227	2,391	3,217	1,234	802	426	7	13	12	4,125
여 성(B)	1,411	358	479	126	280	39	2	1	5	121
비율(B/A)	11.5	15.0	14.9	10.2	34.9	9.2	28.6	7.7	41.7	2.9

■ 사퇴·사망·등록무효

등록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는 총 49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의 25명보다 24명이 늘어났다. 이는 당내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탈당한 경우, 이중당적, 수형 등

[표 3-16] 사망·사퇴·등록무효

(단위: 명)

구 분	계	사 망	사 퇴	등 록 무 효		
				계	당적변경	피선거권 상실
합 계	49	1	25	23	18 ¹⁾	5
구·시·군의 장	9	1	7	1	1	-
지역구 시·도의원	6	-	2	4	3	1
지역구 구·시·군의원	27	-	12	15	12	3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7	-	4	3	2	1

주1) 이중당적 4, 당적변경 2, 당적을 가지고 무소속 후보등록 11, 제명 1

주2) 제3회 지방선거시 사퇴등에 따른 등록 무효 25명(사퇴 17, 등록무효 8(당적보유 무소속후보 2, 피선거권 없음 3, 기타 3))

에 의한 피선거권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 후보자 1인선거구 및 무투표선거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1인선거구¹⁷⁾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무투표선거구는 제2회 758개, 제3회 507개에 이어 제4회는 48개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후보자 1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수 감소는 지역별 특정정당 편중현상 희석, 무투표선거구 감소는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 유급화 등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3-17] 무투표선거구 및 후보자 1인 현황

(단위 : 개)

구 분	합 계	무 투 표 선 거 구			후보자 1인 선거구 (구·시·군의 장)	
		계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제3회 지방선거	507	495	44	451	-	12
제4회 지방선거	48	46	13	2	31	2
증 감	△459	△449	△31	△449	△31	△10

(2) 후보자 정보공개

선거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다.

후보자정보공개가 처음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재산, 납세 실적, 병역과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 등을 선거구위원회 게시판과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였다. 이어서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및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의 후보자 정보공개 대상 범위에 친족을 포함하고, 학력의 허위 기재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학력을 정보공개 대상에 추가하였다. 즉, 재산과 납세실적 및

17)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함



병역사항은 후보자 본인은 물론 친족까지를 포함한 정보공개자료를 매세대와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자 자질에 대한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하였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선거공보에 수록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치포털사이트(www://epol.nec.co.kr)에 게시됨에 따라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격·자질 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다.

■ 등록대상재산 신고

후보자는 전년도말 현재인 2005년 12월 31일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종전과 달리 등록대상재산 공개확인서 제출을 신고로 같음했던 현직(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도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고, 이번선거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 3-18] 재산신고액별 후보자수

(단위 : 명)

구 분	계	채무만 있음	1억원 미만	1억원 ~ 5억원	5억원 ~ 10억원	10억원 ~ 30억원	30억원 ~ 50억원	50억원 ~ 70억원	7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300억원	300억원 이상	
합 계	12,227	889	2,897	5,308	1,691	1,204	160	43	19	15	1	
시·도 지 사	66	1	6	23	16	14	3	-	1	2	-	
구·시·군의 장	848	30	129	330	183	135	25	9	2	5	-	
시·도	지역 구	2,068	161	433	874	319	225	36	10	5	4	1
의원	비례대표	211	15	49	65	40	30	7	2	1	2	-
	교육의원	14	-	1	4	6	3	-	-	-	-	-
구·시·군	지역 구	7,995	625	1,990	3,567	1,016	697	73	19	6	2	-
의원	비례대표	1,025	57	289	445	111	100	16	3	4	-	-

■ 병역사항 신고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 1월인 2006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본인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 5월 24일 제정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이번 선거의 군미필 후보자는 1,569명(13.8%)으로 제3회의 1,500명(13.7%)보다 69명 증가하였다.

[표 3-19] 병역신고사항별 후보자등록수

(단위 : 명)

구 분	계	군 필	군 미필	여성등 비대상
합 계	12,227	9,241	1,569	1,417
시·도 지 사	66	50	12	4
구·시·군의 장	848	674	151	23
시·도의원	지역구	1,694	266	108
	비례대표	211	58	134
	교육의원	14	13	-
구·시·군 의원	지역구	6,529	1,065	401
	비례대표	1,025	223	747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 신고

후보자는 최근 5년간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체납실적 포함)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시에는 후보자 본인의 최근 3년간 소득세 및 재산세납부실적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고대상기간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신고대상은 후보자 본인에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로, 세목은 소득세 및 재산세납부실적에서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2002년 개정시 추가)로 조정하고 신고 대상 범위도 남



[표 3-20]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별 후보자수

(단위 : 명)

구 분	계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합 계	12,227	285	2,030	1,208	3,474	1,638	2,862	398	332	
시·도 지 사	66	-	4	1	8	5	33	6	9	
구·시·군의 장	848	9	77	50	123	102	349	73	65	
시·도 의원	지역 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2,068 211 14	43 6 -	311 41 -	194 12 -	558 39 2	274 22 -	534 61 12	72 15 -	82 15 -
구·시·군 의원	지역 구 비례대표	7,995 1,025	189 38	1,416 181	849 102	2,445 299	1,102 133	1,657 216	201 31	136 25

부실적에서 납부 및 체납실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선거에 앞서 개정(2005년 1월 5일)된 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세목을 변경하여 신고토록 하였다.

■ 후보자의 전과기록

입후보예정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자질 등에 대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당의 후보자추천단계에서 전과기록의 사전조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전과기록 공개 등으로 전과기록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이번 선거에서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1,324명(10.8%)으로 제3회 지방선거의 1,374명(12.6%)보다 50명이 감소하였다.([표 3-21])

■ 후보자의 학력 기재

총선 선거까지 학력의 허위 기재로 인한 시비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제17회

[표 3-21]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자의 전과내역별·건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후보자 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수	전과내역별 건수						전과건수별 후보자수					
			일반사범			선거사범			1	2	3	4	5건 이상	
			금고	징역	집행유예	금고	징역	집행유예						
합 계	12,227	1,324	86	402	1,237	3	2	49	993	248	56	14	13	
시·도 지 사	66	13	-	12	1	-	-	-	9	1	1	1	1	
구·시·군의 장	848	105	1	37	107	-	-	12	71	24	6	1	3	
시·도	지역구	2,068	221	11	90	176	1	-	10	171	39	9	-	2
의원	비례대표	211	13	1	-	15	-	-	1	9	4	-	-	-
	교육의원	14	-	-	-	-	-	-	-	-	-	-	-	-
구·시·군	지역구	7,995	924	71	252	892	2	2	24	695	172	39	11	7
의원	비례대표	1,025	48	2	11	46	-	-	2	38	8	1	1	-

[표 3-22] 학력별 등록후보자수

(단위 : 명)

구 분	계	미기재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	
합 계	12,227	640	1,274	2,603	5,536	2,174	
시·도 지 사	66	-	-	2	28	36	
구·시·군의 장	848	17	32	89	376	334	
시·도의원	지역구	2,068	59	108	308	1,003	590
	비례대표	211	6	15	25	106	59
	교육의원	14	-	-	-	4	10
구·시·군	지역구	7,995	520	980	1,900	3,558	1,037
의원	비례대표	1,025	38	139	279	461	108

국회의원 선거부터 후보자의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최종학력증명서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졸 이상 후보자가 7,696명(62.9%)으로 제3회 지방선거의 3,305명(30.3% 이하)보다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인 고학력 추세를 반영해 주고 있다.([표 3-22])

기탁금

기탁금이란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시 선거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을 말하며, 선거 과정에서 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한 후, 선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건에 따라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탁금 납입금액은 제1회부터 제4회 지방선거까지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반환요건은 각각 달리 적용해 왔다. 기탁금액과 그 반환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시의 기탁금 상향조정(1,000 → 2,000만원)과 반환요건 강화(유효득표수의 10 → 20%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19일 위헌이라고 판시¹⁸⁾¹⁹⁾했던 사실이며 판결의 취지 등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

18) 기탁금 상향 조정(1,000만원 → 2,000만원)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

후보자의 난립방지라는 목적을 공평하고 적절히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입후보 의사를 가진 많은 국민의 입후보등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등권과 피선거권,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19) 반환요건 강화(유효득표수의 10% → 20% 등)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

그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입후보희망자의 입후보를 가로막고 있으며, 또한 일단 입후보한 자로서 진지하게 당선을 위해 노력을 다한 입후보자에게 선거결과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고, 특히 2, 3개의 거대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입후보자로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충족하기 힘들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약하는 효과를 낳게 되어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임.

[표 3-23] 지방선거 기탁금 반환요건 변화추이

구분	기탁금반환요건	평균반환율(%)
제1회	• 자치단체 장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 • 지방의회의원 :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로 나눈수의 2분의 1 이상인 때	90.4
제2회	•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0% 이상 득표	87.0
제3회	•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당선·사망	90.0
제4회	•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당선·사망 ⇒ 전액 반환 • 유효투표총수의 10%~15% 득표 ⇒ 50% 반환	62.8

을 같은 해 10월 8일에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듬해에 실시한 제3회 지방선거에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시·도원의 기탁금을 다시 300만원으로 낮추어 현재까지 그 기초를 유지하는 한편 반환요건도 [표 3-23]과 같이 더욱 완화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은 총 후보자 12,227명으로부터 총 36,699,000천원을 납부 받았으며, 과태료 및 대집행비용 499,793천원을 제외한 36,201,207천원을 반환·귀속하였다. 기탁금 반환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율이 제3회 90.0%에서 62.8%로 27.2% 감소된 것은 경쟁률이 높아지고,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반면 반환율과 구축관계(Trade-off)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율은 27.2%(10% → 37.2%)가 증가하였다.

(1) 기탁금 납부

이번 선거의 기탁금액은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이었다. 이들 기탁금액은 제3회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 차례만 하향 조정이 있었을 뿐으로 제1회지방선거에서부터 제4회지방선거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기탁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표 3-24] 선거별 기탁금 납부

(단위: 천원, 명)

구 분	합 계	시·도지사	구·시·군 의 장	시·도 의원			구·시·군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기탁금(A)	-	50,000	10,000	3,000	-	-	2,000	-
후보자수(B)	11,658	66	848	2,068	70	14	7,995	597
납부액(A×B)	36,699,000	3,300,000	8,480,000	6,204,000	633,000	42,000	15,900,000	2,050,000

등록후보자 12,227명의 기탁금은 총 36,699,000천원으로 후보자등록신청시 현금 또는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납부되었다.

(2) 과태료 징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구위원회에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등을 해태·지연 하거나 경미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기탁금에서 공제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592,45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중 499,793천원 (83.4%)의 과태료를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였다.([표 3-25])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부터 시행하던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 물·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표 3-25] 과태료 부과(50배 과태료 제외)

(단위: 천원, 건)

구 분	금액			건수					
	계	기탁금에서 공제	일반 과태료	계	인쇄물 제출지연	벽보 미철거	신분증 미패용	신고·제출 해태·지연	기타
합 계	592,454	499,793	92,661	1,244	557	88	365	124	110
시·도 지 사	72,900	61,350	11,550	127	77	13	28	3	6
구·시·군의 장	145,704	129,693	16,011	258	87	33	110	10	18
시·도 의원	96,750	82,550	14,200	204	97	27	62	5	13
구·시·군 의원	277,100	226,200	50,900	655	296	15	165	106	73

인터넷언론사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불응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중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총 96건에 1,543,753천원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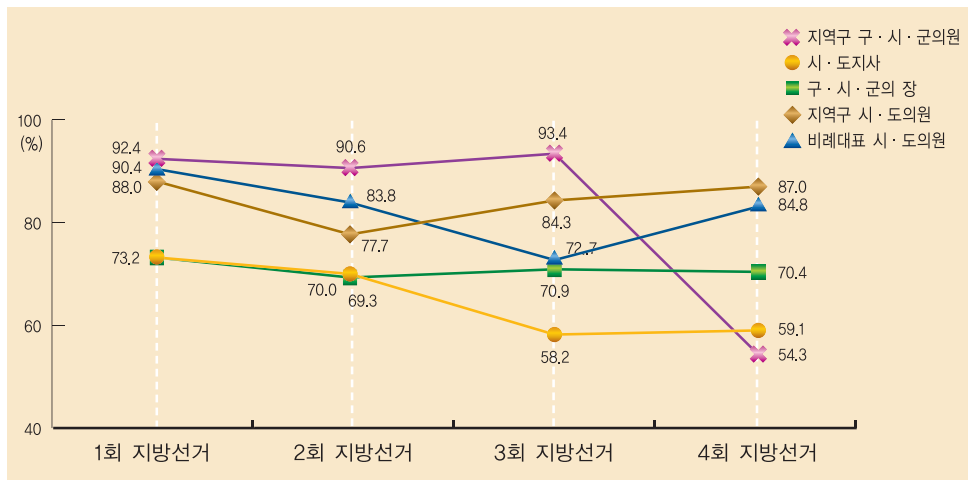
(3) 기탁금 반환·귀속

기탁금의 반환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법정반환요건에 해당되거나 당선 또는 사망한 후보자에게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과태료, 대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선거

[표 3-26] 선거별 기탁금의 반환율 변동추이

(후보자 기준, %)

구 분	계 (평균)	시·도지사	구·시·군 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제1회 지방선거	90.4	73.2	73.2	88.0	90.4	-	92.4	-
제2회 "	87.0	70.0	69.3	77.7	83.9	-	90.6	-
제3회 "	90.0	58.2	70.9	84.3	72.7	-	93.4	-
제4회 "	62.8	59.1	70.4	87.0	84.8	100.0	54.3	68.7





일후 30일인 2006년 6월 30일까지 반환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탁금 평균 반환율이 62.8%(50% 반환 포함)로 제3회 지방선거의 90.0%보다 오히려 27.2%가 감소되었다([표 3-26], [표 3-27] 참조). 이는 기탁금 반환요건완화로 인한 반환율 증가요인이 높은 후보자 경쟁률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상쇄됨을 보여준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에 따라 후보자 평균경쟁률이 0.7% (2.5 : 1 → 3.2 : 1) 높아짐에 따라 높은 경쟁률과 상반되게 반환율이 낮아졌다. 특히, 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높아진 경쟁률과 함께 중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라 법적 반환요건을 충족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전체 후보자수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기초의원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율 31.9%(93.4 → 54.3%) 감소는 전체 후보

[표 3-26] 선거별 기탁금의 반환·귀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시·도 지사	구·시· 군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 후보자 합계 (반환율, %)	12,227 (62.8)	66 (59.1)	848 (70.4)	2,068 (87.0)	211 (84.8)	14 (100.0)	7,995 (54.3)	1,025 (68.7)
- 전액반환(=귀속없음)	6,137	34	517	1,537	179	14	3,152	704
• 15%이상 득표	1,834	18	286	882	-	9	639	-
• 당선	4,303	16	231 ¹⁾	655	179	5	2,513	704
- 50% 반환(=50% 귀속)	1,538	5	80	262	-	-	1,191	-
- 반환없음(=전액귀속)	4,552	27	251	269	32	-	3,652	321
• 10%미만 득표	4,511	27	243	263	32	-	3,625	321
• 사퇴·등록무효	41	-	8	6	-	-	27	-
○ 금액 합계 (반환율, %)	36,699 (59.6)	3,300 (55.3)	8,480 (65.7)	6,204 (80.7)	633 (84.8)	42 (100.0)	15,990 (46.9)	2,050 (68.7)
- 반 환	21,881	1,825	5,570	5,004	537	42	7,495	1,408
• 100%	19,772	1,700	5,170	4,611	537	42	6,304	1,408
• 50%	2,109	125	400	393	-	-	1,191	-
- 귀 속	14,818	1,475	2,910	1,200	96	-	8,495	642
• 100%	12,709	1,350	2,510	807	96	-	7,304	642
• 50%	2,109	125	400	393	-	-	1,191	-

주1) 사망한 후보자 1명은 분수에 포함, 주2) 반환율(%)은 후보자 기준이며, 50% 반환받은 후보자를 포함,

주3) 비례대표는 매선거의 후보자수 합계임.

자의 기탁금 평균 보전율을 27.2%(90.0 → 62.8%) 낮아지도록 작용하였다.

한편 후보자의 득표수가 법정요건에 미달되는 후보자 등의 기탁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켰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12,227명의 37.2%인 4,552명의 기탁금 14,818,000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며, 이는 제3회 지방선거 9,388,000천원보다 5,430,000천원(57.8%)이 증가한 금액이다.

선거운동

선거운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행사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므로 후보자는 선거권자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 등에게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과열로 이어져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이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시키게 되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의 규제가 행하여지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중요한 두 이념인 자유와 공정은 선거운동이라는 현실적인 사안에 이르렀을 때 서로 상충되는바, 합리적인 선거운동은 두 이념을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 조화시키는지가 선거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열쇠이다. 그러므로 이 둘의 조화를 잘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곧, 선거의 자유와 공정, 나아가 국민의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보장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각국에서도 선거운동 자유의 본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일련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운동방법의 광범위한 제한은 반세기에 걸친 우리 선거사의 기본골격이 되어왔으나, 앞으로의 운용과정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나친 규제가 해소될 것이다.

선거운동자유 확대는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방법을 포괄적 제한·금지방식에서 개별적 제한·금지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제2회 지방



선거에서는 방송연설·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의 이용을 확대하였으며, 제3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달을 선거운동에 접목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처음 도입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보장에까지 이르렀는바,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 그 밖의 지방선거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 전송, 홍보물의 발송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치 신인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거리현수막 게시, 인터넷 광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의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와 함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돈선거와 후보자비방 등 불법선거의 원인을 근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경제력 차이 때문에 선거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돈이 많이 소요되는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등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을 폐지함은 물론 조직관리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정당의 지구당 또한 폐지하였다.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대신하여 적은 경비로도 선거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토론회를 비례대표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등 안방에서 정당·후보자의 정견·정책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인 인터넷, PC통신 등의 경우 그 유용성에 반하여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흑색 선전,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히 발생하였던바,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함과 아울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였다.

반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거리현수막과 거리유세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의 정도가 심하여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겨 주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선거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었고 아파트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분별하게 틀어대는 스피커의 높은 볼륨은 유권자의 지지보다는 빈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각 정당은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모든 사무와 후보자의 각종 신고업무 등을 처리할 한시조직인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당선거사무소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선거일 전 120일인 2006년 1월 3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7월 1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씩(단, 국회의원 지역구가 분리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정당사무소에는 소장과 유급사무원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회 지방선거까지는 정당선거사무를 각 정당의 지구당에서 수행하였으나, 지구당은 조직·인력운용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를 폐지하고 선거운동조직이 아닌 한시조직으로 정당선거사무소를 운영토록 하였다. 선거운동기구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정당선거사무소는 법규에서 정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는 각종 신고업무 등에서 자유롭게 되어 선거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거관리기관은 전문성이 있는 정당사무소를 통하여 많은 후보자의 각종 신고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층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3-28]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단위 : 개)

구·시·군위원회수	합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한미준
250	793	265	239	86	181	21	1

(2)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관계자의 선임·신고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는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정수



[표 3-29]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관계자 선임·신고

(단위: 명, %)

구 분	예비후보자수(A)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설치수(B)	비율(B/A)	선임수(C)	평균(C/A)
합 계	13,666 ¹⁾	8,145	59.6	5,851	0.4
시·도 지 사	119	83	69.7	202	1.7
구·시·군의 장	1,399	965	69.2	1,296	0.9
시·도의회의원	2,694	1,559	57.9	1,023	0.4
구·시·군의회의원	9,454	5,538	58.6	3,330	0.4

주1) 예비후보자 13,680명([표 3-12] 참조) 중 교육의원 후보자(14명) 제외

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의 법정한도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8,145명(59.6%)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선거사무관계자는 총 5,851명(평균 0.4명)이 선임되었다.

■ 후보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이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는 선거의 구분 없이 선거구마다 1개소, 선거연락소는 시·도지사선거는 구·

[표 3-30] 선거운동기구 설치

(단위: 개)

구 분	법정설치수			실제 설치수						
	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계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합 계	13,332	11,658	1,674	12,175	91.3	11,153	95.7	1,022	61.1	
시·도 지 사	1,444	66	1,378	929	64.3	66	100.0	863	62.6	
구·시·군의 장	1,144	848	296	990	86.5	831	98.0	159	53.7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2,068	-	2,057	99.5	2,057	99.5	-	-
	비례대표	70	70	-	47	67.1	47	67.1	-	-
	교육의원	14	14	-	14	100.0	14	100.0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7,995	-	7,905	98.9	7,905	98.9	-	-
	비례대표	597	597	-	233	39.0	233	39.0	-	-

[표 3-31]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단위 : 명)

구 분		법정선임수			선임수 및 선임율						
		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계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합 계	계	152,041	127,696	24,345	130,731	86.0	113,732	89.1	16,999	69.8	
	선거사무장	12,972	11,532	1,440	12,478	96.2	11,349	98.4	1,129	78.4	
	선거사무원	126,085	104,610	21,475	105,729	83.9	90,973	87.0	14,756	68.7	
	회계책임자	12,984	11,554	1,430	12,524	96.5	11,410	98.8	1,114	77.9	
시·도지사	계	18,034	1,576	16,458	11,996	66.5	1,323	83.9	10,673	64.8	
	선거사무장	1,252	66	1,186	963	76.9	66	100.0	897	75.6	
	선거사무원	15,538	1,444	14,094	10,080	64.9	1,191	82.5	8,889	63.1	
	회계책임자	1,244	66	1,178	953	76.6	66	100.0	887	75.3	
구·시·군의장	계	41,589	33,702	7,887	36,211	87.1	29,885	88.7	6,326	80.2	
	선거사무장	1,100	846	254	1,066	96.9	834	98.6	232	91.3	
	선거사무원	39,391	32,010	7,381	34,072	86.5	28,205	88.1	5,867	79.5	
	회계책임자	1,098	846	252	1,073	97.7	846	100.0	227	90.1	
시·도 의 원	지역구	계	24,697	24,697	-	23,084	93.5	23,084	93.5	-	-
		선거사무장	2,059	2,059	-	2,042	99.2	2,042	99.2	-	-
		선거사무원	20,562	20,562	-	18,998	92.4	18,998	92.4	-	-
		회계책임자	2,076	2,076	-	2,044	98.5	2,044	98.5	-	-
	비례대표	계	1,978	1,978	-	1,153	58.3	1,153	58.3	-	-
		선거사무장	68	68	-	58	85.3	58	85.3	-	-
		선거사무원	1,842	1,842	-	1,031	56.0	1,031	56.0	-	-
		회계책임자	68	68	-	64	94.1	64	94.1	-	-
구·시·군 의 원	지역구	계	55,698	55,698	-	51,817	93.0	51,817	93.0	-	-
		선거사무장	7,961	7,961	-	7,889	99.1	7,889	99.1	-	-
		선거사무원	39,772	39,772	-	36,036	90.6	36,036	90.6	-	-
		회계책임자	7,965	7,965	-	7,892	99.1	7,892	99.1	-	-
	비례대표	계	10,045	10,045	-	6,470	64.4	6,470	64.4	-	-
		선거사무장	532	532	-	460	86.5	460	86.5	-	-
		선거사무원	8,980	8,980	-	5,512	61.4	5,512	61.4	-	-
		회계책임자	533	533	-	498	93.4	498	93.4	-	-

주1) 교육의원 14명은 선거사무소 14개 설치, 선거사무원 140명을 선임하였으며, 본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주2) 수당 미지급 선거사무원 630명(각 선거를 지원한 유급당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제외함.



시·군마다 각 1개소로 하되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지역구마다 1개소로 하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한하여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구에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율은 95.7%로 무투표당선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였다.([표 3-30])

또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원의 수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법정한도가 다르며 2배수의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법정선거사무원 수에 구애됨이 없이 선임될 수 있으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표 3-31])

(3)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직접 배부하는 것 이외에도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표 3-32]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수

(단위: 명, %)

구 분	총 수(A)	발 송 자(B)	발 송 륜(B/A)
합 계	13,666	6,769	49.5
시·도 지 사	119	57	47.9
구·시·군의 장	1,399	829	59.3
지역구시·도의원	2,694	1,366	50.7
지역구구·시·군의원	9,454	4,517	47.8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는 사진·성명·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선거구인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2만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예비후보자 13,666명 중 49.5%인 6,769명이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 선전벽보

선거구위원회는 2006년 5월 8일까지 선전벽보의 작성·제출 수량을 공고하였으며, 후보자는 이를 작성하여 5월 20일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구·시·군위원회는 선전벽보를 비닐벽보판에 끼워 넣는 작업 등을 거친 후 5월 22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였다. 선거구위원회의 첩부기준은 [표 3-33]과 같으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3개 이상 선거의 동시선거는 기준매수의 2분의 1로 운영되었다. 특례규정은 동시선거라는 특성으로 첩부할 선전벽보 수량은 많아지나 첩부할 장소는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한 입법조치이다.

[표 3-33] 첩부기준 및 실제 첩부수량

구 분	첩부기준	특례규정 적용	실제 첩부수량
동 및 읍	인구 1천인에 1매	1/2로 운영	인구 2천인에 1매
면	2만이상	" "	인구 1천인에 1매
	1만이상	" "	인구 400인에 1매
	1만이하	" "	인구 200인에 1매

[표 3-34] 선전벽보 제출 및 첩부

(단위 : 명, 매)

구 분	제출대상 후보자수	제 출 후 보 자 수			미 제 출 후보자수	첩부수량
		계	전부제출	일부제출		
합 계	10,991	10,912	10,879	33	79	911,688
시·도지사	66	66	66	-	-	200,411
구·시·군의 장	848	837	837	-	11	175,485
지역구시·도의원	2,068	2,043	2,029	14	25	150,060
교육의원	14	14	14	-	-	1,155
지역구구·시·군의원	7,995	7,952	7,933	19	43	384,577



이와 함께 정당이 작성·제출하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전벽보는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총 6개선거 중 4개선거의 선전벽보만 부착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대상후보자 10,991명 중 79명(0.7%)으로 제3회 지방선거의 536명(5.0%)보다 미제출자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미제출 원인은 무투표선거구, 인쇄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다.(표 3-34)

■ 선거공보

선거구위원회는 선거공보(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를 포함)의 작성·제출 매수를 2006년 5월 8일까지 공고하고 정당²⁰⁾·후보자는 이를 작성하여 부재자용은 5월 20일까지, 매세대용은 5월 23일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제출된 선거공보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동봉하여 5월 22일까지, 매세대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발송하였다.

또한 소형 인쇄물을 선거공보로 통합하는 대신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 2면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대상후보자 11,658명 중 322명(2.8%)으로 제3회 지방선거의 541명(5.1%)보다 줄어들었다.(표 3-35)

반면 시각장애인(55,697세대)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시행되었으나 지방선거에서의 제출률²¹⁾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이를 시정하고자 이번 선거에서는 점자인쇄 가능업체를 사전 안내하는 등 점자형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적극 유도했음에도 제출률이 18.5%로 여전히 낮았다. 이는 점자형선거공보가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쇄시설이 제한되어 있어 제작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내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제출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

20) 비례대표시·도 및 구·시·군의원의 선거공보는 추천 정당이 작성함.

21) 점자형선거공보 제출률 : 16대 국회의원선거 27.0%, 제3회 지방선거 8.2%, 17대 국회의원선거 42.3%

[표 3-35] 선거공보제출 및 발송

(단위: 명, 배)

구 분	대상 후보자수(A)	제 출 후 보 자 수			미제출 (A-B)	발송수량	
		계(B)	전부제출	일부제출			
합 계	11,658	11,336	6,762	4,574	322	473,917,801	
시·도지사	66	66	17	49	-	74,206,587	
구·시·군의 장	848	833	441	392	15	70,282,308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2,039	1,216	823	29	58,627,872
	비례대표	70	55	8	47	15	80,105,880
	교육의원	14	14	14	-	-	626,179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7,903	4,891	3,012	92	150,507,483
	비례대표	597	426	175	251	171	39,561,492

주) 선거공보 발송통수는 총 19,179,384통임(매세대 17,853,692, 부재자 1,325,692).

[표 3-36]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및 발송

(단위: 명, 천배, %)

구 분	대상 후보자수 (A)	제 출 후 보 자 수				미제출 (A-B)	발송수량	
		계(B)	제출률 (B/A)	전부제출	일부제출			
합 계	11,658	2,153	18.5	1,815	338	9,505	502,770	
시·도 지 사	66	54	81.8	19	35	12	197,300	
구·시·군의 장	848	391	46.1	334	57	457	110,656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475	23.0	430	45	1,593	46,049
	비례대표	70	29	41.4	6	23	41	48,157
	교육의원	14	10	71.4	10	-	4	2,717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1,111	13.9	1,016	95	6,884	72,828
	비례대표	597	83	13.9	-	83	514	25,063

[표 3-37] 선거공보에 정보공개자료 미게재

(단위: 건)

구 분	계	추가게재 발송	미게재 제출에 대한 조치			
			소 계	고 발	경 고	공명선거 협조요청
합 계	14	2	12	8	3	1
구·시·군의 장	1	-	1	1	-	-
지역구·시·군의원	13	2	11	7	3	1



[표 3-38] 선거공보에 '경력 등' 허위사실 게재

(단위 : 건)

구 분	계	정 정 제 출	공고문 첨 부	위법행위 조치					공명선거 협조요청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이첩	경고		
합 계	132	11	9	112	19	2	1	19	71	
구·시·군의 장	8	1	2	5	1	1	-	-	3	
시·도 의 원	26	4	5	17	2	-	1	4	10	
교육의원	1	-	1	-	-	-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94	6	1	87	15	1	-	13	58
	비례대표	3	-	-	3	1	-	-	2	-

이다.([표 3-36])

한편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만큼 유권자의 정보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작성·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에 미게재하여 제출한 14명의 후보자는 고발²²⁾ 등의 조치를 하였다.([표 3-37])

또한, 철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음에도 선거공보에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례가 총 132건이 발생되어, 이를 정정 제출토록 하거나 고발·공고문 첨부 등을 통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였다.([표 3-38])

(4)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신문광고

시·도지사 선거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5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고,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 마다 1회씩 추가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후보자 66명

.....

22)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표 3-39] 신문광고 게재

(단위: 명, 회)

구 분	후보자수	법정게재횟수	게재	%	미게재	%
제4회	66	381	170	44.6	211	55.4
제3회	55	350	187	53.4	163	46.6
증감	11	31	△17	△8.8	48	8.8

에 대한 광고 가능 횟수는 381회이나 170회의 광고를 게재하여 게재율이 44.6%였는바, 이는 게재율면에 있어서 제3회 지방선거 53.4%에 비하여 8.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연설

방송연설에는 후보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2종류가 있다.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시간은 1

[표 3-40]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기준

구 분	연설자	매체별 연설횟수
시·도지사	후보자	지역 TV 및 라디오별 각 5회이내
구·시·군의 장	후보자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2회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	정당 선임 대표인	지역 TV 및 라디오별 각 1회이내

[표 3-4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단위: 명, 회)

구 분	후보자(정당)		TV				라디오	
	총 수	연설실시	법정가능 횟 수	실시횟수	지상파	종합유선	법정가능 횟 수	실시횟수
합 계	984	315	724	462	177	285	724	175
시·도 지 사	66	48	240	161	148	13	240	162
구·시·군의 장	848	217	434	284	12	272	434	-
비례대표 시·도의원	70 ^나	50	50	17	17	-	50	13

주1)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수임.



[표 3-42]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단위 : 회)

구 분	TV					라디오		
	계	KBS	MBC	SBS등	종합유선 방송국	계	KBS	BBS
합 계	577	-	-	5	572	17	-	17
시·도지사	48	-	-	-	48	-	-	-
구·시·군의장	112	-	-	5	107	2	-	2
지역구시·도의원	146	-	-	-	146	4	-	4
지역구구·시·군의원	271	-	-	-	271	11	-	11

회당 10분 이내이며 방송연설이 허용된 선거별 기준은 [표 3-40]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법정개최횟수의 44.0%인 637회(TV 462, 라디오 175)가 실시되어 제3회 지방선거 11.9%(444회)보다 32.1% 증가되었다.([표 3-41])

한편 방송사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하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은 후보자간의 공평성만 유지된다면 방송시간, 횟수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방송연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후보자등의 방송연설과 구별된다.

이번 선거에서 방송사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은 594회(TV 577, 라디오 17)로 제3회 지방선거 843회보다 243회가 줄어들었고, 방송시설별로는 종합유선방송국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방송시설들이 자신의 부담으로 개최하는 후보자방송연설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표 3-42])

■ 경력방송

경력방송에는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과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2종류가 있다. 방송연설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후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경력방송은 그 종류와 상관없이 공히 각 방송사가 부담한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제출된 후보자경력을 TV와 라디오로 총 1,020회에 걸쳐 2분 이내로 방송하였다.([표 3-43])

[표 3-43]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단위 : 명, 횟수)

구 분	후보자수 (A)	매체별 횟수기준 (B)	실시(A×B)		
			계	TV	라디오
합 계	914		1,020	502	518
시·도지사	66	TV, 라디오별 각 3회 이상	91	46	45
구·시·군의 장	848	TV, 라디오별 각 2 이상	929	456	473

[표 3-44]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단위 : 횟수)

구 분	T V				라 디 오			
	계	MBC	지역민방	종합유선 방송국	계	MBC	CBS	기 타
합 계	12,859	4	1,200	11,655	300	2	-	298
시·도 지 사	176	-	-	176	1	-	-	1
구·시·군의 장	2,115	4	133	1,978	38	2	-	36
시·도	지역구	4,455	-	502	3,953	72	-	72
의원	비례대표	9	-	9	-	-	-	-
구·시·군	지역구	5,725	-	510	5,215	157	-	157
의원	비례대표	379	-	55	324	32	-	32

한편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은 지역민영방송, 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총 13,159회 방송하였다. 이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이 총 594회 방송으로 그 실적이 저조한 것과 달리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은 참여 방송사가 많을 뿐 아니라 횟수 또한 12,565회가 더 많아 대조를 이루는 것이 큰 특징이다.([표 3-43])

(5) 대담·토론회

■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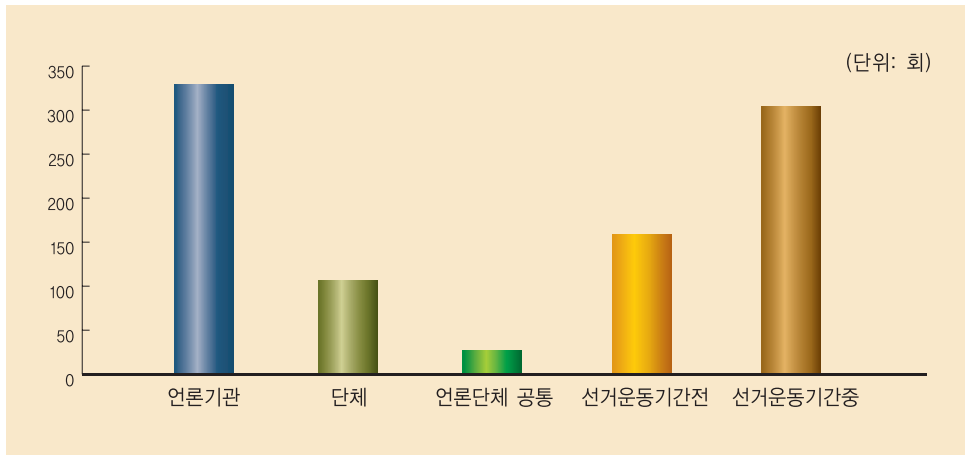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등과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5.18~5.30)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등



[표 3-45] 대담·토론회 개최

(단위: 회)

구분	계	주체별			시기별	
		언론기관	단체	언론·단체공동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기간중
합계	463	329	107	27	159	304



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후보자 초청대담·토론회는 최근 각종선거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유권자들도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는 정책경쟁에 의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남게 되어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증146회(183 → 329회), 시민·사회단체가 감20회(127 → 107회), 언론·시민단체공동 감48회(75 → 27회) 등 총 463회를 개최되어 제3회 지방선거의 385회보다 20.3%(78회)가 증가한바, 언론기관 개최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을 볼 수 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개최 범위가 확대되고 정책토론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어 유권자에게는 올바

[표 3-46]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구 분	개최일자	토 론 자	사회자	중계주관방송사
제1차	3. 25(토) 10:00	정책위의장	홍종학 (경원대 교수)	M B C
제2차	4. 15(토) 10:00	원내대표	김민전 (경희대 교수)	K B S
제3차	5. 12(금) 22:00	대표자	염재호 (고려대 교수)	M B C

주) 초청정당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표 3-47]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단위 : 건)

구 분	계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소개	초청	비초청	합동	소개	초청	비초청	합동
합 계	299	221	180	5	36	78	18	30	30
시·도지사	20	20	18	2	-	-	-	-	-
구·시·군의 장	262	184	145	3	36	78	18	30	30
비례대표 시·도의원	17	17	17	-	-	-	-	-	-

른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후보자에게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게 하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방송토론의 바르고 흠없는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회자 풀' 구성, '시·도별 여론조사' 실시, '자문위원(전문위원)' 제도 등 다양한 관리 방법을 과감히 새로 도입하는 등 공정하고 내실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였고, 보다 많은 유권자의 시청을 위하여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금요일, 토요일 주요 시간대에 방송되도록 하였으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연설회보다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 토론회 개최비율인 59.1%보다 22.7% 증가한 81.8%를 기록하였다.

또한 토론주제는 학계·법조계·언론계 기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시간총량제에 의한 후보자 주도권형, 찬스 발언, 패널제 활용 등 다양한 토론 진행방식을 도입·활용하였다.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그 동안 후보자들이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여 자신을 알리 수 있는 기회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과 전통적인 방법인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등이 있었으나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돈으로 대규모 청중을 동원하여 세과시의 장으로 오용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들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후보자들을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또는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대담 방식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의한 선거운동을 더욱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설·대담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대용 확장장치만 사용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함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확성기의 소음에 시달리는 등 평온한 삶을 방해받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제2회 지방선거시 폐지되었던 거리현수막 제도가 부활되어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후보자가 주요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도시환경이 심하게 훼손된 것이 문제시되었다.

[표 3-48] 현수막 및 어깨띠

(단위 : 개)

구 분	후 보 자 수	어깨띠 표지교부수	현수막 표지교부수
합 계	11,207	47,735	64,464
시·도 지 사	66	3,993	11,169
구·시·군의 장	848	8,469	13,201
시·도의원	지역구	2,068	10,301
	비례대표	211	183
	교육의원	14	81
구·시·군 의원	7,995	23,913	28,782
	비례대표	5	795
			23

(7)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방법은 청중을 동원하는 방법에서 미디어와 인터넷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일반 추세다. 기존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인터넷 사용인구가 3,000여만명에 이르는 등 사이버상의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터넷 광고 허용, 입후보예정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등 인터넷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들 선거운동방법 중 인터넷 광고는 총 후보자 12,227명의 26.9%인 3,286명만이 실시한바, 이는 인터넷 광고가 비용(회 평균 95만원 정도)에 비하여 홍보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기초의원과 정당추천을 받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광고 이용률이 저조한 데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폐해인 사이버상의 비방·흑색선전 근절을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위촉하여 감시·단속을 전개하였다(제4절 중 '사이버 감시·단속' 편 참조).

[표 3-49] 선거별 인터넷광고 게재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시·도지사	구·시·군 의 장	시·도 의 원			구·시·군 의 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자수	전체(A)	12,227	66	848	2,068	211	14	7,995	1,025
기준	실시(B)	3,286	46	443	726	5	10	2,051	5
	비율(B/A)	26.9	69.7	52.2	35.1	2.4	71.4	25.7	0.5
광고물량	횟수(C)	6,250	316	1,511	1,317	36	18	3,031	21
기준	비율(C/A)	0.5	4.7	1.8	0.6	0.2	1.3	0.4	0.0



선거비용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선거비용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선거는 금권·타락선거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선거 실시 전에 미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공고한다. 정당과 후보자는 공고된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신고해야 하며, 지출한 선거비용 중에서 선거비용보전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한다.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용산정을 항목별 산정에서 총액산정방식으로 개정하였고 보전요건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의 이념인 완전 선거공영제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전비용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이를 부담하는 지자체 중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어 선거준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우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종료 후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전이나 중에도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강화된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실사)를 병행하였다.

(1) 선거비용제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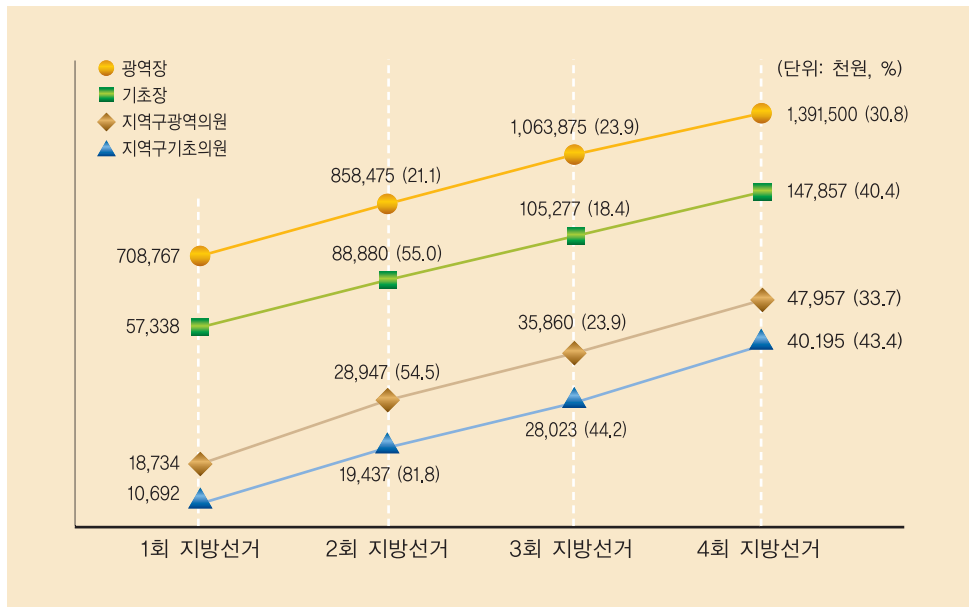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여 일부 선거구 미획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기한인 2006년 1월 21일까지 일괄 공고하였고 선거구 획정이 늦은 지역은 3월 19일까지 공고하였다.

이번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공고는 총 691,288백만원으로 제3회 지방선거 총

[표 3-50] 선거비용 보전항목 및 보전상한액 변경 내역

제3회 지방선거		제4회 지방선거	
보전항목	보전상한액	보전항목	보전상한액
〈공통〉 선전벽보, 인터넷홈페이지관리, 전화요금	항목별 보전비 용산정 공고액 범위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정치자금법 제40조의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 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인정되는 비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제외〉 선거공보			
〈지역구 시·도 및 구·시·군 의원 제외〉 소형인쇄물, 방송연설			
〈시·지사선거만 해당〉 신문광고, 연설대담차량,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그림 3-1] 선거비용 제한액(평균) 및 전년대비 증가율 변동 추이



주1) 선거구별 1후보자기준 선거비용제한액 총액을 선거구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주2) 제4회 지방선거가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선거비용 제한액 증가사유는 선거운동 항목별 산정에서 '기본금액+인구수' 산정으로 변경됨에 기인함



445,639백만원 대비 245,649백만원(55.1%)이 증가하였으며, 선거별 평균증가율을 보면 시·도지사선거는 30.8%(1,064 → 1,392백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40.4%(107 → 148백만원), 시·도의원선거 중 지역구 33.7%(36 → 48백만원), 비례대표 35.0%(143 → 193백만원),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43.4%(28 → 41백만원)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이번에 처음 실시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6백만원, 제주도교육의원선거는 평균 52백만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었다.

제3회 지방선거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증가한 이유는 선거비용 산출방식 변경과 선거수 증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선거비용 산출방식이 종전 선거운동방법별(항목별)로 선거비용을 산출하여 합산하던 것을 법정기준금액에 인구수와 읍·면·동수(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한함)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더한 총액 산출방법으로 바뀐에 따라 선거별로 각각 30% 이상의 증가를 가져왔고, 새로 도입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는 총 선거비용제한액의 순증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선거비용 지출

정당·후보자는 선거일 후 30일인 2006년 6월 30일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등록정당·후보자 11,627명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상 선거비용 지출 신고액은 선거비용제한총액 6,913억원의 58.8%인 4,062억원이었다.

선거비용 평균지출률을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보면 시·도지사선거 48.7%,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61.8%, 시·도의원선거는 비례대표 157.5%, 지역구 90.5% 그리고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142.9%가 증가하였다.

선거비용 평균지출률이 증가한 것은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되어 선거기간 전부터 선거비용지출이 늘어난 것과, 선거운동방법 중 보전대상 항목을 전 선거운동으로 확대하고 보전방식을 총액보전방식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반환요건이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표 3-51] 선거비용 제한 및 지출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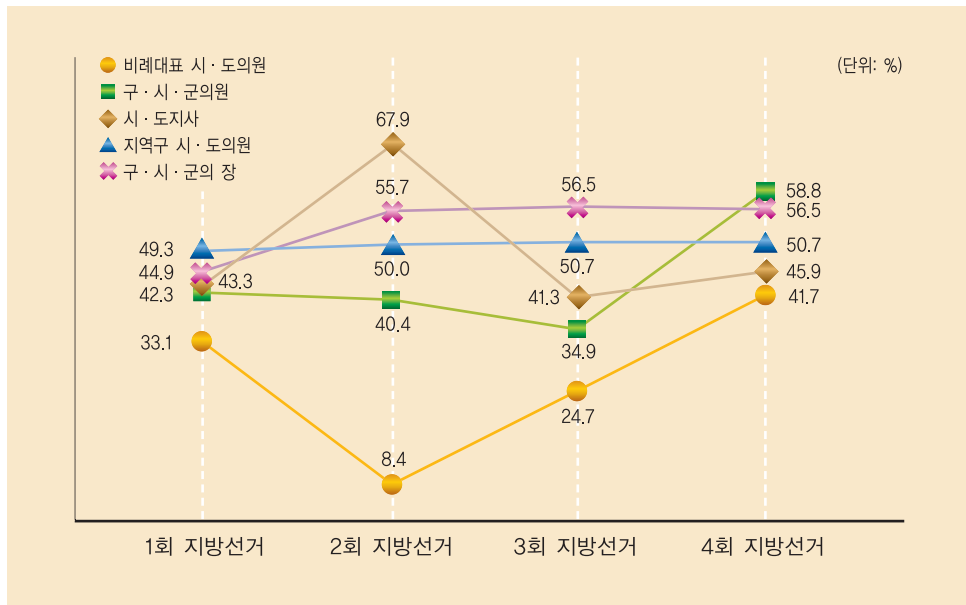
구 분	계	시·도지사	구·시·군 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자	총수	11,658	66	848	2,068	70	14	7,995	597
	보고서 제출	11,627	66	847	2,064	70	14	7,969	597
선거비용	총액	691,288,000	99,887,000	126,710,000	98,653,000	15,755,000	727,000	320,956,000	28,600,000
	제한액	평균 2,076,422	1,513,439	149,599	47,797	225,071	51,929	40,276	48,311
선거비용	총액	406,186,357	45,623,818	83,094,045	71,955,763	6,574,148	591,307	189,159,241	9,188,035
	지출액	평균 999,645	691,270	98,104	34,862	93,916	42,236	23,737	15,520
지출률(%)		58.8	45.7	65.6	72.9	41.7	81.3	58.9	32.1
		(41.3)	(41.3)	(56.5)	(50.7)	(24.7)	(-)	(34.9)	(-)

주1]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및 지출액은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한 후보자 기준임.

주2] 지출률은 제한액 대비 지출비율이며, ()는 제3회 지방선거의 지출비율임.

주3] 비례대표는 상급 당부의 선거비용보전청구액을 선거비용지출액으로 간주함.

[그림 3-2] 선거비용 지출률 추이(제한대비 지출액)





(3)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의 보전 요건은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요건과 동일하다.([표 3-23] 참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전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금액 또한 많아졌다. 지역구 후보자 중 유효득표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도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됨에 따라 전체 보전대상 지역구후보자 중 1,538명이 과거 선거에 비해 보전 혜택을 받게 되었다.

[표 3-52] 선거비용 보전

(단위 : 명, 천원, %)

구 분	계	시·도지사	구·시·군 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보전 후보자	합계	7,172 (61.5)	39 (59.1)	597 (70.4)	1,799 (87.0)	46 (65.7)	14 (100.0)	4,343 (54.3)	334 (55.9)
	100%	5,634	34	517	1,537	46	14	3,152	334
	50%	1,538	5	80	262	-	-	1,191	-
보전 대상액	합계	200,097,172	33,317,856	46,812,762	42,618,157	6,250,933	393,446	64,615,710	6,088,308
	100%	182,947,363	32,153,851	43,644,446	39,528,036	6,250,933	393,446	54,888,343	6,087,708
	50%	17,149,809	1,164,005	3,168,316	3,090,121	-	-	9,727,367	-
평균	금 액	- (-)	854,304 (209,776)	78,414 (9,381)	23,690 (2,649)	135,890 (24,888)	28,103 (-)	14,879 (1,791)	18,229 (-)
	제한액비	-	65.2	53.1	49.7	63.8	54.1	37.1	37.5
보전	청구액비	-	88.4	77.2	73.4	92.7	83.3	64.2	87.5

주1) () 내 중 보전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대비 구성비율, 평균보전 금액은 제3회 지방선거 금액임.

주2) 보전대상액은 보전유예액과 확정보전제한액을 포함한 금액임.

주3) 비례대표는 매선거구의 정당수 합계임.

반면 선거비용 보전율과 후보자 경쟁률은 상호 상반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에 따라 경쟁률이 치열해진 이번 선거의 평균보전율(61.5%)은 이전 선거들의 보전율(90%수준)보다 현격히 낮았지만 낮은 보전율이 선거공영제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미 언급한 이번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을 같음한다. 따라서 단순한 낮은 보전율에 근거하여 선거공영화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선거공영화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의 과제는 '지방재정의 부담 가능한 수준' 등에 따른 입법정책적 문제일 것이다.²³⁾

한편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선거범죄에 소요되거나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고, 기소되거나 우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법비용에 소요된

[표 3-53] 선거비용 보전제한

(단위 : 명, 천원, %)

구분	계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	보전대상(A)	7,172	39	597	1,799	46	14	4,343	334	
자	보전	계(B)	146	1	23	39	-	-	82	1
	제한	제한	26	-	5	9	-	-	12	-
		유예	120	1	18	30	-	-	70	1
	보전제한율(B/A)		2.0	2.6	3.9	2.2	-	-	1.9	0.3
금액	보전대상(C)	200,097,172	33,317,856	46,812,762	42,618,157	6,250,933	393,446	64,615,710	6,088,308	
액	보전	계(D)	1,389,496	576,009	338,485	171,706	-	-	302,696	600
	제한	제한	233,600	-	107,384	68,517	-	-	57,699	-
		유예	1,155,896	576,009	231,101	103,189	-	-	244,997	600
	실보전액(C-D)		198,707,676	32,741,847	46,474,277	42,446,451	6,250,933	393,446	64,313,014	6,087,708

23) 선거비용 평균보전율(보전후보자 기준) : (제1회) 90.4%, (제2회) 87.0%, (제3회) 90.0%, (제4회) 62.8%

* 제4회 지방선거의 경우 비례대표를 정당으로 산정시 61.5%임



비용의 2배의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후보자 등에게 1,389백만원의 금액을 보전 제한하였다.

(4) 선거비용 확인·조사

■ 개요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6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구·시·군위원회별로 후보자수가 수십 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정치자금회계보고 건수가 13,307건에 이르는 등 조사 대상이 많아 공천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혼탁했던 지역, 불법선거비용 지출이 의심되는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접수한 후인 2006년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법률검토 및 심의를 마친 후, 8월 10일 전국적으로 일괄 조치하였다.

조사반 편성·운영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별로 각각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위원회직원 1,650명, 선거부정감시단 2,424명, 외부지원요원 37명 등 총 4,066명, 265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다.

중앙위원회에는 선거기획사, 여론조사업체 등 대규모 선거관련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하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에 대도시지역실사반을



전임직원 38명으로 편성하여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하였으며, 선거홍보물 작성비 관련 영수증 등을 허위작성하고 회계보고에 누락한 후보자 및 선거기획업체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도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가 단독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중대한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반 외에 별도로 조사능력이 우수한 직원으로 광역조사반을 수시로 편성·운영함으로써 대규모 선거비용 위법행위에 적극 대처하였다.

조사방법

조사에 앞서 선거비용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전국 읍·면·동마다 게시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에 의존하던 조사에서 벗어나 선거기간 전·중의 자금과 관련한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음성적인 불법 자금 수입·지출 등 대규모 선거비용 위법행위를 적발하고자 노력하였다.

■ 심의

제3회 지방선거시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다만, 절차나 방법 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인 조치보다는 위법사실 통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함으로써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 조치

[표 3-54] 선거별

(총괄 / 당선자관련건)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위법사실통지
합 계	2,324 / 751	161 / 45	51 / 24	2,112 / 682
시·도지사	55 / 10	9 / -	2 / 1	44 / 9
구·시·군의장	260 / 63	21 / 1	6 / 2	233 / 60
시·도의원	475 / 125	33 / 13	11 / 3	431 / 109
구·시·군의원	1,534 / 553	98 / 31	32 / 18	1,404 / 504

[표 3-55] 정당별

(총괄 / 당선자관련건)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위법사실통지
합 계	2,324 / 751	161 / 45	51 / 24	2,112 / 682
열린우리당	472 / 123	31 / 6	9 / 1	432 / 116
한나라당	650 / 466	55 / 35	21 / 17	574 / 414
민주당	254 / 60	11 / 3	6 / 5	228 / 52
민주노동당	95 / 6	4 / -	1 / -	90 / 6
국민중심당	112 / 25	2 / -	1 / -	109 / 25
기타	9 / 1	2 / -	-	7 / 1
무소속	741 / 70	56 / 1	13 / 1	672 / 68

[표 3-56] 신분별

(총괄 / 당선자관련건)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위법사실통지
합 계	2,324 / 751	161 / 45	51 / 24	2,112 / 682
후보자	641 / 152	90 / 24	22 / 9	529 / 119
선거사무장	31 / 15	2 / 1	7 / 3	22 / 11
회계책임자	1,537 / 532	48 / 13	7 / 2	1,482 / 517
후보자가족	15 / 6	3 / 1	3 / 3	9 / 2
기타	100 / 46	18 / 6	12 / 7	70 / 32

[표 3-57] 유형별

(총괄 / 당선자관련건)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위법사실통지
합계	2,324 / 751	161 / 45	51 / 24	2,112 / 682
선거인 등에 대한 기부 등	61 / 22	14 / 6	7 / 6	40 / 10
자원봉사자 대가제공	245 / 87	37 / 14	32 / 14	176 / 59
사무원 수당 등 초과제공	320 / 132	4 / 2	1 / 1	315 / 129
유급사무직원에 실비 외 대가제공	13 / 4	-	1 / -	12 / 4
제한액 초과지출	17 / 7	11 / 5	-	6 / 2
위법선거운동	10 / 3	-	-	10 / 3
회계보고서 미제출	17 / -	13 / -	-	4 / -
비용 축소·누락	556 / 197	32 / 10	6 / 3	518 / 184
수당실비 계좌 외 입금	51 / 5	3 / -	1 / -	47 / 5
회계책임자외 지출	92 / 29	15 / 2	-	77 / 27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326 / 87	5 / -	-	321 / 87
비용관련 의무위반 등	5 / 1	3 / -	-	2 / 1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135 / 42	10 / 4	-	125 / 38
기타	476 / 135	14 / 2	3 / -	459 / 133



정당활동 규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중심당, 시민당, 희망사회당, 한국의미래를준비하는 당, 새시대참사람연합 등이 창당대회를 거쳐 창당되었으며, 이들 신생정당 및 기존 정당들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선출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에 따른 정당집회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안내와 지도를 하였으며,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안내·지원을 강화하고자 '531 지방선거 대정당 사무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예방 위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활동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대처하였다.



(1) 정강·정책 신문광고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등을 위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5개 정당이 136회의 신문광고를 하였다. 내용별로는 정강·정책의 홍보광고 133회, 후보지망자 모집광고 3회였으며, 매체별로는 중앙 및 지방일간지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등에서 배부하는 무가지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였다.

[표 3-58] 정당별 정강·정책 신문광고 게재

(단위 : 회)

구분	신문광고	구분	신문광고
합계	136	민주노동당	10
열린우리당	69	국민중심당	18
한나라당	36	한국의미래를준비하는당	3

(2) 정강·정책 방송연설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는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에서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5개 정당이 TV 16회, 라디오 14회 등 총 30회 방송연설을 하였으나, 주요 정당과는 달리 군소정당의 경우 경비 부담이 많아 그 활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59] 정당별 정강·정책 방송연설

(단위 : 회)

구 분	방송연설		구 분	방송연설	
	TV	라디오		TV	라디오
합 계	16	14	민주당	2	-
열린우리당	6	6	민주노동당	-	2
한나라당	6	6	국민중심당	2	-

(3) 정강·정책 홍보물 및 정당기관지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에 정강·정책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기관지는 통상적인 주기(2회 미만인 경우 2회 이내)에 따라 발행·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전에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3개 정당이 총 4회, 135,454부의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하였으나, 종전 선거와는 달리 주요정당에서는 기관지 등을 발행·배부하지 아니하였고 군소정당에서만 발행·배부한 것이 특징이다.

[표 3-60] 정당별 정당기관지 등 배부

(단위 : 회, 부)

구 분	횟 수	부 수
합 계	4	135,454
민주당	1	1,400
민주노동당	2	12,027
국민중심당	1	110,000



투표

투표란 선거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투표소에서 행하며 이를 위하여 투표구마다 하나의 투표소를 설치한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부재자신고인을 위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거기구와 인원, 투표용지작성 등의 분야에 많은 변경이 이루어졌다. 먼저 선거기구와 인원의 변경은, 전국 1만 3천여개의 투표구마다 있었던 투표구위원회와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투표관리관과 읍·면·동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등으로만 구성하던 투표사무원은 일반인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구성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투표관리요원의 변경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작성에 있어서는 중선거제 도입에 따른 기호결정방법 변경, 동일기호부여 정당의 후보자 미추천시 해당란 미작성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외에도 부재자투표 회송용 속봉투 폐지, 투표용지 인쇄·납품과정의 정당대리인의 입회 폐지²⁵⁾ 등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6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유권자의 혼란이 우려되어 투표방법을 단순화하여 유권자가 쉽고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번 선거의 투표는 모든 유권자가 1인6표제²⁶⁾로 참여하였으며 투표순

25) 「정당대리인제도」는 투표용지 게재순위의 앞순위부터 2개 정당이 지명하는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는 제도로 입회율은 제2회 50%, 제3회 43.3%였으며, 낮은 입회율은 정당 후보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를 폐지하고 '선관위원 입회제도'로 대체함.

26) '1인 6투표제' 투표권 행사

- 1차 투표(3매) : 기초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 ⇒ 연두색 투표함
- 2차 투표(3매) : 광역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광역의회의원 ⇒ 백색 투표함

※ 제주도는 기초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기초의원 대신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4표인.



서는 기초선거(3개 선거)를 먼저 하고 이어서 광역선거(3개 선거)를 실시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투표함 역시 기초선거와 광역선거로 각각 분리하여 2개 투표함에 3개 선거씩의 투표지를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제2회 지방선거 52.7%, 제3회 지방선거는 48.9%로 선거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선거기간에 즈음하여 실시한 투표참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관심도 46.4%, 적극적으로 투표 51.9%) 또한 밝지만은 않았다. 따라서 각종 매체와 계기를 이용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제3회 지방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투표율은 제3회 지방선거 48.9%대비 2.7% 상승된 51.6%가 되었다. 이에 대한 언론의 분석은 정치 테러에 대한 반작용,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흑색·비방이 줄어들어 예년에 비해 정치혐오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우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1) 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선거인 수와 투표 편의를 고려하여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에 설치하되, 장애인 투표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1층에 설치하였다.(표 3-84 참조) 투표소 수는 제2회 지방선거 16,161개, 제3회 지방선거 13,461개에서 제4회 지방선거 13,106개로 감소되는 경향이며, 투표소별 선거인 수는 [표 3-6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거인 수 4,000명 이상 투표소는 늘어난 반면 4,000명 이하의 줄어들었다. 이는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투표소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농촌인구의 감소로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는 투표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회 여건의 변화를 투표관리에 즉시 반영한 결과다. 전체 투표소 수가 감소되어 가는 반면 관할구역 내에 적당한 설치장소가 없어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설치한 투표소는 제2회 지방선거 1,282(7.9%), 제3회



[표 3-61] 선거인수별 투표소 수

(단위 : 개)

구 분	합계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제4회 지방선거	13,106	358	877	2,217	3,018	4,449	2,187
제3회 지방선거	13,461	493	1,169	2,562	3,489	4,585	1,163
증 감	△355	△135	△293	△345	△471	△136	1,024

[표 3-62] 설치장소별 투표소 수

(단위 : 개)

합 계	학교	읍·면·동 등 관공서사 무소	공공기관단 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			
					경로당 등 복지회관	기독교 시설	천주교 시설	불교 시설
13,106	6,558	1,794	796	769	2,155	963	62	-

지방선거 923(6.9%)개에서 제4회 지방선거는 913개소(6.2%)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표구가 세분화된 도심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장기적인 과제인 축제선거를 지향하기 위하여 '밝은 투표소 만들기' 라는 투표소환경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그 동안 투표소는 공정성·중립성만을 강조한 경직된 분위기여서 선거인이 즐겁게 투표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신성한 주권행사는 가급적 밝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이번 선거에서는 친절한 응대 및 환경정비 등 손쉬운 것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2) 투표관리요원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사무를 관리하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투표 진행상황을 참관하는 투표참관인과 투표안내도우미 등이 있다. 제3회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투표관리관과 읍·면·동위원회 위원을 신설한 것과 투표사무원을 일반인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 투표관리관과 읍·면·동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소마다 설치되어 있던 투표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투표소의 실질적인 업무인 투표소의 설비, 투표용지 수령·교부 등 투표관리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소마다 선거경험이 풍부한 국가·지방공무원 중에서 투표소별 1인씩 총 13,106명을 위촉·운영하였다.²⁷⁾

읍·면·동위원회는 기존의 투표구위원회를 대체할 기구로 신설된 기구이다. 읍·면·동위원회(평균 4개 투표구관할)는 투표관리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최하위 의결기관으로 그 위원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과 구·시·군위원회가 자체 선정한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2개 정당이어서 각 읍·면·동별 위원정원은 6명이었으나 지역적으로 특정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1,611명(7.5%)의 결원인 상태에서 선거를 관리하였다.

[표 3-63] 읍·면·동위원회 설치

(2006. 5. 31 현재)

읍·면·동수	위원회 설치수	위원						간사·서기		
		정원	현원	결원			계	간사	서기	
				계	일반위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581	3,579	21,474	19,863	1,611	17	869	725	7,158	3,579	3,579

주) 재건축으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잠실1동·2동은 미설치

■ 투표사무원

투표사무원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투표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부터 일반인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회 지방선거시 지자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교원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농협 등 각종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도 투표사

27) [표 3-64]에서와 같이 투표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6·7급이 주로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제3회 지방선거에서 투표구위원회 간사로 주로 활동했었음.



무원이 될 수 있도록 위촉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그 대상기관이 한정되고 직원 수도 많지 않아 인력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²⁸⁾ 이에 따라 투표사무원의 자격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인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운영을 위하여 투표사무원은 13,106개의 투표소에 총 147,784명을 배치하였다. 이는 제3회 지방선거의 투표구위원 및 투표사무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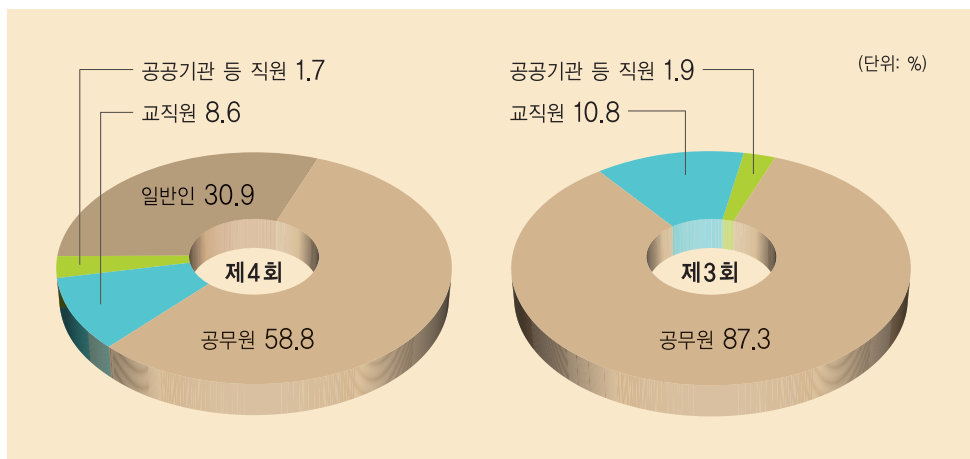
[표 3-64] 투표사무원 위촉

(단위 : 명, 개, %)

구분	투표구수	합계(평균)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계	투표구위원	구·시·군청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계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일반인
제4회 지방선거	13,106	147,784 (11.3)	13,106	-	18,334	4,772	134,678 (100.0)	79,169 (58.8)	11,631 (8.6)	2,226 (1.7)	41,652 (30.9)
제3회 지방선거	13,461	166,634 (12.4)	75,618	75,618	-	-	91,016 (100.0)	79,463 (87.3)	9,792 (10.8)	1,761 (1.9)	-
증감	△355	△18,850 (△1.1)	△62,512	△75,618	8,334	4,772	43,662	△294 (△28.5)	1,839 (△2.2)	465 (△0.2)	41,652 (순증)

주1) 투표관리관 직급별 현황 : 6급 11,212명, 7급 1,851명, 8급이하 42명, 교원 1

주2)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교원 1명은 읍·면·동공무원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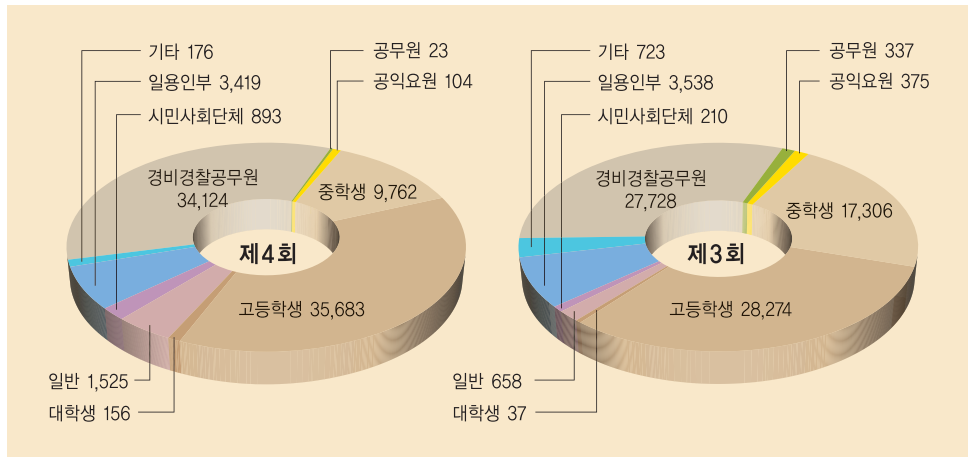


28) 제3회 지방선거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의 투표사무원 위촉률은 1.6%(1,475명)에 불과함.

[표 3-65] 투표도우미 활용

(단위 : 명)

구분	투표소도우미											
	합계	공무원	공익요원	자원봉사						일용인부	기타	경비경찰
				소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사회단체			
제4회	51,741	23	104	48,019	9,762	35,683	156	1,525	893	3,419	176	34,124
제3회	51,458	337	375	46,485	17,306	28,274	37	658	210	3,538	723	27,728
증감	283	△314	△271	1,534	△7,544	7,408	119	867	683	△119	△547	6,396



166,634명보다 18,850명이 줄어든 인원으로, 선거수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인원의 추가투입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구위원 폐지에 따른 감축인원이 더욱 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투표사무원 위촉대상 기관이 다양화되고 일반인의 투표사무원 위촉이 가능해져 그간 투표사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공무원과 교직원의 위촉 비율은 98.1%에서 67.4%로 줄어든 반면 일반인의 위촉비율은 30.9%나 차지하게 되었다.([표 3-64])

또한 투표안내도우미는 투표소별 4인씩 총 51,741명을 배치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보행편의, 인주내장형 기표용구사용법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신분별로 중·고·대학생이 전체의 88.1%를 차지하였다. 한편 투표소질서와 관련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34,124명의 경비경찰을 투표소 인근에 배치하였다.([표 3-65])



■ 투표참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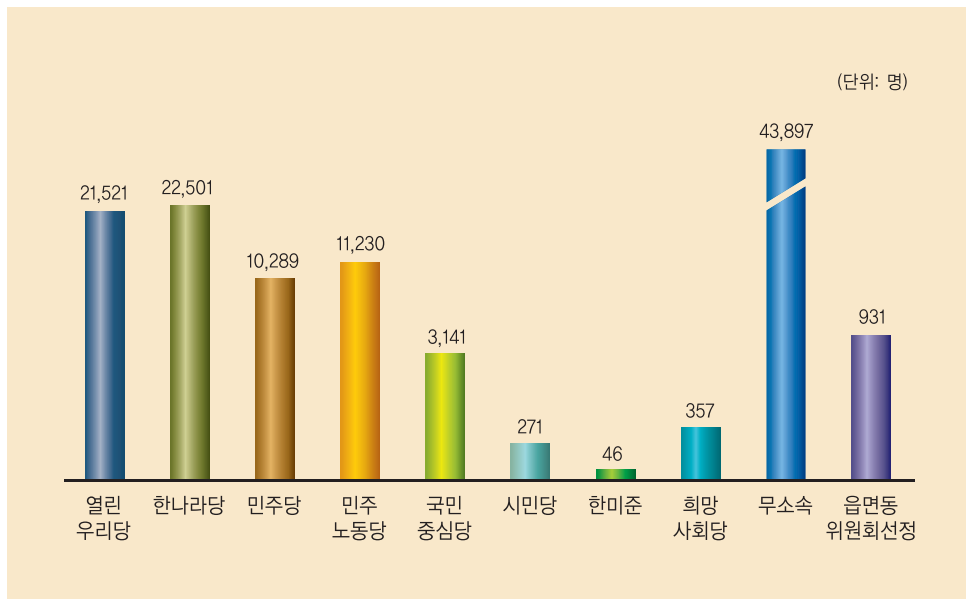
투표참관인은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투표관리사무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표 진행 전 과정을 참관하는 제도이다. 투표참관 방법은 종전 절반씩 교대참관에서 전원이 계속 참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 참관은 사전에 신고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을 때에만 승인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무소속후보자마다 투표소별 각 2인씩을 선정하여 읍·면·동위원회에 신고하며 각 투표소별로는 최대 12명, 최소 4명 기준으로 운영되었다. 그 결과 투표참관인 총수는 114,186명으로 투표소당 평균 8.7명이었으며, 이중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수 비율이 99.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3-66] 투표참관인 선정·지정

(단위: 명)

합계	정당·후보자 등 선정									읍·면·동 위원회 선정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 사회당	무소속	
114,186	21,521	22,501	10,289	11,230	3,141	271	46	357	43,897	931



(3) 투표용지 작성

투표는 선거인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수단으로 투표용지로 실시한다. 그러므로 투표업무에 관련된 투표용지의 지질·색상의 선택, 기호결정방식, 인쇄·납품과정, 보관 및 이송 등의 업무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용지는 투표지분류기의 분류기능에 적합한 특수지질을 사용하였다. 부재자투표용지는 2006년 5월 19일까지 인쇄하여 부재자신고인에게 5월 22일까지 우편 발송하였으며, 일반투표용지는 5월 24일까지 인쇄하여 선거일 전에 읍·면·동위원회가 각 사무소에 집중보관(도서지역 및 산간오지 95개소는 해당투표소에 보관)하였다가 투표관리관 책임하에 선거일 오전 5시까지 해당 투표소로 각각 송부하였다.

또한 투표용지 색상은 특정정당이 표방하는 색상을 배제하고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가 용이하도록 선거별로 색상을 달리하였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색상은 연미색으로 하였으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제3회 지방선거시의 연청색에서 청회색으로 바꾸었다. 이 밖의 시·도지사선거는 백색,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연두색,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그리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달걀색으로 제2회 지방선거부터 제4회 지방선거까지 동일한 색상을 유지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게재 순위(기호를 칭함)의 결정방법을 변경함과 아울러 전국적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 투표용지에 해당 정당의 난을 게재하지 않도록 했다.

먼저 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정하게 된다. 이들의 구체적인 기호결정 방법은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국회의석수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후보자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것으로 종전 선거와 같았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 내 2명 이상 후보자를 추



[표 3-67] 투표용지 인쇄매수

(단위 : 배)

선거인수	투표용지인쇄매수				인쇄용지 소요량
	계	부재자용	일반용	가산매수	
37,074,061 ¹⁾	223,209,200	5,414,800	212,631,800	5,162,600	17,482연

주1) [표 3-9]의 당초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매수를 산정함.

주2) 제주도는 4개 선거의, 기타 시·도는 6개 선거의 투표용지임.

[그림 3-3] 투표용지 견본



천한 경우 기호순위는 호적상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하였다.²⁹⁾

한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는 국회의석순으로(예 : 1번 열린우리당, 2번 한나라당)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고,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호란을 없애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 미추천시 투표용지에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기재하고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각각 좌우 대각선을 그어 해당란에 기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인이 대각선 부근에 기표함에 따라 무효투표가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고자 해당 기호란을 없애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변경과 함께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E-선거도우미 프로그램으

.....

29)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따른 기호결정방법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 등 : [표 3-92]의 설명 등 참조



로 투표용지 원고작성,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단위의 표준화, 인쇄완료 후 납품·검수가 용이하도록 100매 단위 묶음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시·군위원회에서 작성하던 투표용지 중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각 시·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였다.

(4)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안내문에는 세대별로 선거인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약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1인6투표제 안내, 선거별 투표용지 색상과 투표절차도 등이 게재되어 있다.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 후인 5월 26일까지 투표안내문을 전국의 모든 세대인 17,853,692세대에 일반우편(부재자용 1,325,692매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모든 세대, 즉 매세대에 발송한 우편물에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공보(총 473,292천매)가 함께 발송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참정권이 보장된 외국인선거권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영문 또는 중국어가 병기된 투표안내문을 별도 제작·발송하였다.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에 투표소 약도를 게재하여 발송함과 아울러 우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와 정치포탈사이트에서 전국 모든 투표소의 약도(지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검색방법이 통·반을 알아야만 투표소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주소지 통·반을 알지 못하는 유권자의 불만이 다소 제기되기도 하였다.

(5) 부재자 투표관리

부재자투표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87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인 선거권자로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부재자신고서



[표 3-68] 일반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 비교

구 분	일반투표소	부재자투표소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 투표소
대 상	모든 유권자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	병원, 요양원, 수용소, 구치소
설치주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	당해 기관·시설의 장
운영기간	선거일 당일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시 정한 기간
투표시간	오전6시부터 오후6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시 정한 시간

접수기간인 2006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읍·면의 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인의 ‘이동성 정도’에 따라 부재자투표소 투표와 거동이 어려운 자를 위한 거소투표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중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에 관하여는 별도기준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일반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비교하면 [표 3-68]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 신고요건을 완화함은 물론 특수지역의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확대하였다. 신고요건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자’로 완화한 결과 부재자 신고인 중 ‘일반부재자수’는 제3회 지방선거 31,294명보다 60,850명(194.4%) 증가한 92,144명이 신고하였다.([표 3-10] 참조)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구·시·군위원회는 2006년 5월 22일까지 부재자투표대상자들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부재자투표안내문, 선거공보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부재자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를 한 894,243명³⁰⁾ 중 사망·허위신고 등 952명을

.....

30) 부재자신고자 총수 894,243명 내역은 일반부재자투표대상자 776,545명(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자 15,057명 포함)과 거소투표대상자 117,698명임.

[표 3-69]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단위: 명, 개)

구 분	신고인수 (A)	미 발송(B)				발 송 (A-B)
		소계	사망	허위신고등	선거권없음	
제4회 지방선거	894,243	952	15	930	7	893,291
제3회 지방선거	817,780	215	29	152	34	817,565
증 감	76,463	737	△14	778	△27	75,726

제외한 893,291명에게 발송하였다.

■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부재자투표소는 '관리주체'에 따라 구·시·군위원회 직접 관리, 투표관리관 지정 운영, 기관시설의 장 허가운영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³¹⁾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의무적으로 1개씩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관할구역 안의 부재자투표 예상자의 수 및 지리·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시설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장이 허가받아 직접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재자투표소의 관리주체별 설치수는 구·시·군위원회가 258개소, 투표관리관이 151개소, 기관·시설의 장이 100개소 등 총 509개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북한지역장기체류자 등 특수지역(4개소)³²⁾과 대학교 내(9개소)³³⁾ 부재자투표소설치 등으로 제3회 지방선거의 475개보다 34개소가 증가하였다.

특히 특수지역부재자투표 중 북한장기체류자의 참정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번

31)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가 적은 섬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순회투표제'를 폐지하고 이들에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32) 특수지역(4개소) : 개성공단·금강산출입사무소, 축구월드컵 출전 국가대표팀, 독도

33) 대학교내에 부재자투표소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대구대)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개 대학을, 이번 선거에서는 9개소(세종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교대, 과학기술대, 건국대(충주), 원광대, 영남대, 대구대)를 설치·운영함.



[표 3-70] 부재자투표소 설치

(단위 : 개)

구 분	합 계	위원회 설치					기관·시설 설치			
		소 계	위원회 사무실	구·시·군 청사	공공기관, 단체사무소	기 타 (대학)	소 계	병원	구치소	요양원 요양소
제4회	509	409	39	176	159	35	100	16	49	35
제3회	475	391	40	122	194	35	84	15	48	21
증 감	34	18	△1	54	△35	-	16	1	1	14

선거에서 결실을 맺었다. 종전 선거에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등 북한지역 장기체류자의 거소투표 실시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북한측의 반대로 이들에 대한 참정권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개발로 북한지역에 장기체류하는 자가 1,000여명에 이르렀고, 소중한 국민주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대북 주무기관인 통일부와 협조하여 남북출입사무소(CIQ) 2개소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 장기체류자 1,000여명(개성공단, 금강산 각각 500여명) 중 부재자신고를 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투표를 실시하였다.

■ 부재자투표 결과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자 893,291명 중 808,214명이 투표하여 90.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자수는 705,350명이었고, 거소투표자수는 102,864명으로 부재자투표율은 제3회 지방선거의 91.8%보다 1.3% 낮아졌다. 한편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희망한 18,685명 중 7,877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이 42.2%(추정)로 나타나 일반 부재자 투표소보다 현격히 낮은 투표 성향을 보였다.

[표 3-71] 부재자투표

(단위 : 개)

부재자 투표용지발송	합 계 (A+B)	부재자투표소 투표				거소투표(B)
		소 계(A)	구·시·군 위원회 설치	투표관리관 설치	기관시설 설치	
893,291 ¹⁾	808,214	705,350	371,943	318,332	15,075	102,864

주1) [표 3-10]의 부재자신고명부등록자 894,243명 중 952명 제외(사망 15명, 허위신고 930명, 선거권 없는자 7명)

(6) 투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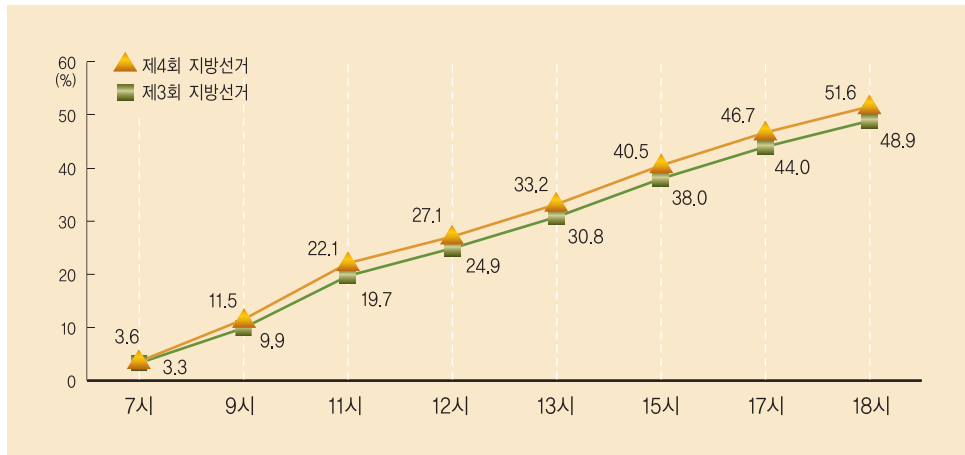
투표는 5월 3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3,1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었으며, 투표 진행 상황은 2시간 단위로 각 언론매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번 선거의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시간대별 투표율은 제3회보다 2~3% 정도 높게 형성되었다.

선거일 오후 6시에 투표 종료 결과, 선거인수 370,064,282명 중 19,118,177명이

[표 3-72] 시간대별 투표율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7시	9시	11시	12시	13시	15시	17시	18시
제4회 지방선거	3.6	11.5	22.1	27.1	33.2	40.5	46.7	51.6
제3회 지방선거	3.3	9.9	19.7	24.9	30.8	38.0	44.0	48.9



[표 3-73] 선거별 투표

(단위 : 명, %)

구 분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인수(A)	37,064,282	36,652,420	36,207,648	37,064,282	411,862	36,581,991	35,111,347
투표자수(B)	19,118,177	18,836,531	18,678,607	19,117,594	276,988	18,810,765	17,855,651
투표율(B/A)	51.6	51.4	51.6	51.6	67.3	51.4	50.9



참여하여 51.6%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표 3-72)

한편 선거인수와 투표율은 선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초자치단체선거 미실시와 여타지역에서 무투표지방의원선거 지역 등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람으로 확인된 숫자가 가장 정확한 투표율이나 일반적인 투표율은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도지사선거의 투표율을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로 발표하고 있다.(표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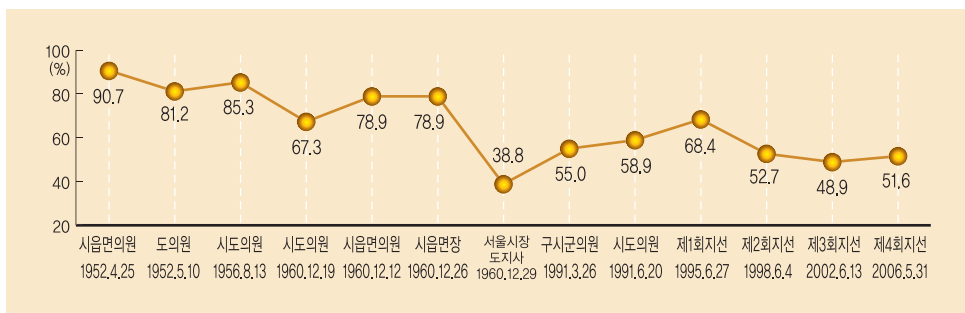
■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비교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헌정 이래 처음 실시한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원선거에서 90.7%로 가장 높았던 반면, 1960년 12월 29일에 실시한 서울시장·도지사선거에서는 38.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이들 기록이 지방자치의 단절을 가져왔던 1960년대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90.7%라는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5.16의 단초를 제공했던 정치적 불안기에서 이루어진 투표는 국민의 관심 밖의 일이 되어 38.8%라는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다시 움트기 시작한 1991년 구·시·군의원과 시·도의원선거

[표 3-74] 역대 지방선거별 투표율 추이

구 분	시읍면의원 (1952.4.25)	도의원 (1952.5.10)	시도의원 (1956.8.13)	시도의원 (1960.12.19)	시읍면의원 (1960.12.12)	시읍면장 (1960.12.26)	서울시장· 도지사 (1960.12.29)	구시군의원 (1991.3.26)	시도의원 (1991.6.20)	제1회지선 (1995.6.27)	제2회지선 (1998.6.4)	제3회지선 (2002.6.13)	제4회지선 (2006.5.31)
투표율(%)	90.7	81.2	85.3	67.3	78.9	78.9	38.8	55.0	58.9	68.4	52.7	48.9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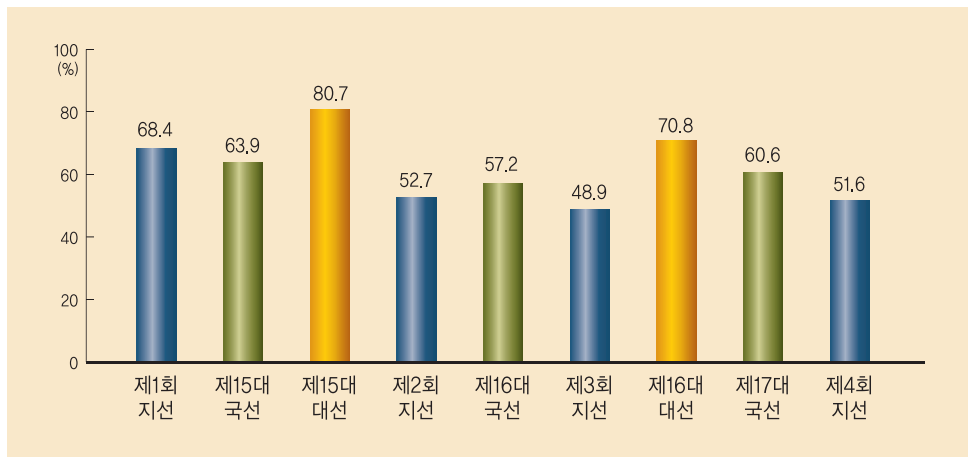
에서의 투표율은 50% 중반을, 관심이 고조된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68.4%를, 제2회와 제3회에서는 52.7%에서 48.9%로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나타내었으나, 이번 제4회의 투표율은 다소 반등되어 제3회 지방선거보다 2.7% 높은 51.6%로 나타났다.

■ 최근 실시된 다른 선거와의 투표율 비교

최근 실시한 각종 선거의 투표율은 지방선거가 국가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보다 낮으며, 각 선거별로는 최근에 실시된 선거일수록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추세이나 이번 선거에서는 제3회 지방선거보다 다소 반등하였다.

[표 3-75] 최근 실시된 선거별 투표율 추이

구 분	제1회 지선	제15대 국선	제15대 대선	제2회 지선	제16대 국선	제3회 지선	제16대 대선	제17대 국선	제4회 지선
투표율(%)	68.4	63.9	80.7	52.7	57.2	48.9	70.8	60.6	51.6



■ 제4회 지방선거의 투표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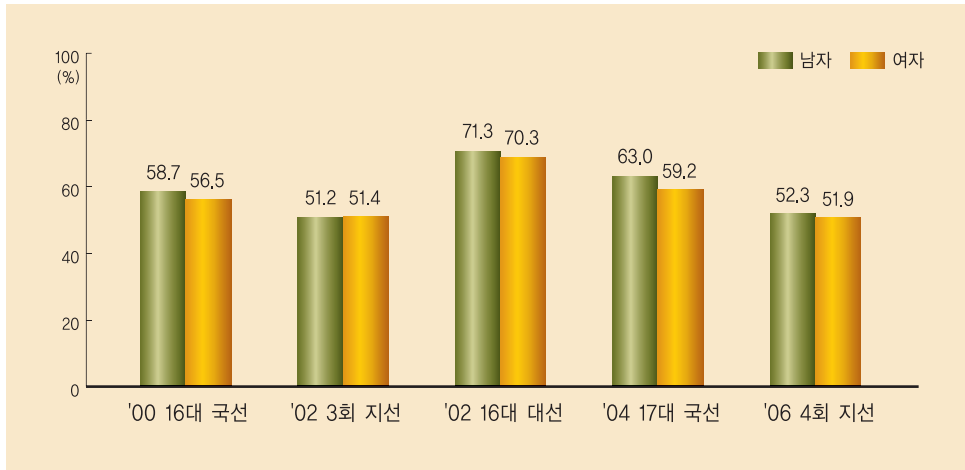
성별 투표율

2000년 이후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는 남자의 투표율이 다소 높은 특징



[그림 3-4] 최근 선거의 성별 투표율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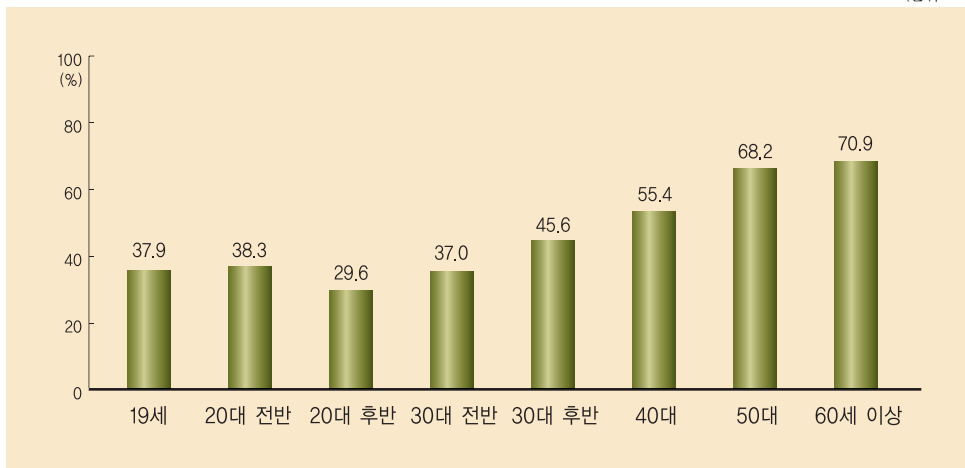
을 보였으나, 이번 선거에서 남자의 투표율은 52.3%, 여자의 투표율은 51.9%로 성별 투표율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연령대별 투표율

연령대별 투표율은 60세 이상 연령층이 70.9%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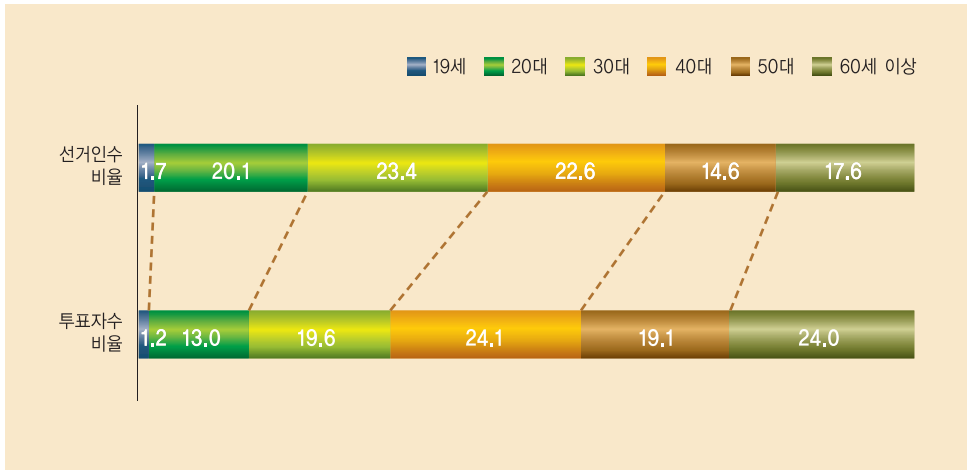
[그림 3-5] 연령대별 투표율

(단위 : %)



[그림 3-6] 연령대별 선거인수/투표자수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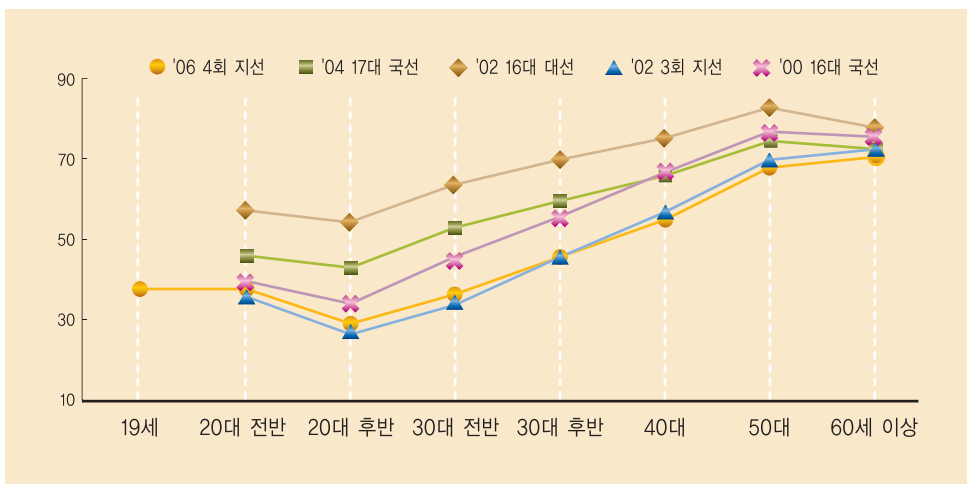
(단위 : %)



[표 3-76]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단위 : %)

구 분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2006 4회 지선	37.9	38.3	29.6	37.0	45.6	55.5	68.2	70.9
2004 17대 국선	-	46.0	43.3	53.2	59.8	66.0	74.8	71.5
2002 16대 대선	-	57.9	55.2	64.3	70.8	76.3	83.7	78.7
2002 3회 지선	-	36.3	27.0	34.5	44.8	56.2	70.0	72.5
2000 16대 국선	-	39.9	34.2	45.1	56.5	66.8	77.6	75.2





29.6%로 가장 낮았으며 20대 후반부터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20대의 경우, 20대 후반이 20대 전반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는 군복무자가 20대 전반에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의 높은 부재자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권이 부여된 19세의 투표율은 20대 전반 및 30대 전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20대 후반보다 9%p 정도 높은 37.9%의 투표율을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자수 비율을 살펴보면 40대가 24.1%, 60세 이상이 24.0%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19.1%, 30대 18.6%, 20대 13.0% 순으로 나타나며 선거인수 비율은 30대가 23.4%로 가장 많으나, 투표자수 비율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시 투표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후반으로 2.6%가 증가한 반면 50대는 1.8%가 감소하였고, 40대 미만 저연령층 투표율이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 고연령층 투표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20대, 30대 등 저연령층의 경우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선거와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간 투표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선거별 투표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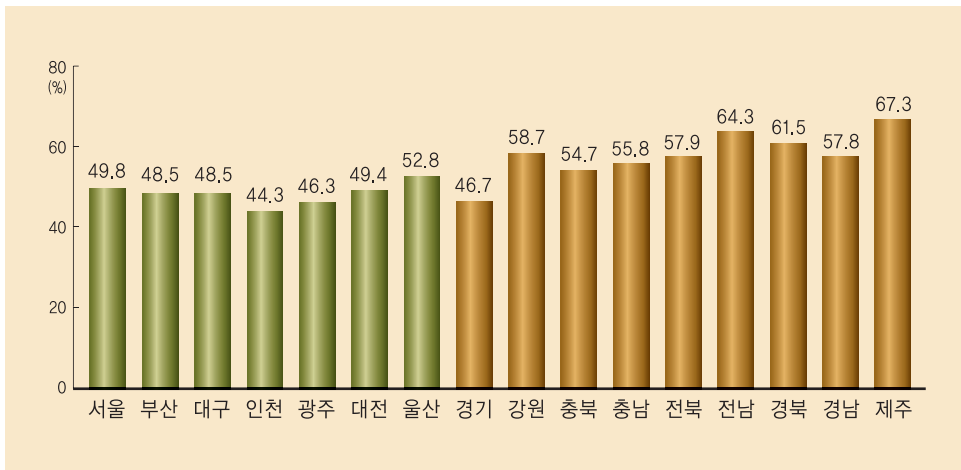
지역별 투표율

1) 시·도별 투표율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7개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가 48.8%, 9개 도지역이 54.1%로 도지역의 투표율이 5.3%p 높았다. 7개 도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52.8%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가 44.3%로 가장 낮았으며, 9개 도지역 중에서는 제주도가 67.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46.7%로 가장 낮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역이 대도시지역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3회 지방선거와 비교시 대도시지역은 모두 투표율이 상승한 반면, 도지역은 일부지

[그림 3-기] 시·도별 투표율



[표 3-77] 최근 선거의 시도별 투표율 변화

(단위 :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6 4회 지선	49.8	48.5	48.5	44.3	46.3	49.4	52.8	46.7	58.7	54.7	55.8	57.9	64.3	61.5	57.8	67.3
2004 17대 국선	62.2	61.9	59.3	57.4	60.2	58.9	62.0	59.7	59.7	58.2	56.0	61.2	63.4	61.5	62.3	61.1
2002 16대 대선	71.4	71.2	71.1	67.8	78.1	67.6	70.0	69.6	68.4	68.0	66.0	74.6	76.4	71.6	72.4	68.6
2002 3회 지선	45.8	41.8	41.4	39.3	42.3	42.3	52.3	44.6	59.4	55.8	56.2	55.0	65.6	60.4	56.5	68.9
2000 16대 국선	54.3	55.4	53.5	53.4	54.0	53.3	59.1	54.9	62.9	60.8	60.1	60.6	66.8	64.6	60.6	67.2

역에서 투표율이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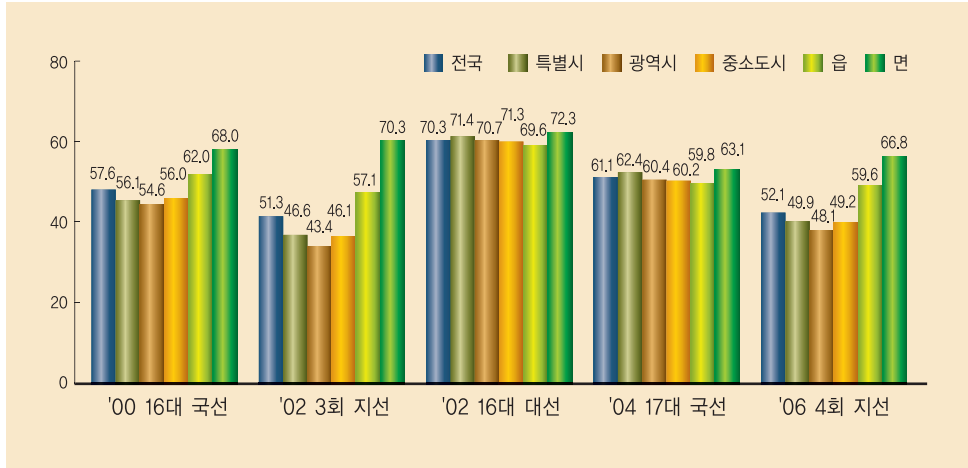
2) 행정구역 크기별 투표율

행정구역 크기별로 투표율을 살펴보면 면지역이 66.8%로 가장 높았고, 읍지역 59.6%, 서울 49.9%, 중소도시 49.2%, 광역시 4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최근 선거의 행정구역 크기별 투표율

(단위 : %)



2000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면지역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면지역은 3.5%p 낮아진 반면, 서울(3.3%p), 광역시(4.7%p), 중소도시(3.1%p), 읍지역(2.5%p)은 다소 높아졌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행정구역 크기별 투표율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높은 면지역과 투표율이 낮은 광역시의 투표율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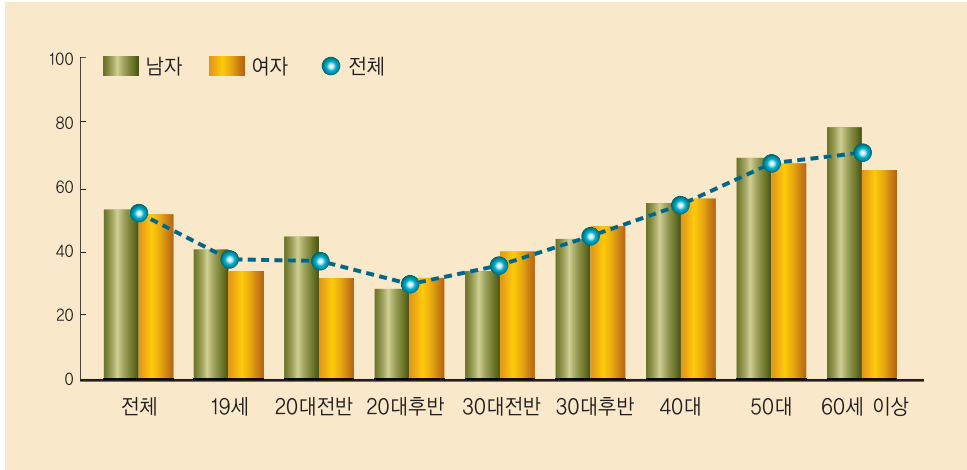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성별·연령대별 투표율의 경우 남자 60세 이상이 78.7%로 가장 높은 반면, 남자 20대 후반이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투표율 중 남자의 경우 20대 후반이 20%대의 매우 낮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율도 점차 높아진 반면 여자의 경우 20대 전반이 31.3%로 가장 낮고 50대까지 점차 높아지다가 60세 이상에서 낮아졌다.

연령별 투표율은 19세와 20대 전반, 50대 이상에서는 남자 투표율이, 20대 후반과 30대 전·후반, 40대의 경우 여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 20대 전반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부재자 투표의 영향으로 20대 전반 여자, 20대 후

[그림 3-9]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표 3-78] 최근 선거의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단위 : %)

구분	남자								여자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2006 4회 지선	41.3	44.8	27.4	33.7	43.0	54.8	68.9	78.7	34.2	31.3	31.9	40.4	48.3	56.1	67.5	65.4
2004 17대 국선	-	52.6	41.1	51.5	60.0	67.5	77.2	80.7	-	39.0	45.6	54.9	59.7	64.4	72.3	65.0
2002 16대 대선	-	63.1	51.9	61.5	69.6	76.5	84.7	85.6	-	52.3	58.6	67.1	72.0	76.2	82.7	73.9
2002 3회 지선	-	45.4	25.3	31.1	41.7	55.1	70.7	79.3	-	26.7	28.7	38.1	48.2	57.3	69.4	67.7
2000 16대 국선	-	49.1	32.6	42.9	55.3	67.3	79.6	83.1	-	30.6	35.8	47.4	57.7	66.3	75.6	69.8

반 남자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시, 투표율 증가율은 여성 20대 전반(+4.6%p)에서, 감소율은 여성 60세 이상(-2.3%p)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투표율 증가가 두드러져, 젊은 여성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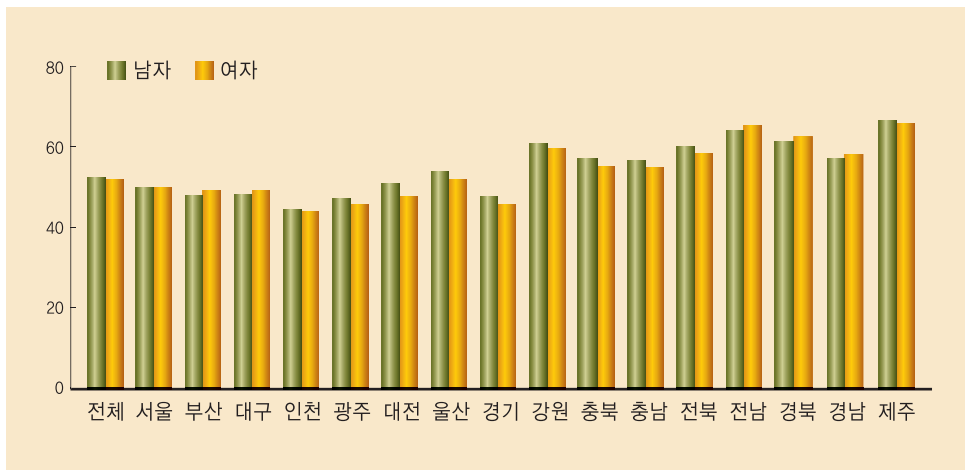
석된다.

성별·시도별 투표율

이번 선거에서 남자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52.3%)보다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제주(67.5%), 전남(64.4%), 경북(61.8%)이고, 여자 역시 투표율이 전국 평균(51.9%)보다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제주(66.2%), 전남(65.3%), 경북(62.9%)이다.

반면 남자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 투표율(52.3%)보다 낮은 하위 3개 지역은 인천(44.6%), 광주(47.1%), 경기(47.5%)이고, 여자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 투표율(51.9%)보

[그림 3-10] 성별 시도별 투표율



[표 3-79] 성별·시도별 투표율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자 (A)	52.3	49.8	48.0	48.5	44.6	47.1	51.1	54.3	47.5	61.1	56.9	56.7	59.9	64.4	61.8	57.6	67.5
여자 (B)	51.9	50.1	49.6	49.2	44.1	45.8	48.1	51.8	46.1	59.5	54.9	55.2	58.6	65.3	62.9	58.7	66.2
차이 (A-B)	0.4	△0.3	△1.6	△0.7	0.5	1.3	3.0	2.5	1.4	1.6	2.0	1.5	1.3	△0.9	△1.1	△1.1	1.3

[표 3-80] 성별 투표율 상·하위 3개 지역

(단위 : %)

구 분	투표율 상위 3개 지역		투표율 하위 3개 지역	
	남자(52.3)	여자(51.9)	남자(52.3)	여자(51.9)
1위	제주 67.5	제주 66.2	인천 44.6	인천 44.1
2위	전남 64.4	전남 65.3	광주 47.1	광주 45.8
3위	경북 61.8	경북 62.9	경기 47.5	경기 46.1

다 낮은 하위 3개 지역 역시 인천(44.1%), 광주(45.8%), 경기(46.1%)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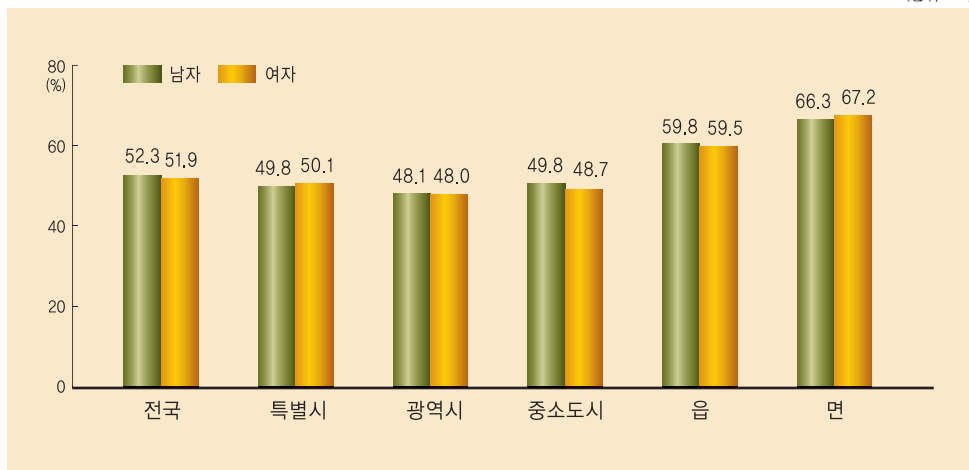
남녀 투표율의 격차가 큰 지역은 대전(+3.0%), 울산(+2.5%), 충북(+2.0%) 등으로 나타난 반면 남녀 투표율의 격차가 적은 지역은 서울(-0.3%), 인천(+0.5%), 대구(-0.7%) 등 주로 대도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행정구역 크기별(도농별) 투표율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행정구역은 남·여 모두 읍지역 및 면 지역이다.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면지역 남·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남·여 투표율이 상승하였으며 면지역의 경우 남자는 3.0%p, 여자는 4.0%p 하락하였다.

[그림 3-11] 성별·행정구역 크기별 투표율

(단위 : %)





[표 3-81] 최근 선거의 성별·행정구역 크기별 투표율 변화

(단위 : %)

구 분	성별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소계	중소도시	읍	면
제4회 지방선거 (2006. 5. 31)	남자	52.3	49.8	48.1	55.1	49.8	59.8	66.3
	여자	51.9	50.1	48.0	54.5	48.7	59.5	67.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 4. 15)	남자	63.0	64.2	62.1	63.0	62.6	61.9	64.7
	여자	59.2	60.7	58.8	58.8	58.0	57.7	61.5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 12. 19)	남자	71.3	71.8	70.9	71.4	71.1	70.3	72.8
	여자	70.3	71.0	70.6	69.9	69.5	68.8	71.8
제3회 전국 지방선거 (2002. 6. 13)	남자	51.2	47.1	43.4	55.6	46.2	56.6	69.3
	여자	51.4	46.2	43.4	56.2	45.9	57.6	71.2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 4. 13)	남자	58.7	57.0	55.4	60.5	57.3	62.8	68.2
	여자	56.5	53.3	53.7	58.6	54.7	61.1	67.9

연령대별·행정구역 크기별(도농별)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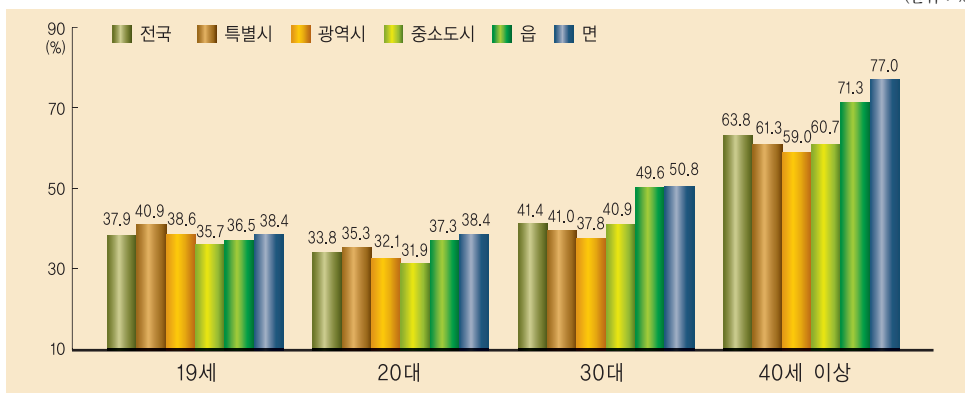
이번 선거에서 40세 이상의 투표율은 면지역이 77.0%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지역이 5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면지역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19세 및 20대는 중소도시, 30대 및 40세 이상은 광역시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인다.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20대, 30대의 경우 면지역을 제외하고 투표율이 모

[그림 3-12] 연령대별·행정구역 크기별 투표율

(단위 : %)



[표 3-82]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행정구역 크기별 투표율 변화

(단위 : %)

구 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소계	중소도시	읍	면
제4회 지방선거 (2006. 5. 31)	19세	37.9	40.9	38.6	36.3	35.7	36.5	38.4
	20대	33.8	35.3	32.1	33.9	31.9	37.3	38.4
	30대	41.4	40.0	37.8	43.7	40.9	49.6	50.8
	40세 이상	63.8	61.3	59.0	66.8	60.7	71.3	77.0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 4. 15)	20대	44.7	50.6	45.4	41.4	43.4	39.4	36.2
	30대	56.5	57.8	55.5	56.4	57.6	55.2	51.3
	40세 이상	69.9	70.3	69.3	70.1	69.1	69.1	72.5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 12. 19)	20대	56.5	61.5	57.3	53.6	55.9	51.0	48.5
	30대	67.4	66.9	67.2	67.6	68.5	66.2	65.0
	40세 이상	78.9	78.8	78.9	79.0	78.1	78.5	81.1
제3회 지방선거 (2002. 6. 13)	20대	31.2	32.2	27.1	32.8	28.8	32.7	40.6
	30대	39.3	35.8	32.5	43.1	37.5	46.3	55.8
	40세 이상	65.3	59.2	55.8	70.6	59.5	72.5	82.1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 4. 13)	20대	36.8	38.6	36.3	36.5	35.4	38.5	38.5
	30대	50.6	48.2	47.8	52.6	50.5	56.7	57.9
	40세 이상	72.4	68.8	68.6	74.9	71.7	75.8	80.8

두 상승하였다. 40세 이상은 특별시(+2.1%p), 광역시(+3.2%p), 중소도시(+1.2%p) 등 도시지역 투표율은 높아진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각각 1.2%p, 5.1%p 하락하였다.

성별·연령대별· 시도별 투표율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도가 모든 성별·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제주도의 40세 이상의 투표율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의 20대가 28.9%로 가장 낮았으며, 성별로는 제주도 40세 이상 남자가 77.8%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 및 충청남도 19세 여자가 2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세 투표율은 제주도가 52.0%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31.0%로 가장 낮았으



[표 3-83] 성별·연령대별·시도별 투표율

(단위 : %)

구분	19세			20대			30대			40세 이상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전국	37.9	41.3	34.2	33.8	35.8	31.6	41.4	38.5	44.5	63.8	65.4	62.4
서울	40.9	41.5	40.2	35.3	36.2	34.5	40.0	37.5	42.6	61.3	62.5	60.1
부산	39.7	43.4	35.6	32.7	34.8	30.4	35.8	31.4	40.3	59.8	59.8	59.8
대구	41.2	45.5	36.1	33.5	36.2	30.7	37.0	32.5	41.2	60.1	60.8	59.4
인천	34.3	35.5	33.0	28.9	30.3	27.3	34.6	32.1	37.2	55.7	57.3	54.1
광주	36.3	39.0	33.6	32.3	35.6	28.6	39.4	35.8	43.1	56.0	58.6	53.8
대전	42.0	45.6	38.1	32.4	35.4	29.5	40.9	38.9	42.9	61.0	63.8	58.4
울산	37.7	43.0	31.4	34.6	37.1	31.8	47.5	44.4	50.2	63.3	66.1	60.6
경기	35.7	38.0	33.2	30.5	32.1	28.9	38.1	35.6	40.7	58.0	60.3	55.8
강원	31.0	36.4	25.7	35.6	39.3	31.3	50.6	48.0	53.4	71.7	74.0	69.6
충북	37.7	42.9	32.1	34.1	37.9	30.0	44.3	41.0	47.6	68.0	70.7	65.6
충남	32.0	37.2	25.7	31.1	33.4	28.4	43.9	40.3	47.9	68.6	72.0	65.6
전북	37.0	40.5	33.3	36.8	40.5	32.5	48.3	44.5	52.3	70.0	72.6	67.8
전남	38.2	43.8	31.7	39.1	42.2	35.3	53.2	48.9	58.2	75.7	77.1	74.4
경북	36.2	43.8	27.5	35.1	37.0	33.0	49.5	45.7	53.8	75.5	77.0	74.1
경남	38.9	46.1	31.0	37.3	39.6	34.7	47.1	43.8	50.6	69.6	70.3	69.0
제주	52.0	56.0	47.7	50.1	53.8	46.2	59.3	58.6	60.0	76.7	77.8	75.7

며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제주도(남자 56.0%, 여자 47.7%)가 가장 높았고, 남자는 인천광역시(35.5%), 여자는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25.7%로 가장 낮았다.

20대 투표율 역시 제주도가 50.1%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가 28.9%로 가장 낮았으며 남녀 성별로도 제주도(남자 53.8%, 여자 46.2%)가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남자 30.3%, 여자 27.3%)가 가장 낮았다.

30대 투표율 역시 제주도가 5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가 34.6%로 가장 낮았으며 남녀 모두 제주도(남자 58.6%, 여자 60.0%)가 가장 높았고, 남자는 부산광역시(31.4%), 여자는 인천광역시(37.2%)가 가장 낮았다.

40세 이상 투표율의 경우 제주도가 76.7%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가 55.7%

로 가장 낮았으며 남녀 모두 제주도(남자 77.8%, 여자 75.7%)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남자 57.3%, 여자 54.1%)가 가장 낮았다.

(7)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

장애선거인의 투표소 출입이 용이하도록 투표소는 주로 1층에 설치(96.0%)하였으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편의시설 추가 설비, 도우미 배치 등을 통하여 보완했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의 기표편의를 위하여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고 폭·넓이 조절이 가능한 장애인 기표대 2,700대를,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190,000개를 확대·보급하였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투표 편의는 장애인이 투표소에 찾아왔을 때에만 국한하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소까지 운행하는 교통편의도 제공하였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였는바, 차량은 위원회당 5대 정도(1,259대), 보조인은 위원회당 14명(3,393명) 정도를 확보하여 장애선거인의 투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3-84] 최근 선거시 장애선거인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구 분	단위	제3회 지방선거 (2002. 6. 13)	제16대 대선 (2002. 12. 19)	제17대 국선 (2004. 4. 15)	제4회 지방선거 (2006. 5. 31)
1층 투표소	%	93.0	93.0	96.5	96.0
점자투표안내문 작성·발송	부	82,340	86,500	53,650	59,237
이동 편의시설(5종)	개소	5,656	6,908	9,769	9,459
투표안내요원	명/투표소	3.8	3.9	3.5	4.0
투표보조용구	조	30,300	30,600	30,000(2종)	189,900(12종)
장애인경용 기표대	개	-	-	14,100	27,000
투표활동	보조인	명	-	1,917	3,393
지원제도	차 량	대	-	950	1,259



개 표

개표는 투표를 통하여 표시되는 선거인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무효표를 가리고 이를 집계하는 과정으로, 선거사무 중에서 핵심적이며 중국적인 사무이다. 개표사무는 개표사무원 위촉, 개표소 설치, 투표함 접수, 투표함 개함, 투표지의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분류·집계, 개표결과의 공표, 개표록 작성, 투표지 포장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구·시·군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이번선거의 개표관리환경 변화는 6개선거 실시에 따른 물량 증가, 읍·면·동별 개표, 6개 선거의 2개 투표함 사용, 개표사무원 위촉 범위 확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선거사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6개 선거의 개표물량 증가분은 투표지분류기 성능향상³⁴⁾이 요구됨과 아울러 성능이 향상된 투표지분류기 운영의 숙련도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투표구별 2개 투표함 개함³⁵⁾, 읍·면·동별 개표³⁶⁾ 등에 따른 개표관리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개표와 동일한 상황을 설정한 여러 번의 시연회를 통하여 최적의 관리 모델을 찾아나갔으며, 이를 전체위원회가 공유하여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잘된 점은 전파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실제 개표에서도 간결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선거수 증가 등 개표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 지방선거보다 전체 소요시간이 14분 정도 단축되었다.

.....

34) 투표지분류기(총 1,377대)의 성능은 분당 220매 처리하던 것을 분당 350매 처리하도록 개선함.

35) 투표구별 2개 투표함(각 투표함에 3개의 투표용지가 투입되어 있음)에 따라 개표시 각 개함상에서는 3종류의 투표용지를 선거별로 분리한 후 선거별 투표용지 운반용기에 담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보내지면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유·무효 및 후보자별분류·집계 등 일련의 개표과정이 진행됨.

36) 읍·면·동개표는 제3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성향 노출방지 등을 이유로 자치구·시·군위원만 실시하였으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6개 선거 모두로 확대함.

(1) 개표소 설치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인수·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표소를 확보하였으며, 선거일 전일인 5월 30일까지 개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였다.

이번 선거는 250개 구·시·군위원회 중 241개 구·시·군위원회는 1개의 개표소를, 9개 구·시·군위원회는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여 총 259개소의 개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제3회 지방선거시 209개 구·시·군위원회가 1개 개표소를, 34개 구·시·군위원회가 2개 개표소를 설치하며 총 277개소의 개표소를 설치·운영한 것과 비교하면 2개 개표소를 설치·운영한 구·시·군위원회수는 25개가 줄어들었다.

[표 3-85] 개표소 설치

(단위 : 개)

구 분	합 계	구·시·군청 회의실	체육관·학교강당	구·시·군민회관	기 타
제4회 지방선거	259(250)	13	221	16	9
제3회 지방선거	277(243)	12	242	18	5
증 감	△18(7)	1	△21	△2	4

주) ()는 위원회수임.

(2) 개표관리요원

개표관리요원은 구·시·군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되는 개표관리위원, 개표사무를 담당하는 개표사무원, 개표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입회하는 개표참관인, 경비경찰 공무원, 관계기관 협조요원 등이 있다. 이번 선거는 총 93,382명의 개표관리요원이 투입되었으며 구·시·군위원회별 평균 370여명이 개표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아침까지 개표업무에 임하였다.



■ 개표관리위원

개표관리위원은 구·시·군위원으로 구성되나 개표소를 2개 설치하는 경우 제2개표소를 운영하기 위한 부위원장과 보조위원을 별도로 구성한다. 제2개표소의 부위원장은 법관으로 위촉하며 보조위원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3인 이내와 법관을 포함하여 자체 선정한 6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제1·2개표소 각각의 위원회는 개표과정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개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번 선거에서 개표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것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2개 정당(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임에 기인한 것이다.

[표 3-86] 개표관리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위원회선정	정당추천		
			소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합 계	2,074	1,501	573	283	290
구·시·군위원	1,983	1,493	490	242	248
부위원장(제2개표소)	8(9)	8(9)	-	-	-
보조위원	83	-	83	41	42

주) 응진군의 경우 법관이 아닌 당해 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개표소를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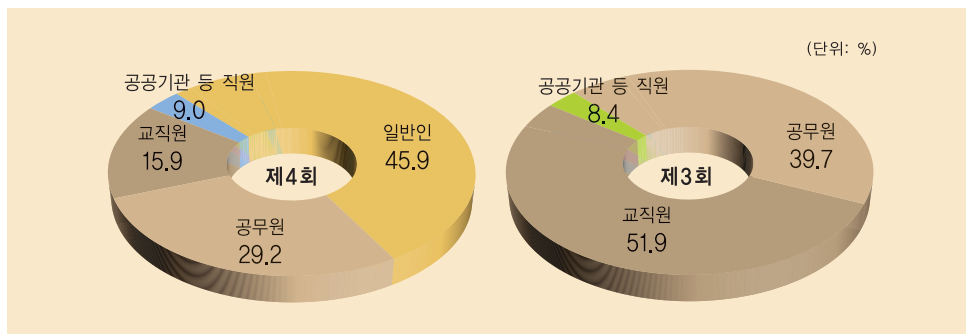
■ 개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수는 총 58,786명으로 지난 제3회 지방선거의 61,596명보다 2,810명(4.6%)이 줄어들었다.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실시로 선거수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남에 따라 개표사무원수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나 투표지분류기 성능 향상(220 → 350매/분) 등으로 인원을 절감했다. 개표사무원의 구성은 개표사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개표사무원 위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개표사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공무원과 교직원의 위촉비율은 91.6%에서 45.1%로 줄어들었다.(표 3-87)

[표 3-87] 개표사무원 위촉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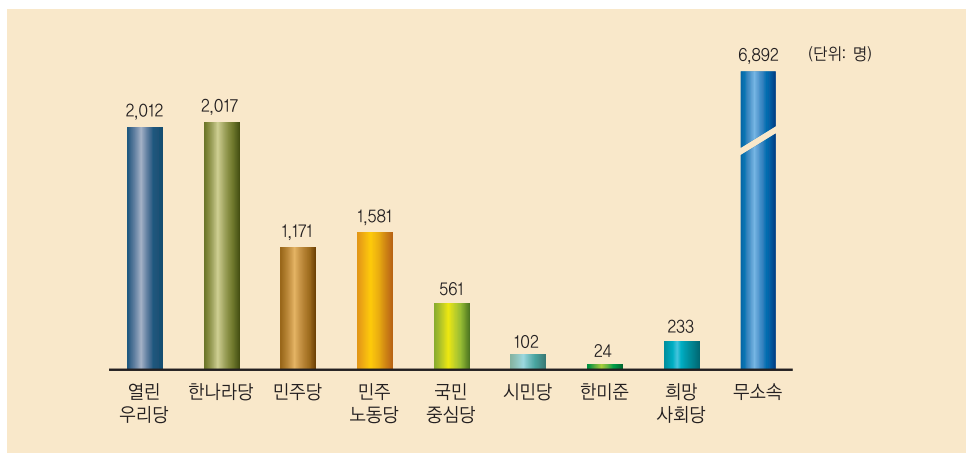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등 직원					일반인
				계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농수협 등	지방공사·공단	
제4회 지방선거	58,786 (100.0)	17,189 (29.2)	9,308 (15.9)	5,291 (9.0)	1,116 (1.9)	732 (1.2)	2,757 (4.7)	686 (1.2)	26,998 (45.9)
제3회 지방선거	61,596 (100.0)	24,434 (39.7)	32,003 (51.9)	5,151 (8.4)	1,678 (2.7)	996 (1.6)	2,223 (3.6)	262 (0.4)	- (-)
증 감	△2,810	△7,245 (△10.6)	△22,695 (△36.0)	132 (0.6)	△562 (△0.8)	△264 (△0.4)	534 (1.1)	424 (0.8)	26,998 (순증)



[표 3-88]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단위 : 명)

합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 사회당	무소속
14,593	2,012	2,017	1,171	1,581	561	102	24	233	6,892





■ 개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이해당사자인 정당·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를 개표과정에 직접 참관토록 하여 공정한 개표를 담보함은 물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신뢰를 쌓는 제도이다. 개표참관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신고하며 필요시 2분의 1씩 교대참관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259개 개표소에 총 14,593명의 개표참관인이 선정·신고되었으며 이는 개표소별 평균 56.3명의 인원이 참관한 것이다.([표 3-88])

(3) 개표관리

개표소에서는 투표함이 도착되는 대로 개함³⁷⁾하여 선거별로 투표지를 분류한 후, 투표기분류기에 의한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부재자투표의 개표는 별도의 전담반을 편성하여 개표하였고, 근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는 정확성에 보다 더 비중을 두었다.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6개 선거를 개표하였음에도 평균개표시간은 9시간 10분으로 제3회 지방선거 9시간 24분보다 오히려 14분 단축되었다. 이는 실제개표와 동일한 상황을 설정한 여러 번의 시연회를 통하여 최적의 관리 모델을 찾아나간 것과 성능이 향상된 투표기분류기운영자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사전준비와 내실있는 교육의 결과로 평가된다.

개표결과 정당별 득표수의 합계는 [표 4-8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나라당(51.7%), 열린우리당(23.2%), 민주당(9.1%)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투표기분류기의 미분류율은 3%로 제3회지방선거의 15%보다 12%가 줄어들어 인주내장형 기표용구와 투표기분류기의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무효투표율도

37) 일반투표함의 개함요건은 제2회 지방선거까지는 투표함이 3분의 2 이상 도착,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3분의 1 이상이었으나,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도착되는 대로 개함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읍·면·동별 개표를 실시함에 따라 모든 투표구의 투표함에 도착된 읍·면·동부터 개함함. 단, 부재자투표용 우편투표함은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함할 수 있다.

[표 4-89] 정당별 득표

(단위: 표, %)

구 분	계	시도지사	구·시·군 의장	시·도의원		구·시·군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합 계	득표수	110,181,785	18,857,606	18,510,816	18,288,800	18,763,078	18,317,171	17,444,314
	득표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열린우리당	득표수	25,510,625	5,106,984	4,277,001	4,329,794	4,056,367	3,544,024	4,196,455
	득표율	23.2	27.1	23.1	23.7	21.6	19.3	24.1
한나라당	득표수	56,932,693	10,418,021	9,396,305	9,291,686	10,086,354	8,317,356	9,422,971
	득표율	51.7	55.2	50.8	50.8	53.8	45.4	54.0
민 주 당	득표수	10,074,462	1,709,452	1,530,908	1,602,034	1,863,239	1,575,921	1,792,908
	득표율	9.1	9.1	8.3	8.8	9.9	8.6	10.3
민주노동당	득표수	7,246,284	1,099,592	648,353	507,157	2,263,051	1,072,826	1,655,305
	득표율	6.6	5.8	3.5	2.8	12.1	5.9	9.5
국민중심당	득표수	2,361,573	345,295	403,464	408,610	436,774	390,755	376,675
	득표율	2.1	1.8	2.2	2.2	2.3	2.1	2.2
시 민 당	득표수	13,310	4,790	482	-	7,583	455	-
	득표율	-	-	-	-	-	-	-
한 미 준	득표수	19,184	7,188	4,176	-	5,112	2,708	-
	득표율	-	-	-	-	-	-	-
희망사회당	득표수	52,826	-	-	6,039	44,598	2,189	-
	득표율	-	-	-	-	0.2	-	-
무 소 속	득표수	7,970,828	166,284	2,250,127	2,143,480	-	3,410,937	-
	득표율	7.2	0.9	12.2	11.7	-	18.6	-

[표 3-90]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2 이상의 난 기표'에 따른 무효투표

(단위: 개, %)

구 분	투 표 수 (A)	무효투표총수 (B)	2이상의 난 기표 무효투표		
			비율(B/A)	무효투표수(C)	비율(C/B)
제4회 지방선거	18,810,506	493,578	2.6	211,986	42.9
제3회 지방선거	15,156,498	440,534	2.9	88,750	20.1
증 감	3,654,008	53,004	△0.3	123,236	22.8



2.6%로 제3회 지방선거의 2.9%보다 0.3% 줄어들었다. 반면 지역구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으로 '2이상 란 기표' 하여 무효가 된 것이 전체 무효표 중 42.9%나 발생하여 제3회 지방선거시 20.1%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90])

(4) 개표결과 자료제공

방송사가 개표소마다 배치된 자체집계요원의 개표자료를 방송함으로써 동일시간대의 개표율, 후보자별 득표수가 방송시간에 상이하게 보도되는 혼란을 예방하고 투·개표상황을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투·개표의 신속·정확한 집계·공표를 위한 투·개표집계시스템³⁸⁾을 개발하여 방송사(KBS, MBC, SBS, YTN, MBN, 케이블TV연합회) 및 언론사(조선일보 등 13개사)에 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엠파스 등 6개사의 포털사이트에 선거관련 자료 등을 링크시킴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선인

선거구위원회별로 개표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당선인을 결정하고, 당선인 결정 후 2일 이내에 선거구위원회별로 별도의 당선증교부식을 개최하였다. 당선증교부식 참석자는 당선인은 물론 낙선거, 선거운동관계자, 지역의

38) 투·개표관리시스템은 제3회 지방선거부터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자료제공수준은 방송사는 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신문사는 텍스트파일 형태로 포털사이트는 당선인 등 개표결과 제공한 것임.

[표 3-91] 정당별 당선인

(단위 : 명, %)

구 분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합 계	3,872 (100.0)	701 (18.1)	2,346 (60.6)	378 (9.8)	81 (2.1)	89 (2.3)	277 (7.1)	
시·도 지 사	16	1	12	2	-	-	1	
구·시·군의 장	230	19	155	20	-	7	29	
시·도의원	지역구	655	33	519	71	5	13	14
	비례대표	78	19	38	9	10	2	-
	교육의원	5	-	-	-	-	-	5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543	1,401	233	52	56	228
	비례대표	375	86	221	43	14	11	-

[표 3-92] 기초의원 기호별 당선율

(단위 : %)

구 분	2인추천 선거구		3인추천 선거구			4인추천 선거구			
	가	나	가	나	다	가	나	다	라
열린우리당	66.0	14.4	60.0	28.6	18.6	75.0	16.7	41.7	16.7
한나라당	91.5	56.9	92.1	72.2	46.8	77.8	50.0	44.4	50.0
민주당	56.6	38.7	72.2	50.0	38.9	81.3	25.0	25.0	43.8
민주노동당	50.0	50.0	-	-	-	-	-	-	-
국민중심당	18.0	28.0	52.6	26.3	42.1	33.3	33.3	33.3	33.3

각급기관·단체장을 초청하여 축제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별 당선자(정수)는 3,872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시 4,415명 대비 543명 줄어들었다.([표 2-1] 참조)

또한 지역구·시·군의원을 비롯한 전체 선거가 정당공천이 가능해진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별 당선인수 및 비율은 한나라당이 2,346명으로 60.6%, 열린우리당이 701명으로 18.1%, 민주당이 378명으로 9.8% 등 순으로 나타났다.([표 3-91])

특히 [표 3-15]의 설명과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의원³⁹⁾의 정당추천에서부터 도입한 결과 추천후보자 1,411명 중 528명이 당선되었는바, 이는 제3회 지방선거의 142명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한편, 지역구기초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실시하여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결정방식을 호적상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함에 따른 앞순위 번호 후보자의 당선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같은 정당에서 2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후보자의 기호는 당해 정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추천에 의하여 결정'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표 3-92)

선거쟁송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분쟁을 소청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지방선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소청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기관의 선거관리에 관한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선거소송의 전 단계에서 선거관리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선거의 결과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함이다.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사법부가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하는 절차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소청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 포함)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소청을 필요적 전치주의로 하고 있다.

(1) 선거소청 제기 및 결정

선거무효소청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

39) 의석할당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100 이상을 득표하여야 함.

[표 3-93] 선거소청제기 및 처리(총괄)

(단위: 건)

구 분	계	선거무효						당선무효					선거 및 당선무효		
		제 기	처 리					제 기	처 리					제 기	처리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종료 선언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종료 선언		
합 계	30	11	1	-	9	-	1	18	3	-	14	-	1	1	1
자치구·시·군의 장	7	3	-	-	2	-	1	4	1	-	2	-	1	-	-
비례대표시·도의원	1	-	-	-	-	-	-	1	1	-	-	-	-	-	-
지역구시·도의원	5	4	1	-	3	-	-	1	-	-	1	-	-	-	-
자치구·시·군의원	17	4	-	-	4	-	-	12	1	-	11	-	-	1	1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당선무효소청은 당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일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선거소청은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위원회에 제기하며,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 또는 시·도위원회는 소청장 접수일부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별 소청제기 건수는 시·도지사선거는 소청 제기가 없었으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1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7건,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5건, 자치구·시·군의원선거 17건 이었으며, 소청종류별로는 선거 및 당선무효소청 1건, 선거무효소청 11건, 당선무효소청 18건으로 총 30건이었다. 이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소청제기 건수(64건)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소청원인은 당선무효소청의 경우 개표결과 소청인이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 개표관리의 부적정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며 선거무효소청의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유류,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선거사무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 많았다.



[표 3-94] 선거구별 선거소청제기 및 처리

시도명	소청건명 (사건번호)	소청 구분	당 사 자		제기일자	처리결과	비고
			소청인	피소청인			
중앙	비례대표전라남도 의회의원선거 (2006중앙마)	당선 무효	유영란	전남도 위원장	2006. 6. 14	취 하 (2006. 7. 11)	-
서울	관악구의원선거 라선거구 (2006서울나1)	당선 무효	김성영	관악구 위원장	2006. 6. 8	기 각 (2006. 7. 4)	검증실시
	성북구의원선거 나선거구 (2006서울나2)	당선 무효	문경주	성북구 위원장	2006. 6. 9	기 각 (2006. 7. 4)	검증실시
	동대문구의원선거 사선거구 (2006서울나3)	당선 무효	김봉식	동대문구 위원장	2006. 6. 13	기 각 (2006. 7. 28)	검증실시
	강북구의원선거 가선거구 (2006서울나4)	당선 무효	이복근	강북구 위원장	2006. 6. 13	기 각 (2006. 7. 4)	-
부산	금정구의원선거 마선거구 (2006부산나1)	당선 무효	김현철	금정구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24)	당선자 사 망
대구	서구의원선거 나선거구 (2006대구나1)	당선 무효	김용환	서 구 위원장	2006. 6. 7	기 각 (2006. 7. 24)	검증실시
인천	계양구의원선거 나선거구 (2006인천나1)	선거 무효	이진옥	계양구 위원장	2006. 6. 5	기 각 (2006. 7. 31)	
	동구의원선거 나선거구 (2006인천나2)	당선 무효	박기봉	동 구 위원장	2006. 6. 9	기 각 (2006. 7. 31)	검증실시
충남	연기군수선거 (2006충남라1)	당선 무효	최준섭	연기군 위원장	2006. 6. 2	기 각 (2006. 7. 25)	검증실시
	연기군수선거 (2006충남라2)	선거 무효	김준희	연기군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25)	
	충남도의원선거 태안군제2선거구 (2006충남가1)	당선 무효	박동윤	태안군 위원장	2006. 6. 13	기 각 (2006. 7. 25)	검증실시
	충남도의원선거 연기군제2선거구 (2006충남가2)	선거 무효	박상희	연기군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25)	
	충남도의원선거 연기군제1선거구 (2006충남가3)	선거 무효	이진희	연기군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25)	

시도명	소청건명 (사건번호)	소청 구분	당 사 자		제기일자	처리결과	비고
			소청인	피소청인			
충남	천안시의원선거 가선거구 (2006충남나1)	당선 무효	박종일	천안시 위원장	2006. 6. 12	기 각 (2006. 7. 25)	검증실시
	연기군의원선거 다선거구 (2006충남나2)	선거 무효	김덕천	연기군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25)	
	연기군의원선거 가선거구 (2006충남나3)	선거 무효	강대철	연기군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25)	
충북	청원군의원선거 나선거구 (2006충북나1)	당선 무효	채평석	청원군 위원장	2006. 6. 12	기 각 (2006. 6. 30)	검증실시
	음성군의원선거 나선거구 (2006충북나2)	당선 무효	이승원	음성군 위원장	2006. 6. 13	기 각 (2006. 6. 30)	검증실시
전북	정읍시의원선거 라선거구 (2006전북나1)	선거 및 당선 무효	권혁준	정읍시 위원장	2006. 6. 13	취 하 (2006. 7. 4)	
	고창군수선거 (2006전북라1)	선거 무효	정봉진	고창군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31)	
	전라북도의원선거 김제시제1선거구 (2006전북가1)	선거 무효	김종성	김제시 위원장	2006. 6. 12	취 하 (2006. 6. 23)	
	군산시장선거 (2006전북라2)	당선 무효	황이택	문동신	2006. 6. 15	기 각 (2006. 7. 31)	
전남	장성군수선거 (2006전남라1)	선거 무효	이병직	장성군 위원전원	2006. 6. 14	종료선언 (2006. 7. 31)	소청인 사 망
	장성군수선거 (2006전남라2)	당선 무효	이병직	유두석	2006. 6. 14	종료선언 (2006. 7. 31)	소청인 사 망
	화순군의원선거 가선거구 (2006전남나1)	당선 무효	박기동	정형찬	2006. 6. 14	취 하 (2006. 7. 31)	
경북	포항시의원선거 남구자선거구 (2006경북나1)	선거 무효	박병원	포항남구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21)	
경남	창원군수선거 (2006경남라1)	당선 무효	이수영	창원군 위원장	2006. 6. 5	취 하 (2006. 7. 7)	검증실시
	경상남도의원선거 양산시제2선거구 (2006경남가1)	선거 무효	박정수 외4	양산시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31)	
	진주시의원선거 나선거구 (2006경남나1)	당선 무효	황현자	진주시 위원장	2006. 6. 14	기 각 (2006. 7. 31)	검증실시



(2) 증거보전 신청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증거보전 신청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2건, 지역구 시·도회의의원선거 1건, 자치구·시·군의원선거 6건이었으며, 소청종류별로는 선거무효소청 1건, 당선무효소청 8건으로 총 9건이었다.

(3) 선거소송 진행

선거소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당선인 포함)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소청에 대한 결정기간 이내에(선거소청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표 3-95] 선거소송 제기

(단위 : 건)

구 분	선 거 별	계	선거무효	당선무효	선거 및 당선무효	비 고
합계	계	6	4	2	-	
	구·시·군의 장	2	2	-	-	
	구·시·군의회의원	4	2	2	-	
서울	구·시·군의회의원	1	-	1	-	동대문구 사선거구
부산	구·시·군의회의원	1	-	1	-	금정구 마선거구
인천	구·시·군의회의원	1	1	-	-	계양구 나선거구
전북	구·시·군의 장	1	1	-	-	고창군수선거
전남	구·시·군의 장	1	1	-	-	장성군수선거
경북	구·시·군의회의원	1	1	-	-	포항시남구 자선거구

[표 3-96] 선거소송 진행상황

시·도명	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소송이유	진행상황
		원고	피고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원선거 사전거부당선무효의 소 (서울고법2006수1)	김봉식 (소청인)	동대문구 위원장	청구이유 미제출 ※ 선거소청 청구이유 참관인 등에 의하면 소청인(김봉식)이 소청의 이강선보다 7표 내지 106표 가량 더 득표하였는데 동대문구선거관리 위원회가 개표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강선이 25표 더 득 표한 것으로 잘못 집계하였기에 소청을 제기함.	- 7. 28 소청기각 - 8. 9 소송제기 - 9. 4 소취하
부산	금정구의회의원선거 당선무효의 소 (부산고법2006수17)	김현철 (소청인)	금정구 위원장	후보자등록 전에 사망한 자의 등록은 무효이고, 따라서 사망한 자에게 기표한 투표는 무효이므로 사망한 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유효로 하여 한 당선인결정은 무효임	- 7. 24 소청기각 - 7. 28 소송제기
인천	계양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부 선거무효의 소 (서울고법2006수2)	이진옥 (소청인)	계양구 위원장	민주당이 원고를 당헌·당규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명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를 후보자 등록 무효처리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선거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임	- 7. 31 소청기각 - 8. 11 소송제기
전북	고창군수선거 선거무효의 소 (광주고법2006수12)	정봉진 (소청인) 외 1인	고창군 위원장	고창군수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누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고창군수(당선인)의 직무 가 정지되었음에도 직·성명을 기재하여 고창군민 체육 대회 초청장을 발송하여 신분·직업 등의 허위사실을 공 표하였음에도 고창군선관위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으므로 선거는 무효임	- 7. 31 소청기각 - 8. 10 소송제기 - 8. 24 소취하
전남	장성군수선거 선거무효의 소 (광주고법2006수1)	송행숙 외 3인 (선거인)	장성군 위원장	당선인이 민주당의 당원임에도 무소속후보로 출마해 당 선된 것은 명백한 무효이고 선관위가 등록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위원회 자체투표를 거쳐 부결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인정한 것은 위법함. 또한, 소청종료결정과 관련 해 당선무효소청과 달리 선거무효소청은 당사자 대립구 조가 엄격하다고 볼 수 없고 선거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그 영향은 선거인 모두에게 미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 처리한 것은 공익적요소를 무시한 결정임	- 7. 31 종료선언 (소청인 사망) - 8. 9 소송제기
경북	포항시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의 소 (대구고법2006수1)	박병원 (소청인)	포항남구 위원장	피고는 개표과정에 있어 투표함 일부가 미도착한 상태에 서 참관인 2명의 봉인확인 없이 진행했고, 투표함이 뒤바 뀐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였으며 투표 인수도 확인되지 않고 텔레비전 자막방송이 끊어진 상태 에서 개표를 진행하는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선거는 무효임	- 7. 21 소청기각 - 8. 3 소송제기



제4절

위반행위 감시·단속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룩한 공명선거 기조를 안정적으로 발전·정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되는 선거였으며, 정치적으로도 내년의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거인 만큼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여 총력전을 펼칠 것이 예상되었고, 정당공천제의 전면도입·지방의원 유급제·당내경선 등의 새로운 선거환경과 지방선거의 특성상 후보자수 과다, 지역주민 간 과당경쟁,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선심행정·줄서기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상존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과열·혼탁선거로 흐를 개연성이 많았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법과 질서가 준수되고 정견과 정책에 의한 경쟁으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정당·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및 단속의지를 반복 안내하는 등 준법선거를 유도하였다.

(1) 위반사례 예시 안내·홍보

2006년 1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기준, 정당·의정활동, 시설물·인쇄물 관련 주요선거법위반사례와 정당·정치자금법 위반사례예시가 포함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집 10만 부를 발간·제작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자생단체 등에 배부·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사후 조사·조치보다는 수시방문·면담·전화·공문시행 등을 통하여 선거법 및 사례예시를 수시 안내하는 등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의 비중을 높여 추진하였으며, 각급위원회 간부가 방문·면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시·도당 대표자, 국회의원, 단체장 등에게 선거법 및 위원회의 단속방침과 의지를 반복 안내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와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선거관련 활동정황 및 주요행사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각종 선거관련 행사개최 전에 위법여부를 충분히 문의한 후 적법하게 행사·모임을 개최하도록 유도하여 선거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다.

아울러 당내경선과 관련한 당비대납 등 선거인 매수행위, 설·대보름·관광철 등 전례를 빙자한 금품·향응제공행위 등이 예상될 때에는 정당·후보자는 물론 언론에도 특별단속대상과 단속기간 등을 확실하게 사전 예고하는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에는 위원회의 단속역량을 집결하여 선거분위기를 장악하고 사전 예고된 중점단속사항은 고발 등 엄중 조치하여 준법선거를 유도하였다.



(2)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방침 안내

그동안 우리 선거사에 있어 정치·선거부패의 근원이 되었던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 사조직 설치·운영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여 신문광고, 대담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수시·반복 안내하여 중대범죄 발생 억지력을 확보하는 등 사전예방효과를 제고하였다.

(3) 포상금 및 50배 과태료제도 적극 홍보

정당·후보자의 위법행위 못지않게 우리 선거풍토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후진적 행태가 계속된 것은 유권자의 금품기대심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여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 도입된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제도와 식사·물품·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도 50배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산악회·지역발전연구소 등 입후보예정자 관련 조직·단체나 경로당·부녀회·지역자생단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안내를 통하여 금품배격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와 함께 받은 자나 요구하는 자도 반드시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 유도를 통해 선거에 대한 불신과 외면,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선거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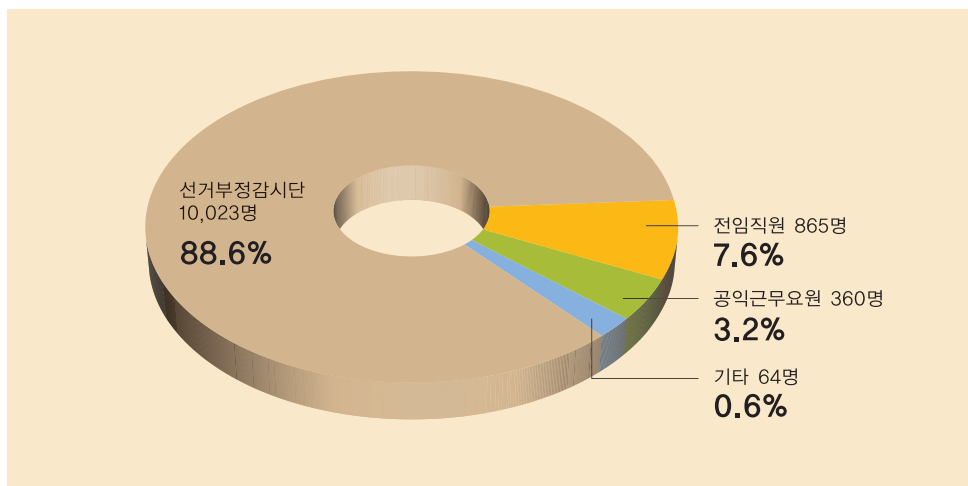
위반행위 감시·단속반 편성·운영

(1) 단속반 편성·운영

각급위원회 전임직원, 공익근무요원, 선거부정감시단, 자원봉사자로 시기별·단계별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중대범죄는 시·도위원회에서 직접 지휘·조사하고, 일반범죄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하였다. 아울러 시·도 조사팀은 여론 주도층과 비공개감시단원 등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정치자금범죄에 대응토록 하고, 구·시·군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예방·단속활동에 진력토록 하는 등 감시·단속체계를 조기에 확립하여 일사분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하였다.

또한, 공휴일에도 단속활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또는 권역단위의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야간에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거양상의 변화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림 4-1] 감시·단속반 편성





(2) 선거부정감시단 편성·운영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감시단을 선거일전 120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기존 선거시 나타났던 감시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감시단 편성·운영지침을 조기에 시달하는 한편, 신문광고 등 적극적인 모집을 통하여 정예요원을 선발하고 성과부진자와 부적격자는 수시 교체하여 성과위주로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등 감시단 선발·운영을 일신하여 단속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감시단 운영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 등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 편성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선거일 후에는 정치자금·선거비용 확인·조사 등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선발·운영하였다.

감시단원 편성인원은 총 위촉가능인원인 13,750명 중 72.9%인 10,023명으로 구·시·군위원회 평균 40명이었으며 이중 자체선정이 82%인 8,224명, 정당추천이 18%인 1,799명이었다.

또한 감시단원 활동에 있어 고압적이고 무례한 단속으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련된 현장 대응능력과 조사요령 등 체득을 위해 집합교육 2,530회, 수시교육 12,884회 등 연인원 241,854명에 대해 계속적·반복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장을 제작·착용하고 2006년 3월 22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최하여 단속의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활발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이번 지방선거 전체 단속실적 6,044건 중 36%인 2,166건을 적발하여 229건은 고발, 139건은 수사의뢰, 1,798건은 경고 등 조치하였으며 1인당 조치건수는 0.22건이었다.

[표 4-1] 선거부정감시단 추천

(단위 : 명, %)

계	자체선정			정당추천						
	소계	공개	비공개	소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기타
10,023	8,224 (82.0)	5,457 (54.4)	2,767 (27.6)	1,799 (18.0)	536 (5.4)	562 (5.6)	292 (2.9)	281 (2.8)	123 (1.2)	5 (0.1)

[표 4-2] 성별·연령별

(단위 : 명, %)

계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0,023	4,372 (43.6)	5,651 (56.4)	1,238 (12.4)	2,676 (26.7)	4,053 (40.4)	1,371 (13.7)	685 (6.8)

[표 4-3] 학력별

(단위 : 명, %)

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대재포함)	대학원졸
10,023	510 (5.1)	5,468 (54.5)	1,001 (10.0)	2,855 (28.5)	189 (1.9)

[표 4-4] 직업별

(단위 : 명, %)

계	이·미 용업	운전 기사	아파트 경비원	요식업	생활 설계사	공인 중개사	우유등 배달원	학생	주부	회사원	농·축 산업	상업	종교인	기타
10,023	22 (0.2)	66 (0.7)	6 (0.1)	80 (0.8)	113 (1.1)	57 (0.6)	25 (0.2)	526 (5.2)	4,853 (48.4)	213 (2.1)	616 (6.2)	718 (7.2)	29 (0.3)	2,699 (26.9)

[표 4-5] 신분별

(단위 : 명, %)

계	감시단 운영요원	읍·면·동 위원	바선모 회원	시민단체 회원	종교단체 회원	직능단체 회원	직원 연고자	기타
10,023	954 (9.5)	52 (0.5)	939 (9.4)	398 (4.0)	108 (1.1)	224 (2.2)	622 (6.2)	6,726 (67.1)

[표 4-6] 모집방법별

(단위 : 명, %)

계	자체선정					정당추천
	공개모집	위원·직원 추천	단체 등 추천	유관기관 추천	기타	
10,023	4,600 (45.9)	1,546 (15.4)	561 (5.6)	113 (1.1)	1,404 (14.0)	1,799 (18.0)



[표 4-7] 역대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단위 : 건)

구 분	제16대 총선	제3회 지방선거	제16대 대선	제17대 총선	제4회 지방선거
인원(A)	11,555	11,352	8,759	10,996	10,023
단속실적(B)	376	2,293	714	2,053	2,166
1인당 적발(B/A)	0.03	0.2	0.08	0.19	0.22

(3) 광역조사·단속을 위한 TF팀 편성·운영

구·시·군위원회 자체인력만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중대범죄와 대규모 선거·정치관련 집회의 감시·단속 및 타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선거·정치자금범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시·도조사팀 직원과 구·시·군위원회에서 조사역량이 뛰어난 직원 및 구·시·군위원회의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459명으로 TF팀을 편성하여 시·도단위 또는 권역단위로 광역조사 및 단속을 308회 운영하여 총 25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156건은 고발, 99건은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위반행위 단속·조치결과

(1) 선거범죄 단속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적 위주의 저인망식·무계획적 단속을 탈피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대선거범죄 위주로 단속하고 언론에 보도·확산되도록 하여 범죄발생 개연성과 억지력을 높이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경고·주의 등 행정조치의 남발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시정·구두경고 등을 통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금품·음



식물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주요위반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구성요건 해당성, 고의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고발조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다.

또한 위법행위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조치지연으로 인한 담합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수사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직당국에 우선 수사의뢰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사중인 사안은 조사자료를 통보하고, 고발·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반드시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였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는 제3회 지방선거시 조치실적 8,685건보다 30% 감소한 6,044건을 적발하여 고발 774건, 수사의뢰 483건, 경고·주의 4,678건, 이첩 109건 등으로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조치건수가 제3회 지방선거시 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룩한 공명선거 기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인상, 50배 과태료부과제도의 적극적 운용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억제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전안내 및 강력한 단속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초기부터 계속된 특정정당의 우세현상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지속적 홍보에 따른 유권자의의식의 변화도 그 이유의 하나로 판단된다.

■ 선거범죄 조치 결과

[표 4-8] 선거별 단속

(단위 : 건)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합 계	6,044	774	483	3,359	1,319	109
광역장	221	36	37	103	41	4
기초장	1,782	202	169	815	536	60
광역의원	936	137	66	539	186	8
기초의원	3,105	399	211	1,902	556	37

주) 교교육의원은 고발 1건, 경고 1건



[표 4-9] 정당별 단속

(단위 : 건)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합 계	6,044	774	483	3,359	1,319	109
열린우리당	754	101	54	461	123	15
한나라당	1,441	199	104	863	250	25
민주당	536	81	45	334	62	14
민주노동당	108	9	2	70	27	-
국민중심당	108	33	6	64	5	-
무소속	1,143	165	82	711	172	13
기타 일반	1,954	186	190	856	680	42

주, 교육의원은 고발 1건(무소속), 경고 1건(기타 일반)

[표 4-10] 유형별 단속

(단위 : 건)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합 계	6,044	774	483	3,359	1,319	109
금품·음식물 제공	1,379	368	233	555	197	22
시설물·인쇄물 관련	2,284	115	96	1,364	694	15
비방·흑색선전	55	5	21	6	-	23
유사기관·사조직	46	21	9	14	-	2
공무원등선거개입	154	13	13	81	44	3
의정·정당활동 등 관련	51	7	4	28	9	3
사이버 이용	111	9	21	57	19	5
기타	1,964	236	82	1,254	356	36

주, 교육의원 고발 1건(기타), 경고 1건(금품·음식물 제공)

■ 금품·향응제공행위

금품·향응제공과 관련한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38% 정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품·향응제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제도·50배 과태료 부과제도의 영향으로 선거참여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최근 선거의 위법행위 유형별 조치건수

(단위 : 건)

구 분	제3회 지방선거 (A)	제17대 국선 (B)	제4회 지방선거 (C)	증감			
				C-A	%	C-B	%
합 계	8,685	6,402	6,044	△2,641	△30.4	△358	△5.6
금품·음식물 제공	2,222	1,057	1,379	△843	△37.9	322	30.5
시설물 인쇄물 관련	3,452	3,057	2,284	△1,168	△33.8	△773	△25.3
비방·흑색선전	105	59	55	△50	△47.6	△4	△6.8
유사기관·사조직	37	54	46	9	24.3	△8	△14.8
공무원 등 선거개입	190	153	154	△36	△18.9	1	0.7
정당·의정활동 등 관련	157	159	51	△106	△67.5	△108	△67.9
사이버 이용	122	303	111	△11	△9.0	△192	△63.4
기타	2,400	1,560	1,964	△436	△18.2	404	25.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제공 적발건수가 전체 선거법위반행위 중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선거 막바지에는 일부 지역에서 금품살포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상당수의 후보자들은 여전히 돈 선거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됨에 따라 중대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단속이 요구된다 하겠다.([그림 4-2])

■ 비방·흑색선전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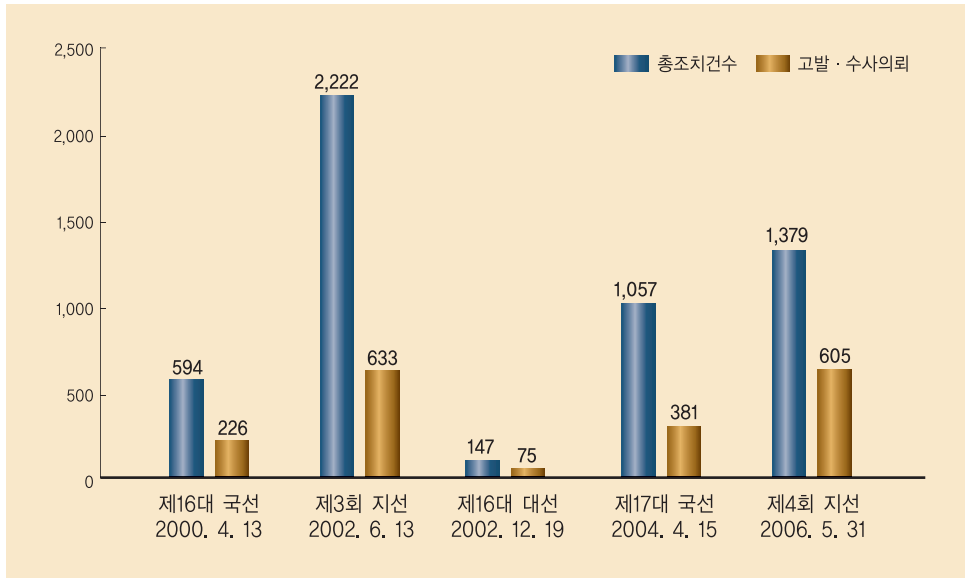
비방·흑색선전행위 적발건수는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48% 정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7% 정도 감소하였다. 비방·흑색선전행위는 주로 후보자측에서는 거리연설·토론 등 대중집회·토론회 개최와 선거홍보물 또는 불법인쇄물 배포의 방법으로, 정당측에서는 보도자료·논평제공으로, 유권자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선거를 거둬할수록 정당과 후보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자제 및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의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비방·흑색선



[그림 4-2] 최근 선거의 금품·음식물 제공 조치현황

(단위 : 건)



전이 줄어들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의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PC방 등에서의 사이버 흑색선전, 정치관련 기사나 토론 게시판의 악의적인 댓글, 후보자 비방 스팸메일 등 사이버 비방이 계속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수준’의 비방이나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폭로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들이 정당행사 또는 선거기획에 참여하거나, 현직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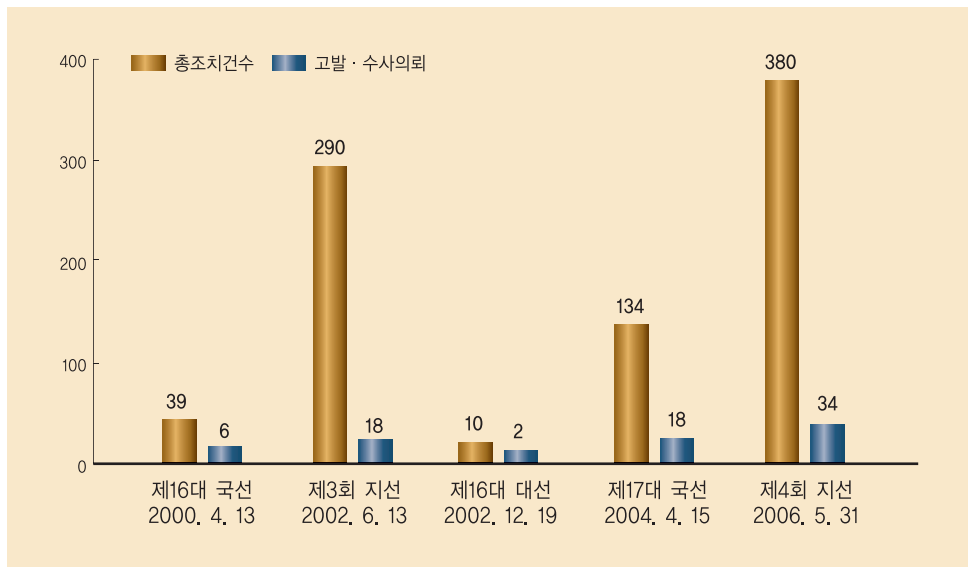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는 관련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내부고발을 꺼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에 의한 인사혜택 등 선거후 예상되는 유·무형의 대가를 예상하여 불법의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줄서기와 줄세우기는 아직까지 지방선거의 악습으로 남아 있다.

불법행위의 양태를 살펴보면 현직 단체장에 대한 치적홍보, 선심성·예산낭비성 사업추진 등 직무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직·간접적인 선거개입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부처의 장관이나 공무원 등이 정당 당직자들의 선거와 관련된 지방출장에 동행하여 정당의 선거를 지원하는 듯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례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규정 존치여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범위와 한계의 구체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림 4-3] 최근 선거의 공무원 선거범죄 현황

(단위 : 건)





■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조직으로서의 유사기관과 사조직을 금지하는 것은 단체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단체로 변질되거나 선거운동조직을 새로이 결성하는 것을 차단하여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조직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과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불법적인 선거운동단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선거 규모가 작은 선거보다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규모가 큰 선거에서 더욱 그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정치인들의 팬클럽이 선거운동조직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적법과 불법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선거운동성 불법여론조사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행위 총 적발건수 6,044건 중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시설물·인쇄물, 집회·모임, 정당·의정활동 등 사전선거운동의 행태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은 인쇄물·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ARS조사의 경우 많은 후보자들이 유권자 전수를 대상으로 수차례 반복해서 하는 사례들도 많아 전화 공해가 심각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이 일부 지역의 당내경선과정에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선정기준에 부분적으로 포함함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성 ARS 여론조사가 성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불공정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하여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던 만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학계·언론계·업계·시민단체 등 중립적인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여론조사심의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정치자금범죄 단속

각 정당에서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가입과 당비대납 사례가 다수 나타나 2005년 8월부터 각 정당 등을 대상으로 당비대납사례 유무를 일제점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각 정당에도 공정한 당내경선과 당원자격 시비에 따른 선거후유증을 사전예방 하고자 자체 확인·점검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제와 정당추천제의 전면도입 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천현금 등 불법정치자금수수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5대 선거범죄의 하나로 선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위원회는 한시적인 특별조사부를 운영하고 시·도위원회는 조사팀을 중심으로 광역조사·단속TF팀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의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에 적극 활용하는 등 우리위원회가 단속업무를 시작한 이래에 최초로 공천현금 수수행위를 파악 적발·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전면도입에 따른 당비대납, 유명당원,

[표 4-12] 선거별 단속

(단위 : 건)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합 계	86	37	33	16
광역장	1	-	-	1
기초장	18	7	8	3
광역의원	15	8	6	1
기초의원	34	13	15	6
기타	18	9	4	5

주) 기타 : 당원협의회장선거 등



[표 4-13] 정당별 단속

(단위 : 건)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합 계	86	37	33	16
열린우리당	37	14	13	10
한나라당	25	13	9	3
민주당	20	8	10	2
민주노동당	1	1	-	-
국민중심당	1	-	1	-
무소속	2	1	-	1

[표 4-14] 유형별 단속

(단위 : 건)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합 계	86	37	33	16
당비대납	57	22	20	15
정치자금				
공천헌금제공	19	8	11	-
부정수수				
기타	8	5	2	1
공무원 입당	2	2	-	-

공천헌금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재검토, 정당 공천심사제도의 공개화·투명화,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3) 50배 과태료 부과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고비용 선거구조를 타파하고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제도가 도입되어 돈 선거 차단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하여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TV·신문·현수막·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50배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후보자·유권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이같은 결과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89.2%가 50배 과태료부과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선거에 관심있는 유권자일수록 그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청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보육시설관계자에게 지금까지 최대금액인 1억 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정 정당의 집회에 동원되어 2~3만원의 일당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 내지 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일반국민과 대학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같은 사실이 TV등에 크게 보도되어 집회현장에 대학생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되는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총96건에 15억 4,3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50배 과태료부과제도 시행 후 금품·음식물 관련 위법행위 신고와 조치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금품·음식물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선거막판 금품살포가 재연되는 등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선거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돈 선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돈 선거가 근절될 때까지 이 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제공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반면 금품을 제

[표 4-15] 50배 과태료 부과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계	음식물·물품 등	입당대가 금품	집회참석 금품 등	각종행사금품 등	주례 및 축부익금
건수	96	78	2	5	9	2
금액	1,543,753	1,154,853	4,750	118,023	262,727	3,400



[표 4-16] 50배 과태료 주요 부과내역

(단위 : 건, 천원)

위원회명	위반내역	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
서울시 마포구	2005. 12. 16.과 12. 29. 3회에 걸쳐 보육시설종사자 90명을 간담회 명목으로 초청 5,532,4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	고발 (2006. 2. 3)	56	180,021
부산시	2006. 1. 25. 설 명절을 전후하여 부산시장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건어물세트를 291명에게 제공함	고발 (2006. 3. 8)	286	133,200
대구 수성구	2006. 2. 14. 시당위원장 취임식 및 당원전진대회에서 190여 명의 청중을 동원하여 일당 등 명목으로 397만원 제공함	고발 (2006. 2. 20)	83	88,800
광주 광산구	2006. 5. 13.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5명에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	고발 (2006. 5. 29)	4	67,000
강원 태백시	선거구민에게 4회에 걸쳐 1,167,000원 상당을 제공함	고발 (2006. 3. 10)	55	42,167
충북 충주시	2005. 추석 충주시청 직원이 충주시의원에게 충주시장 명의로 94,000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제공함	고발 (2005. 11. 7)	22	103,400
충북 진천군	2006. 9. 16.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지시하여 군수명의로 57,200원 상당의 쇠고기선물세트와 정종을 군의원 7명에게 제공함	고발 (2005. 10. 6)	5	14,420
충남 당진군	2006. 4. 30. 대전에서 개최된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당원 등 15명에게 교통편의, 식대 등 50만원 상당의 경비를 제공함	고발 (2006. 5. 16)	13	22,203
경북 포항시북구	포항시청 공무원인 6개 향우회 회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13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수사의뢰 (2006. 2. 6)	63	54,673
제주 제주도	체육계 인사 44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지사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회원들에게 1,11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수사의뢰 (2006. 3. 21)	34	53,632

공받은 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규정이 없어 조사시 범죄혐의를 담합하여 조사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제고차원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4) 신고자포상금 제도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제도는 지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음성적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7189호)에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법제화하여 5,0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현금,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중대범죄는 신고·제보가 없는 한 적발에 한계가 있어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주고받는 선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은 물론, 신고자가 입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5억원으로 인상하여 운영하는 한편, 신고자 신분보호사실과 함께 언론·인터넷·현수막 등을 통해 포상금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국민과 정치권에 인식시켜 정당·후보자 등이 자율적 법 준수의지를 높여 위반행위 발생률이 제3회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31%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고포상금은 385건에 10억 7,143만원을 지급하여 지난 제3회 지방선거의 190건 1억 922만원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포상금지급 기준의 인상으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후진적인 선거풍토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제도의 인지도 조사에서도 제3회 지방선거시는 30.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67.8%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제도와 신고포상금제도가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의 기여 정도에 대해서도 72.9%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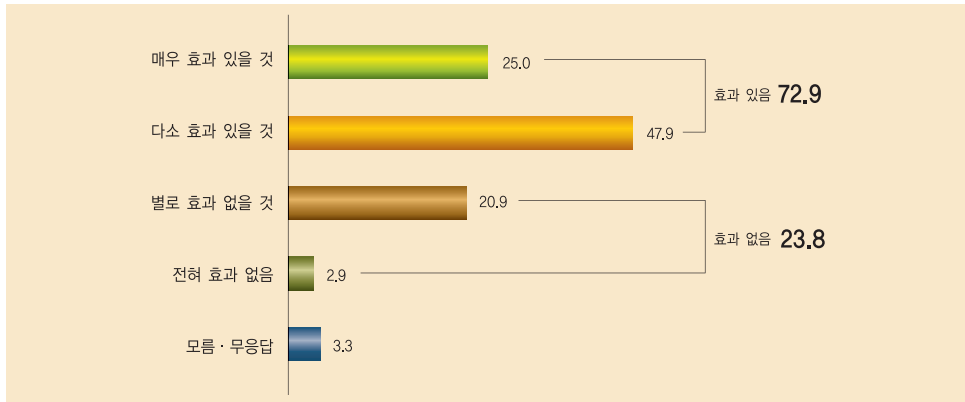


[표 4-17] 최근 선거의 포상금 지급실적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제16대 총선	제3회 지방선거	제16대 대선	제17대 총선	제4회 지방선거
건수	78	190	19	351	385
금액	4,860	109,226	8,640	778,834	1,071,426

[그림 4-4]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효과성 평가



[표 4-18]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신고 및 위반행위 내역	조치내역	포상금 지급액
서울시 금천구	2006. 3. 6. 서울시의원 공천신청자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경영하는 뷔페 지배인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한 후, 공천에 탈락하자 3월 말경 되돌려 받음	고발 (2006. 4. 19)	60,000
대구시	2005. 8.~12. 경북도당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도의원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된 자로부터 공천관련 금품을 3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제공받음	고발 (2006. 4. 24)	55,000
광주시	광역단체장의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에게 29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시청 공무원 3명이 단체장의 지지도 확산을 위한 선거기획·실시에 관여함	고발 (2006. 2. 23)	50,000
서울시 마포구	마포구청에서 보육시설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2005. 12. 16. 34명에게 1,15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005. 12. 29. 56명에게 3,565,000원 상당의 식사와 참석자 중 23명에게 81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	고발 (2006. 2. 3)	45,000
서울시 중 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하고 모임시 252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함	고발 (2006. 3. 16)	20,000

사이버 감시 · 단속

(1) 위반행위 발생현황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전 해 감에 따라 2000년 제16대 총선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지방선거의 특성상 이슈가 전국적으로 분산되고, 대선·총선보다 관심도 높지 않았고 인터넷실명확인제의 시행 등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제하는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이 50%정도 대폭 감소하였다.

(2) 선거범죄 예방활동

인터넷 이용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10,40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주요 위반사례예시와 비방·흑색선전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 글을 430,000여 회 게시하였고, 주요 포털, 인터넷사이트 관리·운영자, PC방 업주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협조사항과 주요 사례예시를 안내하여 자정노력 강화 및 신고·제보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방문자들에게 사이버상의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인터넷사이트의 정치·토론 게시판 등에 ‘좋은 글’ 게시를 당부하는 예방활동 안내문을 공지사항으로 수시로

[표 4-19] 사이버선거범죄 예방활동 실적

인터넷 관계자 회의	협조요청 공문 발송	위반사례예시안내	팝업창·배너광고	홈페이지 운영
109회	1,757회 (8,025개 사이트)	432,440회 (10,400개 사이트)	320종 (1,442개 사이트)	중앙, 16개 시·도 (사이월드, 네이버블로그)



게시하여 사이버상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예방하였다.([표 4-19])

(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

중앙 및 시·도위원회에는 선거의 과열정도, 인터넷검색사이트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최대 27명에서 최소 11명까지 총 287명(정당추천 58, 일반 229명)으로 편성·운영하였으며, 구·시·군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임직원, 검색요원과 공익요원 등 720여명으로 자체 검색반을 편성·운영하였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229명)은 인터넷 활용·검색능력 우수자 등 20~30대의 인터넷 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검색과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며, 사이버검색업무는 기본업무로 하되 단속반을 관리팀, 정황수집·분석팀, 예방활동팀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팀은 자동검색시스템 및 긴급검색기 운영, 정황수집·분석팀은 선거정황 및 효과적인 단속정보 제공, 예방활동팀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예방활동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여 각 팀별로 특색있게 운영하였으며, 업무성과에 따라 우수한 팀에게 성과수당을 지급하였다.

정당추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58명)은 상대 정당·후보자 및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집중 검색하도록 하여 위법게시물 색출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나, 정당추천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경우 선거기간 중에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에서 3인씩 추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 및 인력확보 문제 등의 사유로 추천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4) 선거범죄 조치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은 위법게시물의 확산방지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삭제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표 4-20]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단위 : 건)

구 분	총계	조치						삭제 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합 계	6,831	110	9	21	56	19	5	6,721
비방·흑색선전	1,248	23	4	11	2	2	4	1,225
사전선거운동	4,814	61	3	4	37	17	-	4,753
기타	769	26	2	6	17	-	1	743

최대한 보장하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였다.

사이버선거범죄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총13,209건(고발 13, 수사의뢰 58, 경고 106, 주의 114, 이첩 12, 삭제요청 12,906)을 적발 조치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총 6,831건을 적발하여 고발 9건, 수사의뢰 21건, 경고·주의 75건, 수사자료 통보 5건, 삭제 6,721건을 조치하여 50% 정도 감소하였다.([표 4-20])

(5) 통신자료제출 요구

통신 및 전화자료 제출요청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발·수사의뢰대상 위반혐의범죄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총 25건에 대해 통신 및 전화자료(통신 23, 전화 2)를 요청하였다.

(6) 인터넷실명제

제17대 총선에서 도입된 이래 최초로 시행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는 2006년 1월부터 반대·불복종하는 인터넷언론사 및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 등과 수차례에 걸



쳐 협의·설득을 위한 모임·간담회를 개최하여 실명확인제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2월초부터 각 인터넷언론사에 공문·방문·전화로 지방선거에서 실명확인제 시행 사실을 안내하고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각 인터넷언론사·포털사이트 등에 실명확인제 실시 안내문을 공지하는 한편, 3월 초순 인터넷언론사 관계자 대상 실명확인제 준비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여 3월 초순 신용정보업자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명확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전 인터넷 언론사에 안내하여 일부 반대 단체를 제외하고는 각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 실명확인제 정착에 기여하였다.

실명확인대상 인터넷언론사는 실명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3. 31까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확인한 807개 인터넷언론사를 확정하여 실명확인대상으로 하였다.

3. 2부터 5. 31까지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부실명확인제를 시범실시하고 5. 11부터 5. 12까지 2일간 정부실명확인제를 준비중인 전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정 시범운영을 실시(141개사 참여)하여 실명확인제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해소하고 실명확인제 준비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으며 인터넷언론사 및 네티즌 등에 대한 사전 안내효과를 거양하였다.

5월 중순경에는 최초로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참여·동참을 위해 실명확인을 준비하는 인터넷언론사 중 기술·인력부족 등으로 실명확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영세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기술조치를 지원(6

[표 4-21] 인터넷 실명확인제 운영

(단위 : 개)

대 상	실명확인 게시판 운영			실명확인 게시판 미운영 (이행명령)	실명확인제 적용제외			이행명령 불응 (과태료 부과)
	계	정부 실명확인	민간 실명확인		계	당초 게시판 미운영	선거운동 기간중폐쇄	
807	483	212	271	26	298	126	172	1 (750만원)



개사)하였다.

선거기간 동안 실명확인제를 시행한 인터넷언론사는 전체 807개 인터넷언론사 중 483개사이며, 이 중 정부실명제는 212개사, 민간실명제는 271개사가 채택하여 시행하였으며, 실명확인제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게시판을 폐쇄한 인터넷 언론사가 172개사에 이르렀으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까지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26개사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명령을 받은 26개사 중 1개사만이 불응하여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정치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가 대폭 증가했으며, 불공정 선거보도 위반건수도 동반 상승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동안 적극적인 불공정 선거보도 사전예방 활동 및 피해구제 안내 실시를 통해 대·내외적 인지도와 공신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철저한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과 공정한 심의,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1) 사전예방 활동 및 피해구제 안내

불공정 선거보도 사전 예방을 위하여 795개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 서한문 및 홍보책자를 발송하였으며, 각종 정책설명회, 토론회, 선거연수원 인터넷기자 교육 참석 및 인터넷언론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기자 대상 심의제도 안내 및 공정보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유관단체를



방문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각종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대국민 홍보 및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공정보도 환기에 노력하였다.

피해구제 및 심의제도 안내 홍보책자(2종, 16,000부)와 홍보메일을 제작하여 각급 위원회, 정당 및 (예비)후보자 등에 각종 계기를 이용 배부·발송하였고, 각급 위원회의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구제 안내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디어다음, 미디어오늘, 연합뉴스의 메인 및 정치, 선거특집 페이지에 홍보 배너광고를 5월 한 달간 실시하였다.

(2)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팀 편성·운영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 맞춰 2006년 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법학 및 언론학을 전공한 10명의 모니터요원이 인터넷언론사 및 특수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150여 개 주요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사무국 자체 책임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중앙 및 시·도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의 공조를 통해 당해 지역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공정보도 발생시 통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3단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3)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조치

이번 선거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조치하였다. 경고문게재 1건(1.9%), 경고 20건(37.0%), 주의 21건(38.9%), 공정보도협조요청 4건(7.4%), 기각 8건(14.8%)으로 주의와 경고가 가장 많았다.

인용결정된 안건을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8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광고·홍보 10건(18.5%), 여론조사보도 위반 8건(14.8%), 사진보도 위반 4건(7.4%), 사실보도와 객관성 위반이 각 2건(3.7%), 보도제

[표 4-22] 불공정선거보도 심의·조치

(단위 : 건)

구 분	계	%	조 치 내 역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공정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합 계	54	100.0	1(1.9)	20(37.0)	21(38.9)	4(7.4)	8(14.8)
공정성·형평성	18	33.3	-	7	10	1	-
불법광고·홍보	10	18.5	-	7	3	-	-
여론조사	8	14.8	-	2	4	2	-
사진보도	4	7.4	-	2	1	1	-
객관성	2	3.7	-	2	-	-	-
사실보도 등	4	7.4	1	-	3	-	-
위반없음	5	9.3	-	-	-	-	5
이유없음	3	5.5	-	-	-	-	3

주, ()안은 조치내역별 구성비임.

[표 4-23] 언론사 유형별 조치내역

(단위 : 건)

구 분	계	%	조 치 내 역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공정정보도 협조요청	
합 계	46	100.0	1(2.2)	20(43.5)	21(45.6)	4(8.7)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소계	31	67.4	1	12	16	2
	중앙인터넷 신문	13	28.3	-	5	6	2
	지방인터넷 신문	6	13.0	-	2	4	-
	지역인터넷 신문	12	26.1	1	5	6	-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소계	9	19.5	-	4	4	1
	중앙신문	2	4.3	-	-	2	-
	지방신문	2	4.3	-	1	1	-
	지역신문	4	8.7	-	2	1	1
	중앙잡지	1	2.2	-	1	-	-
포털사이트	중앙포털사이트	5	10.9	-	4	-	1
기타	중앙기타 언론사	1	2.2	-	-	1	-



목 위반 및 후보자 비방이 각 1건(1.9%)이었다.([표 4-22])

언론사 유형별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총 46건 중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31건(67.4%),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9건(19.5%), 포털사이트 5건(10.9%), 기타 언론사 1건(2.2%)이었다.([표 4-23])

제5절

공명선거 추진활동



대언론활동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획보도

이번 지방선거는 제17대 총선시의 공명선거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중심의 선거로 이끌기 위해 선거초반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기획공보를 추진하여 선거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선거였다.

특히, 역대 지방선거의 흐름을 분석하고 과태료 50배 부과제도와 최고 5억원 신고포상금제, 인터넷실명제, 참 공약선택하기(매니페스토)운동 등 선거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자료제공으로 위원회가 선거분위기를 주도함으로써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선거분위기를 수시 파악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품·향응제공, 공천헌금 관련 주요적발사례를 중앙과 시·도위원회가 공동으로 언론에 제공하여 보도되



게 함으로써 정당·후보자·유권자 등에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독도를 비롯하여 금강산지역 및 개성공단 근무자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부재자 투표상황 등을 취재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지방선거에 관심이 낮은 국민들의 자연스런 참여를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시연회 장면과 투표일 투표하는 모습을 국내·외 언론사에서 취재·보도하게 함으로써 재외 한국인의 참정권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의 위상 정립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편, 방송사별 프로그램현황 및 PD·작가 등 그동안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해당 프로그램의 컨셉에 맞는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취재에 적극 협조하여 담당부서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방송에 출연, 생생한 공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치포털사이트 운영, 선거부정감시단활동상황, 1인 6표제 등 변화된 선거환경을 집중 보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더해, 이번 지방선거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관심사안들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답시리즈와 설명자료를 중앙일간지에 고정 게재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한 공명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 기고문을 일정에 따라 게재하여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참공약선택하기(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을 위해 ‘국민대토론회’, ‘정책선거 실천협약식’ 과 가이드라인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그 결과 선거기간 중 시·도지사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각 언론사가 표준화된 매니페스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보도하도록 유도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시·도위원회에서도 중앙위원회와 공조하여 대 언론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체적으로 지방 및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대담·토론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보도자료 제공, 기고·투고 등을 통하여 위원회 활동상황과 선거정황, 개정된 정치관계법 등을 수시로 보도되도록 활발한 공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주도하였다.

(2)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자료 발간·제공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 위원회의 활동상황이나 의지 등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e-선거정보」를 작성하여 총 5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55회에 걸쳐 발송하는 한편,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함으로써 언론과 학계 종사자 등 e-mail 수신자에게는 중요한 선거정보로, 각급 위원회 직원에게는 선거관리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발송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과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각급위원회에서도 중앙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에 당해 시·도 상황을 부가하여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각급위원회 위원, 정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후보자, 언론사 기자 등 여론 주도층 8만여명에게 선거관리보를 2회에 걸쳐 발송하여 선거관련 정보 및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렸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위원회의 공명선거 의지를 전달하고 확산시킴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지도 받지도 않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50배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영상 제작하여 교육이나 강의 등에 활용토록 함은 물론 지역 및 유선방송사에 제공하여 수시 방영되도록 하여 금품·향응에 의한 혼탁한 선거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역대 지방선거정보와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등을 담은 취재수첩 3,000부를 제작하여 중앙 및 지방언론사에 사전 배부함으로써 취재 기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



을 얻기도 하였다.



대국민 홍보

(1) 홍보추진 방향 및 성과

우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거일을 ‘아름다운 날(Beautiful Day)’로 명명하고 국민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선거홍보가 **Beautiful Day** 브랜드로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포상금 및 과태료제도, 선거연령 인하(19세), 1인 6표제, 중선거구제 및 기표방법 등을 방송·신문 등 매스미디어 및 인터넷 등을 이용 적극 홍보함으로써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 3회 지방선거에 이어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거라는 언론 등의 우려로 티저광고 도입, 즐거운 선거콘서트 제작, 월드컵축구 국가대표 부재자투표 실시 등 기존의 선거홍보와는 다른 차별화된 홍보방법을 도입하여 51.6%라는 투표율을 달성함으로써 하향 곡선을 그리던 투표율을 반등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2)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 일관된 메시지 전달을 위한 ‘통합홍보(IMC)’ 집중 실시

‘선거는 아름다운 것이다’(떳떳하게 정책으로 경쟁하는 후보자가 아름답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아름답고, 선거종료 후에 승자와 패자가 화합하는 선거문화가 아름답고)



답다)라는 의미로 공공조직으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Beautiful day**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여 모든 홍보전략과 방법을 단일 컨셉으로 집중하는 통합홍보(IMC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를 전개하여, 『5월 31일은 **Beautiful day**』라는 하나의 슬로건 아래 TV·라디오 광고, 포스터, 리플릿, 인터넷 홍보, 다양한 시청각 매체, 각종 시설물·인쇄물 등을 통해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연스런 참여를 유도하였다.

■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는 ‘감성홍보’ 구사

공익광고 사상 최초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티저광고(Teaser Adversting)도입 및 국내최고의 톱모델인 문근영과 김주혁이 출연하는 광고로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시청률 1위의 개그프로그램인 KBS ‘개그콘서트’ 제작진과 손잡고 개그맨 33명이 총 출연하는 ‘즐거운 선거콘서트’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유명 영화 명장면을 패러디한 ‘영화장면 이용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선거홍보의 색다른 묘미를 제공하였고, 각계를 대표하는 유명인사와 스타 100인이 출연한 투표참여 호소 영상물을 제작·홍보함으로써 잔잔한 감동을 이끌어 냈다.

■ 민간 협찬·협조를 통해 ‘홍보규모의 확대’ 실현

부족한 홍보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활용하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와 SKT, KTF 등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협찬 홍보를 추진한 결과 배너광고, 문자메시지(1,560만 명) 및 e-mail(770만 명) 발송을 무료로 실시하는 효과(23억 원 상당)를 거두었으며, 선거홍보 광고를 상영하는 CATV, DMB, 옥외 전광판업체 등에서도 집행 광고분 외에 추가로 많은 물량의 광고를 무료 상영하는 한편, 전광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 전국 행정기관, 대학, 금융기관, 대형 할인점 등에서 위원회 제작 광고·홍보영상을 무료 상영함으로써 홍보효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 일석삼조의 3-WIN 홍보 추구

유권자(국민 : 참여의식 신장)-참여그룹(기업·단체 : 사회공헌기회 확대)-선관위(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3-WIN 홍보를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협찬·후원으로 TV광고와 각종 홍보영상을 확대 방영하고 7개 종단의 종교단체 지도자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채택하는 한편 대한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부재자 투표참여를 추진하였으며, 국내 종자회사의 협찬을 통해 미아사진이 게재된 채소씨앗 10만 봉을 제작하여 투표참여 리플릿에 동봉·배부하는 등 기업체·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온-오프라인 홍보의 입체적 전개로 홍보효과의 극대화

오프라인상에서 제작된 모든 홍보물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포탈 사이트(ePOL)에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담은 홍보전용 섹션 페이지 ‘아름다운 유혹 ⑨’를 개설하여 네티즌의 자연스러운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시중 대형포탈사이트와 공동으로 후보자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과 함께 투표소 찾기 이벤트, 선거상식 퀴즈 이벤트, 패러디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홍보사업들을 TV광고, 신문광고, 포스터, 리플릿 등에도 홍보를 병행하는 입체전략을 구사함으로써 920만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네티즌의 방문을 이끌어냈다.

(3) 각종 매체·계기 이용 홍보

■ 언론매체 이용 홍보

‘TV·라디오 광고’는 톱스타 문근영과 김주혁의 출연과 민간 광고기법(티저광고)의 과감한 도입 등 새로운 시도로 국민의 흥미를 유발시켰고, 개그와 영화를 접목시켜 만든 「즐거운 선거콘서트」 및 「영화 패러디 광고」는 시청자로부터 신선하다는



반응을 불러왔으며, 선거관련 프로그램(KBS ‘아름다운 선택, 한 표의 힘’) 제작을 지원하여 1인 6표, 중선거구제 등 개정선거법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종합일간지, 무가지 등을 이용하여 신문광고, 이벤트, 홍보대사 칼럼 게재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유권자·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정치포탈사이트(ePOL) 운영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에게는 사이버선거운동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 정치포탈사이트(ePOL)는 다양한 이벤트 및 검색포탈 사이트 배너광고 등의 홍보로 순 방문자수가 지난 17대 총선보다 2.5배 정도 증가된 918만명을 기록하였고, 정치포탈사이트의 모든 후보자 정보와 콘텐츠를 검색포탈사(7개), 언론사(7개), 방송사(3개), 이동통신사(2개) 등 총 20개사에 제공하여 운영기간 중 총 4,500여만명이 방문하여 신뢰성 있는 선거정보 제공처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고 ‘후보자 정보 검색·비교’ 시스템, ‘투표소 찾기’ 기능 및 ‘사이버 투표절차’ 등을 제작·서비스하여 네티즌과 언론으로부터 매우 유용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인터넷·모바일 이용 홍보

홍보섹션 ‘아름다운 유혹¹⁹’ 개설·운영

TV광고, 즐거운 선거콘서트, 유명인사 영상메시지, 월드컵축구 국가대표 부재자 투표 홍보영상, 웹툰 등 바른 선거 및 투표참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정치포탈사이트의 서브페이지로 구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NAVER, Daum 등 검색포탈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에 링크 배너를 게시하여 다수의 네티즌들이 정치포탈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온라인 이벤트 및 인터넷 광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 제고를 위하여 ‘모범유권자상 시상’ 등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620,469명의 네티즌 참여를 이끌어 냈고, 선거일전 5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NAVER, Daum 등 주요검색포털사이트 초기화면 등에 배너 게시 및 키워드광고, 텍스트표출 등의 인터넷 광고를 전개하였으며, 검색포털사이트, 정치포털사이트, e-선거정보 등의 유권자 회원들에게 선거관련 정보 제공을 내용으로 e-mail을 발송(1,180만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모바일 이용 홍보

선거일전 1개월 동안 위원회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3,500여명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에 TV광고(투표참여- 문근영편)의 음원을 활용한 투표참여 모바일 광고를 실시하였고, 선거일전 2일부터 선거일까지 SKT, KTF 등 이동통신사로부터 협찬(4억 7천만원 상당)을 받아 19세 이상의 휴대전화 가입자 1,560만명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SMS를 집중적으로 발송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유도하였다.

■ 인쇄매체 이용 홍보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포스터(5종 180,000매)를 제작하였고, 국민의 관심을 얻기 위해 홍보대사(비, 장나라)·일반모델을 두루 활용하고 Beautiful Day 슬로건을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포스터·리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1인 6표, 선거연령 인하 등 새롭게 바뀐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미아사진이 게재된 채소씨앗 10만봉을 제작하여 투표참여 리플릿(100,000매)에 동봉하여 배부함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각종 계기를 이용한 홍보

월드컵 축구국가대표팀 부재자투표 실시

월드컵 축구에 대한 관심도에 반비례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월드컵의 '주인공'인 대표팀 선수의 투표참여를 추진하여 선수



전원과 코칭스태프 등 35명의 부재자 투표를 성사시켜 각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 매체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 소속 7대 종단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2006. 5. 9) 하여 종교인이 솔선하여 선진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12개 종교신문에 호소문을 게재하여 종교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선거 실현운동을 전개하였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홍보대사(장나라, 비, 홍명보)의 호감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TV광고, 포스터, 인터넷 각종 콘텐츠, 래핑광고의 모델출연과 함께 바른 선거 및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영상 촬영, 언론인터뷰, 기고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모든 홍보대사가 투표참여에 솔선하는 모습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새내기 유권자 홍보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져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는 19, 20세 새내기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신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인기만화 『궁』의 캐릭터를 모델로 신문광고, E-카드를 제작하여 스포츠신문 등 11개 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유명포탈사이트 회원 중 19, 20세 새내기 유권자 53만명을 대상으로 E-카드를 발송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회원 23만명에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언론 및 새내기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4) 홍보실적

[표 5-1] 언론매체·간행물 등 이용 홍보

계	텔레비전·라디오	CATV·유선방송	신문·잡지 (무가지 포함)	생활정보지· 반회보 등
613,922	24,068회	457,516회	8,787회	123,551회

[표 5-2] 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홍보

계	E-mail· WOM 발송	온라인 이벤트	배너·팝업 등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등 이용홍보	유·무선 전화 이용	유·무선전화 통화연결음 설정	기 타
80,767,330	11,825,048통	620,469명	3,825회	47,077,540명	21,191,475통	17,554통	31,419회

[표 5-3] 인쇄매체 이용 홍보

계	포스터	리플릿·전단	선거소식지· 홍보책자	공문·공한문	외부기관·단체 간행물	기 타
8,469,584	251,868매	3,820,749매	82,735부	407,021부	3,058,574부	848,637건

[표 5-4] 시설물 이용 홍보

계	현수막	선전탑·현판 등	지하철·버스 광고물 부착	홍보용품	기 타
1,228,777	47,723매	1,128개	11,726매	1,140,548개	27,652건

[표 5-5] 시청각 매체 이용 홍보

계	영상제작	영화관	전광판·PDP	영상차량· 멀티비전	차량방송	기관·단체 구내방송	기 타
71,809	49건	204개	22,527개	44대	7,383대	38,502개	3,100건

[표 5-6] 각종 계기 이용 홍보

구 분	계	캠페인	대담·토론회 등	설교·강론 등	강연	방문·구전 홍보	기 타
회수(회)	96,564	722	1,099	2,019	2,022	90,268	434
인원(명)	1,390,399	238,769	25,179	310,260	508,721	276,050	31,420

[표 5-7] 학교교육을 통한 홍보

구 분	계	가정통신문	알림장	글짓기 포스터 등 과제	투·개표참관	기 타
학교수(교)	10,052	4,150	1,282	636	2,421	1,563
인원(명)	3,881,008	1,972,045	727,441	264,540	324,040	592,942

(5) 시·도 특화사업

위원회	특화사업명	일시·장소	대상인원	주요 홍보내용
서울	걷기축제와 연계한 투표참여 홍보бус 운영	• 4. 29 • 올림픽공원 한얼광장	• 2,000명 • 참가선수, 일반인 등	• 새로운 제도(1인 6투표, 기표방법 등) 체험을 위한 모의투표소, 홍보부스 운영
부산	투표다짐 배지 제작·활용	• 4~5월	• 2,000개(명) • opinion leader 및 선거관계자	• 배지착용으로 투표참여분위기 조성 ※ 방송아나운서 등 언론관계자, 시민단체 및 후보자·선거관계자
대구	프로야구 경기를 이용한 「공명선거의 날」 행사	• 5. 14 • 대구시민 운동장야구장	야구시청자 및 관중	• 경기장 외부 - 공명선거실천동참 서명운동, 공명 이페스페인팅 • 경기장 내부 - 시위원회위원장시구, 홍보영상물 상영 등 '공명선거의 날' 선포식 행사
인천	개그맨 염경환 공명선거홍보대사 위촉활동	• 4. 4 • 위원회회의실	• 100명	• 위촉패전달, 공명선거거리 기원 제막식 • 염경환 모델 포스터제작, 사인회 개최
광주	외국인대상 투표시연회	• 3. 14 • 화교소학교	• 외국인 60명	• 선거권이 부여된 외국인의 투표시연회 개최
대전	지역포탈사이트를 활용	• 5월중	• 네티즌	• 대전사랑(love.daejon.kr) 회원 15,000명에게 E-mail 전송 • 온라인퀴즈이벤트(3회), 배너광고, 동영상 게재 등
울산	공명선거캠페인 방송	• 4~5월	• 시청자	• 제작 : 총 7편(TV 3, 라디오 4) ※ 공동제작 : KBS, MBC, CBS, MBC • 방송 : 총 1,206회
경기	1인6투표, 신형기표용구 홍보캠페인	• 5. 14 • 수원월드컵 경기장 입구	• 축구팬 1,000여명	• 대형모형투표용구, 투표함, 신형기표용구 등 전시회 개최
강원	'투표부터하고 봅시다' 캠페인	• 5. 27 • 춘천명동일원	• 5,000여명	• 영화 패러디포스터 전시, 기표용구시연 등 ※ 협찬 : 지방신문, 시민단체
충북	향토기업제품을 이용한 투표참여·정책선거홍보	• 4. 19~5. 31	-	• 소주뒤틀면 라벨에 투표참여 홍보문구 첨부 → 실생활속에서 유권자의 친근감 제고 등 ※ 수량 : 5000만 병, 생산장면 언론 홍보



위원회	특화사업명	일시·장소	대상인원	주요 홍보내용
충남	'공명선거거리' 조성	• 4. 20~5.31 • 주요 거리	-	• 선거일, 투표참여안내 배너(1,566매)를 주요거리 게시
전북	도민과 함께하는 5. 31 지방선거 공연 개최	• 5. 5, 5. 28 • 전주한옥마을, 동물원	• 800여명	• 선거관련 창작극, 지방선거퀴즈이벤트, 관악 5중주 공연
전남	공명선거 3939주유소	• 3. 1~5. 31	• 시·군 22개 주유소	• 운영기간중 현수막, X-배너게시 • 매월 3. 9일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경북	독도부재지투표 실시	• 5. 25	• 55명	• 독도거주민 등 시연을 통한 투표참여 언론 홍보 • 독도수호시 낭독 등 기념행사
경남	공명선거 공동기획 프로그램 제작·반영	• 4. 7~ 5.31	• 시청자	• MBC TV 「애프터 뉴스」 등 8회 방영 • 라디오 : 「라디오 광장」에 16회 방송
제주	새내기 유권자대상 투표참여 캠페인	• 5. 12	• 제주관광대 300명	• 홍보리플릿, 투표참여퍼포먼스, OX퀴즈 등 ※ 후원 : 제주시민연대 등



공명선거실천 범국민 참여분위기 조성

(1) 위원장 담화 발표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등록시작일 전일인 2006년 5월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모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06년 5월 30일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내 고장 발전과 우리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질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 이웃과 가족과 함께 투표소에 나가 투표로써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여주자며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호소하였다.

공명선거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31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4년 동안 지역살림을 꾸려나갈 3,867명의 주민대표를 뽑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지고 주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이 과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를 해결할 능력과 자질은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물론 재산내역과 세금납부 실적, 병역사항, 전과여부 등이 실린 선거공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배달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연설이나 토론 또한 수시로 볼 수 있고 선거관리 위원회나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어느 정당이 내 고장 발전과 우리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더 이상 득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품과 음식물로 소중한 주권을 사려는 시도 또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 불법이 용인되거나 감출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었고 선택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참 공약으로 당당하게 경쟁해야만 선택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선거가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선거의 모습도 국력에 걸맞은 모습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선거를 떳떳하게 이기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선거, 모두가 승자가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합시다.

5월 31일, 우리의 희망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모두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지열

투표참여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치열했던 선거운동은 오늘로서 막을 내리고 유권자의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들을 잘 따져 보셨습니까?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누가 진정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선거공보를 펼쳐 보십시오. 아니면 인터넷을 열어 보셔도 됩니다.

이제 지연이나 학연을 따지지 말고 신중히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표는 내일 아침 6시에 시작되고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투표소는 대부분 여러분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투표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른 아침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와 투표해도 좋고 외출하는 길에 잠깐 들러 투표해도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투표소부터 먼저 들러 투표하여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내 고장 발전과 우리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질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하루일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등산도 낚시도 여행도 좋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부터 마치고 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이웃과 가족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소에 나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일꾼을 뽑읍시다.

투표로써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지열

(2) 종교·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지원

종교·시민단체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민·종교단체용 활동자료집 제작배부, 홍보용품 제작지원,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토론회 개최지원,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캠페인 개최지원, 공명선거추진 종교·시민단체 소속회원에 대한 연수, 각종 행사장소 제공 등 물심양면으로 권장·지원하여 정책선거 실현에 기여하였다.

[표 5-8] 정책선거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

단체명	토론주제
공명선거추진협의회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지방선거와 민주시민교육
한국시민윤리학회	5.31 지방선거와 시민윤리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인 참정권 확보 및 편의도모

[표 5-9]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캠페인 홍보용품 지원

(단위: 매, 개, 장)

단체명	행사내용	후원물품	후원수량
합계		30종	200,972
공 선 협	투표참여 자전거캠페인	현수막 외 2종	444
	투표참여 선언문 발표	티슈 외 1종	4,000
바 선 모	투표참여 전국동시캠페인	리플릿 외 1종	40,000
	정책선거실현 후보자서약서	서약서 외 1종	65,000
SFC, 공정연대	투표참여 캠페인	포스터 외 5종	66,100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	스티커 외 4종	13,622
바른사회시민회의	"	티슈 외 3종	5,005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리플릿 외 2종	3,501
법률소비자연맹	"	리플릿 외 2종	3,300

[표 5-10] 시민·종교단체용 공명선거추진활동자료집 제작·배부

(단위: 권)

자료명	배부수량
시민사회단체 공명선거추진활동	7,500
종교단체 공명선거홍보	33,000



제6절

정책선거 추진활동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돈선거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와 비방·흑색선전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그 결과 국민통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키며, 국민간·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정책본위의 선거로 승화시켜 선거는 정책에 의한 선택이고 정책추진 역량과 자질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거의 본질 또는 핵심인 점을 들어 5·31지방선거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과 의지를 모아 정책 프로젝트인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을 언론·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도입·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선거사상 처음으로 시작한 매니페스토운동의 확산을 통해 정책선거를 반드시 일구어 나가기 위하여 각급 위원회 구성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혼신의 노력을 펼친 결과 정책 중심의 새로운 선거문화의 지평을 열었다.

▶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추진

(1) 인프라 구축

■ 매니페스토 토론회 개최

2006년 2월 23일 중앙선관위와 531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BS(중계방송)와 SBS,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정책선거 정착과 매니페스토 운동 확산방안 모색’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당 정책위의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나아가 후보자 경선단계부터 매니페스토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토론회를 계기로 매니페스토운동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

또한, 4월 5일에는 중앙선관위와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정당·입후보예정자가 매니페스토 참공약 준비사항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주요방송사와 메이저 신문사의 후원을 이끌어내 토론배경 및 결과가 언론에 집중 보도됨으로써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 추진센터 설치·운영

매니페스토운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정책선거 추진에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정책정당자문위원 등 전문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2006년 1월 1일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정책정당지원팀’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센터’를 임시기구로 편성·운영하였다. 추진센터 설치에 중앙위원회를 비롯하여 16개 시·도위원회와 집중지원선거구인 27개 구·시·군위원회 등 총 44곳이 설치·운영되었다.



중앙위원회의 경우 추진센터장은 정당국장, 부센터장은 정책정당지원팀장이 겸임하고 추진센터 내에는 총괄기획팀, 정책의제개발팀, 대외협력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편성·운영하였다.

인력구성은 주무부서인 정책정당지원팀, 정책정당자문위원단, 매니페스토추진 단체와 방송·신문사 등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족인력은 정당국내에서 일부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였다.

시·도위원회에서는 중앙과 유사하게 시·도 단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센터 내에는 추진반과 홍보반 등으로 편성·운영하되, 추진센터장은 시·도사무국장이 담당하고, 추진반장은 관리과장이, 홍보반장은 홍보과장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6개 선거를 동시 관리해야 하는 지방위원회의 고유사무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사업이 맞물리게 되면서 업무 과중이 우려되었으나 사업의 기능에 따라 추진센터내 조직의 역할을 적정 분담함으로써 매니페스토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주기적인 간담회와 업무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 분석 및 향후 방향을 조율하고 대처하는 기구역할을 하였으며, 매니페스토 추진단체와 언론사를 추진센터내 네트워크화하여 실시간 추진상황 파악 및 보도 효과를 고양할 수 있었다.

매니페스토 추진센터는 그 한시적 설치에 따른 한계성이 있는바,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상시조직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다.

■ 캐스터(Caster) 위촉·활용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외래어로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며, 자연스러운 확산을 위하여 국민들과 친숙한 이미지를 갖춘 인사를 통하여 매니페스토 홍보가 필요하였다.

매니페스토의 특성상 일반 홍보대사와 차별화를 주기 위하여 캐스터(caster)를 위촉하게 되었으며, 전문성·책임성을 요하는 매니페스토 컨셉과 어울리고 국민적 인지도, 신뢰도, 중립성 등을 고루 겸비한 방송인을 섭외하여 ‘매니페스토 캐스터’로 위촉,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2006년 3월 8일부터 방송인 백지연(前 MBC 9시 뉴스 앵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캐스터’로 위촉하였으며, 이에 지방위원회(부산, 대구, 전북, 경북)에서도 지방언론사의 아나운서를 매니페스토 캐스터로 위촉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 진행, 매니페스토 공익광고와 홍보영상물 출연, 캐스터 자격의 언론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 정책정당자문위원단 확대·개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 실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였고 정당의 정책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당정책지원자문위원단’을 자문단 격에 맞도록 ‘정책정당자문위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정책적 자문활동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인, 학계 등 인사를 섭외하여 확대·개편하였으며, 그 구성은 정당·정치인은 의석을 가진 정당별로 1인씩 5인, 학자는 3인, 언론인은 2인, 시민단체는 1인, 경제인은 2인 총 13명으로 구성하였다.

자문단은 정책적 이슈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자문회의 개최, 서면회의, 온라인 등을 통하여 사안별·시기별·쟁점별로 자문을 하고 있다.

특히, 정당의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정당정책비교시스템(프로그램)에 게시·공개할 정책적 이슈의 개발·선정 과정에 심도있는 자문을 거치는 등 정책정당 및 정책선거 구현 사업이 정당성을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명실공히 정책선거 자문기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 언론·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매니페스토’ 추진단체와 긴밀한 공감대 형성

시민단체의 구성원들과 여러 차례 업무협의회를 갖고 5·31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과 방향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과거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네거티브적 운동으로 인식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갔으나 이번 선거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이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매니페스토 추진단체’의 결집(네트워크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단체의 후보자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사업 가운데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우리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페스토 추진단체의 영역으로 평가와 검증 주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각종 계기를 통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시민단체가 후보자 공약을 평가할 경우는 선거 종료 후에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부득이 선거기간중 평가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후보자별 순위평가가 아닌 매니페스토 요건의 적합성, 공약 이행시 보완점 등 ‘총괄내용’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가 없도록 안내하였다.

언론사에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공약 관련 보도 권장

중앙위원회에서는 중앙언론사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선거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지방위원회에서도 중앙위원회의 추진방향에 맞춰 지방·지역언론사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기획보도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정당·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내용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책자형 선거공보 등 인쇄물과 토론회, 연설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국한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매니페스토 확산을 위한 공모전 추진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하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와 취지가 다르게 이해되어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우리말을 공식적으로 결정·공표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매니페스토에 대한 우리말 찾기 공모전을 실시, ‘참공약 선택하기’를 결정·공개함으로써 매니페스토에 대한 용어 통일을 기하였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공모창’을 통한 인터넷 접수를 받았으며, 각급 위원회에서 위원회 직원과 가족, 주변 인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공모실시 결과 1,270명/3,301편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우수 2편, 장려 10편, 아차상 21 편을 선정·시상하였으며, ‘참공약 선택하기’를 매니페스토의 우리말로 결정·공개하여 언론, 시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였다.

‘참공약 선택하기’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각종 홍보물 게재 및 언론을 통한 기사·보도시 함께 사용하여 국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홍보효과를 배가하였다.

(2) 집중지원 선거구 지정·운영

■ 집중지원 선거구 지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예산, 인력, 시민단체의 활동 여부 등 여러 가지 필요충분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동시지방선거의 ‘업무량’ 등으로 인해 모든 지역에서 추진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된 지역을 선별, 집중지원선거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집중지원 선거구위원회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일반사항을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외에 다른 선거구위원회와 달리 협약식 개최, 후보자 선거공약 공개 등 시범적 성격의 위원회인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집중지원선거구로 지정된 사실과



[표 6-1] 지정내역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서울	송파구, 강북구	강원	춘천시, 태백시
부산	해운대구, 사하구	충북	청주시, 제천시, 증평군
대구	동구	충남	아산시, 청양군, 예산군
인천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광주	동구, 광산구	전남	순천시, 나주시
대전	동구, 대덕구	경북	포항시, 김천시
울산	중구	경남	창원시, 진주시
경기	평택시, 용인시	제주	기초단체장 선거 없음

후보자가 해야 할 일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광역단체장 선거구는 당연지정에 포함하였으며,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인구수, 도시형태(기업형, 낙후, 도농통합형) 등 지역개발이 시급하거나 유익한 정책개발이 있는 선거구를 중심으로 시·도별 1~3개 선거구를 지정·운영키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을 시·도위원회에 시달하고 집중지원선거구 대상을 보고받아 중앙에서 검토하여 매니페스토 추진사업에 대한 위원회 자체 여건이 구비되고 예비후보자 동의를 가능하거나 지방(로컬)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결성된 지역 위주로 선정하였다.([표 6-1])

■ 집중지원 선거구 운영

중점사업 지정

공천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부분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광역단위 협약식을 이미 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집중지원선거구 지정이 늦어져 해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들을 참여시키지 못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협약식을 개최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집중지원선거구 단체장 후보자에 대하여 협약식, 간담회 등을 통해 매니페스토 실천 선거공약을 제출받으면서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매니페스토 실천 선거공약 제출서』를 받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였다.

후보자가 가장 선호하는 우선순위 공약(광역단체장 후보자는 10건,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5건)을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제출된 공약은 후보자 스스로 중앙선관위 정치포탈사이트 ‘후보자정보(정견/공약)’란에 입력토록 권장하는 한편, 해당 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나 시민단체·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은 책자형선거공보 면수의 2/3 이상 게재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투표안내문 발송용 봉투(상단중앙)에 ‘참공약 선택하기-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합시다’ 문안을 인쇄하여 매세대에 발송하였다.

추진방법

집중지원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 전원이 협약식에 참여, 협약문에 서명토록 안내하였고, 중앙위원회에서 제작·배부한 『매니페스토 실천 가이드북』과 『좋은 정책자료모음집』을 배부하는 등 정책공약 개발 초기단계부터 매니페스토에 의한 공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보자가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적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책경쟁 등 포지티브적 선거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활동도 병행하였다.

특히, 입후보예정자가 정책공약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공서·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제공시에는 모든 후보자에게 신속·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는 등 공약개발에 필요한 정보부족 현상을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추진결과

중앙에 이어 16개 시·도위원회와 27개 구·시·군 집중지원선거구위원회가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협약식에는 후보자 1,552명, 정당대표 120명, 기타 4,356명 등 총 59,864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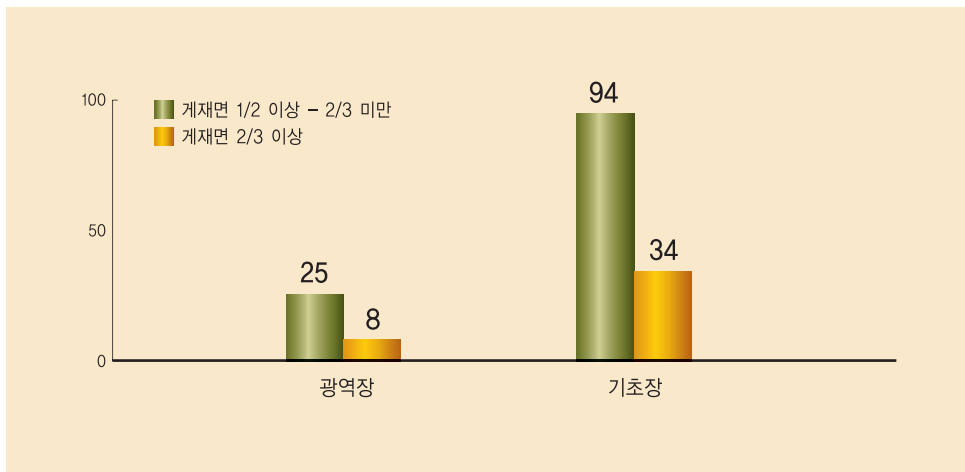


[표 6-2] 매니페스토형 공약공개 및 게재

(단위 : 건)

언론사에 후보자 공약 공개·보도						선거공보 매니페스토 공약게재 분량			
후보자/신문사				후보자/방송사		게재면1/20이상 ~ 2/3미만		게재면2/3이상	
광역장	기초장	시의원	구의원	광역장	기초장	광역장	기초장	광역장	기초장
65/52	349/117	2/1	35/1	68/43	217/52	25	94	8	34

[그림 6-1] 선거공보 매니페스토 공약게재 분량



집중지원선거구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약을 위원회 홈페이지 정당정책 비교 시스템의 '정책공약' 메뉴의 '후보자공약' 란에 일제히 게시·공개하였으며, 게시된 공약후보자와 건수를 보면 시·도지사 후보자 66명을 포함하여 총 161명, 1,135건의 공약이 게시됐다.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후보자 공약의 보도사례와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게재분량을 보면 [표 6-2]와 같다.

(3) 정당·후보자의 참여 분위기 조성

■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 개최

정견·정책중심의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당·후보자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면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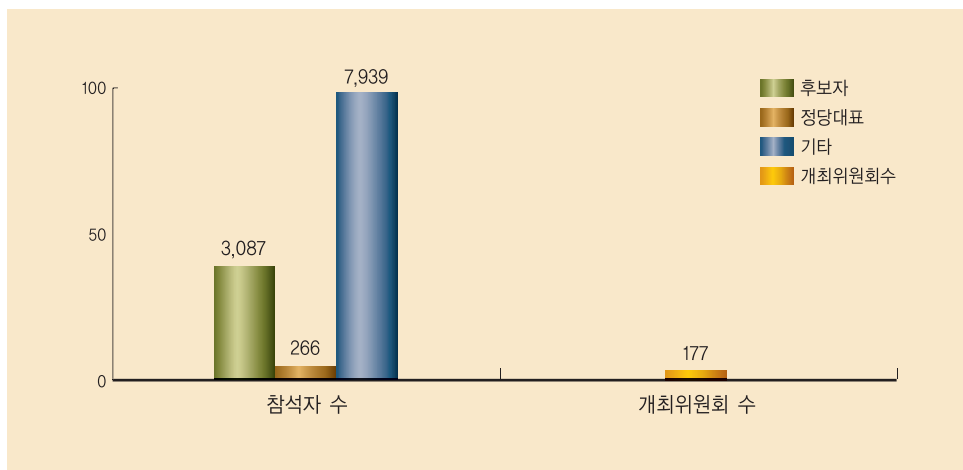
3월 16일에는 5당 대표와 선관위원장, 531매니페스토추진본부 대표가 참여 하는 중앙단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개최하여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을 촉구하였고, 그 후 집중지원선거구 외에 177개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협약식을 개최함으로써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출발점을 예고하였다.

시·도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의 후원을 얻어 협약식을 추진하되, 시·도별로 후보자의 확정시점이 다르므로 가급적 4월 1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다만 시·도위원회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도위

[표 6-3] 협약식 개최

(단위 : 명)

개최위원회 수	추진기간	참석자 수			
		계	후보자	정당대표	기타
177	06. 4. 10 ~ 5. 2	11,292	3,087	266	7,939





원회는 통합개최 하였다.

시·도위원회에서는 매니페스토 집중지원선거구 입후보예정자를 참여케 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문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사전에 서명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약에 따른 이의제기나 물의사례를 방지하였다.

서명한 협약문을 지방방송·신문에 홍보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참여 및 실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표 6-3)

협약식 행사시 로컬매니페스토 추진단체에 공약검증 등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공약검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였으며, 지역방송의 아나운서를 캐스터로 위촉, 협약식 사회진행, 캐스터 한마디, 각종 행사후원 등 다각도로 활용하였다.

또한 위원회마다 행사 전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위시볼(wish ball)행사를 병행하면서 독특한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으며, 지방언론도 자발적 참여하에 방송·신문의 일면 톱기사, 메인뉴스 보도, 녹화방송 등으로 정책선거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 매니페스토 안내 설명회 개최

매니페스토 안내 설명회를 시민단체가 주관·추진할 수도 있었으나 조직력과 관리역량을 갖춘 선관위가 선거법 안내 설명회 등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담·추진하였다.

지방위원회에서는 정당·입후보예정자, 언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4월 28일까지 개최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면서 사무국·과장이 직접 주관하여 매니페스토 실천 후보자용 가이드북에 의거 알기 쉽게 안내하였다.

설명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 내실있게 개최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Man-To-Man' 식 반복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또한 위원회마다 알기 쉽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외국사례 소개, 참가요건, 공약작성 자기진단 활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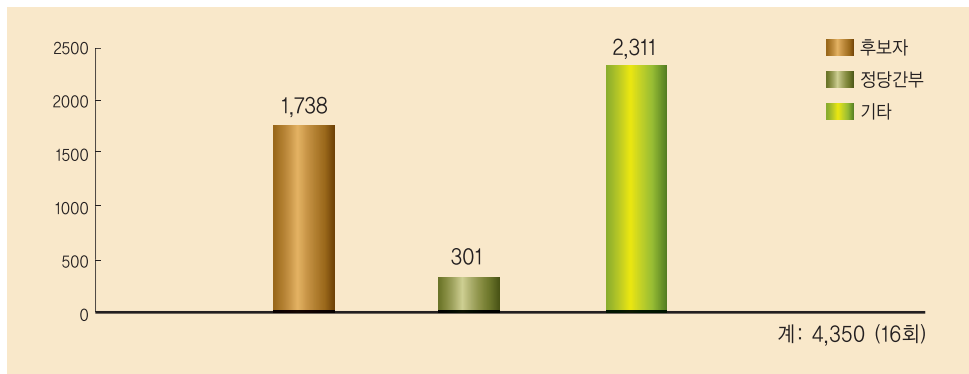
특히, 공약작성에 필수적인 '재원조달' 부분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획·예산담당자를 참여시켜 기획·예산 전반에 관한 설명 및 관련자

[표 6-4] 설명회 개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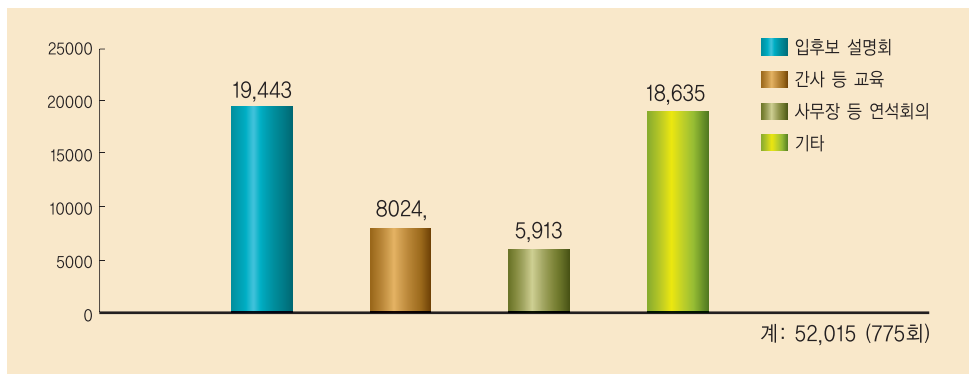
(단위 : 건)

직접 개최				계기 이용				
계	후보자	정당간부	기타	계	입후보 설명회	간사 등 교육	사무장등 연석회의	기타
4,350 (16회)	1,738	301	2,311	52,015 (775회)	19,443	8,024	5,913	18,635

[그림 6-2] 설명회 단독 개최



[그림 6-3] 계기를 이용한 설명회안내



료 제공 기회도 마련하였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 개최를 전·후하여 매니페스토 토론회 또는 강연회를 병행하면서 개최사례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방영되었고 그 이후



에도 지역별로 자체실정과 선거준비일정에 따라 입후보안내 설명회,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등 각종 계기를 이용, 매니페스토 실천 확산을 위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꾸준히 개최하였다.(표 6-4)

후보자들이 공약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의제를 담은 ‘좋은 정책 의제’ 및 ‘공약은행’ 등은 실제 공약 발굴·작성에 필요한 심도 있는 교재로 발간·활용됨으로써 선관위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인식이 과급·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매니페스토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고, 후보자들의 경우 매니페스토 공약작성·방법 등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시간이 촉박하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 매니페스토형 토론회 권장 및 활성화

단체·언론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나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 후보자 쌍방간 또는 다자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가려내는 매니페스토형식에 의한 ‘기능성(機能性) 토론회’를 적극 권장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한 매니페스토형 대담·토론회 실시, 집중지원선거구 후보자 공약 공개 등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어 네거티브선거에서 정책선거로의 의미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흐름에 맞춰 주민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키 위한 ‘주민공약접수창고’를 개설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일부 시·도에서는 시민 패널단에서 관내 구·군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는 지역 의제를 발굴해 후보자에게 묻고 이슈로 삼는 ‘시민이슈토론회’를 진행하거나, 지방신문에 후보들의 핵심공약에 대한 ‘크로스체크’ 결과를 게재하거나 시민단체와 함께 공약검증단 평가결과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4) 유권자의 참여 분위기 조성

중앙위원회에서 제작한 『매니페스토 좋은 정책의제집』 및 『매니페스토 실천 가이드북』, 『홍보리플릿』을 각 배부처에 적기 배부·활용하였고 중앙 및 지방방송·신문 등 언론사를 선정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였다.

고질적인 잘못된 선거관행, 정책선거의 현주소, 외국의 매니페스토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홍보영상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매니페스토 협약식 등 주요 행사시에 상영하거나 각 언론사, 시민단체에 보급·상영하였고, 지방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갔다.

■ 매스미디어 이용홍보

신문·방송광고는 시기별로 광고내용을 달리하여 홍보하였고, 지방위원회에는 지방·지역신문에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도안을 제공하였다.

【중 앙】 방 송 : 4개사/450회(KBS 118회, SBS 106회, TBS 130회, TBN 96회)

신 문 : 11개사, 경제지·무가지·영자신문 등 17개사(2~3면 컬러)

【지 방】 방송광고 3,351회, 라디오 광고 267회, 신문광고 266회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니페스토와 『참공약 선택하기』에 대한 신문광고를 발행부수가 많은 주요일간지와 다른 일간신문을 적절히 배분, 1일 3~4개씩 광고로 국민들과 꾸준한 접촉을 시도했다.

매니페스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아나운서를 출연시키는 새로운 광고방법을 도입, 시청자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영상시설 이용 홍보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용과 ‘각급 위원회 홍보’용으로 나누어 제작·배부하였으



며, 1차용은 3월 16일 5당 협약식 행사시 상영하고, 2차용은 각급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 설명회, 홍보·교육 등 계기시에 상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였다.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한 광고영상물(1종/53초)을 CD에 함께 수록하고 배부된 홍보영상물을 영화관(121회), 전광판(1,796대)에 방영·게시하였다.

제작기간과 예산부족으로 TV광고 제작이 어려워 직접 광고기획하고 편집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배부하였다.

지하철역 PDP 광고는 중앙위원회가 수도권 54개역에 112개 PDP, 458,000여회를 실시하였고, 지방위원회는 지하철 3,840대, PDP 4,025대에 걸쳐 실시하였다.

시기별로 릴레이식 광고를 통하여 매니페스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언론·단체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선거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다.

■ 인쇄물 이용 홍보

중앙위원회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참여 유도를 위하여 리플릿(100,000매)을 제작·배부하였고, “5월 31일 참공약 후보자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세요!”라는 내용의 거리현수막(2,721개)을 제작·게시하여 매니페스토와 투표를 연계한 홍보에 주력하였다.

한편, 지방위원회는 매세대용 매니페스토 안내 전단지(1,787만부)를 각 가정에 발송하고 리플릿(131,300매)과 포스터(20,253매)를 제작·배부 또는 게시하였다. 이외에도 청사현관, 비행선, 마을버스, 전광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 다양한 시설물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캠페인 전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 참여를 위한 자전거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지역 고유축제 이용, 지하철역, 영화관, 서명운동 등 총 348회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5) 공약작성 · 검증활동 지원

■ 가이드북 발간 · 보급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당 · 입후보예정자는 정책 · 선거공약 작성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였고 유권자는 정당 · 후보자가 작성하여 공개한 정책 · 공약을 쉽게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여 학계와 전문가의 협력으로 매니페스토 실천 가이드북을 후보자용과 유권자용으로 구분 · 발간하여 배부 · 활용하였다.

후보자용에는 좋은 공약의 필요성, 조건, 작성절차와 내용, 자체진단표 등을 담아 정당, 입후보예정자, 유관기관, 언론, 시민단체, 여론주도층 등에게 총 25,800부를 발간 · 배부하였다.

유권자용에는 좋은공약 이행, 평가의 필요성, 활용방법 등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된 형태로 작성하여 총 601,000부를 관공서 등 민원실, 경로당, 시민 · 사회단체, 역 · 터미널, 정당 · 국회의원사무소와 각종 계기를 이용, 배부 · 활용하였다.

■ 좋은 정책표준 제공

입후보예정자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의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추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6개 분야(복지, 문화 · 체육, 환경, 건설 · 교통, 주민참여 · 지방자치, 지방행정)로 분류 · 정리하여 좋은 정책의 이념적 아젠다(Agenda)를 제시한 좋은 정책의제를 연구 · 개발하여 3,000부를 책자로 발간, 시 · 도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배부하였다.

■ 공약은행 개설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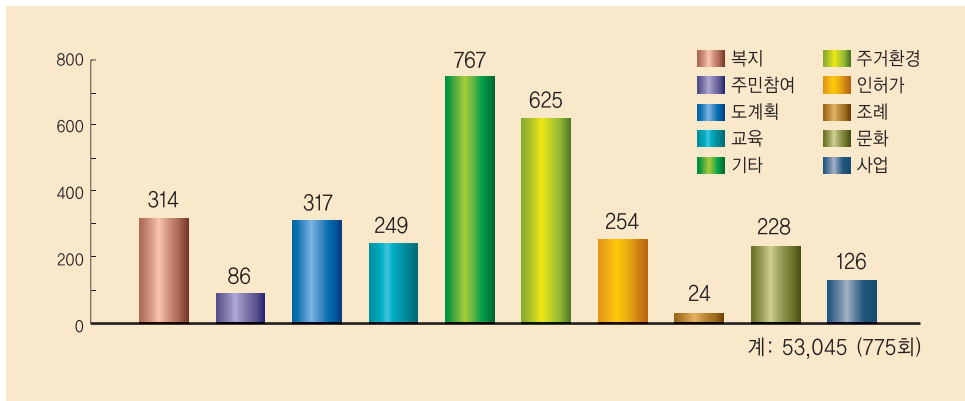
진정한 매니페스토운동의 선결과제로서 자기지역의 유권자들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여 타당성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인스닷컴, 53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와 공동으로 인터넷상에 공약은행을 설립하여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수집 · 활용하였다.



[표 6-5] 공약은행 구분별 공약

(단위 : 건)

복 지	주민참여	도계획	교 육	기 타	주거환경	인허가	조 례	문 화	사 업
314	86	317	249	797	625	254	24	228	126



유권자 자신이 후보자로 가정, ‘가상의 자გი지역발전 공약’을 매니페스토 형식에 의거 제공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지역현안 등을 유권자가 직접 작성, 공약은행에 저장한 정책제안 내용을 후보자가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월 31일까지 총 3,020건이 접수되었다.[표 6-5]

수집된 공약은 시·도단위별로 편집·제작하여 3,000부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보급하였고, 우수제안자 경품제공, 온·오프라인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였다.

한편, 중앙일보에서는 공약은행에 접수된 공약의 시·도별, 분야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수요지도’를 만들어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실천을 선도하였다.

후보자들이 출마지역의 현안사항 및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수렴하여 실천이 가능한 매니페스토 공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언론사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수시 보도를 통하여 매니페스토 공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공약은행을 통하여 제안하고 후보자들이 이를 토대로 공약작성에 실효를 거둬으로써 자연스럽게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적 효용도를 높여나갔다.

■ 선거공약 평가지표 개발·제공

매니페스토에 의한 방법으로 정당·후보자가 공약을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당선된 경우 유권자가 공약검증을 위한 분석틀의 하나인 로칼 매니페스토의 특성을 살리면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문화를 견인할 연구자료로써 평가지표를 연구·발간하였다.

선거공약 평가지표는 한국정책학회가 스마트 평가지표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셀프 평가지표를 연구·개발하였고, 위원회가 이를 구입, 먼저 후보자용 매니페스토 가이드북에 적용하였고 나중에 책자로 발간하여 연구교재로 활용토록 하였다.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작성·제출한 평가지표에 대한 제반권리는 위원회가 소유하고 평가지표 내용은 언론, 단체에서 활용시 위원회 동의를 얻은 후 활용토록 추진하였다.

선거공약평가 지표는 정당·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의 내용, 실현 가능 여부, 실시시기, 합목적성,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선거 후 100부를 제작·발간하여 중앙 및 시·도위원회와 매니페스토 추진단체 등에 배부하여 연구·개발자료로 활용하였다.

■ 단체장 당선자 공약 게시·공개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약을 찾는 유권자층이 증가하게 되고, 선거기간중 집중지원선거구 위주로 공약공개가 이루어져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지만 선거정보 확대 측면에서 언론·학계·유권자들이 모든 후보자의 공약공개를 요구하는 등 선거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약검증에 필수적인 당선자 공약 공



개가 주민들에 대한 협약이라는 점을 볼 때 선거기간중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광역 단체장선거 당선자 외에 기초단체장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제출받아 공개하게 되었고, 유권자가 후보자 공약을 검증 또는 평가하여 다음 선거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모든 기초단체장선거 당선자들로부터 공정성을 고려하여 500자 이내로 제한하여 후보자가 가장 선호하는 우선순위 공약 5건을 『매니페스토실천 당선자 선거공약 제출서』에 의거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하였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사범, 일반 형사범으로 재판계류중인 2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228명 모두 제출받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정당정책 비교프로그램’ 상 정책공약/단체장당선자 공약란에 게시·공개하였다.

(6) 매니페스토 추진단체의 활동

■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개최

임후보 예정자들이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 수립능력을 함양시키고자 매니페스토 아카데미를 ‘531 매니페스토추진본부’ 주관, 위원회 지원 형태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권역별로 개최한 1차 결과 반응이 좋아 개최 요청에 따라 강릉과 춘천, 익산, 안산, 속초 등 작은 지역단위에서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높여나갔다.

■ 후보자 공약 평가활동

후보자 등록을 2주 앞둔 시기에 한국정책학회(SMART), 한국지방자치학회(SELF)에서 개발한 지표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평가단 및 각 지역평가단들에 의해 완성된 ‘531매니페스토 평가지표’에 의거 단체장 후보들의 매니페스토 검증·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지방신문과 방송, 자치시민연대가 주축이 된 ‘지역매니페스토 검증단’은 유권자



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도록 ‘놀자, 매니페스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17가지의 복잡한 공약평가 잣대를 쉬운 말로 풀어내 10가지로 압축한 평가표에 유권자가 공약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또한 후보자 정책공약을 ‘갖춘 공약’, ‘못 갖춘 공약’, ‘평가불능공약’ 3가지로 구분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후보자들에게 미흡한 공약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유권자들에게는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하도록 호소하였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동일한 공약을 두고 평가단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거나 엇갈린 평가가 나온 사례가 있어 유권자가 혼선을 초래하였지만 이는 시민단체마다 평가지표가 각기 다르고 지향점(참공약, 헛공약)이 다른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유권자가 공감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성이 있는 평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시 개발된 평가지표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단위 매니페스토 추진단체가 결성되고 있으나 대부분 재정적 빈곤으로 실제 활동에 필수적인 사무실 운영비, 자료 작성비, 공약검증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매니페스토 추진단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새로운 포지티브적 시민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낙선·낙천운동과 같은 네거티브 운동을 지양하고 복지·문화·환경 등 삶의 질에 밀접한 정책을 능동적으로 제안하였고, 언론사의 기고·칼럼 등을 통하여 후보자간의 정책대결을 촉구하는 등 유권자의 관심을 자아낼 수 있는 새로운 포지티브적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일찌감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사업의 범위와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정책선거운동에 대한 한계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공명선거추진활동단체의 운용기준’을 마련, 시민단체와 언론에 제시·안내하였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이를 전폭 수용하고 그 한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선



관위와 시민단체가 선거법을 사이에 두고 충돌하였던 과거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시민사회의 모습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7) 매니페스토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 의식조사 개요

중앙선관위는 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과 관련, 매니페스토 운동이 유권자의식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분석하여 매니페스토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니페스토 유권자의식 조사’를 선거 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여 유권자 1,197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지역별·성별·연령별 분포에 따른 할당추출법에 의거 표본을 추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이다.

■ 의식조사 결과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76.7%)이 5.31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다고 밝혔고, 투표를 했다는 응답자 중 지지후보 결정시 ‘소속정당’ (32.6%), ‘인물·능력’ (31.6%)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정책·공약’이 18.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자의 31.5%가 매니페스토운동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매니페스토운동이 ‘영향을 주었다’ (40.7%)는 입장과 ‘영향을 주지 못했다’ (51.5%)는 입장이 반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운동의 정책선거 문화조성 기여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 중 34.4%가 매니페스토운동이 정책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유권자 중 52.4%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매니페스토운동을 알고 있는 유권자와 실천가이드북과 안내 전단지 등을 받은 유권자들은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와 비슷

하게 나타났다.

한편 유권자가 매니페스토운동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당선 후 공약 이행평가’ (24.8%)와 ‘후보자들의 실천공약 제시 노력’ (21.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공약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14.9%), ‘선관위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10.9%)순으로 나타나, 시민단체 및 언론, 선관위의 활동보다는 후보자들의 노력과 활동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개발 · 운영

(1) 개발경과

■ 개발동기

민주국가의 정당은 정책이 그 핵심이나 현실은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이 있어도 각 정당의 정책을 쉽게 비교·평가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부족으로 정당정책에 무관심해지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당에는 정책 이슈와 선거공약을 국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유권자에게는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통해 정책선거를 실현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풍토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인터넷으로 운용되는 정당정책비교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 시스템구축

유권자의 관심유도와 내용의 질을 감안하여 3개 파트로 구성하며, 상호 연동이 가능토록 설계하고 파트별로 Part I : 프롤로그, Part II : 질문별 정당간 정책 비



교확인, Part Ⅲ : 시스템 모니터 및 정책선거 제언 등으로 구성하였다.

정당의 주요정책이나 입장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되, 선거시에는 선거공약 중심으로, 비선거시는 정책 이슈 중심으로 작성·활용하는 등 상시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 이슈 개발을 위해 3차례의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였다.

■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을 ‘정당정책비교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당의 정책·선거공약을 추가하는 등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운영하면서 대국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공,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개편 등을 통한 시각적 변화와 참여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사용자의 접근성·편리성,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웹(Web) 디자인은 친근감 있도록 비주얼하게 구성하였다.

(2) 정책 이슈 개발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을 통해 정당의 정책 이슈에 대한 기본입장을 게시·공개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책적 관심분야를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경제, 외교/국방 등 정책 이슈에 대한 질문문항을 5개 분야로 한정하고 질문에 대한 정당의 기본입장을 찬성, 적극찬성, 반대, 적극반대, 기타 등 5가지 범주로 정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대표에게 송부하여 기본입장과 상세이유를 제출받은 것을 정당간 의견차이가 없거나, 정당의 의견표명이 없는 문항은 제외하고 정당간 차별성이 분명하게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공개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정책정당 기반조성

(1) 정책연구소 활동지원

■ 추진개요

정당·정책연구소로부터의 상향식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연구소의 실무 책임자급이 참석하는 ‘정례회’를 제안하여 정책연구소와의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정당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 추진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위원회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정당이 정책에 대한 무관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전기가 되어 정책정당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협력체제로 기능하게 되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비롯해 사업방향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의견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수시로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2) 정책연구개발 실적 공개

■ 추진개요

「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2005년도 활동실적을 2006년 2월 15일까지 보고받아 중앙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공개대상

- 사무소의 인력, 활동경비 등 일반 현황
- 연구·개발실적, 토론회 등 개최, 교육·연수활동, 정책홍보, 간행물 등 자료발간, 그 밖의 주요활동

※ 자유민주연합 정책연구소는 2006년 3월에 해산되었음.



제 4 회 전 국 동 시 지 방 선 거 총 람

PIARIT 2

● ● ● 통계로 본 제4회 지방선거

제1절 | 도표로 이해하는 통계

제2절 | 선거관련 주요통계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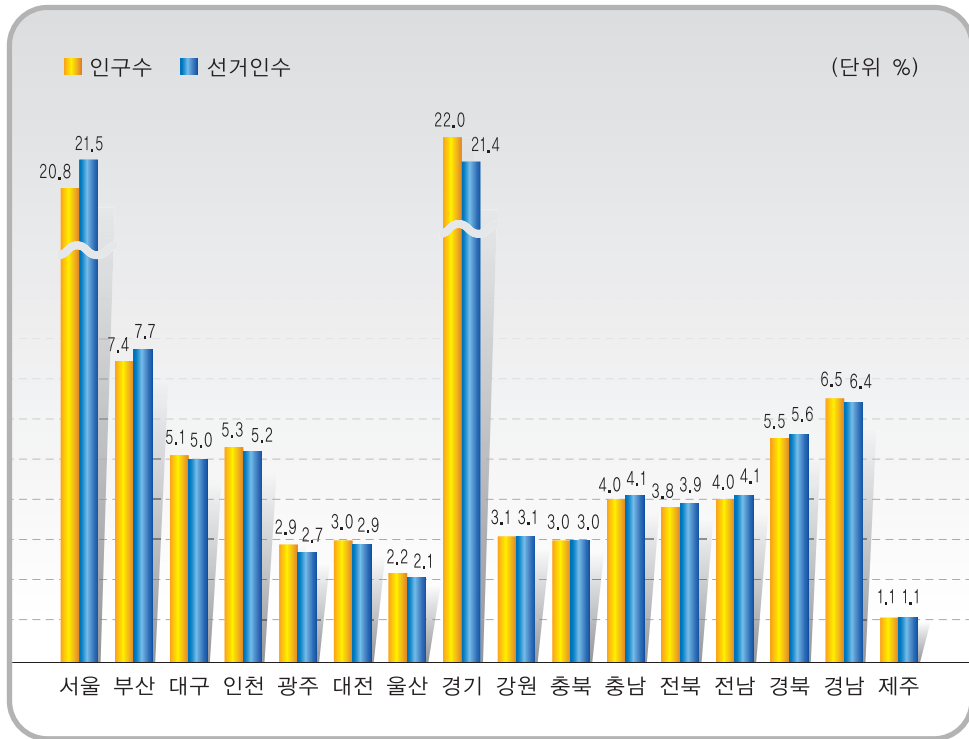
도표로 이해하는 통계

인구수, 선거인수 및 세대수	244
후보자	248
투표	258
개표	262
당선인	269

인구수, 선거인수 및 세대수



시·도별 인구수 대 선거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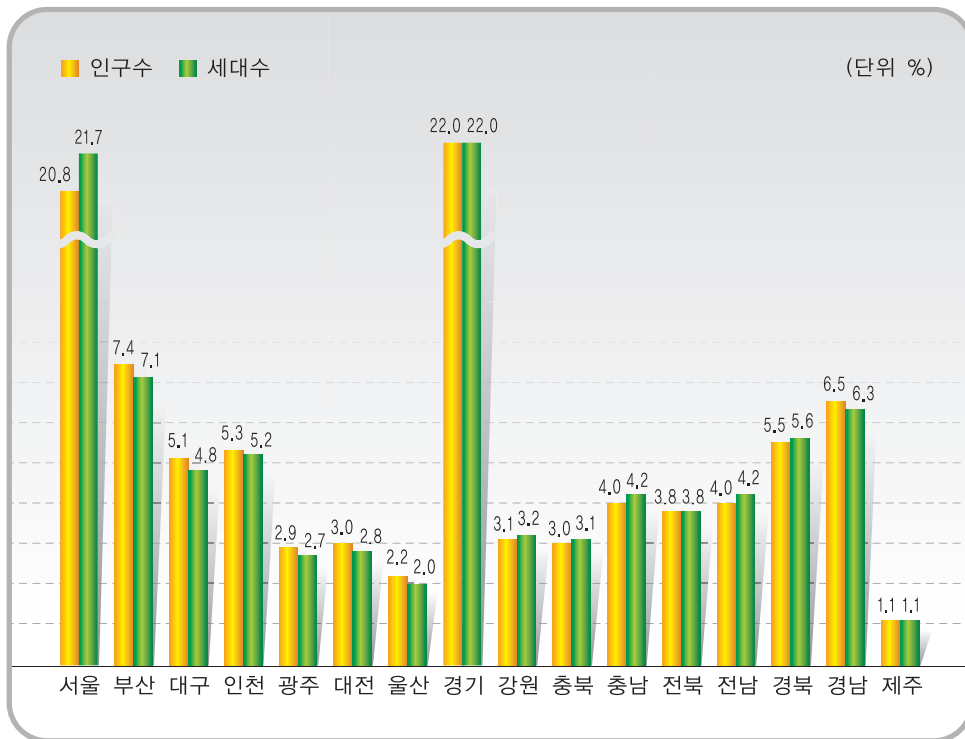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인구수	48,855,598	10,188,035	3,626,260	2,500,788	2,605,983	1,401,212	1,458,581	1,088,870
선거인수	37,064,282	7,983,648	2,845,104	1,885,043	1,940,403	1,014,620	1,077,468	790,289
선거인수비율(%)	75.9	78.4	78.5	75.4	74.5	72.4	73.9	72.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71,743	1,509,405	1,489,576	1,963,679	1,877,995	1,960,028	2,692,505	3,162,483	558,455
7,918,828	1,160,977	1,126,282	1,503,240	1,429,632	1,513,912	2,087,709	2,375,265	411,862
73.5	76.9	75.6	76.6	76.1	77.2	77.5	75.1	73.8



시·도별 인구수 및 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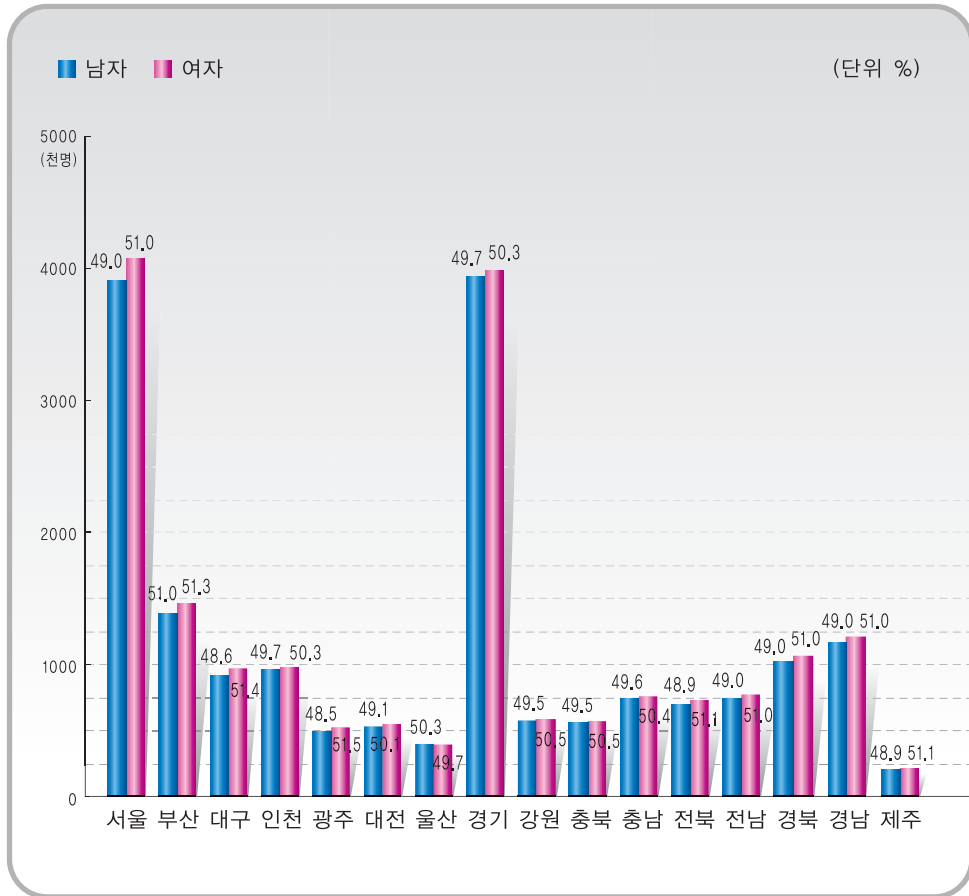


(단위 : 명, 세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인구수	48,855,598	10,188,035	3,626,260	2,500,788	2,605,983	1,401,212	1,458,581	1,088,870
세대수	17,963,819	3,906,540	1,271,770	863,177	938,360	483,180	508,278	366,998
세대수비율(%)	36.8	38.3	35.1	34.5	36.0	34.5	34.8	33.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71,743	1,509,405	1,489,576	1,963,679	1,877,995	1,960,028	2,692,505	3,162,483	558,455
3,955,416	574,981	549,665	757,722	682,985	750,806	1,013,979	1,134,106	205,856
36.7	38.1	36.9	38.6	36.4	38.3	37.7	35.9	36.9

시도별 성별 선거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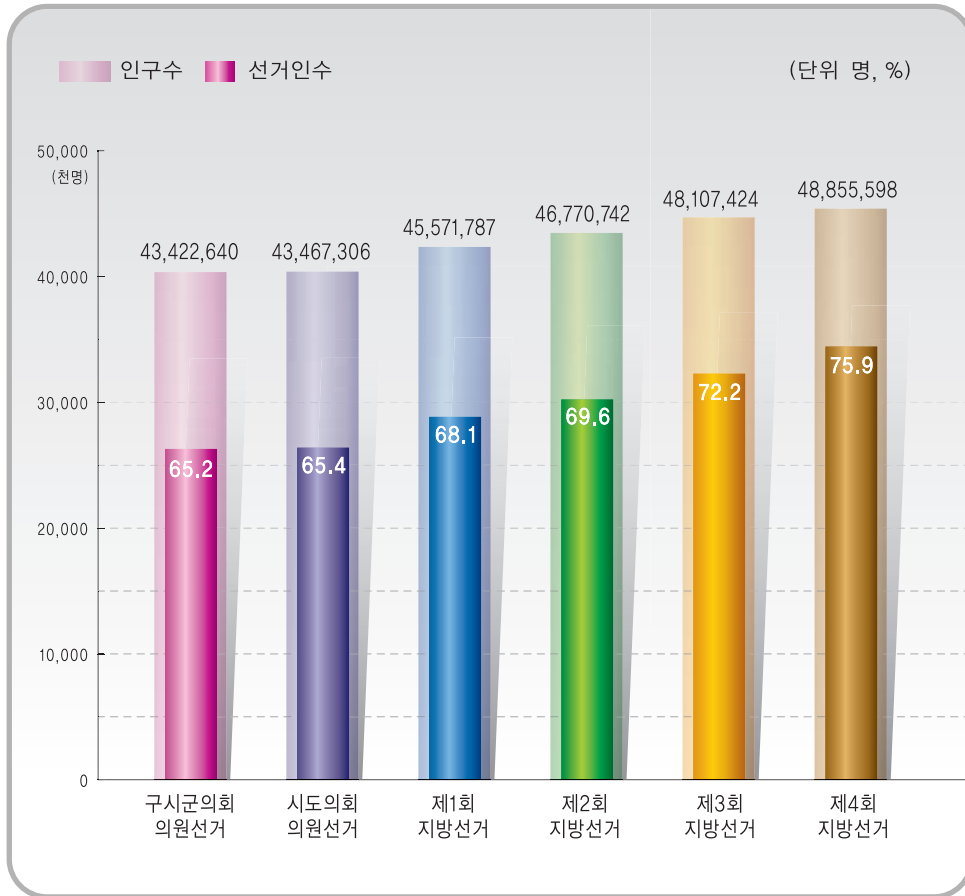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37,064,282	7,983,648	2,845,104	1,885,043	1,940,403	1,014,620	1,077,468	790,289
남	18,241,193	3,909,891	1,386,714	915,653	964,565	492,430	529,189	397,348
여	18,823,089	4,073,757	1,458,390	969,390	975,838	522,190	548,279	392,94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918,828	1,160,977	1,126,282	1,503,240	1,429,632	1,513,912	2,087,709	2,375,265	411,862
3,937,638	574,989	557,171	745,905	699,361	741,973	1,022,624	1,164,538	201,204
3,981,190	585,988	569,111	757,335	730,271	771,939	1,065,085	1,210,727	210,658



역대 지방선거 인구수 대 선거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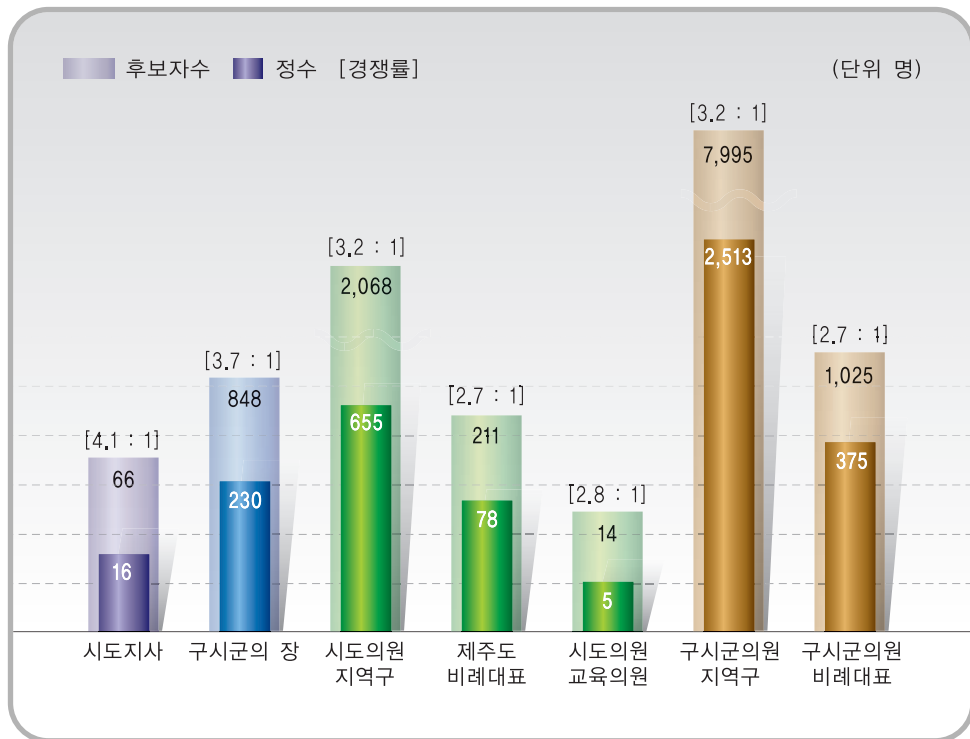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선거일	인구수	선거인수	비율(%)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2.26	43,422,640	28,301,580	65.2
시도의회의원선거	1991.6.20	43,467,306	28,416,241	65.4
제1회 지방선거	1995.6.27	45,571,787	31,048,566	68.1
제2회 "	1998.6.4	46,770,742	32,537,815	69.6
제3회 "	2002.6.13	48,107,424	34,744,232	72.2
제4회 "	2006.5.31	48,855,598	37,064,282	75.9

후 보 자



후보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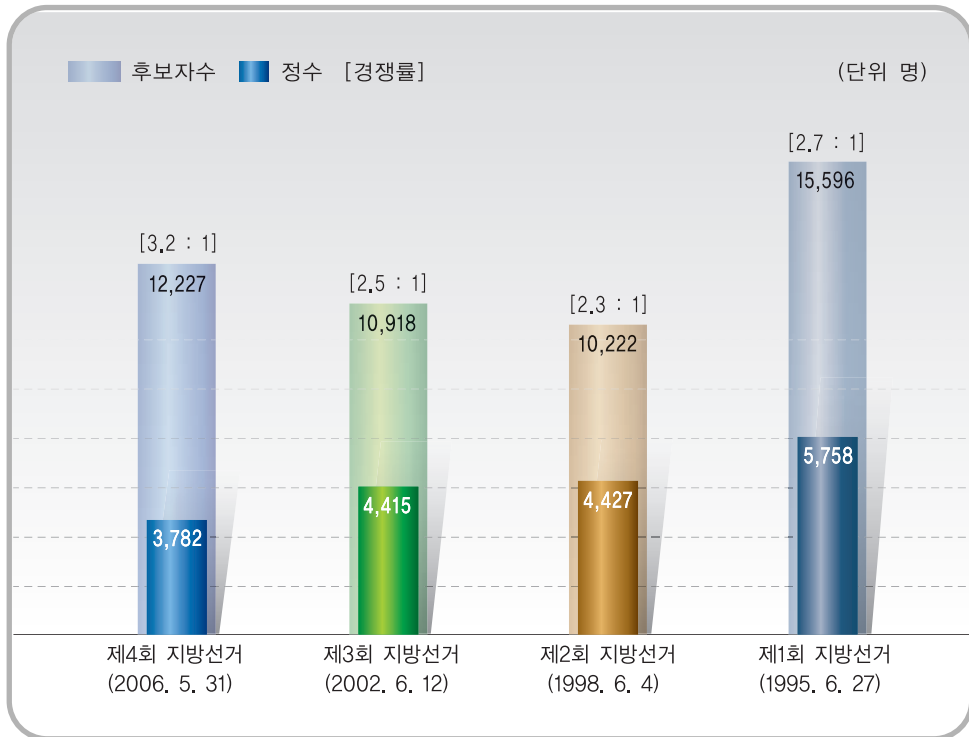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선거구수	정 수	후보자수	경쟁률	제3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정 수	후보자수	경쟁률
합 계	2,180	3,872	12,227	3.2	4,415	10,918	2.5
시·도지사	16	16	66	4.1	16	55	3.4
구·시·군의 장	230	230	848	3.7	232	750	3.2
시·도의원	지역구	655	655	3.2	609	1,531	2.5
	비례대표	16	78	2.7	73	209	2.9
	교육의원	5	5	14	2.8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1,028	2,513	3.2	3,485	8,373	2.4
	비례대표	230	375	1,025	2.7	-	-



역대선거후보자등록 경쟁률



(단위 :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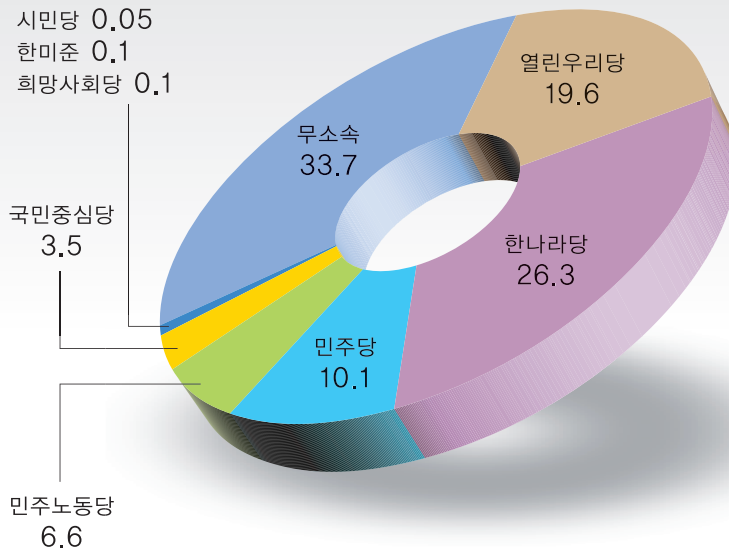
구 분	정 수	후보자수	경쟁률
제4회 지방선거(2006. 5. 31)	3,782	12,227	3.2
제3회 " (2002. 6. 12)	4,415	10,918	2.5
제2회 " (1998. 6. 4)	4,427	10,222	2.3
제1회 " (1995. 6. 27)	5,758	15,596	2.7



정당별 후보자수

총후보자수 - 12,227명

(단위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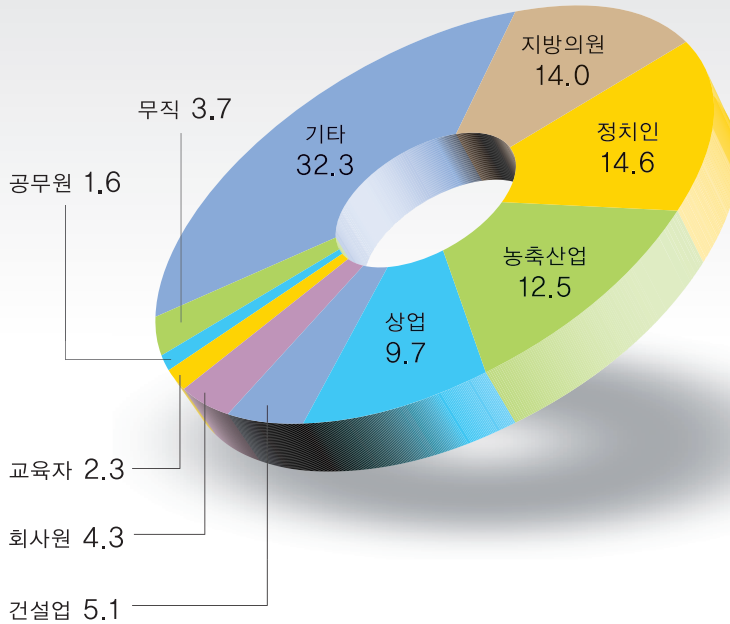
구분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12,227	2,391	3,217	1,234	802	426	7	13	12	4,125	
시·도지사	66	16	16	8	13	7	1	2	-	3	
구·시·군의회	848	185	197	90	56	37	1	4	-	278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521	565	235	97	-	-	4	577	
	비례대표	211	58	65	28	42	11	2	1	4	
	교육의원	14	-	-	-	-	-	-	-	14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1,303	1,944	749	467	266	3	6	4	3,253
	비례대표	1,025	308	430	124	127	36	-	-	-	0



직업별 후보자수

총후보자수 - 12,227명

(단위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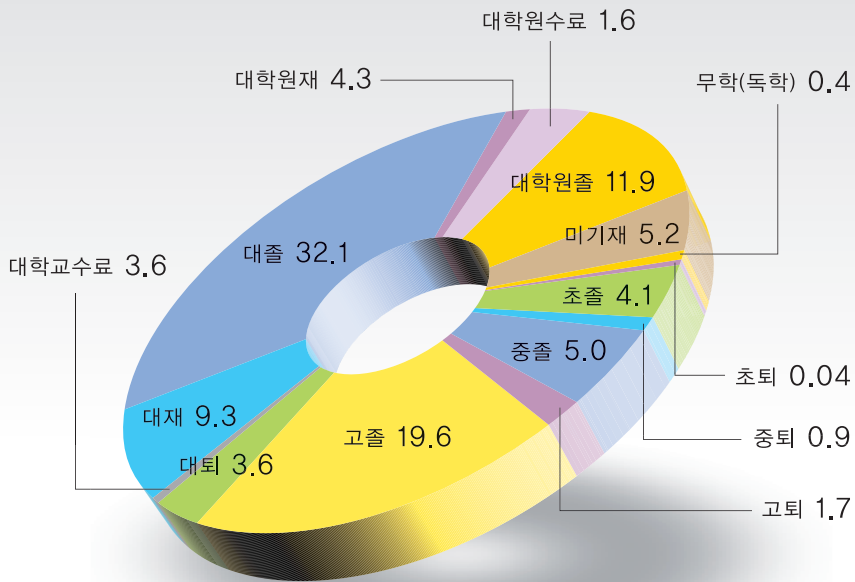
구분	계	지방의원	정치인	농·축·수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연륜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12,227	1,702	1,784	1,530	1,185	46	89	60	628	31	126	77	26	14	529	277	48	43	196	452	3,384	
시·도지사	66	-	35	1	1	1	-	-	1	-	-	-	4	-	3	6	-	-	8	-	6	
구·시·군의장	848	38	263	35	30	4	3	1	20	3	4	16	14	-	23	29	3	1	133	52	176	
시·도의원	지역구	2,068	234	381	232	167	7	12	11	105	5	22	15	6	2	90	60	12	5	23	59	620
	비례대표	211	5	58	11	9	1	1	1	-	1	7	-	-	10	23	1	2	-	5	75	
	교육의원	14	-	-	5	-	-	-	1	-	-	-	-	-	-	6	-	-	-	1	1	
구·시·군의원	지역구	7,995	1,413	846	1,175	894	31	68	45	483	20	91	28	2	11	351	108	30	34	30	269	2,066
의원	비례대표	1,025	12	201	71	84	2	5	1	18	3	8	11	-	1	52	45	2	1	2	66	440



학력별 후보자수

총후보자수 - 12,227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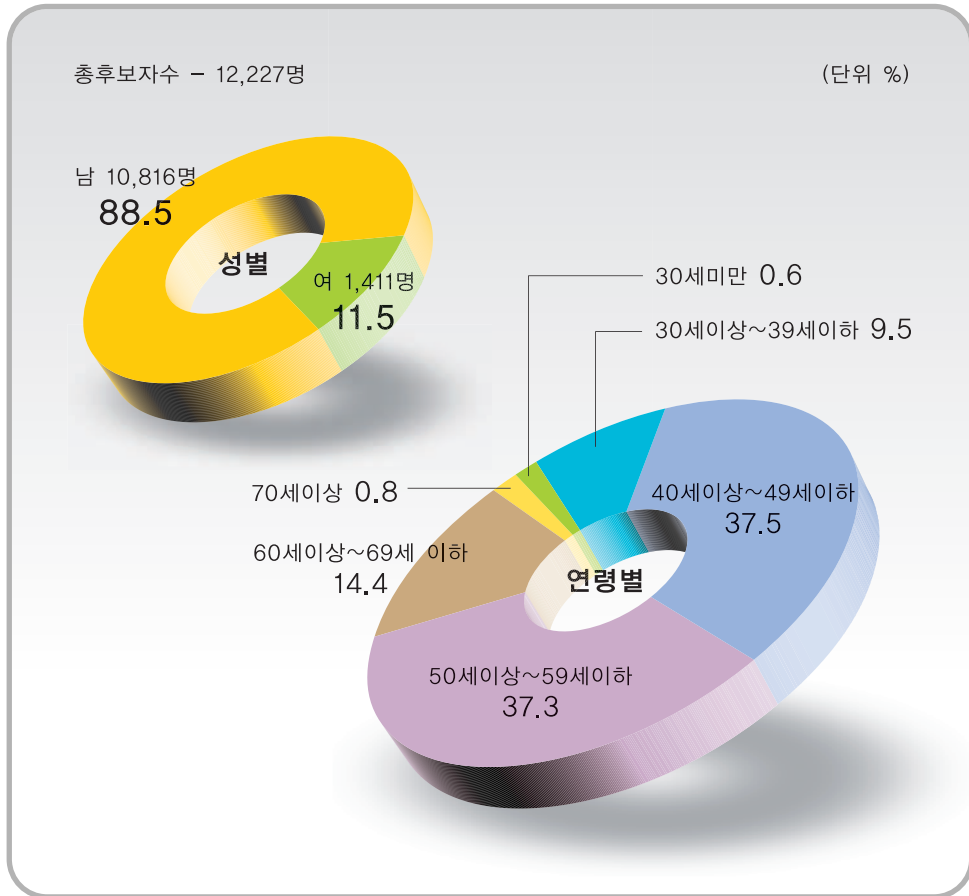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미기재	무학(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학교수료	대재	대졸	대학원수료	대학원재	대학원졸	
합계	12,227	638	52	6	496	106	617	205	2,398	441	40	1,134	3,919	191	526	1,458	
시·도지사	66	-	-	-	-	-	-	-	2	5	-	2	21	4	-	32	
구·시·군의장	848	17	2	-	16	4	10	6	83	40	2	37	297	20	44	270	
시·도의원	지역구	2,068	59	5	-	40	7	56	36	272	68	5	189	741	63	149	378
	비례대표	211	6	3	-	6	-	6	-	25	6	2	12	86	7	10	42
	교육의원	14	-	-	-	-	-	-	-	-	-	-	4	1	-	9	
구·시·군 의원	7,995	518	32	6	371	89	484	153	1,747	296	15	803	2,443	82	293	663	
의원 비례대표	1,025	38	10	-	63	6	61	10	269	26	16	91	327	14	30	64	



성별, 연령별 후보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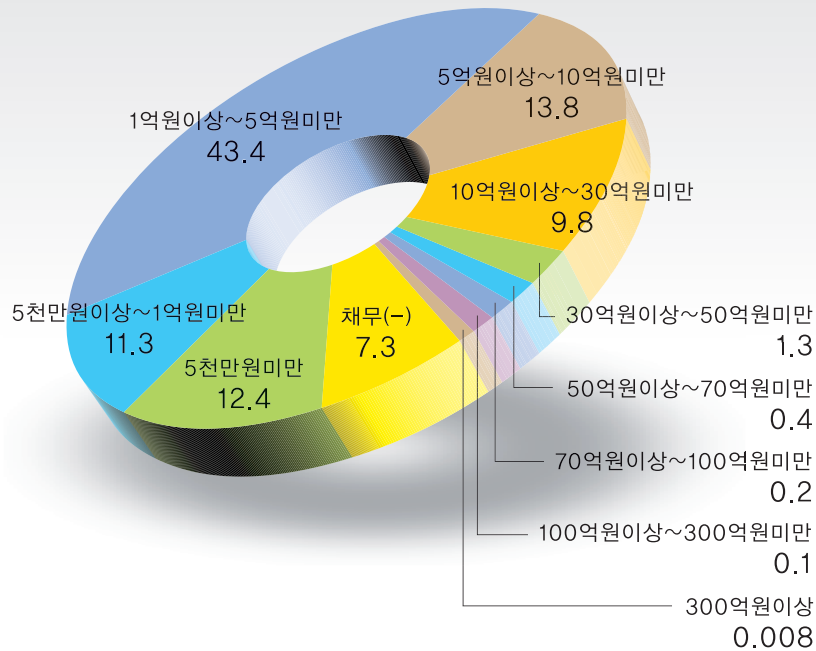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 미만	30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69세 이하	70세 이상	
합 계	12,227	10,816	1,411	72	1,156	4,589	4,559	1,758	93	
시·도지사	66	62	4	-	2	16	30	17	1	
구·시·군의장	848	825	23	-	31	236	369	198	14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1,961	107	7	223	876	695	254	13
	비례대표	211	75	136	5	37	78	58	28	5
	교육의원	14	14	-	-	-	1	2	11	-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7,604	391	46	701	2,997	3,063	1,135	53
	비례대표	1,025	275	750	14	162	385	342	115	7

재산신고액별 후보자수

총후보자수 - 12,227명

(단위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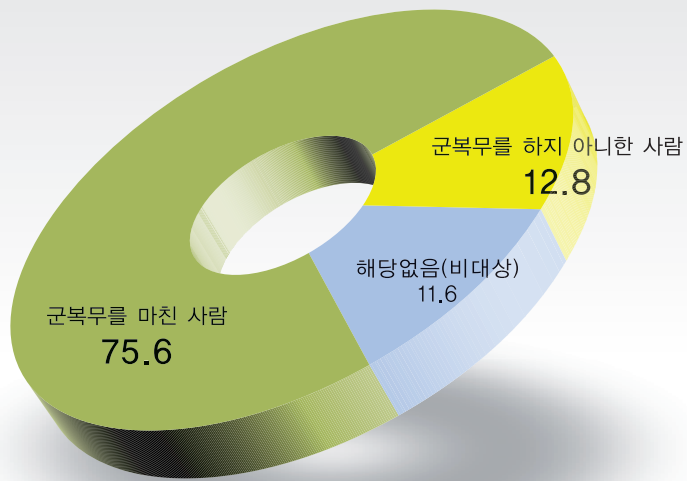
구분	계	채무(-)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합계	12,227	98	344	189	231	27	1,521	1,376	5,308	1,691	1,204	160	43	19	15	1	
시·도지사	66	-	-	-	1	-	4	2	23	16	14	3	-	1	2	-	
구·시·군·의장	848	5	10	6	7	2	74	55	330	183	135	25	9	2	5	-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15	64	31	47	4	219	214	874	319	225	36	10	5	4	1
	비례대표	211	2	4	5	4	-	35	14	65	40	30	7	2	1	2	-
	교육의원	14	-	-	-	-	-	-	1	4	6	3	-	-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64	244	141	158	18	1,022	968	3,567	1,016	697	73	19	6	2	-
	비례대표	1,025	12	22	6	14	3	167	122	445	111	100	16	3	4	-	0



병역신고사항별 후보자수

총후보자수 - 12,227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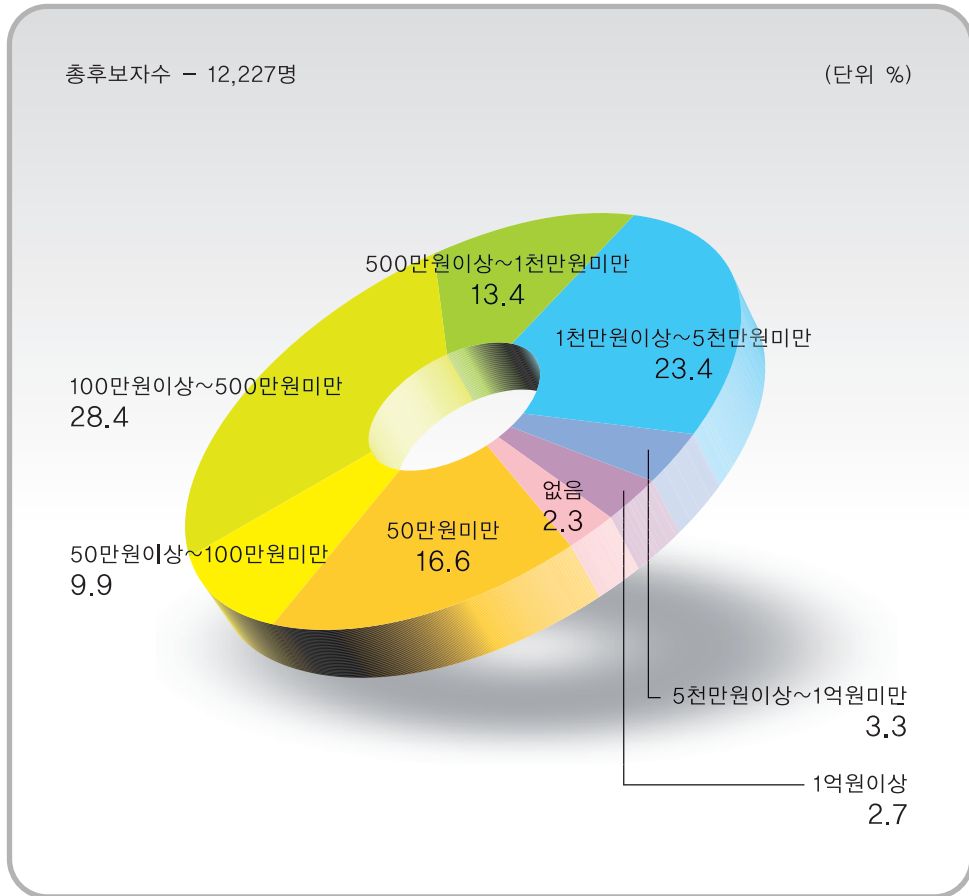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비대상)
합 계	12,227	9,241	1,569	1,417
시·도지사	66	50	12	4
구·시·군의장	848	674	151	23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1,694	266
	비례대표	211	58	19
	교육의원	14	13	1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6,529	1,065
	비례대표	1,025	223	55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신고액(합계)별 후보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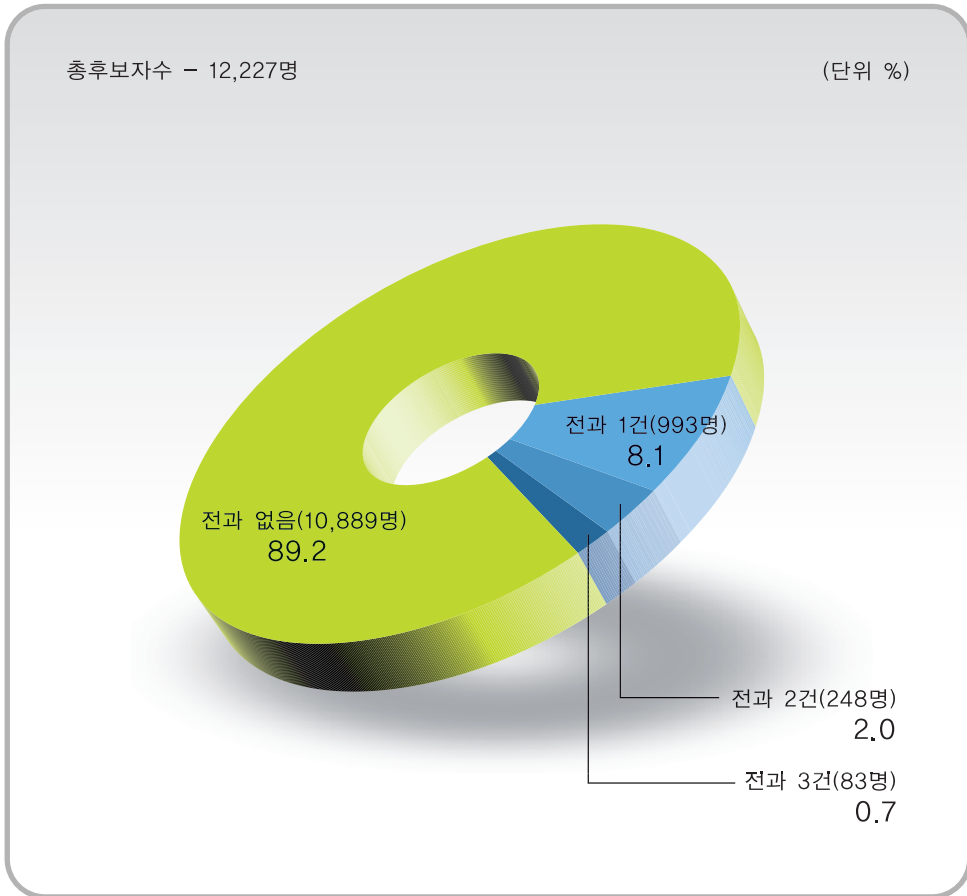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 계	12,227	285	2,030	1,208	3,474	1,638	2,862	398	332	
시·도지사	66	-	4	1	8	5	33	6	9	
구·시·군의장	848	9	77	50	123	102	349	73	65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43	311	194	558	274	534	72	82
	비례대표	211	6	41	12	39	22	61	15	15
	교육의원	14	-	-	-	2	-	12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189	1,416	849	2,445	1,102	1,657	201	136
	비례대표	1,025	38	181	102	299	133	216	31	25



전과건수별 후보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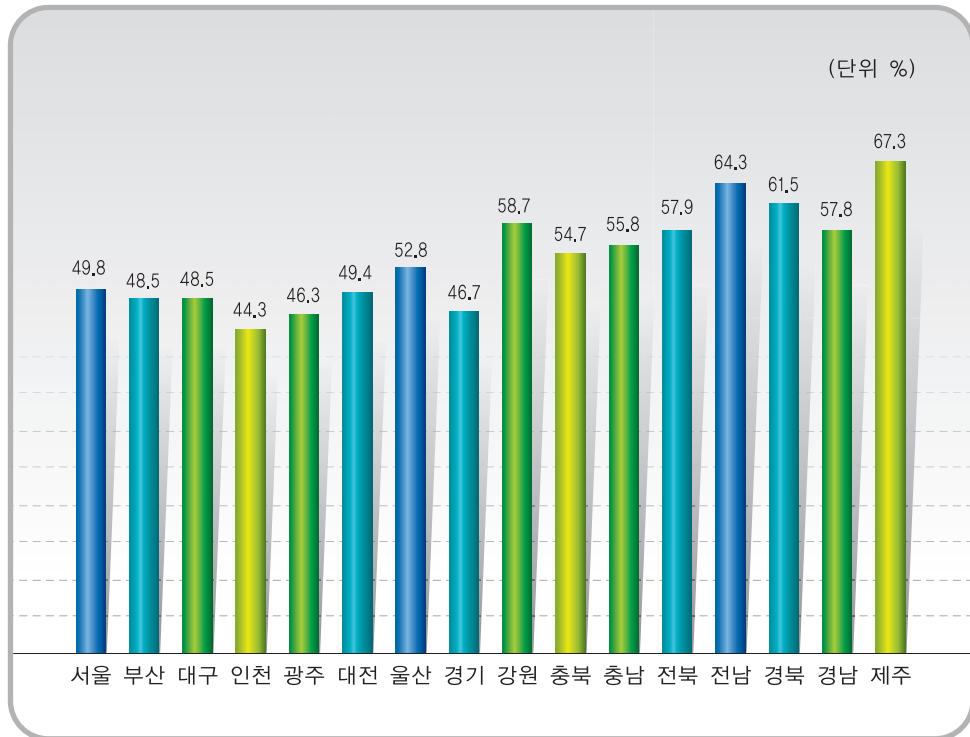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후보자수	전과 건수별 후보자수						
		계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합 계	12,227	1,324	993	248	56	14	13	
시·도지사	66	13	9	1	1	1	1	
구·시·군의장	848	105	71	24	6	1	3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221	171	39	9	-	2
	비례대표	211	13	9	4	-	-	-
	교육의원	14	-	-	-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924	695	172	39	11	7
	비례대표	1,025	48	38	8	1	1	-

투 표

시·도별 투표(시·도지사선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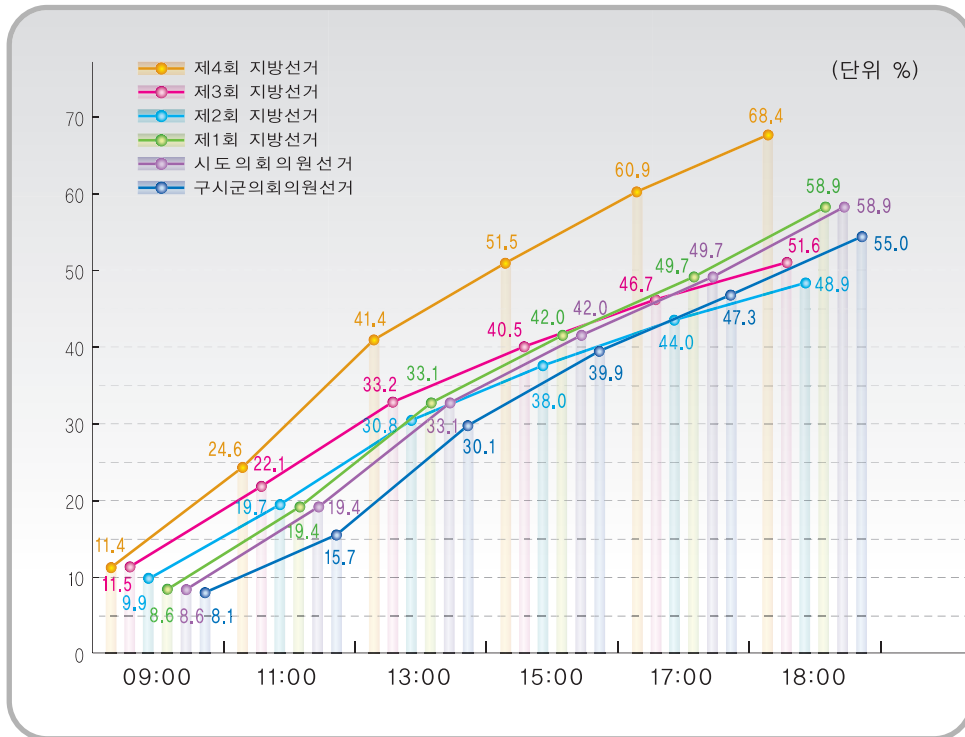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선거인수	37,064,282	7,983,648	2,845,104	1,885,043	1,940,403	1,014,620	1,077,468	790,289
총투표자수	19,118,177	3,977,842	1,378,618	915,060	859,506	469,316	532,568	417,200
투표율(%)	51.6	49.8	48.5	48.5	44.3	46.3	49.4	52.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918,828	1,160,977	1,126,282	1,503,240	1,429,632	1,513,912	2,087,709	2,375,265	411,862
3,695,552	681,633	616,053	838,462	827,387	973,820	1,284,342	1,373,815	277,003
46.7	58.7	54.7	55.8	57.9	64.3	61.5	57.8	67.3



시간대별 투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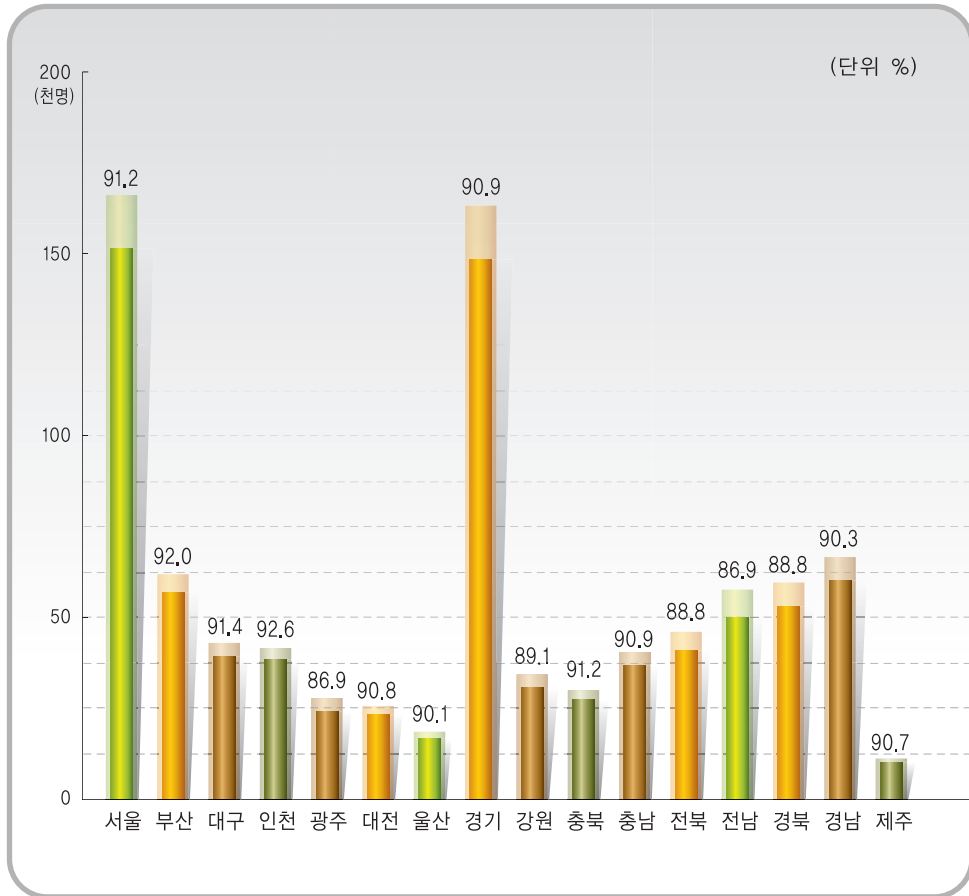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9시	11시	13시	15시	17시	18시
제4회 지방선거(2006. 5. 31)	11.5	22.1	33.2	40.5	46.7	51.6
제3회 " (2002. 6.12)	9.9	19.7	30.8	38.0	44.0	48.9
제2회 " (1998. 6. 4)	11.1	21.7	33.4	40.8	47.4	52.7
제1회 " (1995. 6. 27)	11.4	24.6	41.4	51.5	60.9	68.4
시·도의회의원선거(1991. 6. 20)	8.6	19.4	33.1	42.0	49.7	58.9
구·시·군의회의원선거(1991. 3. 24)	8.1	15.7	30.1	39.9	47.3	55.0



시·도별 부재자투표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재자신고자수	894,243	166,145	61,908	43,023	41,608	27,866	25,694	18,596
부재자투표자수	808,214	151,534	56,946	39,316	38,511	24,222	23,319	16,752
투표율(%)	90.4	91.2	92.0	91.4	92.6	86.9	90.8	90.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재자신고자수	163,268	34,414	30,039	40,463	46,075	57,673	59,626	66,625	11,220
부재자투표자수	148,467	30,653	27,383	36,779	40,931	50,089	52,975	60,158	10,179
투표율(%)	90.9	89.1	91.2	90.9	88.8	86.8	88.8	90.3	90.7



역대 지방선거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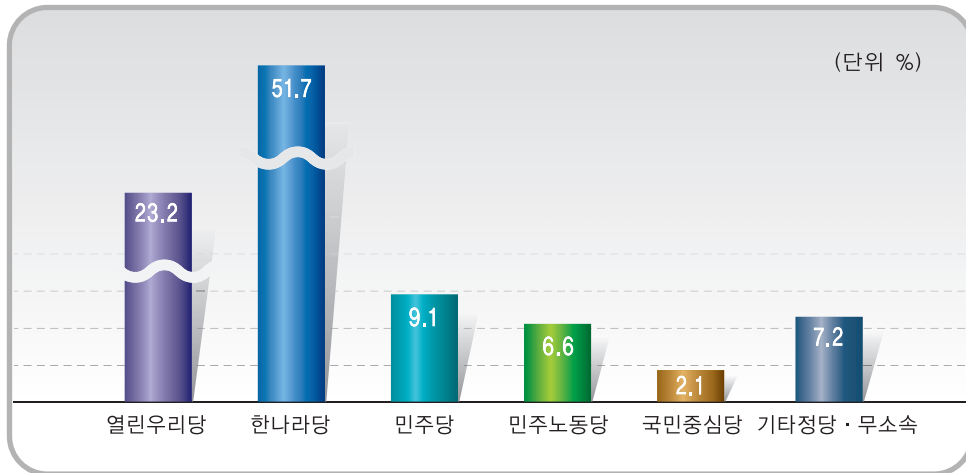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제4회 지방선거(2006. 5. 31)	37,064,282	19,116,622	51.6
제3회 " (2002. 6. 13)	34,744,232	16,973,622	48.9
제2회 " (1998. 6. 4)	32,537,815	17,155,577	52.7
제1회 " (1995. 6. 27)	31,048,566	21,227,449	68.4
시·도의회의원선거(1991. 6. 20)	28,083,024	16,533,934	58.9
구·시·군의회의원선거(1991. 3. 24)	24,067,144	13,237,093	55.0

개 표

정당별 득표수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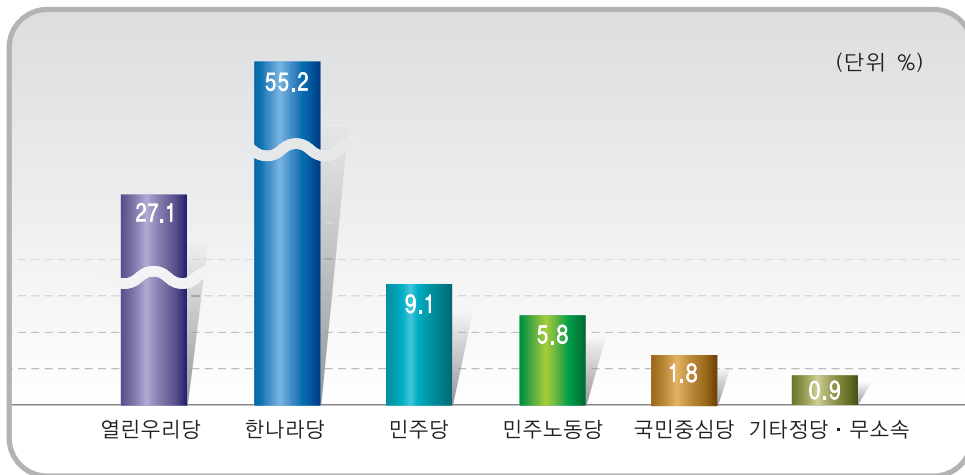


(단위 : 표, %)

구분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득표수	110,172,785	25,510,625	56,932,693	10,074,462	7,246,284	2,352,573	13,310	19,184	52,826	7,970,828	
	득표율	100.0	23.2	51.7	9.1	6.6	2.1	-	-	-	7.2	
시·도지사	득표수	18,857,606	5,106,984	10,418,021	1,709,452	1,099,592	345,295	4,790	7,188	-	166,284	
	득표율	100.0	27.1	55.2	9.1	5.8	1.8	-	-	-	0.9	
구·시·군의회	득표수	18,510,816	4,277,001	9,396,305	1,530,908	648,353	403,464	482	4,176	-	2,250,127	
	득표율	100.0	23.1	50.8	8.3	3.5	2.2	-	-	-	12.2	
시·도의원	지역구	득표수	18,288,800	4,329,794	9,291,686	1,602,034	507,157	408,610	-	-	6,039	2,143,480
	득표율	100.0	23.7	50.8	8.8	2.8	2.2	-	-	-	11.7	
비례대표	득표수	18,763,078	4,056,367	10,086,354	1,863,239	2,263,051	436,774	7,583	5,112	44,598	-	
	득표율	100.0	21.6	53.8	9.9	12.1	2.3	-	-	0.2	-	
구·시·군의원	지역구	득표수	18,317,171	3,544,024	8,317,356	1,575,921	1,072,826	390,755	455	2,708	2,189	3,410,937
	득표율	100.0	19.3	45.4	8.6	5.9	2.1	-	-	-	18.6	
비례대표	득표수	17,435,314	4,196,455	9,422,971	1,792,908	1,655,305	367,675	-	-	-	-	
	득표율	100.0	24.1	54.0	10.3	9.5	2.1	-	-	-	-	



시·도지사선거 득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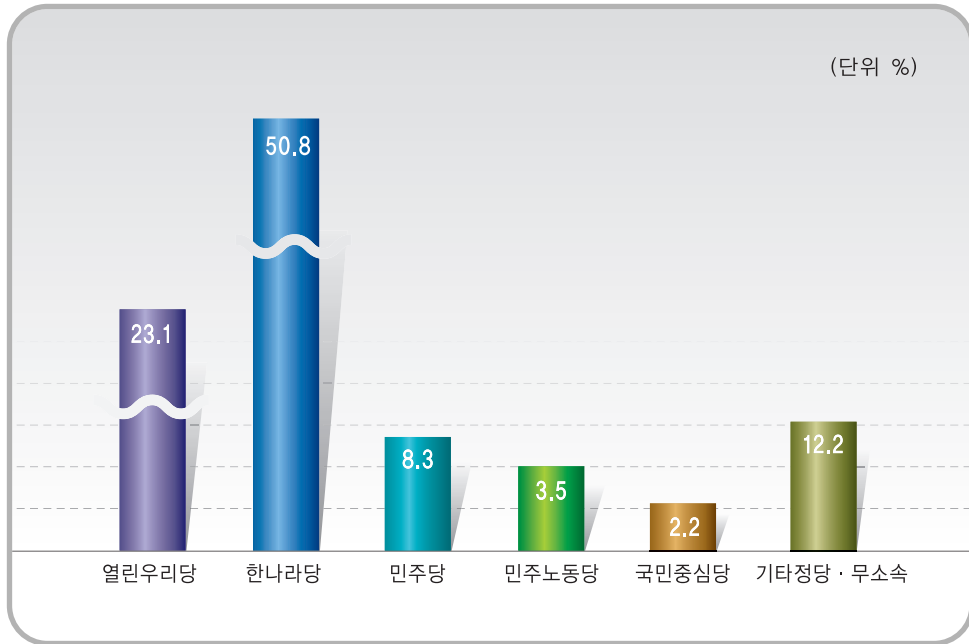


(단위 : 표)

구 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5,106,984	10,418,021	1,709,452	1,099,592	345,295	4,790	7,188	-	166,284
서울	1,077,890	2,409,760	304,565	117,421	14,111	4,790	4,481	-	13,808
부산	329,470	895,214	-	141,061	-	-	-	-	-
대구	191,131	636,057	-	35,497	8,764	-	-	-	35,232
인천	200,650	526,932	44,339	78,898	-	-	-	-	-
광주	157,756	18,461	239,884	48,617	-	-	-	-	-
대전	217,273	231,489	6,442	14,899	55,231	-	2,707	-	-
울산	47,579	261,361	-	104,384	-	-	-	-	-
경기	1,124,317	2,181,677	148,409	201,106	-	-	-	-	-
강원	148,302	471,613	29,028	-	19,383	-	-	-	-
충북	185,426	361,157	-	39,095	19,646	-	-	-	-
충남	178,169	379,420	-	52,417	209,254	-	-	-	-
전북	389,436	62,922	295,891	61,672	-	-	-	-	-
전남	181,756	55,444	640,894	68,702	-	-	-	-	-
경북	290,358	961,363	-	-	-	-	-	-	-
경남	343,137	852,377	-	135,823	18,906	-	-	-	-
제주	44,334	112,774	-	-	-	-	-	-	117,244



구·시·군의 장선거 득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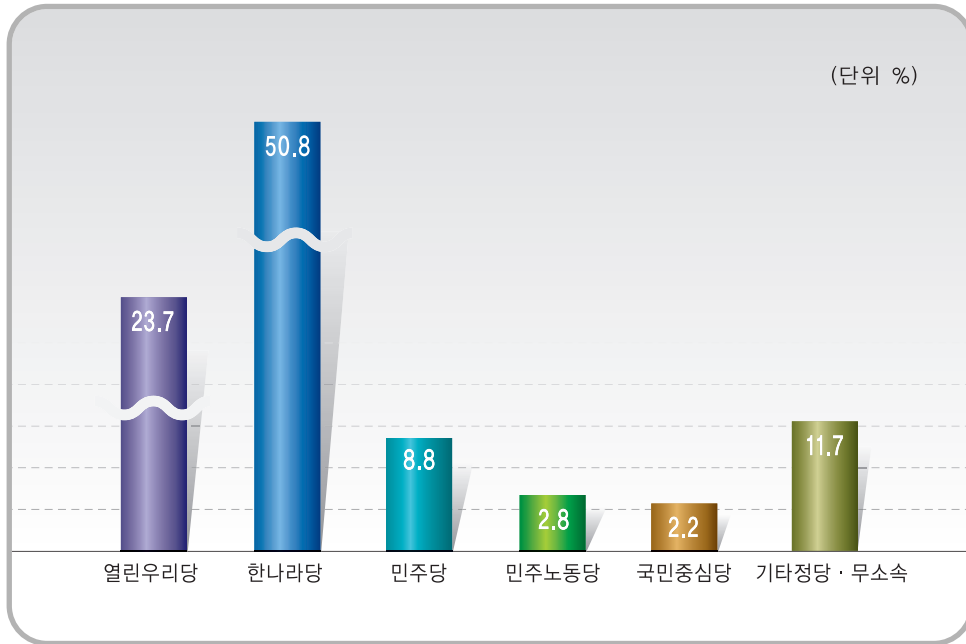


(단위 : 표)

구 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4,277,001	9,396,305	1,530,908	648,353	403,464	482	4,176	-	2,250,127
서울	975,037	2,286,077	337,950	92,492	2,727	482	-	-	219,673
부산	311,024	884,686	2,648	19,287	-	-	-	-	132,545
대구	84,158	673,965	-	15,425	-	-	-	-	128,064
인천	181,147	483,513	67,639	83,050	-	-	-	-	24,344
광주	138,445	6,257	218,063	42,132	-	-	-	-	58,006
대전	142,788	254,124	-	7,572	90,630	-	-	-	30,723
울산	50,325	226,512	-	70,604	-	-	-	-	64,132
경기	942,320	2,060,766	177,049	137,600	27,219	-	-	-	306,274
강원	188,466	347,567	2,945	13,118	-	-	-	-	117,826
충북	221,313	307,553	-	-	11,242	-	-	-	65,008
충남	190,690	320,872	744	2,739	268,309	-	-	-	36,724
전북	314,741	8,663	256,964	43,024	-	-	2,659	-	182,797
전남	264,127	11,839	466,143	21,860	-	-	1,517	-	183,120
경북	71,425	752,198	-	23,695	-	-	-	-	407,012
경남	200,995	771,713	763	75,755	3,337	-	-	-	293,879



시·도의회의원선거 득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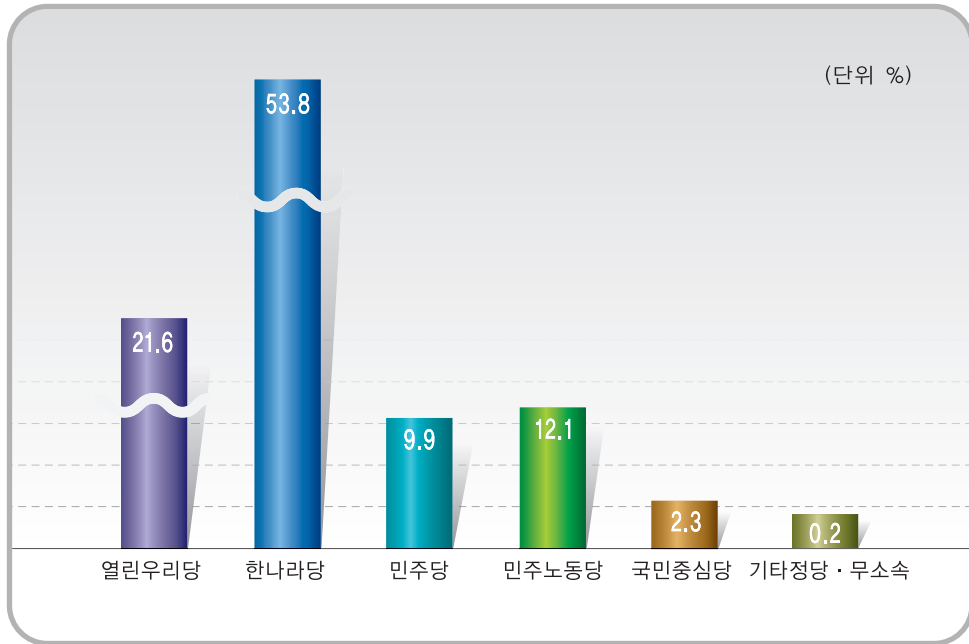


(단위 : 표)

구 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4,329,794	9,291,686	1,602,034	507,157	408,610	-	-	6,039	2,143,480
서울	1,084,610	2,284,441	338,629	38,203	1,914	-	-	1,293	161,489
부산	207,942	849,930	-	65,921	-	-	-	-	154,798
대구	41,787	523,602	-	-	-	-	-	1,802	129,487
인천	216,797	480,053	52,270	61,946	996	-	-	-	33,436
광주	157,319	3,740	231,638	28,099	-	-	-	-	39,930
대전	148,108	243,375	1,842	4,797	112,942	-	-	-	13,061
울산	48,435	197,163	-	76,347	-	-	-	617	56,737
경기	1,022,497	2,141,824	150,115	75,537	21,678	-	-	-	224,472
강원	180,582	355,950	-	6,633	-	-	-	-	121,813
충북	192,052	317,065	814	3,997	15,818	-	-	2,327	70,847
충남	168,076	321,477	6,844	751	255,262	-	-	-	61,952
전북	346,742	7,054	313,289	30,223	-	-	-	-	104,860
전남	241,552	736	493,045	16,549	-	-	-	-	189,928
경북	70,209	714,023	-	8,340	-	-	-	-	378,670
경남	121,863	751,267	-	76,598	-	-	-	-	337,498
제주	81,223	99,986	13,548	13,216	-	-	-	-	64,502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득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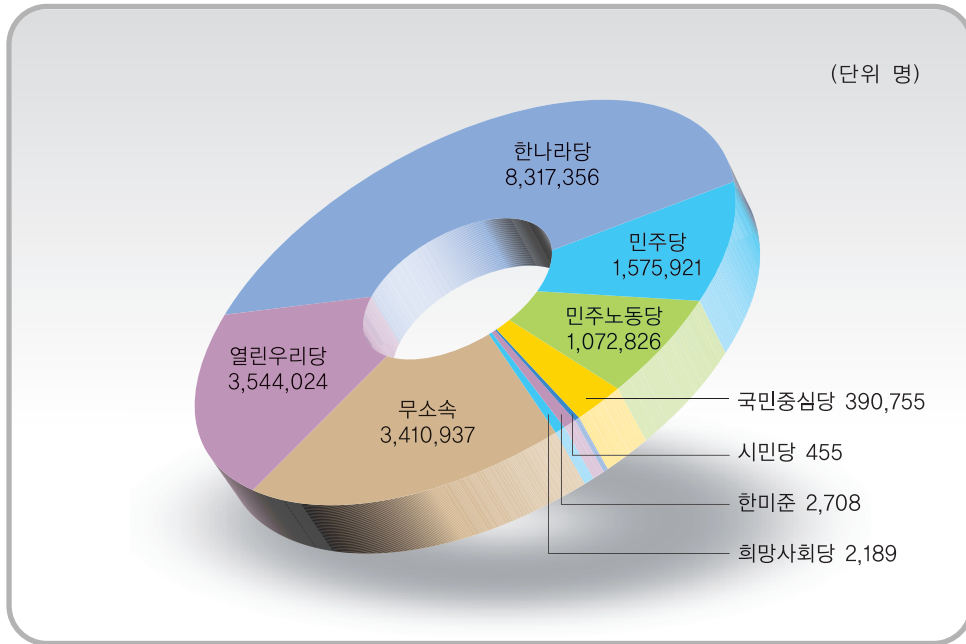


(단위 : 표)

구 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합계	4,056,367	10,086,354	1,863,239	2,263,051	436,774	7,583	5,112	44,598
서울	837,329	2,243,473	409,801	391,209	19,522	7,583	5,112	9,642
부산	266,735	891,119	27,159	170,597	-	-	-	-
대구	113,543	700,790	-	80,755	7,780	-	-	-
인천	175,031	490,415	58,864	116,147	-	-	-	7,256
광주	131,433	21,907	228,531	76,569	-	-	-	4,469
대전	139,436	243,789	-	46,074	96,026	-	-	-
울산	60,282	240,638	-	110,172	-	-	-	-
경기	814,896	2,149,158	235,954	396,113	29,908	-	-	23,231
강원	165,785	412,791	-	84,180	-	-	-	-
충북	176,206	325,155	-	74,303	24,855	-	-	-
충남	165,462	336,622	-	70,469	241,863	-	-	-
전북	318,578	61,787	302,373	119,771	-	-	-	-
전남	215,129	53,116	553,336	119,613	-	-	-	-
경북	161,452	937,104	25,431	110,872	16,820	-	-	-
경남	242,988	855,777	-	241,877	-	-	-	-
제주	72,082	122,713	21,790	54,330	-	-	-	-



구·시·군의원선거 득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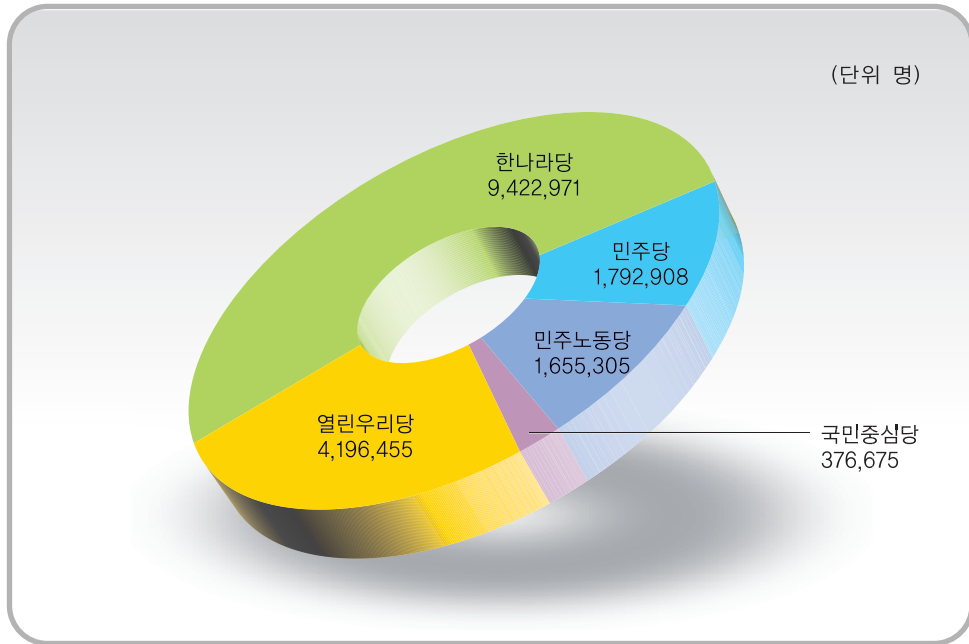


(단위 : 표)

구 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3,544,024	8,317,356	1,575,921	1,072,826	390,755	455	2,708	2,189	3,410,937
서울	837,298	2,089,026	417,528	174,215	12,618	108	-	-	366,638
부산	231,374	784,721	835	75,123	-	-	-	-	249,529
대구	83,175	585,368	-	22,988	-	-	-	-	183,408
인천	173,365	456,898	59,846	73,382	3,195	-	-	-	73,048
광주	135,352	-	199,494	57,357	-	-	772	667	62,447
대전	124,906	215,067	8,225	15,058	114,932	-	-	-	42,078
울산	34,578	193,284	-	77,229	-	-	-	-	83,231
경기	791,525	1,908,203	187,866	294,269	20,600	160	15	-	402,173
강원	131,747	289,316	2,335	20,193	-	-	-	545	215,181
충북	152,035	266,665	2,382	31,372	8,602	-	-	977	135,944
충남	140,858	262,883	4,786	22,636	230,389	-	-	-	148,340
전북	321,220	2,332	255,652	41,642	-	-	677	-	180,856
전남	200,097	1,776	436,572	26,664	419	-	1,244	-	273,226
경북	64,698	592,838	-	29,918	-	-	-	-	559,835
경남	121,796	668,979	400	110,780	-	187	-	-	435,003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득표수



(단위 :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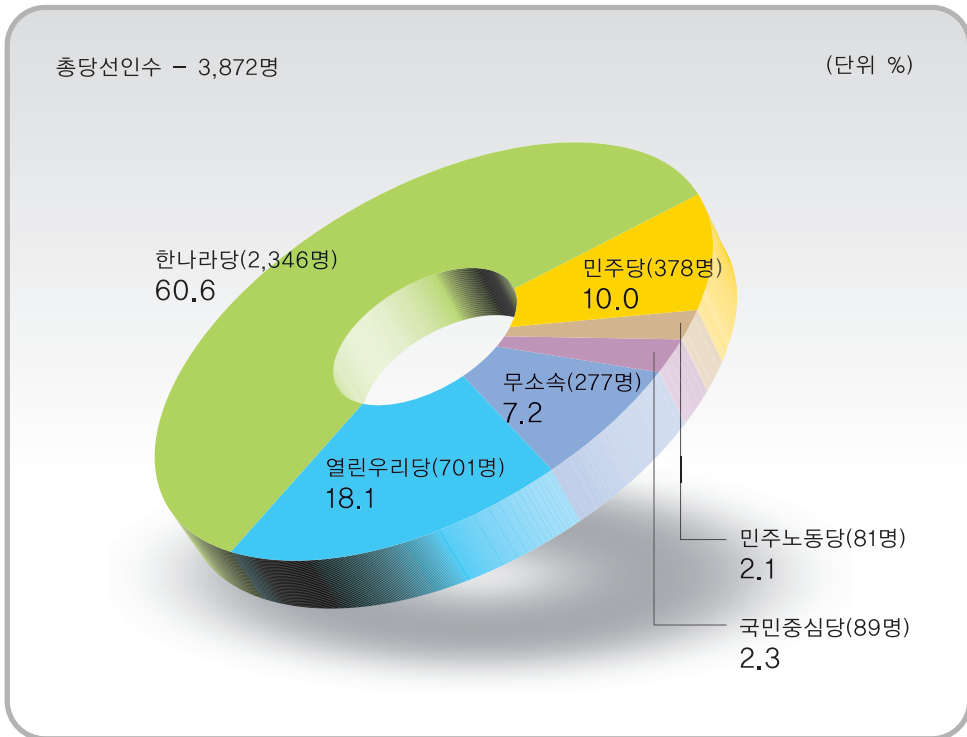
구 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합계	4,196,455	9,422,971	1,792,908	1,655,305	376,675	-	-	-
서울	895,428	2,177,809	455,781	359,291	-	-	-	-
부산	262,635	824,306	-	133,620	-	-	-	-
대구	113,959	590,681	-	28,564	990	-	-	-
인천	191,099	487,167	48,422	84,387	-	-	-	-
광주	136,410	-	241,595	83,905	-	-	-	-
대전	145,824	250,814	-	30,112	98,244	-	-	-
울산	61,918	249,199	-	99,109	-	-	-	-
경기	926,754	2,225,037	141,983	295,116	3,257	-	-	-
강원	173,048	385,020	3,004	33,398	-	-	-	-
충북	198,827	343,717	-	41,789	13,474	-	-	-
충남	175,422	336,397	-	25,385	257,058	-	-	-
전북	312,452	35,688	316,358	103,297	-	-	-	-
전남	237,368	5,640	571,813	73,708	-	-	-	-
경북	125,626	720,619	13,952	84,091	3,020	-	-	-
경남	239,685	790,877	-	179,533	632	-	-	-



당 선 인



정당별 당선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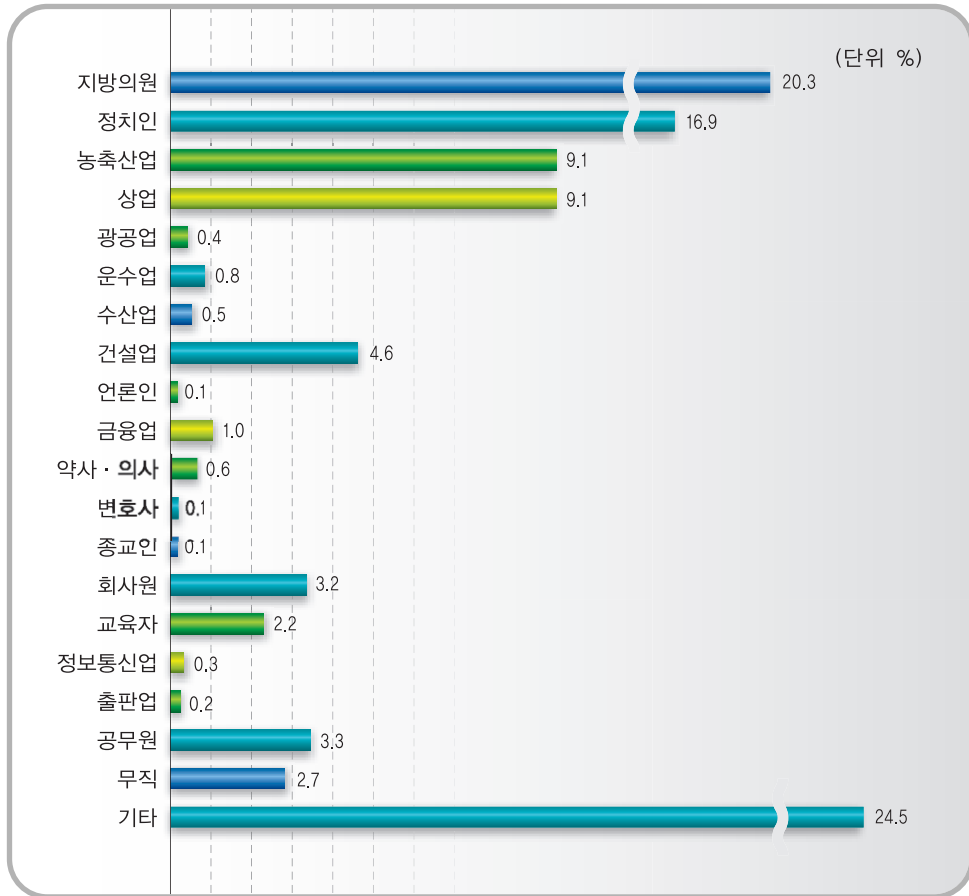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 계	3,872	701	2,346	378	81	89	-	-	-	277
시·도지사	16	1	12	2	-	-	-	-	-	1
구·시·군의 장	230	19	155	20	-	7	-	-	-	29
시·도의원	지역구	655	33	519	71	5	13	-	-	14
	비례대표	78	19	38	9	10	2	-	-	-
	교육의원	5	-	-	-	-	-	-	-	5
구·시·군 의원	2,513	543	1,401	233	52	56	-	-	-	228
의원	375	86	221	43	14	11	-	-	-	-



직업별 당선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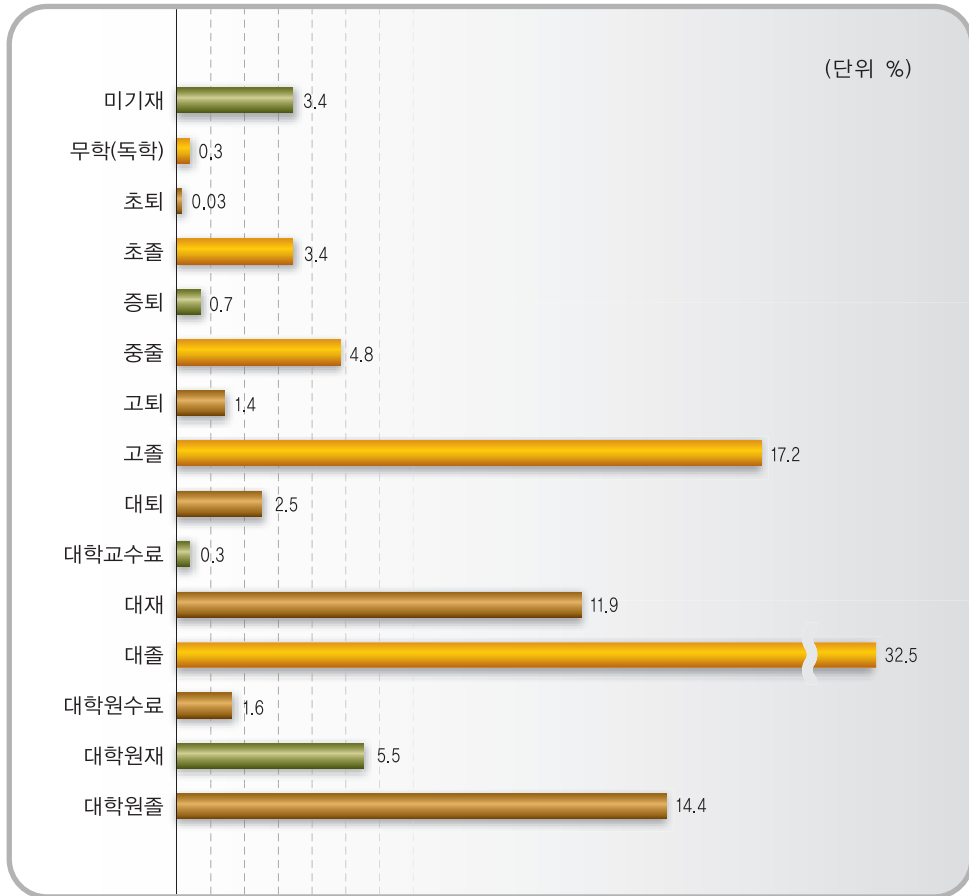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지방의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3,872	785	654	352	354	14	32	20	179	3	39	25	3	2	124	84	11	8	128	106	949	
시·도지사	16	-	6	-	-	-	-	-	-	-	-	-	1	-	-	1	-	-	6	-	2	
구·시·군의장	230	9	71	1	6	-	2	-	3	-	1	-	1	-	1	7	-	-	89	8	31	
시·도의원	지역구	655	147	169	38	42	-	5	3	27	-	7	6	1	-	17	16	4	1	14	13	145
	비례대표	78	3	25	6	3	1	1	1	-	-	6	-	-	3	11	1	1	-	1	-	15
	교육의원	5	-	-	3	-	-	-	1	-	-	-	-	-	-	1	-	-	-	-	-	-
구·시·군의원	지역구	2,513	623	307	286	284	13	24	15	143	3	29	8	-	1	95	27	6	5	18	52	574
	비례대표	375	3	76	18	19	-	-	-	6	-	2	5	-	1	8	21	-	1	1	32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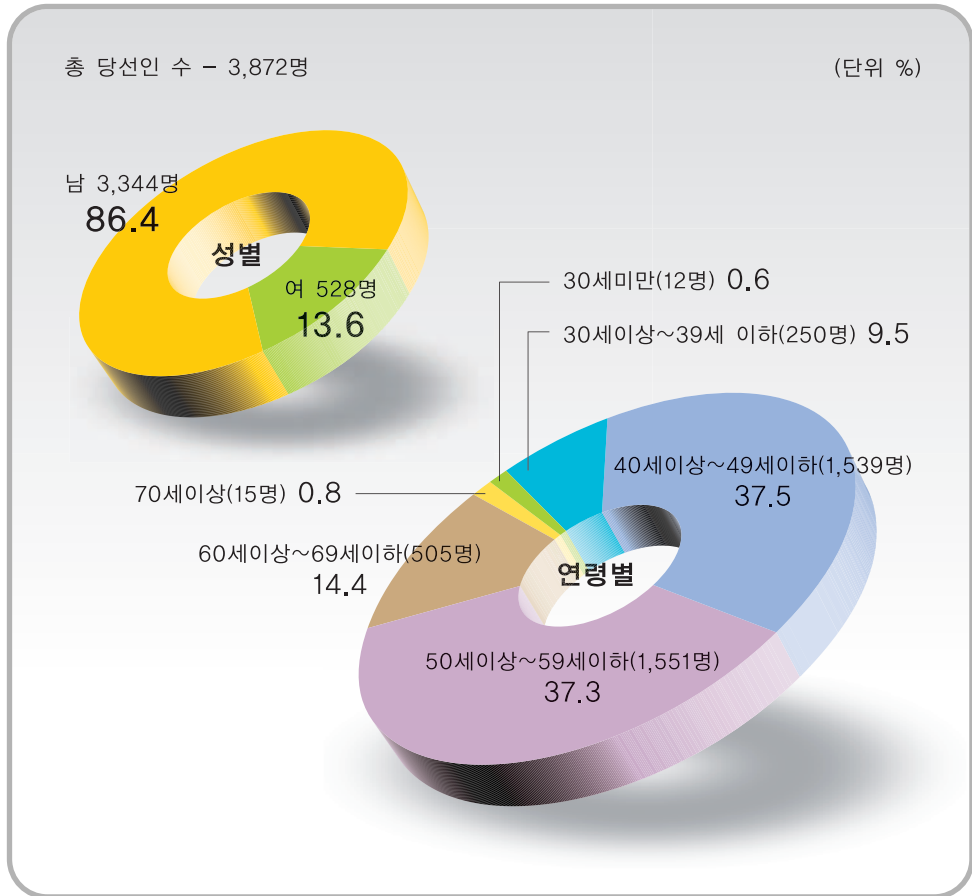
학력별 당선인수



(단위 : 명)

구분	계	미기재	무학(독학)	초퇴	초졸	증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학교수료	대재	대졸	대학원수료	대학원재	대학원졸
합계	3,872	138	13	1	131	27	189	55	672	97	13	424	1,270	63	216	563
시·도지사	16	-	-	-	-	-	-	-	-	-	-	-	4	-	-	12
구·시·군의장	230	1	-	-	3	-	3	3	24	6	-	6	76	6	16	86
시·도의원	지역구	655	9	1	-	5	1	15	10	61	15	2	55	24	66	163
	비례대표	78	-	1	-	2	-	3	-	7	3	-	4	1	3	20
	교육의원	5	-	-	-	-	-	-	-	-	-	-	1	-	-	4
구·시·군 의원	2,513	115	9	1	98	24	145	39	479	64	6	320	823	25	121	244
의원	375	13	2	-	23	2	23	3	101	9	5	39	104	7	10	34

성별, 연령별 당선인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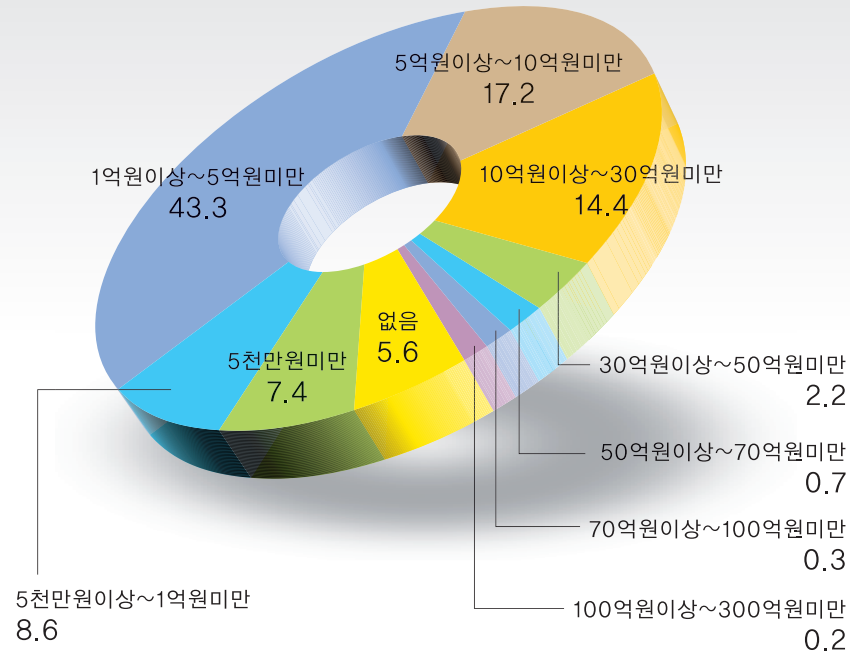
구 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 미만	30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69세 이하	70세 이상
합 계	3,872	3,344	528	12	250	1,539	1,551	505	15
시·도지사	16	16	-	-	-	2	9	5	-
구·시·군의장	230	227	3	-	-	36	120	71	3
시·도 의원	지역구	655	623	32	1	44	278	256	75
	비례대표	78	21	57	-	8	27	27	15
	교육의원	5	5	-	-	-	-	1	4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2,403	110	6	165	1,061	996	277
	비례대표	375	49	326	5	33	135	142	58



자산신고액별 당선인수

총당선인수 - 3,862명

(단위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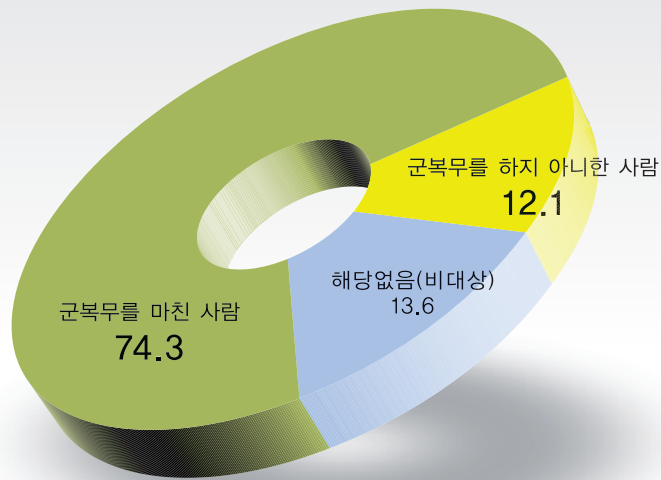
구분	계	없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합계	3,872	218	287	333	1,682	666	558	85	26	11	6	-	
시·도지사	16	-	-	-	5	3	6	2	-	-	-	-	
구·시·군·의장	230	6	3	8	80	61	55	10	4	1	2	-	
시·도 의원	지역구	655	35	34	35	268	134	112	23	8	4	2	-
	비례대표	78	7	4	4	21	15	21	5	-	-	1	-
	교육의원	5	-	-	1	1	2	1	-	-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153	208	256	1,124	405	315	35	12	4	1	-
	비례대표	375	17	38	29	183	46	48	10	2	2	-	-



병역신고사항별 당선인수

총당선인수 - 3,872명

(단위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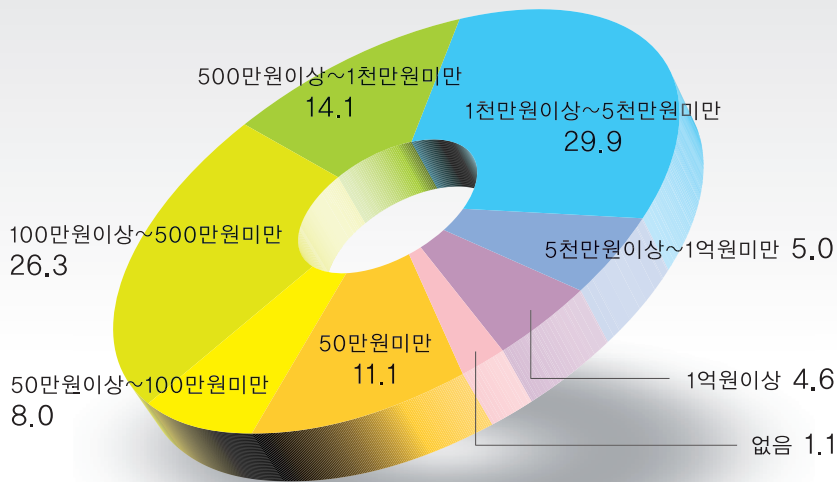
구 분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비대상)	
합 계	3,872	2,878	469	525	
시·도지사	16	12	4	-	
구·시·군의장	230	193	34	3	
시·도 의원	지역구	655	539	84	32
	비례대표	78	16	6	56
	교육의원	5	5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2,076	327	110
	비례대표	375	37	14	324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신고액(합계)별 당선인수

총당선인수 - 3,872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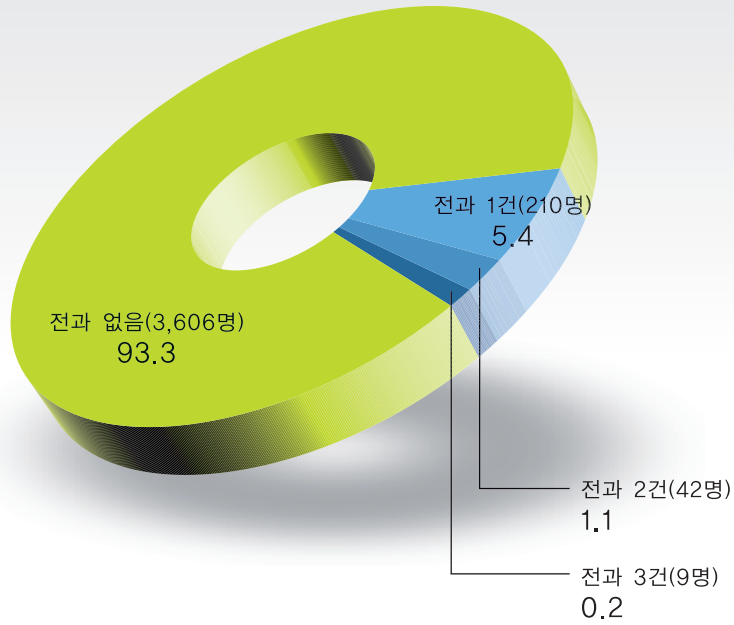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 계	3,872	41	430	311	1,017	545	1,157	194	177
시·도지사	16	-	-	-	-	-	13	-	3
구·시·군·의장	230	-	6	3	10	18	138	26	29
시·도 의원	지역구	655	3	54	39	152	101	220	40
	비례대표	78	-	8	6	14	8	26	9
	교육의원	5	-	-	-	-	-	5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27	320	226	737	371	654	102
	비례대표	375	11	42	37	104	47	101	17

전과건수별 당선인수

전체 대상자수 - 3,867명

(단위 %)



(단위 : 명)

구분	당선자수	전과건수별 당선자수					
		계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합계	3,872	261	210	42	6	2	1
시·도지사	16	2	2	-	-	-	-
구·시·군의회	230	14	12	2	-	-	-
시·도 의원	지역구	655	40	35	4	1	-
	비례대표	78	4	2	2	-	-
	교육의원	5	-	-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193	152	33	5	2
	비례대표	375	8	7	1	-	-

제2절

선거관련 주요통계

인구수 및 선거인수	278
선거구현황	304
예비후보자 등록	310
후보자 등록 및 당선인	311
선거비용	391
투표	423
개표	434
무효투표분석	441

인구수 및 선거인수

(1) 총괄편

구분	위원회수	읍·면·동수	투표구수	개표소수	인구수(A) (2006. 5. 12현재)	세대수
합계	250	3,579	13,106	259	48,855,598	17,963,819
서울	25	520	2,201	33	10,188,035	3,906,540
부산	16	226	869	16	3,626,260	1,271,770
대구	8	143	566	8	2,500,788	863,177
인천	10	141	582	11	2,605,983	938,360
광주	5	91	328	5	1,401,212	483,180
대전	5	80	326	5	1,458,581	508,278
울산	5	58	271	5	1,088,870	366,998
경기	44	530	2,511	44	10,771,743	3,955,416
강원	18	188	660	18	1,509,405	574,981
충북	13	153	464	13	1,489,576	549,665
충남	16	211	723	16	1,963,679	757,722
전북	15	244	653	15	1,877,995	682,985
전남	22	299	881	22	1,960,028	750,806
경북	24	338	947	24	2,692,505	1,013,979
경남	20	314	896	20	3,162,483	1,134,106
제주	4	43	228	4	558,455	205,856

주)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2006. 5. 12 현재) 기준임.



(단위 : 명, 개, %)

선거인수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계(B)	비율(B/A)	남	여	계(C)	비율(C/B)	남	여
37,074,061	75.9	18,247,658	18,826,403	894,243	2.4	773,533	120,710
7,985,142	78.4	3,910,900	4,074,242	166,145	2.1	152,225	13,920
2,845,880	78.5	1,387,208	1,458,672	61,908	2.2	55,644	6,264
1,885,520	75.4	915,950	969,570	43,023	2.3	38,774	4,249
1,940,815	74.5	964,840	975,975	41,608	2.1	38,491	3,117
1,014,914	72.4	492,646	522,268	27,866	2.7	24,181	3,685
1,077,847	73.9	529,479	548,368	25,694	2.4	23,226	2,468
790,513	72.6	397,499	393,014	18,596	2.4	16,312	2,284
7,920,755	73.5	3,938,938	3,981,817	163,268	2.1	147,555	15,713
1,161,397	76.9	575,280	586,117	34,414	3.0	28,510	5,904
1,126,709	75.6	557,463	569,246	30,039	2.7	25,466	4,573
1,503,708	76.6	746,213	757,495	40,463	2.7	33,590	6,873
1,430,175	76.2	699,698	730,477	46,075	3.2	36,180	9,895
1,514,400	77.3	742,278	772,122	57,673	3.8	41,685	15,988
2,088,390	77.6	1,023,060	1,065,330	59,626	2.9	47,773	11,853
2,375,958	75.1	1,164,956	1,211,002	66,625	2.8	54,568	12,057
411,938	73.8	201,250	210,688	11,220	2.7	9,353	1,867

(2) 선거인수

구분	인구수(A) (2006. 5. 12)	성 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B)	직권수정에 의한 감 (C)	이의·불복 신청등(D)		확정된 선거인수 (E=B+C+D)	비율 (E/A)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재자 수	세 대 수
					증	감				
합계	48,855,598	계	37,074,061	9,115	254	918	37,064,282		894,243	17,963,912
		남	18,247,658	6,069	196	592	18,241,193	75.9	773,533	
		여	18,826,403	3,046	58	326	18,823,089		120,710	
서울	10,188,035	계	7,985,142	1,288	40	246	7,983,648		166,145	3,906,491
		남	3,910,900	880	30	159	3,909,891	78.4	152,225	
		여	4,074,242	408	10	87	4,073,757		13,920	
부산	3,626,260	계	2,845,880	689	11	98	2,845,104		61,908	1,271,775
		남	1,387,208	433	9	70	1,386,714	78.5	55,644	
		여	1,458,672	256	2	28	1,458,390		6,264	
대구	2,500,788	계	1,885,520	402	2	77	1,885,043		43,023	863,177
		남	915,950	251	-	46	915,653	75.4	38,774	
		여	969,570	151	2	31	969,390		4,249	
인천	2,605,983	계	1,940,815	351	30	91	1,940,403		41,608	938,360
		남	964,840	235	24	64	964,565	74.5	38,491	
		여	975,975	116	6	27	975,838		3,117	
광주	1,401,212	계	1,014,914	303	13	4	1,014,620		27,866	483,182
		남	492,646	223	10	3	492,430	72.4	24,181	
		여	522,268	80	3	1	522,190		3,685	
대전	1,458,581	계	1,077,847	384	12	7	1,077,468		25,694	508,279
		남	529,479	298	11	3	529,189	73.9	23,226	
		여	548,368	86	1	4	548,279		2,468	
울산	1,088,870	계	790,513	226	2	-	790,289		18,596	366,997
		남	397,499	152	1	-	397,348	72.6	16,312	
		여	393,014	74	1	-	392,941		2,284	
경기	10,771,743	계	7,920,755	1,891	67	103	7,918,828		163,268	3,955,415
		남	3,938,938	1,284	51	67	3,937,638	73.5	147,555	
		여	3,981,817	607	16	36	3,981,190		15,713	

주) 선거인 명부 확정일(2006. 5. 24 현재) 기준임.



(단위 : 명, 세대, %)

구분	인구수(A) (2006. 5. 12)	성 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B)	직권수정에 의한 감 (C)	이의·불복 신청등(D)		확정된 선거인수 (E=B+C+D)	비율 (E/A)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재자 수	세 대 수
					증	감				
강원	1,509,405	계	1,161,397	415	3	8	1,160,977		34,414	574,978
		남	575,280	285	1	7	574,989	76.9	28,510	
		여	586,117	130	2	1	585,988		5,904	
충북	1,489,576	계	1,126,709	400	4	31	1,126,282		30,039	549,664
		남	557,463	274	1	19	557,171	75.6	25,466	
		여	569,246	126	3	12	569,111		4,573	
충남	1,963,679	계	1,503,708	434	30	64	1,503,240		40,463	757,727
		남	746,213	291	22	39	745,905	76.6	33,590	
		여	757,495	143	8	25	757,335		6,873	
전북	1,877,995	계	1,430,175	535	5	13	1,429,632		46,075	682,980
		남	699,698	336	5	6	699,361	76.1	36,180	
		여	730,477	199	-	7	730,271		9,895	
전남	1,960,028	계	1,514,400	460	19	47	1,513,912		57,673	750,551
		남	742,278	299	17	23	741,973	77.2	41,685	
		여	772,122	161	2	24	771,939		15,988	
경북	2,692,505	계	2,088,390	603	9	87	2,087,709		59,626	1,014,374
		남	1,023,060	385	7	58	1,022,624	77.5	47,773	
		여	1,065,330	218	2	29	1,065,085		11,853	
경남	3,162,483	계	2,375,958	658	6	41	2,375,265		66,625	1,134,108
		남	1,164,956	397	6	27	1,164,538	75.1	54,568	
		여	1,211,002	261	-	14	1,210,727		12,057	
제주	558,455	계	411,938	76	1	1	411,862		11,220	205,854
		남	201,250	46	1	1	201,204	73.8	9,353	
		여	210,688	30	-	-	210,658		1,867	

(3) 부재자신고인수

(단위 : 명)

구분	계	부재자투표소투표				거소투표		
		소계	일반	선거종사자	군인·경찰	소계	일반	군인·경찰
합계	894,243	776,545	92,144	103,169	581,232	117,698	65,808	51,890
서울	166,145	154,193	12,583	20,683	120,927	11,952	3,049	8,903
부산	61,908	55,870	5,451	6,482	43,937	6,038	1,569	4,469
대구	43,023	38,669	3,815	3,808	31,046	4,354	1,816	2,538
인천	41,608	37,826	2,266	4,245	31,315	3,782	794	2,988
광주	27,866	25,180	3,166	3,131	18,883	2,686	1,376	1,310
대전	25,694	23,497	2,038	2,292	19,167	2,197	847	1,350
울산	18,596	16,730	1,770	2,136	12,824	1,866	732	1,134
경기	163,268	148,274	10,725	21,037	116,512	14,994	5,522	9,472
강원	34,414	27,641	3,910	4,647	19,084	6,773	3,952	2,821
충북	30,039	25,212	2,890	3,709	18,613	4,827	3,513	1,314
충남	40,463	33,632	4,653	5,488	23,491	6,831	4,951	1,880
전북	46,075	36,875	6,832	4,951	25,092	9,200	7,367	1,833
전남	57,673	42,756	13,370	5,652	23,734	14,917	12,154	2,763
경북	59,626	48,406	9,467	6,438	32,501	11,220	8,326	2,894
경남	66,625	52,401	7,719	7,232	37,450	14,224	8,760	5,464
제주	11,220	9,383	1,489	1,238	6,656	1,837	1,080	757



(4) 연령별 선거인수

(단위 : 명)

구분	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37,064,282	616,844	7,527,199	8,755,193	8,382,988	5,400,228	6,381,830
서울	7,983,648	127,861	1,788,096	1,939,309	1,722,867	1,229,194	1,176,321
부산	2,845,104	48,087	597,840	582,865	648,448	493,096	474,768
대구	1,885,043	33,441	390,362	436,209	442,711	287,311	295,009
인천	1,940,403	34,521	398,636	480,081	491,371	266,318	269,476
광주	1,014,620	18,937	228,974	250,174	228,113	137,798	150,624
대전	1,077,468	19,798	238,659	267,650	250,871	149,893	150,597
울산	790,289	14,453	161,906	204,925	207,241	111,888	89,876
경기	7,918,828	127,487	1,576,619	2,150,409	1,930,298	1,007,606	1,126,409
강원	1,160,977	18,555	211,342	239,013	257,624	170,728	263,715
충북	1,126,282	19,409	218,648	245,859	246,642	158,270	237,454
충남	1,503,240	25,328	282,181	314,857	306,034	217,385	357,455
전북	1,429,632	24,602	268,652	288,403	290,640	218,980	338,355
전남	1,513,912	24,293	259,995	278,668	298,060	231,183	421,713
경북	2,087,709	34,234	380,467	424,413	433,506	319,373	495,716
경남	2,375,265	39,257	445,089	553,840	538,595	344,239	454,245
제주	411,862	6,581	79,733	98,518	89,967	56,966	80,097

(5) 시각장애선거인수

(단위 : 명, %)

구분	위원회수	읍·면·동 수	투표구수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세대수	시각장애 선거인수	세대수대비 비율	인구수대비 비율	19세 이상 주민수대비 비율
합계	250	3,579	13,106	55,697	59,237	0.3	0.1	0.2
서울	25	520	2,201	9,428	9,802	0.2	0.1	0.1
부산	16	226	869	3,930	3,977	0.3	0.1	0.1
대구	8	143	566	2,263	2,304	0.3	0.1	0.1
인천	10	141	582	3,312	3,388	0.4	0.1	0.2
광주	5	91	328	1,377	1,422	0.3	0.1	0.1
대전	5	80	326	1,444	1,538	0.3	0.1	0.1
울산	5	58	271	958	962	0.3	0.1	0.1
경기	44	530	2,511	9,624	9,804	0.3	0.1	0.1
강원	18	188	660	2,350	2,376	0.4	0.2	0.2
충북	13	153	464	1,856	1,902	0.3	0.1	0.2
충남	16	211	723	3,110	5,572	0.4	0.3	0.4
전북	15	244	653	2,954	2,978	0.4	0.2	0.2
전남	22	299	881	4,204	4,234	0.6	0.2	0.3
경북	24	338	947	4,031	4,071	0.4	0.2	0.2
경남	20	314	896	3,619	3,659	0.3	0.1	0.2
제주	4	43	228	1,237	1,248	0.6	0.2	0.3



(6) 인구수별 현황

■ 인구수별 위원회수

(단위 : 개)

구분	계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15만 미만	15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25만 미만	25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40만 미만	4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60만 미만	60만 이상
합계	250	43	55	26	18	19	26	32	21	8	2
서울	25	-	-	1	1	1	1	7	9	3	2
부산	16	-	3	2	2	1	3	3	2	-	-
대구	8	-	1	-	2	-	1	1	2	1	-
인천	10	1	3	-	-	-	1	3	1	1	-
광주	5	-	-	1	-	1	-	2	1	-	-
대전	5	-	-	-	-	3	1	-	-	1	-
울산	5	-	-	1	2	1	-	1	-	-	-
경기	44	1	4	4	7	6	10	8	4	-	-
강원	18	10	5	-	-	1	2	-	-	-	-
충북	13	4	4	2	-	1	1	1	-	-	-
충남	16	2	7	4	1	1	-	-	-	1	-
전북	15	5	4	2	-	-	2	2	-	-	-
전남	22	8	10	1	-	1	1	1	-	-	-
경북	24	9	4	5	1	1	3	1	-	-	-
경남	20	3	7	3	2	1	-	1	2	1	-
제주	4	-	3	-	-	-	-	1	-	-	-

■ 인구수별 읍·면·동수

(단위 : 개)

구분	계	1천 미만	1천 이상 2천 미만	2천 이상 3천 미만	3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2만 미만	2만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합계	3,579	22	160	319	517	728	911	601	299	22
서울	520	2	2	1	7	52	207	194	55	-
부산	226	-	3	1	7	66	90	34	24	1
대구	143	-	-	-	6	23	69	28	15	2
인천	141	2	5	2	15	16	35	47	18	1
광주	91	-	-	3	3	29	30	17	9	-
대전	80	-	-	-	4	13	32	22	8	1
울산	58	-	1	-	3	8	21	17	8	-
경기	530	5	3	8	39	82	142	144	100	7
강원	188	5	13	23	44	56	31	12	4	-
충북	153	3	6	32	31	32	27	13	9	-
충남	211	-	7	23	61	60	37	13	10	-
전북	244	2	25	49	55	52	43	11	7	-
전남	299	1	34	50	100	66	30	12	6	-
경북	338	1	22	74	83	81	43	23	10	1
경남	314	1	38	51	52	79	62	10	12	9
제주	43	-	1	2	7	13	12	4	4	-



■ 인구수별 투표구수

(단위 : 개)

구분	계	5백 미만	5백 이상 1천 미만	1천 이상 1천5백 미만	1천5백 이상 2천 미만	2천 이상 2천5백 미만	2천5백 이상 3천 미만	3천 이상 4천 미만	4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합계	13,106	264	703	828	830	857	878	2,313	3,165	3,268
서울	2,201	2	6	6	13	35	62	395	882	800
부산	869	1	8	15	19	38	50	220	313	205
대구	566	2	6	9	10	13	23	113	205	185
인천	582	21	21	13	17	10	18	62	160	260
광주	328	1	2	10	7	11	26	74	94	103
대전	326	-	4	5	9	8	17	54	122	107
울산	271	-	11	8	11	12	14	71	73	71
경기	2,511	20	96	110	110	111	135	408	571	950
강원	660	65	124	71	68	63	56	104	72	37
충북	464	10	38	41	38	51	42	83	91	70
충남	723	9	50	118	102	99	86	120	68	71
전북	653	24	52	86	80	70	50	105	106	80
전남	881	69	121	145	128	100	72	126	76	44
경북	947	12	73	88	113	136	135	190	125	75
경남	896	18	53	71	81	83	69	145	176	200
제주	228	10	38	32	24	17	23	43	31	10

■ 인구수 최다·최소 위원회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위원회별 평균인구수
	위원회명	인구수	위원회명	인구수	
서울	노원구	622,529	중 구	130,183	407,521
부산	해운대구	411,401	중 구	52,052	226,641
대구	달서구	596,674	중 구	80,432	312,599
인천	부평구	565,563	옹진군	15,612	260,598
광주	북 구	462,824	동 구	115,151	280,242
대전	서 구	509,232	대덕구	222,992	291,716
울산	남 구	346,957	북 구	145,304	217,774
경기	남양주시	458,530	연천군	47,264	244,812
강원	원주시	288,057	양구군	21,461	83,856
충북	청주흥덕	372,847	증평군	30,668	114,583
충남	천안시	511,103	청양군	35,036	122,730
전북	전주완산	349,324	장수군	24,790	125,200
전남	여수시	301,760	구례군	29,680	89,092
경북	구미시	378,198	울릉군	10,018	112,188
경남	창원시	504,388	의령군	30,989	158,124
제주	제주시	306,659	남제주군	74,195	139,614



■ 인구수 최다·최소 읍·면·동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읍·면·동별 평균인구수
	읍·면·동명	인구수	읍·면·동명	인구수	
서울	양천구신정3동	49,058	성북구월곡3동	767	19,592
부산	기장군기장읍	50,290	금정구금성동	1,223	16,045
대구	달성군화원읍	55,145	달성군유가면	4,167	17,488
인천	서구검단1동	58,227	강화군서도면	645	18,482
광주	북구건국동	43,859	광산구동곡동	2,766	15,398
대전	유성구노은동	57,146	동구중앙동	3,348	18,232
울산	남구삼산동	46,103	울주군삼동면	1,882	18,774
경기	남양주시화도읍	69,268	파주시진동면	156	20,324
강원	춘천시석사동	41,674	철원군근북면	155	8,029
충북	청주흥덕산미분장동	48,207	보은군화남면	795	9,736
충남	천안시부성동	48,187	부여군충화면	1,560	9,307
전북	전주완산구서신동	47,392	진안군용담면	966	7,697
전남	순천시덕연동	48,742	영광군낙월면	816	6,555
경북	구미시인동동	50,506	상주시화남면	888	7,966
경남	김해시내외동	89,316	함안군여항면	961	10,072
제주	제주시노형동	45,013	북제주군우도면	1,792	12,987

(7) 선거인수별 현황

■ 선거인수별 위원회수

(단위 : 개)

구분	계	1만 미만	1만 이상 2만 미만	2만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7만 미만	7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15만 미만	15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합계	250	1	4	19	40	27	24	27	30	46	32
서울	25	-	-	-	-	-	-	2	1	6	16
부산	16	-	-	-	2	1	1	3	1	6	2
대구	8	-	-	-	-	1	-	2	1	1	3
인천	10	-	1	-	-	2	1	-	1	3	2
광주	5	-	-	-	-	-	1	-	1	2	1
대전	5	-	-	-	-	-	-	-	3	1	1
울산	5	-	-	-	-	-	1	2	1	1	-
경기	44	-	-	-	3	2	2	9	8	17	3
강원	18	-	2	3	6	3	1	-	2	1	-
충북	13	-	-	2	5	1	1	1	2	1	-
충남	16	-	-	2	1	4	4	3	1	-	1
전북	15	-	-	5	-	3	3	-	2	2	-
전남	22	-	-	3	10	4	2	-	2	1	-
경북	24	1	1	3	6	2	4	2	3	2	-
경남	20	-	-	1	7	2	2	3	1	1	3
제주	4	-	-	-	-	2	1	-	-	1	-



■ 선거인수별 읍·면·동수

(단위: 개)

구분	계	5백 미만	5백 이상 1천 미만	1천 이상 2천 미만	2천 이상 3천 미만	3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2만 미만	2만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합계	3,579	4	25	272	346	584	801	1,098	373	76
서울	520	1	1	2	2	13	86	306	103	6
부산	226	-	-	4	2	22	69	94	30	5
대구	143	-	-	-	-	13	39	69	16	6
인천	141	-	2	6	5	16	21	61	27	3
광주	91	-	-	-	6	9	34	32	9	1
대전	80	-	-	-	2	7	15	44	11	1
울산	58	-	-	1	-	3	17	29	7	1
경기	530	2	3	6	19	42	100	218	112	28
강원	188	1	4	21	23	57	52	24	6	-
충북	153	-	3	22	25	32	30	31	7	3
충남	211	-	-	13	34	60	59	33	10	2
전북	244	-	3	42	50	63	39	39	6	2
전남	299	-	5	46	61	94	62	25	3	3
경북	338	-	2	45	71	83	77	46	13	1
경남	314	-	2	62	41	63	87	36	10	13
제주	43	-	-	2	5	7	14	11	3	1

■ 선거인수별 투표구수

(단위 : 개)

구분	계	5백 미만	5백 이상 1천 미만	1천 이상 1천5백 미만	1천5백 이상 2천 미만	2천 이상 2천5백 미만	2천5백 이상 3천 미만	3천 이상 3천5백 미만	3천5백 이상 4천 미만	4천 이상
합계	13,106	358	877	1,060	1,157	1,328	1,690	2,260	2,189	2,187
서울	2,201	2	8	12	31	89	223	530	613	693
부산	869	1	13	21	36	70	133	211	227	157
대구	566	3	6	15	14	35	82	156	151	104
인천	582	25	23	20	12	30	42	106	151	173
광주	328	1	5	10	20	33	69	80	62	48
대전	326	-	7	7	13	25	43	99	65	67
울산	271	2	12	9	25	36	48	55	50	34
경기	2,511	27	130	145	157	218	335	401	460	638
강원	660	90	128	94	81	80	77	60	36	14
충북	464	13	48	46	70	58	71	73	40	45
충남	723	13	74	141	138	132	89	63	45	28
전북	653	36	65	107	100	71	92	99	54	29
전남	881	84	155	178	147	123	89	53	40	12
경북	947	14	94	134	165	192	147	110	62	29
경남	896	26	64	88	115	104	121	139	125	114
제주	228	21	45	33	33	32	29	25	8	2



■ 선거인수 최다·최소 위원회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위원회별 평균선거인수
	위원회명	선거인수	위원회명	선거인수	
서울	송파구	467,011	중 구	107,164	319,346
부산	부산진구	325,963	중 구	43,062	177,819
대구	달서구	432,607	중 구	66,126	235,630
인천	부평구	425,004	옹진군	13,268	194,040
광주	북 구	333,413	동 구	90,767	202,924
대전	서 구	367,265	대덕구	159,054	215,494
울산	남 구	250,864	북 구	99,489	158,058
경기	남양주시	336,528	연천군	36,970	179,973
강원	원주시	215,770	양구군	16,454	64,499
충북	청주흥덕구	269,294	증평군	23,117	86,637
충남	천안시	372,195	계룡시	24,442	93,953
전북	전주시완산구	252,082	장수군	20,567	95,309
전남	여수시	224,001	구례군	24,281	68,814
경북	구미시	269,226	울릉군	8,429	86,988
경남	창원시	356,493	의령군	26,657	118,763
제주	제주시	218,768	남제주군	56,498	102,966

■ 선거인수 최다·최소 읍·면·동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읍면동별 평균선거인수
	읍·면·동명	선거인수	읍·면·동명	선거인수	
서울	양천구신정3동	38,102	성북구월곡3동	344	15,353
부산	기장군기장읍	38,171	금정구금성동	1,029	12,589
대구	달성군화원읍	39,563	달성군유가면	3,538	13,182
인천	서구검단1동	41,172	강화군서도면	606	13,762
광주	북구건국동	31,017	광산구하남동	2,258	11,150
대전	유성구노은동	39,624	동구대청동	2,899	13,468
울산	남구삼산동	32,698	울주군삼동면	1,621	13,626
경기	남양주시화도읍	50,521	파주시진동면	129	14,941
강원	춘천시석사동	28,905	철원군근북면	138	6,175
충북	청주상당구울량천동	32,009	보은군화남면	714	7,361
충남	천안시부성동	33,561	부여군충화면	1,358	7,124
전북	전주완산평화2동	32,976	진안군상전면	879	5,859
전남	순천시덕연동	32,095	영광군낙월면	668	5,063
경북	구미시인동동	35,090	상주시화남면	776	6,177
경남	김해시내외동	58,577	함안군여항면	853	7,565
제주	제주시노형동	30,737	북제주군우도면	1,427	9,578



■ 선거별 선거인수 최다·최소 선거구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선거구별 평균 선거인수
	선거구명	선거인수	선거구명	선거인수	
서울	송파구	467,011	중 구	107,164	319,406
부산	부산진구	325,963	중 구	43,062	177,868
대구	달서구	432,607	중 구	66,126	235,690
인천	부평구	425,004	용진군	13,268	194,082
광주	북 구	333,413	동 구	90,767	202,983
대전	서 구	367,265	대덕구	159,054	215,569
울산	남 구	250,864	북 구	99,489	158,103
경기	수원시	763,586	연천군	36,970	255,508
강원	원주시	215,770	양구군	16,454	64,522
충북	청주시	457,742	증평군	23,117	93,892
충남	천안시	372,195	계룡시	24,442	93,982
전북	전주시	450,694	장수군	20,567	102,155
전남	여수시	224,001	구례군	24,281	68,836
경북	포항시	381,818	울릉군	8,429	90,800
경남	창원시	356,493	의령군	26,657	118,798

·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선거구별 평균 선거인수
	선거구명	선거인수	선거구명	선거인수	
서울	강남구(2)	124,830	중 구(1)	51,289	83,179
부산	동래구(1)	121,058	기장군(2)	19,570	67,759
대구	북 구(3)	109,322	중 구(1)	32,070	72,520
인천	부평구(1)	110,894	옹진군(2)	5,966	64,694
광주	광산구(2)	102,520	동 구(1)	43,185	63,432
대전	유성구(1)	103,405	대덕구(3)	50,182	67,365
울산	남 구(1)	69,674	북 구(1)	28,915	49,407
경기	용인시(1)	146,083	연천군(1)	15,692	73,340
강원	원주시(2)	109,063	양구군(2)	7,250	32,261
충북	청주시(2)	112,481	증평군(2)	2,347	40,240
충남	천안시(4)	106,837	계룡시(2)	9,944	44,227
전북	군산시(2)	104,686	진안군(2)	9,234	42,064
전남	목포시(2)	99,579	진도군(2)	10,841	32,922
경북	경주시(2)	105,923	울릉군(2)	2,594	41,768
경남	마산시(3)	100,908	의령군(2)	11,829	49,499
제주	제주도(6)	22,020	제주도(28)	7,986	14,205

주) 선거구명 표기 : 예) 강남구제2선거구 → 강남구(2)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선거구별 평균 선거인수
	선거구명	선거인수	선거구명	선거인수	
서울	광진구(다)	86,064	중 구(나)	24,593	21,817
부산	북 구(가)	72,874	기장군(나)	19,570	18,012
대구	달서구(가)	81,611	북 구(라)	24,204	18,485
인천	남 구(가)	76,043	옹진군(나)	5,966	20,008
광주	북 구(가)	80,281	남 구(가)	30,521	17,202
대전	서 구(마)	75,278	동 구(라)	27,729	19,597
울산	남 구(가)	69,674	북 구(가)	28,915	18,384
경기	남양주시(나)	100,593	가평군(가)	11,433	21,760
강원	동해시(가)	51,003	양구군(나)	7,250	7,955
충북	청주시(마)	68,884	증평군(나)	2,347	9,883
충남	천안시(라)	97,059	연기군(나)	7,817	9,893
전북	군산시(아)	49,842	순창군(나)	5,135	8,267
전남	순천시(라)	40,160	화순군(나)	7,251	7,177
경북	포항시(마)	55,405	울릉군(나)	2,594	8,455
경남	김해시(바)	80,425	의령군(가)	5,286	10,513

주) 선거구명 표기 : 예) 광진구다선거구 → 광진구(다)

(8) 투표구별 현황

■ 투표구수별 위원회수

(단위 : 개)

구분	계	30개 미만	30개 이상 50개 미만	50개 이상 70개 미만	70개 이상 90개 미만	90개 이상 110개 미만	110개 이상 130개 미만	130개 이상 150개 미만	150개 이상
합계	250	63	63	56	40	20	7	1	-
서울	25	-	1	3	9	8	4	-	-
부산	16	3	4	5	2	2	-	-	-
대구	8	1	1	2	1	2	1	-	-
인천	10	2	2	3	2	-	1	-	-
광주	5	-	2	1	1	1	-	-	-
대전	5	-	-	4	-	1	-	-	-
울산	5	-	2	2	1	-	-	-	-
경기	44	2	13	18	7	4	-	-	-
강원	18	9	6	1	2	-	-	-	-
충북	13	8	2	1	2	-	-	-	-
충남	16	4	7	4	-	-	-	1	-
전북	15	5	4	3	3	-	-	-	-
전남	22	7	11	2	1	-	1	-	-
경북	24	12	4	2	6	-	-	-	-
경남	20	10	3	3	2	2	-	-	-
제주	4	-	1	2	1	-	-	-	-



■ 투표구수별 읍·면·동수

(단위 : 개)

구분	계	1개	2개	3개 이상 5개 미만	5개 이상 7개 미만	7개 이상 9개 미만	9개 이상 11개 미만	11개 이상 13개 미만	13개 이상 15개 미만	15개 이상
합계	3,579	364	843	1,380	666	216	77	20	7	6
서울	520	3	54	261	172	27	3	-	-	-
부산	226	7	55	101	36	22	3	2	-	-
대구	143	-	29	77	24	6	7	-	-	-
인천	141	4	24	57	41	13	2	-	-	-
광주	91	2	26	41	15	4	3	-	-	-
대전	80	3	14	31	24	6	1	1	-	-
울산	58	-	4	27	20	5	2	-	-	-
경기	530	20	46	199	165	70	23	4	2	1
강원	188	12	55	81	23	11	5	1	-	-
충북	153	28	46	51	16	10	2	-	-	-
충남	211	14	63	98	17	11	5	3	-	-
전북	244	52	90	76	18	5	2	1	-	-
전남	299	56	105	92	32	6	4	2	2	-
경북	338	68	132	88	36	7	5	2	-	-
경남	314	92	92	86	22	10	5	2	-	5
제주	43	3	8	14	5	3	5	2	3	-

■ 투표구 최다·최소 위원회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평균 투표구수
	위원회명	투표구수	위원회명	투표구수	
서울	노원구	119	중 구	45	88
부산	해운대구	94	중 구	22	54
대구	달서구	119	중 구	27	71
인천	부평구	114	동 구	23	58
광주	북 구	100	동 구	36	66
대전	서 구	99	유성구	50	65
울산	남 구	75	북 구	39	54
경기	평택시	101	과천시	19	57
강원	춘천시	81	양구군	19	37
충북	청주시홍덕구	78	증평군	8	36
충남	천안시	142	계룡시	9	45
전북	익산시	89	무주시	13	44
전남	여수시	112	곡성군	15	40
경북	구미시	83	울릉군	7	39
경남	마산시	108	산청군	20	45
제주	제주시	87	서귀포시	35	57



■ 선거인수 최다·최소 투표구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위원회별 평균선거인수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구명	선거인수	
서울	동작구본동(3)	5,981	중구소공동(1)	215	3,627
부산	연제구거제4동(1)	5,441	남구용호2동(4)	71	3,274
대구	달성군화원읍(4)	5,720	서구내당1동(4)	43	3,330
인천	연수구동춘2동(6)	5,558	서구신현원창동(5)	37	3,334
광주	북구건국동(2)	4,906	광산구하남동(2)	341	3,093
대전	서구갈매1동(3)	5,283	유성구구죽동(4)	530	3,305
울산	동구전하1동(1)	5,009	울주군두동면(1)	479	2,916
경기	부천원미중2동(1)	6,135	파주시진동면	129	3,154
강원	강릉시성덕동(1)	4,898	인제군남면(4)	99	1,759
충북	제천시교동(2)	5,671	단양군영춘면(2)	192	2,427
충남	당진군당진읍(6)	5,857	서산시팔봉면(3)	72	2,079
전북	전주시완산중화산2동(1)	4,764	군산시옥도면(11)	65	2,189
전남	목포시용해동(3)	4,858	여수시화정면(10)	43	1,718
경북	칠곡군석적면(2)	5,534	봉화군재산면(2)	131	2,205
경남	창원시성주동(5)	6,514	의령군지정면(3)	103	2,651
제주	제주시노형동(6)	4,439	북제주군한림읍(11)	131	1,806

주) 투표구명 표기 : 예) 동작구본동제3투표구 → 동작구본동(3)

(9) 부재자 신고인수별 현황

■ 부재자 신고인수별 위원회수

(단위 : 개)

구분	계	1천 미만	1천 이상 2천 미만	2천 이상 3천 미만	3천 이상 4천 미만	4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6천 미만	6천 이상 7천 미만	7천 이상 8천 미만	8천 이상 9천 미만	9천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합계	250	19	66	45	28	25	24	20	10	6	4	3
서울	25	-	1	2	1	1	5	4	3	4	2	2
부산	16	2	2	3	1	2	3	3	-	-	-	-
대구	8	-	1	1	1	1	-	1	2	-	-	1
인천	10	1	3	-	-	1	2	2	-	1	-	-
광주	5	-	-	1	-	1	1	1	-	-	1	-
대전	5	-	-	-	2	2	-	-	-	-	1	-
울산	5	-	1	1	1	1	-	1	-	-	-	-
경기	44	1	6	7	12	11	3	3	1	-	-	-
강원	18	4	9	2	-	1	2	-	-	-	-	-
충북	13	3	5	2	1	1	-	1	-	-	-	-
충남	16	-	5	8	2	-	-	-	1	-	-	-
전북	15	3	4	4	-	1	-	1	2	-	-	-
전남	22	-	11	5	2	1	3	-	-	-	-	-
경북	24	5	7	4	3	1	3	1	-	-	-	-
경남	20	-	8	5	2	-	2	1	1	1	-	-
제주	4	-	3	-	-	-	-	1	-	-	-	-



■ 부재자 신고인수 최다·최소 위원회

(단위 : 명)

구분	최 다		최 소		위원회별 평균신고인수
	위원회명	신고인수	위원회명	신고인수	
서울	노원구	12,285	중 구	1,632	6,646
부산	부산진구	6,871	중 구	677	3,869
대구	달서구	10,430	중 구	1,215	5,378
인천	부평구	8,942	옹진군	385	4,161
광주	북 구	9,059	동 구	2,517	5,573
대전	서 구	9,497	대덕구	3,592	5,139
울산	남 구	6,015	북 구	1,860	3,719
경기	부천시원미구	7,991	과천시	957	3,711
강원	원주시	5,216	양구군	593	1,912
충북	청주시흥덕구	6,284	증평군	698	2,311
충남	천안시	7,080	청양군	1,084	2,529
전북	군산시	7,562	장수군	898	3,072
전남	순천시	5,682	함평군	1,061	2,622
경북	구미시	6,062	영양군	734	2,484
경남	창원시	8,768	의령군	1,016	3,331
제주	제주시	6,010	남제주군	1,420	2,805

 선거구 현황

(1) 선거구 및 정수

(단위 : 개)

구분	계		시·도 지사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선거구 수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 (=정수)	선거구 (=정수)	선거구	정수	선거구	정수	선거구	정수	선거구	정수
합 계	2,180	3,872	16	230	655 (5)	655 (5)	16	78	1,028	2,513	230	375
서울	310	551	1	25	96	96	1	10	162	366	25	53
부산	145	246	1	16	42	42	1	5	69	158	16	24
대구	87	154	1	8	26	26	1	3	43	102	8	14
인천	94	156	1	10	30	30	1	3	42	97	10	15
광주	47	93	1	5	16	16	1	3	19	59	5	9
대전	50	88	1	5	16	16	1	3	22	55	5	8
울산	44	75	1	5	16	16	1	3	16	43	5	7
경기	320	568	1	31	108	108	1	11	148	364	31	53
강원	125	228	1	18	36	36	1	4	51	146	18	23
충북	99	175	1	12	28	28	1	3	45	114	12	17
충남	128	233	1	16	34	34	1	4	60	152	16	26
전북	136	250	1	14	34	34	1	4	72	173	14	24
전남	175	317	1	22	46	46	1	5	83	211	22	32
경북	199	363	1	23	50	50	1	5	101	247	23	37
경남	185	333	1	20	48	48	1	5	95	226	20	33
제주	36	42	1		29	29	1	7	-	-	-	-

주) ()는 제주도 교육위원으로 본 수에 미포함



(2)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지역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정수

(단위 : 개)

구분	정수			선거구수										
	계	지역구	비례대표	계	지역구				비례대표					
					소계	2인	3인	4인	소계	1인	2인	3인	4인	
합 계	2,888	2,513	375	1,258	1,028	610	379	39	230	117	86	22	5	
서울	419	366	53	187	162	120	42	-	25	2	18	5	-	
부산	182	158	24	85	69	50	18	1	16	8	8	-	-	
대구	116	102	14	51	43	27	16	-	8	3	4	1	-	
인천	112	97	15	52	42	29	13	-	10	5	5	-	-	
광주	68	59	9	24	19	4	9	6	5	1	4	-	-	
대전	63	55	8	27	22	11	11	-	5	2	3	-	-	
울산	50	43	7	21	16	5	11	-	5	3	2	-	-	
경기	417	364	53	179	148	80	68	-	31	18	7	3	3	
강원	169	146	23	69	51	12	34	5	18	15	1	2	-	
충북	131	114	17	57	45	23	20	2	12	8	3	1	-	
충남	178	152	26	76	60	35	18	7	16	7	8	1	-	
전북	197	173	24	86	72	47	21	4	14	8	3	2	1	
전남	243	211	32	105	83	45	31	7	22	15	4	3	-	
경북	284	247	37	124	101	60	37	4	23	13	7	2	1	
경남	259	226	33	115	95	62	30	3	20	9	9	2	-	

(3) 선거인수별 선거구수

■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개)

구분	계	50만미만	50만이상 100만미만	100만이상 150만미만	15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250만미만	25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이상 400만미만	400만이상
합계	16	1	1	5	4	2	1	-	2
서울	1	-	-	-	-	-	-	-	1
부산	1	-	-	-	-	-	1	-	-
대구	1	-	-	-	1	-	-	-	-
인천	1	-	-	-	1	-	-	-	-
광주	1	-	-	1	-	-	-	-	-
대전	1	-	-	1	-	-	-	-	-
울산	1	-	1	-	-	-	-	-	-
경기	1	-	-	-	-	-	-	-	1
강원	1	-	-	1	-	-	-	-	-
충북	1	-	-	1	-	-	-	-	-
충남	1	-	-	-	1	-	-	-	-
전북	1	-	-	1	-	-	-	-	-
전남	1	-	-	-	1	-	-	-	-
경북	1	-	-	-	-	1	-	-	-
경남	1	-	-	-	-	1	-	-	-
제주	1	1	-	-	-	-	-	-	-



■ 구·시·군의 장(=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개)

구분	계	1만미만 1만미만	1만이상 2만미만	2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5만미만	5만이상 10만미만	10만이상 15만미만	15만이상 20만미만	20만이상 30만미만	30만이상
합계	230	1	4	19	40	48	25	20	33	40
서울	25	-	-	-	-	-	2	1	6	16
부산	16	-	-	-	2	2	3	1	6	2
대구	8	-	-	-	-	1	2	1	1	3
인천	10	-	1	-	-	3	-	1	3	2
광주	5	-	-	-	-	1	-	1	2	1
대전	5	-	-	-	-	-	-	3	1	1
울산	5	-	-	-	-	1	2	1	1	-
경기	31	-	-	-	3	4	7	2	7	8
강원	18	-	2	3	6	4	-	2	1	-
충북	12	-	-	2	5	2	1	1	-	1
충남	16	-	-	2	1	8	3	1	-	1
전북	14	-	-	5	-	6	-	1	1	1
전남	22	-	-	3	10	6	-	2	1	-
경북	23	1	1	3	6	6	2	1	2	1
경남	20	-	-	1	7	4	3	1	1	3

■ 시·도의원

(단위 : 개)

구분	계	1천미만	1천이상 3천미만	5천미만 3천이상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2만미만	2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5만미만	5만이상 10만미만	10만이상
합계	655 (5)	-	2	-	18	87	80	77	337	54
서울	96	-	-	-	-	-	-	-	80	16
부산	42	-	-	-	-	2	3	5	28	4
대구	26	-	-	-	-	-	-	3	20	3
인천	30	-	-	-	2	-	4	2	18	4
광주	16	-	-	-	-	-	-	2	13	1
대전	16	-	-	-	-	-	-	-	15	1
울산	16	-	-	-	-	-	1	7	8	-
경기	108	-	-	-	-	3	5	8	75	17
강원	36	-	-	-	7	12	8	2	5	2
충북	28	-	1	-	-	7	7	3	9	1
충남	34	-	-	-	1	4	6	12	10	1
전북	34	-	-	-	2	8	3	8	12	1
전남	46	-	-	-	-	14	16	8	8	-
경북	50	-	1	-	2	14	8	9	14	2
경남	48	-	-	-	-	7	12	6	22	1
제주	29	-	-	-	4	16	7	2	-	-

주) ()는 제주도 교육위원으로 본 수에 미포함



■ 구·시·군의원

(단위 : 개)

구분	계	2천미만	2천이상 3천미만	3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2만미만	2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합계	1,028	-	2	-	74	211	163	578
서울	162	-	-	-	-	-	5	157
부산	69	-	-	-	-	2	11	56
대구	43	-	-	-	-	-	4	39
인천	42	-	-	-	2	-	6	34
광주	19	-	-	-	-	-	-	19
대전	22	-	-	-	-	-	2	20
울산	16	-	-	-	-	-	1	15
경기	148	-	-	-	-	5	10	133
강원	51	-	-	-	7	19	12	13
충북	45	-	1	-	4	15	13	12
충남	60	-	-	-	4	20	25	11
전북	72	-	-	-	10	38	7	17
전남	83	-	-	-	9	43	26	5
경북	101	-	1	-	16	44	21	19
경남	95	-	-	-	22	25	20	28

예비후보자등록

(단위 : 명)

구분	계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등록	최종	본선	등록	최종	본선	등록	최종	본선	등록	최종	본선	등록	최종	본선
합계	13,680	11,608	10,991	119	94	66	1,399	989	848	2,708	2,179	2,082	9,454	8,346	7,995
서울	1,945	1,630	1,525	25	21	8	188	128	103	372	326	314	1,360	1,155	1,100
부산	701	663	643	2	2	3	53	46	44	114	112	111	532	503	485
대구	428	401	379	9	8	5	40	29	22	67	61	60	312	303	292
인천	561	462	443	7	6	4	62	44	39	139	107	107	353	305	293
광주	392	288	267	7	6	4	40	29	23	96	54	53	249	199	187
대전	371	284	266	10	7	6	44	24	20	99	62	56	218	191	184
울산	187	172	161	6	4	3	19	16	15	53	50	43	109	102	100
경기	1,966	1,715	1,631	7	7	4	240	169	134	411	355	352	1,308	1,184	1,141
강원	856	739	700	5	5	4	97	72	65	152	119	112	602	543	519
충북	653	534	507	6	4	4	72	43	37	122	92	87	453	395	379
충남	960	782	735	7	5	4	103	70	59	180	143	130	670	564	542
전북	998	775	761	6	4	4	102	67	63	172	115	115	718	589	579
전남	1,070	859	801	8	5	4	108	69	65	221	149	133	733	636	599
경북	1,302	1,166	1,096	4	2	2	112	92	81	196	155	146	990	917	867
경남	1,145	1,006	951	5	4	4	119	91	78	174	151	141	847	760	728
제주	145	132	125	5	4	3	-	-	-	140 (14)	128 (14)	122 (14)	-	-	-

주1, 최종은 최종예비후보자이며 총등록에서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을 제외한 숫자이며 본선은 본선에 후보자 등록된 숫자임.

주2, 제주도 교육의원은 지역구시도의원란에 ()로 표기하며 본수에 포함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

(1) 선거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단위 : 명)

구분	계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등록	당선	등록	당선	등록	당선	등록	당선	등록	당선	등록	당선	등록	당선
합계	12,227	3,872	66	16	848	230	2,068	655	211	78	7,995	2,513	1,025	375
서울	1,724	551	8	1	103	25	314	96	35	10	1,100	366	164	53
부산	715	246	3	1	44	16	111	42	9	5	485	158	63	24
대구	412	154	5	1	22	8	60	26	7	3	292	102	26	14
인천	490	156	4	1	39	10	107	30	10	3	93	97	37	15
광주	306	93	4	1	23	5	53	16	10	3	187	59	29	9
대전	300	88	6	1	20	5	56	16	9	3	184	55	25	8
울산	186	75	3	1	15	5	43	16	7	3	100	43	18	7
경기	1,812	568	4	1	134	31	352	108	32	11	1,141	364	149	53
강원	757	228	4	1	65	18	112	36	7	4	519	146	50	23
충북	551	175	4	1	37	12	87	28	8	3	379	114	36	17
충남	836	233	4	1	59	16	130	34	13	4	542	152	88	26
전북	844	250	4	1	63	14	115	34	12	4	579	173	71	24
전남	907	317	4	1	65	22	133	46	12	5	599	211	94	32
경북	1,200	363	2	1	81	23	146	50	11	5	867	247	93	37
경남	1,044	333	4	1	78	20	141	48	11	5	728	226	82	33
제주	143	42	3	1	-	-	108 (14)	29 (5)	18	7	-	-	-	-

주1, ()는 제주도 교육의원으로 본수에 미포함

주2, 당선은 정수와 동일함

(2) 정당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 시·도지사

(단위 : 명)

구분	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기타정당 무소속	선거구수	경쟁률
합계	66 (16)	16 (1)	16 (12)	8 (2)	13 (-)	7 (-)	6 (1)	16	4.1:1
서울	8 (1)	1	1 (1)	1	1	1	3	1	8.0:1
부산	3 (1)	1	1 (1)	-	1	-	-	1	3.0:1
대구	5 (1)	1	1 (1)	-	1	1	1	1	5.0:1
인천	4 (1)	1	1 (1)	1	1	-	-	1	4.0:1
광주	4 (1)	1	1	1 (1)	1	-	-	1	4.0:1
대전	6 (1)	1	1 (1)	1	1	1	1	1	6.0:1
울산	3 (1)	1	1 (1)	-	1	-	-	1	3.0:1
경기	4 (1)	1	1 (1)	1	1	-	-	1	4.0:1
강원	4 (1)	1	1 (1)	1	-	1	-	1	4.0:1
충북	4 (1)	1	1 (1)	-	1	1	-	1	4.0:1
충남	4 (1)	1	1 (1)	-	1	1	-	1	4.0:1
전북	4 (1)	1 (1)	1	1	1	-	-	1	4.0:1
전남	4 (1)	1	1	1 (1)	1	-	-	1	4.0:1
경북	2 (1)	1	1 (1)	-	-	-	-	1	2.0:1
경남	4 (1)	1	1 (1)	-	1	1	-	1	4.0:1
제주	3 (1)	1	1	-	-	-	1 (1)	1	3.0:1

주) ()는 정당별 당선인 수임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구분	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기타정당 무소속	선거구수	경쟁률
합계	848 (230)	185 (19)	197 (155)	90 (20)	56 (-)	37 (7)	283 (29)	230	3.7:1
서울	103 (25)	25	25 (25)	19	10	3	21	25	4.1:1
부산	44 (16)	13	16 (15)	2	1	-	12 (1)	16	2.8:1
대구	22 (8)	4	8 (8)	-	1	-	9	8	2.8:1
인천	39 (10)	9	10 (9)	8	8	-	4 (1)	10	3.9:1
광주	23 (5)	5	2	5 (5)	4	-	7	5	4.6:1
대전	20 (5)	5	5 (5)	-	1	5	4	5	4.0:1
울산	15 (5)	3	5 (4)	-	3	-	4 (1)	5	3.0:1
경기	134 (31)	29 (1)	31 (27)	16	8	8	42 (3)	31	4.3:1
강원	65 (18)	18	18 (18)	3	4	-	22	18	3.6:1
충북	37 (12)	10 (4)	12 (5)	-	-	4	11 (3)	12	3.1:1
충남	59 (16)	13 (3)	16 (6)	1	1	16 (7)	12	16	3.7:1
전북	63 (14)	14 (4)	2	13 (5)	5	-	29 (5)	14	4.5:1
전남	65 (22)	16 (5)	4	22 (10)	3	-	20 (7)	22	3.0:1
경북	81 (23)	7	23 (19)	-	2	-	49 (4)	23	3.5:1
경남	78 (20)	14 (2)	20 (14)	1	5	1	37 (4)	20	3.9:1

■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기타정당 무소속	선거구수	경쟁률
합계	2,068 (655)	521 (33)	565 (519)	235 (71)	97 (5)	69 (13)	581 (14)	655	3.2:1
서울	314 (96)	95	96 (96)	64	8	2	49	96	3.3:1
부산	111 (42)	26	42 (42)	-	14	-	29	42	2.6:1
대구	60 (26)	8	26 (26)	-	-	-	26	26	2.3:1
인천	107 (30)	30	30 (30)	18	11	1	17	30	3.6:1
광주	53 (16)	16	3	16 (16)	4	-	14	16	3.3:1
대전	56 (16)	16	16 (16)	1	1	16	6	16	3.5:1
울산	43 (16)	7	15 (13)	-	9 (3)	-	12	16	2.7:1
경기	352 (108)	104	108 (108)	43	18	11	68	108	3.3:1
강원	112 (36)	32 (1)	36 (34)	-	3	-	41 (1)	36	3.1:1
충북	87 (28)	26 (1)	28 (25)	1	3	6	23 (2)	28	3.1:1
충남	130 (34)	31 (2)	34 (19)	3	1	33 (13)	28	34	3.8:1
전북	115 (34)	34 (20)	3	32 (12)	7	-	39 (2)	34	3.4:1
전남	133 (46)	37 (2)	1	46 (43)	3	-	46 (1)	46	2.7:1
경북	146 (50)	11	50 (47)	-	2	-	83 (3)	50	2.9:1
경남	141 (48)	19	48 (44)	-	8 (1)	-	66 (3)	48	2.9:1
제주	108 (29)	29 (7)	29 (19)	11	5 (1)	-	34 (2)	29	3.7:1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기타정당 무소속	선거구수	경쟁률
합계	211 (78)	58 (19)	65 (38)	28 (9)	42 (10)	11 (2)	7 (-)	78	2.7:1
서울	35 (10)	10 (2)	9 (6)	5 (1)	6 (1)	1	4	10	3.5:1
부산	9 (5)	2 (1)	4 (3)	1	2 (1)	-	-	5	1.8:1
대구	7 (3)	2 (1)	3 (2)	-	1	1	-	3	2.3:1
인천	10 (3)	2 (1)	3 (2)	2	2	-	1	3	3.3:1
광주	10 (3)	3 (1)	1	3 (2)	2	-	1	3	3.3:1
대전	9 (3)	3 (1)	3 (1)	-	1	2 (1)	-	3	3.0:1
울산	7 (3)	2	3 (2)	-	2 (1)	-	-	3	2.3:1
경기	32 (11)	8 (2)	11 (7)	5 (1)	6 (1)	1	1	11	2.9:1
강원	7 (4)	2 (1)	3 (2)	-	2 (1)	-	-	4	1.8:1
충북	8 (3)	2 (1)	3 (2)	-	2	1	-	3	2.7:1
충남	13 (4)	3 (1)	4 (2)	-	2	4 (1)	-	4	3.3:1
전북	12 (4)	4 (2)	2	2 (1)	4 (1)	-	-	4	3.0:1
전남	12 (5)	4 (1)	1	5 (3)	2 (1)	-	-	5	2.4:1
경북	11 (5)	2 (1)	5 (3)	1	2 (1)	1	-	5	2.2:1
경남	11 (5)	3 (1)	5 (3)	-	3 (1)	-	-	5	2.2:1
제주	18 (7)	6 (2)	5 (3)	4 (1)	3 (1)	-	-	7	2.6:1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기타정당 무소속	선거구수	경쟁률
합계	7,995 (2,513)	1,303 (543)	1,944 (1,401)	749 (233)	467 (52)	266 (56)	3,266 (228)	2,513	3.2:1
서울	1,100 (366)	190 (119)	319 (233)	156 (10)	69 (2)	24	342 (2)	366	3.0:1
부산	485 (158)	72 (19)	157 (137)	1	37	-	218 (2)	158	3.1:1
대구	292 (102)	34 (2)	102 (99)	-	10	-	146 (1)	102	2.9:1
인천	293 (97)	48 (31)	93 (61)	37 (1)	27 (2)	7	81 (2)	97	3.0:1
광주	187 (59)	51 (16)	-	58 (34)	17 (8)	-	61 (1)	59	3.2:1
대전	184 (55)	27 (21)	45 (30)	10	8	51 (4)	43	55	3.3:1
울산	100 (43)	12 (2)	36 (25)	-	17 (11)	-	35 (5)	43	2.3:1
경기	1,141 (364)	206 (103)	338 (245)	103 (1)	109 (7)	34	351 (8)	364	3.1:1
강원	519 (146)	87 (32)	144 (92)	5	20	-	263 (22)	146	3.6:1
충북	379 (114)	78 (39)	112 (61)	7	20 (1)	12	150 (13)	114	3.3:1
충남	542 (152)	90 (22)	125 (66)	6	16 (1)	137 (52)	168 (11)	152	3.6:1
전북	579 (173)	171 (85)	4	155 (52)	31 (6)	-	218 (30)	173	3.3:1
전남	599 (211)	115 (34)	4	210 (135)	19 (3)	1	250 (39)	211	2.8:1
경북	867 (247)	59 (5)	240 (183)	-	22 (2)	-	546 (57)	247	3.5:1
경남	728 (226)	63 (13)	225 (169)	1	45 (9)	-	394 (35)	226	3.2:1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기타정당 무소속	선거구수	경쟁률
합계	1,025 (375)	308 (86)	430 (221)	124 (43)	127 (14)	36 (11)	- (-)	375	2.7:1
서울	164 (53)	46 (22)	66 (29)	27 (2)	25	-	-	53	3.1:1
부산	63 (24)	15 (7)	39 (17)	-	9	-	-	24	2.6:1
대구	26 (14)	6 (1)	17 (13)	-	2	1	-	14	1.9:1
인천	37 (15)	11 (5)	17 (10)	4	5	-	-	15	2.5:1
광주	29 (9)	13 (4)	-	11 (5)	5	-	-	9	3.2:1
대전	25 (8)	9 (3)	8 (5)	-	3	5	-	8	3.1:1
울산	18 (7)	5	8 (5)	-	5 (2)	-	-	7	2.6:1
경기	149 (53)	41 (13)	76 (38)	11	19 (2)	2	-	53	2.8:1
강원	50 (23)	16 (2)	30 (21)	1	3	-	-	23	2.2:1
충북	36 (17)	14 (4)	16 (13)	-	4	2	-	17	2.1:1
충남	88 (26)	27 (2)	35 (13)	-	3	23 (11)	-	26	3.4:1
전북	71 (24)	36 (11)	3	19 (10)	13 (3)	-	-	24	3.0:1
전남	94 (32)	35 (6)	1	49 (26)	9	-	-	32	2.9:1
경북	93 (37)	13 (2)	68 (34)	2	8 (1)	2	-	37	2.5:1
경남	82 (33)	21 (4)	46 (23)	-	14 (6)	1	-	33	2.5:1

(3) 직업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 시·도지사

(단위 : 명)

구분	계	지방의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66 (16)	- (-)	35 (6)	1 (-)	1 (-)	1 (-)	- (-)	- (-)	1 (-)	- (-)	- (-)	- (-)	4 (1)	- (-)	3 (-)	6 (1)	- (-)	- (-)	8 (6)	-	6 (2)
서울	8 (1)	-	3	-	-	1	-	-	-	-	-	-	3 (1)	-	-	-	-	-	-	-	1
부산	3 (1)	-	1	-	-	-	-	-	-	-	-	-	-	-	-	1	-	-	-	-	1 (1)
대구	5 (1)	-	5 (1)	-	-	-	-	-	-	-	-	-	-	-	-	-	-	-	-	-	-
인천	4 (1)	-	1	-	-	-	-	-	-	-	-	-	-	-	-	1	-	-	2 (1)	-	-
광주	4 (1)	-	2	-	-	-	-	-	-	-	-	-	-	-	-	-	-	-	1 (1)	-	1
대전	6 (1)	-	2	-	1	-	-	-	1	-	-	-	-	-	-	1 (1)	-	-	1	-	-
울산	3 (1)	-	1	-	-	-	-	-	-	-	-	-	1	-	-	-	-	-	1 (1)	-	-
경기	4 (1)	-	3 (1)	-	-	-	-	-	-	-	-	-	-	-	-	1	-	-	-	-	-
강원	4 (1)	-	3	-	-	-	-	-	-	-	-	-	-	-	-	-	-	-	1 (1)	-	-
충북	4 (1)	-	2	-	-	-	-	-	-	-	-	-	-	-	1	-	-	-	-	-	1 (1)
충남	4 (1)	-	2 (1)	-	-	-	-	-	-	-	-	-	-	-	1	1	-	-	-	-	-
전북	4 (1)	-	3 (1)	-	-	-	-	-	-	-	-	-	-	-	1	-	-	-	-	-	-
전남	4 (1)	-	-	1	-	-	-	-	-	-	-	-	-	-	-	1	-	-	1 (1)	-	1
경북	2 (1)	-	2 (1)	-	-	-	-	-	-	-	-	-	-	-	-	-	-	-	-	-	-
경남	4 (1)	-	3	-	-	-	-	-	-	-	-	-	-	-	-	-	-	-	1 (1)	-	-
제주	3 (1)	-	2 (1)	-	-	-	-	-	-	-	-	-	-	-	-	-	-	-	-	-	1

주) ()는 당선인 수임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구분	계	지방의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848 (230)	38 (9)	263 (71)	35 (1)	30 (6)	4 (-)	3 (2)	1 (-)	20 (3)	3 (-)	4 (1)	16 (-)	14 (1)	- (-)	23 (1)	29 (7)	3 (-)	1 (-)	133 (89)	52 (8)	176 (31)
서울	103 (25)	7 (1)	26 (6)	-	2	-	-	-	5	-	-	3	2	-	2	1	-	-	18 (13)	2	35 (5)
부산	44 (16)	4 (3)	10 (4)	-	1 (1)	-	1 (1)	-	1	-	-	-	-	-	-	4 (1)	2	-	7 (4)	3	11 (2)
대구	22 (8)	1	7 (2)	-	-	1	-	-	-	-	-	1	-	-	-	2 (1)	-	-	4 (2)	4 (1)	2 (2)
인천	39 (10)	1	22 (6)	1	2 (1)	-	1 (1)	-	-	-	-	-	1	-	1	1	-	-	5 (2)	1	3
광주	23 (5)	2 (1)	10 (2)	-	-	-	-	-	-	-	-	-	1	-	-	1	-	-	3 (1)	-	6 (1)
대전	20 (5)	1	7 (2)	-	-	-	-	-	-	-	-	-	-	-	1	1 (1)	-	1	4 (2)	-	5
울산	15 (5)	2 (1)	6	-	-	-	-	-	-	-	-	-	-	-	1	2	-	-	2 (2)	-	2 (2)
경기	134 (31)	8	44 (12)	2	3	-	-	-	2	1	1	3	6	-	5 (1)	3 (2)	-	-	18 (12)	4	34 (4)
강원	65 (18)	1 (1)	19 (7)	9	4 (1)	1	-	-	2	-	-	1	-	-	2	-	-	-	8 (6)	8 (2)	10 (1)
충북	37 (12)	2	11 (3)	3 (1)	2	-	1	-	1 (1)	1	-	1	-	-	-	-	-	-	8 (4)	2 (1)	5 (2)
충남	59 (16)	1	26 (6)	2	3	-	-	-	1	-	1	2	-	-	3	1 (1)	-	-	11 (9)	1	7
전북	63 (14)	1	18 (5)	9	2 (1)	-	-	-	3	-	-	-	2	-	3	-	-	-	6 (4)	4	15 (4)
전남	65 (22)	-	24 (8)	2	2 (1)	-	-	-	2 (1)	1	1 (1)	1	2 (1)	-	-	5	1	-	13 (7)	3 (1)	8 (2)
경북	81 (23)	5 (1)	15 (4)	3	5 (1)	1	-	-	2	-	1	2	-	-	1	6 (1)	-	-	13 (10)	12 (3)	15 (3)
경남	78 (20)	2 (1)	18 (4)	4	4	1	-	1	1 (1)	-	-	2	-	-	4	2	-	-	13 (11)	8	18 (3)

■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지방의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2,068 (655)	234 (147)	381 (169)	232 (38)	167 (42)	7 (-)	12 (5)	11 (3)	105 (27)	5 (-)	22 (7)	15 (6)	6 (1)	2 (-)	90 (17)	60 (16)	12 (4)	5 (1)	23 (14)	59 (13)	620 (145)
서울	314 (96)	37 (19)	56 (20)	1	11 (4)	1	-	-	13 (5)	-	2	5 (3)	-	-	11 (3)	5 (1)	2 (1)	2	7 (2)	2 (-)	159 (38)
부산	111 (42)	17 (13)	9 (4)	6 (1)	11	-	-	-	5 (1)	-	3 (1)	-	-	1	5	9 (4)	1	-	4 (4)	3 (1)	37 (13)
대구	60 (26)	7 (5)	8 (4)	3 (1)	5	-	-	-	6 (2)	-	1 (1)	3 (2)	-	-	5 (1)	2 (1)	-	-	2 (2)	4 (2)	14 (5)
인천	107 (30)	8 (7)	29 (9)	3	17 (5)	-	3 (1)	1	5 (2)	-	2 (1)	-	3	-	6	5	1	-	1 (1)	2 (-)	21 (4)
광주	53 (16)	7 (4)	9 (2)	-	-	-	-	-	5 (2)	-	1	2 (1)	1 (1)	-	3 (1)	2	-	-	-	-	23 (5)
대전	56 (16)	7 (3)	14 (5)	-	6 (2)	-	-	-	2	-	1	-	-	-	4	-	1	-	-	-	21 (6)
울산	43 (16)	11 (8)	7 (4)	2	-	-	-	-	2 (1)	-	-	-	-	-	8 (3)	1	-	-	-	1 (-)	11 (-)
경기	352 (108)	31 (22)	105 (44)	15 (2)	29 (5)	5	2	-	15 (2)	1	5 (2)	3	-	-	19 (2)	14 (2)	3 (2)	1	3	5 (-)	96 (25)
강원	112 (36)	12 (8)	20 (14)	19 (3)	18 (4)	-	1	2	3 (1)	-	1	-	-	-	2 (1)	1	-	-	1 (1)	7 (-)	25 (4)
충북	87 (28)	6 (6)	8 (2)	19 (4)	9 (5)	-	1 (1)	-	7 (1)	-	-	-	-	-	6	-	-	-	-	4 (1)	27 (8)
충남	130 (34)	9 (5)	26 (11)	29 (4)	9 (2)	-	2	1 (1)	8 (1)	-	1	-	-	-	3 (1)	2 (1)	1	-	-	4 (2)	35 (6)
전북	115 (34)	14 (10)	19 (9)	29 (2)	7 (1)	-	1 (1)	1	9 (1)	3	-	-	-	-	5 (2)	3 (2)	1 (1)	1 (1)	-	6 (1)	16 (3)
전남	133 (46)	14 (8)	37 (20)	22 (4)	10 (4)	-	-	2 (1)	4 (1)	-	1	1	1	-	1	3 (1)	-	-	-	8 (1)	29 (6)
경북	146 (50)	26 (11)	11 (6)	32 (6)	20 (7)	-	1 (1)	1	6 (2)	-	2 (1)	-	-	1	6 (1)	2	1	-	2 (2)	6 (2)	29 (11)
경남	141 (48)	17 (12)	16 (11)	32 (6)	10 (3)	1	1 (1)	-	6 (2)	1	1	1	-	-	6 (2)	9 (3)	1	-	2 (2)	4 (2)	33 (4)
제주	108 (29)	11 (6)	7 (4)	20 (5)	5	-	-	3 (1)	9 (3)	-	1 (1)	-	1	-	-	2 (1)	-	1	1	3 (1)	44 (7)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지방의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211 (78)	5 (3)	58 (25)	11 (6)	9 (3)	1 (1)	1 (1)	1 (1)	1 (-)	- (-)	1 (-)	7 (6)	- (-)	- (-)	10 (3)	23 (11)	1 (1)	2 (1)	- (-)	5 (1)	75 (15)
서울	35 (10)	-	9 (4)	-	-	-	-	-	-	-	-	1 (1)	-	-	1 (1)	3 (2)	-	1	-	-	20 (2)
부산	9 (5)	-	2 (2)	-	1	-	1 (1)	-	-	-	-	-	-	-	-	-	-	-	-	-	5 (2)
대구	7 (3)	-	-	-	1	-	-	-	-	-	-	2 (2)	-	-	-	-	-	-	-	-	4 (1)
인천	10 (3)	-	5 (1)	-	1 (1)	-	-	-	-	-	-	1	-	-	-	1	-	-	-	1	1 (1)
광주	10 (3)	-	4 (1)	-	1	-	-	-	-	-	-	-	-	-	-	2 (1)	-	-	-	-	3 (1)
대전	9 (3)	-	4 (2)	-	1	-	-	-	-	-	-	-	-	-	-	1 (1)	-	-	-	1	2
울산	7 (3)	1 (1)	1 (1)	-	-	-	-	-	-	-	-	-	-	-	-	3	-	-	-	-	2 (1)
경기	32 (11)	3 (1)	9 (2)	2	2 (1)	-	-	-	-	-	-	2 (2)	-	-	2 (1)	4 (2)	-	-	-	-	8 (2)
강원	7 (4)	-	3 (2)	-	-	-	-	-	-	-	-	-	-	-	-	1 (1)	-	-	-	1	2 (1)
충북	8 (3)	1 (1)	2 (1)	-	-	-	-	-	-	-	1	-	-	-	-	2 (1)	-	-	-	-	2
충남	13 (4)	-	5 (3)	1	1	-	-	-	-	-	-	-	-	-	-	-	-	-	-	-	6 (1)
전북	12 (4)	-	1 (1)	1 (1)	1 (1)	-	-	-	-	-	-	-	-	-	2	1	-	1 (1)	-	2 (1)	3
전남	12 (5)	-	3 (1)	2 (2)	-	-	-	-	-	-	-	-	-	-	1	3 (2)	-	-	-	-	3
경북	11 (5)	-	2 (1)	-	-	1 (1)	-	-	-	-	-	-	-	-	2	2 (1)	1 (1)	-	-	-	3 (1)
경남	11 (5)	-	2 (1)	-	-	-	-	-	1	-	-	1 (1)	-	-	1 (1)	-	-	-	-	-	6 (2)
제주	18 (7)	-	6 (3)	5 (3)	-	-	-	1 (1)	-	-	-	-	-	-	1	-	-	-	-	-	5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지방의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7,995 (2,513)	1,413 (623)	846 (307)	1,175 (286)	894 (284)	31 (13)	68 (24)	45 (15)	483 (143)	20 (3)	91 (29)	28 (8)	2 (-)	11 (1)	351 (95)	108 (27)	30 (6)	34 (5)	30 (18)	269 (52)	2,066 (574)
서울	1,100 (366)	230 (99)	132 (42)	2 (1)	69 (23)	3 (1)	10 (3)	-	77 (27)	5 (1)	17 (6)	3	1	2	24 (11)	19 (4)	4	6 (1)	3 (2)	24 (2)	469 (143)
부산	485 (158)	98 (39)	30 (11)	13 (4)	64 (27)	7 (2)	7 (2)	2 (1)	27 (7)	3	15 (5)	1	-	-	31 (11)	12 (5)	5 (1)	4 (1)	3 (2)	16 (1)	147 (42)
대구	292 (102)	60 (26)	28 (7)	17 (5)	43 (17)	4 (3)	2 (1)	-	16 (3)	2	6 (2)	2	-	-	11 (3)	3	2	1	-	12 (1)	83 (34)
인천	293 (97)	39 (17)	64 (21)	18 (1)	45 (18)	-	2 (1)	1	12 (3)	-	4 (3)	1	-	1	14 (3)	2	1	2	-	10 (3)	77 (27)
광주	187 (59)	27 (9)	38 (10)	2 (1)	10 (2)	-	2	-	10 (6)	-	2 (1)	-	-	1	11 (6)	3 (1)	1 (1)	1	1 (1)	4 (-)	74 (21)
대전	184 (55)	38 (11)	34 (15)	1	17 (4)	-	-	-	13 (4)	-	2	1	-	1	12 (4)	4	1	2 (1)	-	4 (-)	54 (16)
울산	100 (43)	25 (16)	12 (3)	4 (3)	6 (3)	-	-	1	8 (5)	-	1	-	-	-	18 (8)	1	-	1	-	2 (1)	21 (4)
경기	1,141 (364)	207 (87)	173 (73)	79 (20)	115 (40)	5 (4)	10	-	78 (21)	3	8 (2)	2	1	3	68 (15)	17 (5)	5	4 (1)	7 (4)	27 (8)	329 (84)
강원	519 (146)	74 (37)	46 (14)	97 (25)	71 (17)	5 (1)	6 (4)	2 (1)	35 (7)	-	7 (2)	2	-	-	17 (2)	12 (2)	3 (2)	2 (1)	3 (1)	29 (9)	108 (21)
충북	379 (114)	55 (26)	31 (8)	109 (28)	43 (13)	1	2	-	19 (10)	3 (1)	5 (1)	2	-	-	16 (1)	2 (1)	1	2	1	20 (2)	67 (23)
충남	542 (152)	86 (45)	41 (10)	156 (34)	57 (18)	1 (1)	3 (2)	4 (1)	29 (4)	-	6 (2)	2 (2)	-	-	28 (7)	4	-	3	-	16 (2)	106 (24)
전북	579 (173)	93 (44)	44 (19)	156 (36)	48 (12)	-	3 (1)	5 (3)	31 (10)	1	4 (2)	2 (1)	-	3 (1)	22 (3)	6 (3)	2	-	2 (2)	20 (3)	137 (33)
전남	599 (211)	87 (44)	88 (40)	142 (42)	64 (20)	-	10 (4)	17 (5)	31 (9)	-	4 (2)	2 (2)	-	-	16 (5)	3	1	2	2 (1)	19 (3)	111 (34)
경북	867 (247)	207 (79)	24 (8)	218 (49)	137 (43)	2	7 (4)	3	44 (14)	3 (1)	6 (1)	4 (1)	-	-	38 (7)	12 (4)	1	3	-	36 (10)	122 (27)
경남	728 (226)	87 (44)	61 (26)	161 (40)	105 (27)	3 (1)	4 (2)	10 (4)	53 (13)	-	4 (1)	4 (2)	-	-	25 (9)	8 (2)	3 (2)	1	8 (5)	30 (7)	161 (41)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지방의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1,025 (375)	12 (3)	201 (76)	71 (18)	84 (19)	2 (-)	5 (-)	1 (-)	18 (6)	3 (-)	8 (2)	11 (5)	- (-)	1 (1)	52 (8)	45 (21)	2 (-)	1 (1)	2 (1)	66 (32)	440 (182)
서울	164 (53)	2 (1)	52 (21)	-	6 (1)	-	1	-	2	-	-	1 (1)	-	-	9	9 (3)	1	-	-	8 (1)	73 (25)
부산	63 (24)	-	6 (3)	1	4	-	-	-	3 (2)	-	1	1	-	-	1	8 (5)	1	-	-	4 (3)	33 (11)
대구	26 (14)	-	-	1	3 (2)	-	-	-	1 (1)	-	-	1	-	-	-	-	-	-	-	3 (3)	17 (8)
인천	37 (15)	1	8 (4)	1	7 (1)	-	-	-	2	-	-	1 (1)	-	-	-	1	-	-	-	2 (2)	14 (7)
광주	29 (9)	1	14 (4)	-	3	-	-	-	-	-	1	-	-	-	2	3 (2)	-	-	-	-	5 (3)
대전	25 (8)	-	8 (2)	-	3 (1)	-	-	-	-	-	-	1	-	-	1	-	-	-	-	-	12 (5)
울산	18 (7)	-	3	-	1 (1)	-	-	-	-	-	1	1	-	-	1	2 (1)	-	-	-	-	9 (5)
경기	149 (53)	5 (1)	29 (10)	6 (1)	5	-	1	1	3 (1)	3	1	1 (1)	-	-	11 (2)	9 (3)	-	-	1	8 (2)	65 (32)
강원	50 (23)	-	6 (3)	3 (2)	6 (2)	-	-	-	-	-	1	-	-	-	3 (1)	-	-	1 (1)	-	7 (4)	23 (10)
충북	36 (17)	-	10 (5)	4 (2)	4	-	-	-	2	-	-	-	-	-	3	2 (1)	-	-	-	2 (2)	9 (7)
충남	88 (26)	-	20 (6)	12 (5)	10 (3)	-	-	-	-	-	-	-	-	-	4	6 (3)	-	-	-	4 (1)	32 (8)
전북	71 (24)	1	2 (1)	4	7 (1)	2	-	-	2 (1)	-	-	1	-	-	2	1 (1)	-	-	-	2 (1)	47 (19)
전남	94 (32)	2 (1)	28 (13)	13 (1)	7 (2)	-	1	-	-	-	2 (1)	-	-	1 (1)	3 (1)	3 (1)	-	-	-	3 (2)	31 (10)
경북	93 (37)	-	8 (2)	15 (4)	10 (1)	-	1	-	2 (1)	-	1 (1)	2 (1)	-	-	4 (2)	-	-	-	-	7 (4)	43 (21)
경남	82 (33)	-	7 (2)	11 (3)	8 (4)	-	1	-	1	-	-	1 (1)	-	-	8 (3)	1 (1)	-	-	1 (1)	16 (7)	27 (11)

(4) 성별, 연령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 시·도지사

(단위 : 명)

구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합계	66 (16)	62 (16)	4 (-)	- (-)	2 (-)	16 (2)	30 (9)	17 (5)	1 (-)
서울	8 (1)	6 (1)	2	-	1	4 (1)	3	-	-
부산	3 (1)	3 (1)	-	-	-	1	2 (1)	-	-
대구	5 (1)	5 (1)	-	-	-	1	2 (1)	2	-
인천	4 (1)	4 (1)	-	-	-	1	1	2 (1)	-
광주	4 (1)	3 (1)	1	-	-	1	1	2 (1)	-
대전	6 (1)	6 (1)	-	-	-	1	3 (1)	2	-
울산	3 (1)	2 (1)	1	-	-	2	1 (1)	-	-
경기	4 (1)	4 (1)	-	-	-	1	3 (1)	-	-
강원	4 (1)	4 (1)	-	-	-	-	1 (1)	2	1
충북	4 (1)	4 (1)	-	-	-	1	3 (1)	-	-
충남	4 (1)	4 (1)	-	-	-	-	4 (1)	-	-
전북	4 (1)	4 (1)	-	-	-	1	1	2 (1)	-
전남	4 (1)	4 (1)	-	-	1	-	2 (1)	1	-
경북	2 (1)	2 (1)	-	-	-	-	1	1 (1)	-
경남	4 (1)	4 (1)	-	-	-	2 (1)	1	1	-
제주	3 (1)	3 (1)	-	-	-	-	1	2 (1)	-

주) ()는 당선인 수임.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구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합계	848 (230)	825 (227)	23 (3)	- (-)	31 (-)	236 (36)	369 (120)	198 (71)	14 (3)
서울	103 (25)	99 (24)	4 (1)	-	4	21 (2)	46 (11)	30 (11)	2 (1)
부산	44 (16)	43 (16)	1	-	1	13 (2)	15 (7)	14 (7)	1
대구	22 (8)	21 (7)	1 (1)	-	-	8 (2)	9 (6)	5	-
인천	39 (10)	36 (9)	3 (1)	-	5	11 (1)	13 (5)	9 (4)	1
광주	23 (5)	22 (5)	1	-	3	12 (2)	6 (2)	2 (1)	-
대전	20 (5)	19 (5)	1	-	-	13 (4)	5	2 (1)	-
울산	15 (5)	15 (5)	-	-	1	6 (2)	6 (2)	1 (1)	1
경기	134 (31)	129 (31)	5	-	3	49 (4)	53 (18)	26 (8)	3 (1)
강원	65 (18)	65 (18)	-	-	1	13 (1)	34 (13)	16 (4)	1
충북	37 (12)	36 (12)	1	-	-	4 (2)	22 (8)	10 (2)	1
충남	59 (16)	58 (16)	1	-	2	12 (2)	25 (5)	20 (9)	-
전북	63 (14)	62 (14)	1	-	4	17 (3)	25 (5)	16 (6)	1
전남	65 (22)	64 (22)	1	-	4	15 (4)	32 (13)	14 (5)	-
경북	81 (23)	81 (23)	-	-	-	19 (3)	41 (11)	19 (8)	2 (1)
경남	78 (20)	75 (20)	3	-	3	23 (2)	37 (14)	14 (4)	1

■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합계	2,068 (655)	1,961 (623)	107 (32)	7 (1)	223 (44)	876 (278)	695 (256)	254 (75)	13 (1)
서울	314 (96)	292 (89)	22 (7)	3 (1)	45 (11)	109 (29)	99 (36)	55 (19)	3
부산	111 (42)	104 (40)	7 (2)	1	19 (2)	45 (18)	33 (17)	12 (5)	1
대구	60 (26)	55 (23)	5 (3)	-	5 (2)	21 (12)	26 (8)	8 (4)	-
인천	107 (30)	102 (29)	5 (1)	1	17 (4)	43 (7)	38 (18)	8 (1)	-
광주	53 (16)	47 (15)	6 (1)	-	7	32 (11)	10 (2)	4 (3)	-
대전	56 (16)	56 (16)	-	-	5 (1)	25 (7)	20 (7)	6 (1)	-
울산	43 (16)	36 (13)	7 (3)	-	7 (1)	18 (10)	14 (5)	4	-
경기	352 (108)	321 (98)	31 (10)	1	48 (10)	186 (56)	96 (38)	20 (4)	1
강원	112 (36)	109 (36)	3	-	11 (4)	52 (17)	33 (10)	16 (5)	-
충북	87 (28)	83 (37)	4 (1)	-	10 (1)	27 (10)	35 (13)	15 (4)	-
충남	130 (34)	126 (33)	4 (1)	-	9	37 (9)	60 (19)	20 (5)	4 (1)
전북	115 (34)	114 (34)	1	1	10 (2)	38 (13)	49 (14)	16 (5)	1
전남	133 (46)	131 (46)	2	-	8 (2)	69 (23)	42 (16)	13 (5)	1
경북	146 (50)	143 (49)	3 (1)	-	7 (1)	58 (23)	50 (19)	30 (7)	1
경남	141 (48)	138 (46)	3 (2)	-	9 (1)	69 (20)	48 (23)	14 (4)	1
제주	108 (29)	104 (29)	4	-	6 (2)	47 (13)	42 (11)	13 (3)	-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합계	211 (78)	75 (21)	136 (57)	5 (-)	37 (8)	78 (27)	58 (27)	28 (15)	5 (1)
서울	35 (10)	15 (4)	20 (6)	1	13 (4)	8 (2)	8 (2)	3 (2)	2
부산	9 (5)	4 (1)	5 (4)	-	-	5 (2)	3 (2)	1 (1)	-
대구	7 (3)	1 (1)	6 (2)	-	1	2 (1)	3 (1)	1 (1)	-
인천	10 (3)	3 (1)	7 (2)	-	2	5 (2)	3 (1)	-	-
광주	10 (3)	3 (1)	7 (2)	1	4	1	1 (1)	3 (2)	-
대전	9 (3)	1	8 (3)	-	1	4 (2)	4 (1)	-	-
울산	7 (3)	3 (1)	4 (2)	-	-	5 (2)	2 (1)	-	-
경기	32 (11)	13 (4)	19 (7)	1	5 (1)	15 (4)	8 (5)	2	1 (1)
강원	7 (4)	1	6 (4)	-	1	2 (1)	3 (3)	-	1
충북	8 (3)	2 (1)	6 (2)	-	3 (1)	3 (1)	1 (1)	1	-
충남	13 (4)	6 (1)	7 (3)	-	-	6 (1)	3	4 (3)	-
전북	12 (4)	4 (1)	8 (3)	-	2	4 (1)	3 (2)	3 (1)	-
전남	12 (5)	3 (1)	9 (4)	1	-	4 (1)	3 (2)	3 (2)	1
경북	11 (5)	4 (1)	7 (4)	-	2 (1)	4 (1)	4 (2)	1 (1)	-
경남	11 (5)	4 (1)	7 (4)	1	1	4 (4)	3	2 (1)	-
제주	18 (7)	8 (2)	10 (5)	-	2 (1)	6 (2)	6 (3)	4 (1)	-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합계	7,995 (2,513)	7,604 (2,403)	391 (110)	46 (6)	701 (165)	2,997 (1,061)	3,063 (996)	1,135 (277)	53 (8)
서울	1,100 (366)	1,007 (333)	93 (33)	9 (2)	112 (26)	336 (132)	426 (146)	204 (57)	13 (3)
부산	485 (158)	449 (147)	36 (11)	7 (1)	52 (14)	162 (53)	184 (68)	77 (21)	3 (1)
대구	292 (102)	276 (96)	16 (6)	2 (1)	18 (2)	101 (40)	104 (35)	66 (24)	1
인천	293 (97)	279 (93)	14 (4)	-	30 (6)	103 (39)	117 (39)	43 (13)	-
광주	187 (59)	167 (50)	20 (9)	2	27 (13)	88 (27)	51 (16)	18 (3)	1
대전	184 (55)	174 (51)	10 (4)	-	20 (6)	73 (28)	67 (15)	23 (6)	1
울산	100 (43)	93 (38)	7 (5)	1	15 (7)	55 (24)	24 (12)	5	-
경기	1,141 (364)	1,052 (346)	89 (18)	14 (2)	150 (34)	536 (200)	352 (116)	83 (11)	6 (1)
강원	519 (146)	503 (143)	16 (3)	1	45 (6)	198 (74)	205 (54)	69 (12)	1
충북	379 (114)	365 (113)	14 (1)	1	20 (3)	132 (48)	157 (46)	67 (17)	2
충남	542 (152)	533 (150)	9 (2)	1	36 (12)	182 (52)	238 (71)	78 (16)	7 (1)
전북	579 (173)	559 (170)	20 (3)	2	57 (17)	197 (68)	222 (67)	97 (21)	4
전남	599 (211)	586 (209)	13 (2)	1	40 (7)	207 (72)	248 (100)	99 (32)	4
경북	867 (247)	850 (240)	17 (7)	3	39 (8)	329 (102)	373 (119)	118 (18)	5
경남	728 (226)	711 (224)	17 (2)	2	40 (4)	298 (102)	295 (92)	88 (26)	5 (2)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합계	1,025 (375)	275 (49)	750 (326)	14 (5)	162 (33)	385 (135)	342 (142)	115 (58)	7 (2)
서울	164 (53)	44 (5)	120 (48)	-	32 (8)	54 (18)	59 (19)	19 (8)	-
부산	63 (24)	17 (1)	46 (23)	3 (2)	15 (2)	15 (6)	23 (9)	6 (4)	1 (1)
대구	26 (14)	6 (3)	20 (11)	-	2 (1)	12 (6)	5 (4)	7 (3)	-
인천	37 (15)	7 (2)	30 (13)	2	3	18 (9)	10 (3)	4 (3)	-
광주	29 (9)	8	21 (9)	1	5	13 (4)	6 (2)	4 (3)	-
대전	25 (8)	9 (2)	16 (6)	2 (2)	4	7 (2)	10 (2)	2 (2)	-
울산	18 (7)	5 (1)	13 (6)	-	4 (3)	12 (4)	1	1	-
경기	149 (53)	46 (6)	103 (47)	3	23 (3)	66 (25)	46 (21)	10 (4)	1
강원	50 (23)	-	50 (23)	1	3	16 (6)	22 (10)	8 (7)	-
충북	36 (17)	5 (1)	31 (16)	-	4	14 (6)	15 (9)	3 (2)	-
충남	88 (26)	36 (6)	52 (20)	1	10 (3)	35 (11)	25 (8)	15 (4)	2
전북	71 (24)	20 (2)	51 (22)	-	14 (5)	29 (8)	21 (9)	6 (2)	1
전남	94 (32)	38 (12)	56 (20)	-	17 (1)	31 (10)	32 (14)	13 (7)	1
경북	93 (37)	27 (8)	66 (29)	-	14 (6)	38 (9)	34 (19)	6 (2)	1 (1)
경남	82 (33)	7	75 (33)	1 (1)	12 (1)	25 (11)	33 (13)	11 (7)	-

(5) 최고령·최연소 후보자 및 당선인 수

■ 시·도지사

• 후보자

구분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민주당	박주선	1949-07-23	56	1
	민주노동당	김종철	1970-10-15	35	2
부산	열린우리당	오거돈	1948-10-28	57	1
	민주노동당	김석준	1957-03-28	49	2
대구	국민중심당	박승국	1940-04-01	66	1
	민주노동당	이연재	1962-12-28	43	2
인천	열린우리당	최기선	1945-05-15	61	1
	민주노동당	김성진	1960-02-22	46	2
광주	한나라당	한영	1941-02-27	65	1
	민주노동당	오병윤	1957-06-26	48	2
대전	한미준	고낙정	1942-12-05	63	1
	민주노동당	박춘호	1962-06-15	43	2
울산	한나라당	박맹우	1950-11-08	55	1
	열린우리당	심규명	1965-05-27	41	2
경기	한나라당	김문수	1951-08-27	54	1
	민주당	박정일	1962-02-10	44	2
강원	민주당	유재규	1933-10-16	72	1
	한나라당	김진선	1946-11-10	59	2
충북	국민중심당	조병세	1949-03-20	57	1
	민주노동당	배창호	1960-08-05	45	2
충남	열린우리당	오영교	1948-02-13	58	1
	국민중심당	이명수	1955-02-11	51	2
전북	민주당	정균환	1943-07-23	62	1
	민주노동당	염경석	1960-08-05	45	2
전남	한나라당	박재순	1944-09-29	61	1
	민주노동당	박응두	1968-07-27	37	2
경북	한나라당	김관용	1942-11-29	63	1
	열린우리당	박명재	1947-07-05	58	2
경남	국민중심당	김재주	1939-11-27	66	1
	한나라당	김태호	1962-08-21	43	2
제주	한나라당	현명관	1941-09-02	64	1
	열린우리당	진철훈	1954-09-06	51	2



■ 구·시·군의 장

• 후보자

구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관악구	열린우리당	진진형	1934-06-08	71	1
	서대문구	민주노동당	이상훈	1972-02-18	34	2
부산	금정구	무소속	윤석천	1935-05-21	71	1
	북구	열린우리당	전재수	1971-04-20	35	2
대구	중구	무소속	정재원	1942-10-27	63	1
	달서구	민주노동당	강신우	1964-02-25	42	2
인천	부평구	열린우리당	노재철	1935-03-26	71	1
	연수구	민주노동당	이혁재	1973-02-28	33	2
광주	광산구	무소속	송병태	1938-10-01	67	1
	광산구	민주노동당	이승남	1969-11-13	36	2
대전	서구	한나라당	가기산	1942-01-10	64	1
	동구	한나라당	이장우	1965-02-10	41	2
울산	울주군	열린우리당	박진구	1934-12-22	71	1
	남구	열린우리당	임동호	1968-11-07	37	2
경기	고양시	무소속	강태희	1930-11-20	75	1
	연천군	무소속	최의순	1970-07-01	35	2
강원	원주시	민주당	이용옥	1933-07-02	72	1
	평창군	무소속	박정렬	1970-06-17	35	2
충북	단양군	무소속	박주진	1935-03-25	71	1
	보은군	국민중심당	김기준	1966-05-15	40	2
충남	태안군	한나라당	명귀진	1936-06-16	69	1
	당진군	민주노동당	손창원	1970-03-18	36	2
전북	부안군	열린우리당	강수원	1934-07-15	71	1
	군산시	한나라당	한상오	1970-03-22	36	2
전남	진도군	민주당	김경부	1939-04-10	67	1
	광양시	민주노동당	김정태	1968-05-25	38	2
경북	성주군	무소속	전수복	1930-01-02	76	1
	상주시	무소속	강영석	1966-03-11	40	2
경남	산청군	열린우리당	정막선	1931-12-28	74	1
	진주시	민주노동당	하정우	1968-11-07	37	2

· 당선인

구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용산구	한나라당	박장규	1935-04-16	71	1
	서대문구	한나라당	현동훈	1959-05-30	47	2
부산	사상구	한나라당	윤덕진	1937-08-14	68	1
	사하구	한나라당	조정화	1964-10-07	41	2
대구	서구	한나라당	윤진	1946-10-23	59	1
	수성구	한나라당	김형렬	1959-06-03	46	2
인천	중구	한나라당	박승숙	1937-04-17	69	1
	서구	한나라당	이학재	1964-08-19	41	2
광주	동구	민주당	유태명	1943-10-07	62	1
	남구	민주당	황일봉	1957-12-08	48	2
대전	서구	한나라당	가기산	1942-01-10	64	1
	동구	한나라당	이장우	1965-02-10	41	2
울산	울주군	한나라당	엄창섭	1940-09-04	65	1
	북구	한나라당	강석구	1960-09-18	45	2
경기	성남시	한나라당	이대엽	1935-05-10	71	1
	오산시	한나라당	이기하	1965-02-28	41	2
강원	삼척시	한나라당	김대수	1941-08-25	64	1
	영월군	한나라당	박선규	1957-02-09	49	2
충북	증평군	무소속	유명호	1942-02-28	64	1
	제천시	한나라당	엄태영	1958-01-22	48	2
충남	연기군	국민중심당	이기봉	1936-12-28	69	1
	공주시	국민중심당	이준원	1965-03-02	41	2
전북	정읍시	무소속	강광	1936-09-24	69	1
	익산시	열린우리당	이한수	1960-08-15	45	2
전남	목포시	민주당	정종득	1941-02-02	65	1
	나주시	무소속	신정훈	1964-12-06	41	2
경북	경주시	한나라당	백상승	1935-12-02	70	1
	영양군	한나라당	권영택	1962-08-15	43	2
경남	합천군	한나라당	심의조	1938-11-22	67	1
	밀양시	열린우리당	엄용수	1965-01-20	41	2



■ 시·도 의원

• 후보자

구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서대문구(1)	국민중심당	전성장	1933-03-24	73	1
	노원구(6)	무소속	김대정	1978-08-26	27	2
부산	동구(2)	무소속	최종립	1935-03-30	71	1
	남구(1)	민주노동당	윤용조	1978-02-01	28	2
대구	수성구(3)	무소속	김재우	1937-05-14	69	1
	수성구(1)	희망사회당	오동석	1974-10-25	31	2
인천	강화군(2)	무소속	구예서	1937-03-15	69	1
	남구(1)	민주노동당	오일석	1981-02-13	25	2
광주	광산구(1)	민주당	강박원	1936-12-20	69	1
	북구(1)	민주노동당	이봉훈	1972-04-21	34	2
대전	동구(1)	한나라당	김남욱	1938-04-15	68	1
	동구(3)	열린우리당	한장규	1971-03-30	35	2
울산	울주군(2)	무소속	이태우	1943-08-26	62	1
	남구(4)	희망사회당	엄균용	1975-07-28	30	2
경기	성남시(4)	민주당	강부원	1932-07-15	73	1
	김포시(1)	민주당	최성민	1976-08-29	29	2
강원	영월군(1)	한나라당	김종훈	1939-06-02	66	1
	속초시(2)	열린우리당	최종현	1972-07-29	33	2
충북	청원군(1)	국민중심당	신대식	1939-03-25	67	1
	청주시(3)	열린우리당	김영주	1973-12-20	32	2
충남	부여군(1)	열린우리당	정복기	1932-05-10	74	1
	홍성군(2)	열린우리당	이병희	1970-07-05	35	2
전북	순창군(2)	무소속	홍성열	1935-06-05	70	1
	정읍시(2)	무소속	최동석	1977-01-02	29	2
전남	진도군(1)	무소속	박문규	1935-09-25	70	1
	화순군(1)	민주노동당	전종덕	1971-11-29	34	2
경북	영양군(2)	무소속	박재원	1936-03-03	70	1
	포항시(4)	민주노동당	송무근	1976-03-19	30	2
경남	고성군(1)	무소속	하정만	1934-03-10	72	1
	마산시(4)	열린우리당	최학봉	1972-06-16	33	2
제주	제주도(2)	무소속	고석현	1939-02-04	67	1
	제주도(3)	열린우리당	김경민	1973-08-01	32	2

주) 선거구명 표기 : 예) 서대문구제1선거구 → 서대문구(1)

• 당선인

구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구로구(1)	한나라당	이병직	1938-07-27	67	1
	마포구(4)	한나라당	김혜일	1977-06-08	28	2
부산	부산진구(1)	한나라당	김태문	1942-10-14	63	1
	부산진구(2)	한나라당	김청룡	1972-02-28	34	2
대구	동구(1)	한나라당	이운원	1944-07-22	61	1
	동구(3)	한나라당	정해용	1971-05-27	35	2
인천	옹진군(2)	한나라당	이상철	1944-09-18	61	1
	계양구(1)	한나라당	이은석	1972-10-23	33	2
광주	광산구(1)	민주당	강박원	1936-12-20	69	1
	북구(1)	민주당	진선기	1964-10-24	41	2
대전	동구(1)	한나라당	김남옥	1938-04-15	68	1
	중구(3)	한나라당	김태훈	1967-08-28	38	2
울산	동구(1)	한나라당	송시상	1946-09-20	59	1
	울주군(2)	한나라당	천명수	1966-08-13	39	2
경기	이천시(1)	한나라당	이재혁	1937-12-16	68	1
	고양시(7)	한나라당	김학진	1974-11-06	31	2
강원	동해시(1)	한나라당	이성기	1941-05-15	65	1
	양구군(1)	한나라당	이기찬	1971-04-24	35	2
충북	단양군(2)	한나라당	이범운	1939-05-12	67	1
	청주시(3)	한나라당	김법기	1967-10-18	38	2
충남	서산시(1)	한나라당	이창배	1935-01-30	71	1
	당진군(1)	열린우리당	김홍장	1962-01-31	44	2
전북	남원시(2)	열린우리당	하대식	1941-03-01	65	1
	남원시(1)	열린우리당	이상현	1969-01-23	37	2
전남	영암군(1)	민주당	강우원	1942-04-15	64	1
	나주시(2)	민주당	김상봉	1969-07-05	36	2
경북	의성군(2)	한나라당	안순덕	1940-04-30	66	1
	영천시(2)	한나라당	김수용	1968-10-01	37	2
경남	남해군(1)	한나라당	김영조	1937-10-12	68	1
	거제시(2)	민주노동당	김해연	1966-07-10	39	2
제주	제주도(12)	한나라당	양대성	1940-04-24	66	1
	제주도(2)	열린우리당	오영훈	1968-12-14	37	2



■ 비례대표 시·도 의원

• 후보자

구분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한나라당	김창희	1934-07-19	71	1
	열린우리당	윤혜안	1981-04-23	25	2
부산	열린우리당	하선규	1946-03-20	60	1
	민주당	이정향	1965-01-16	41	2
대구	열린우리당	박정희	1941-02-14	65	1
	민주노동당	정은정	1971-04-15	35	2
인천	열린우리당	이명숙	1947-02-12	59	1
	희망사회당	이현경	1974-12-18	31	2
광주	열린우리당	조기철	1940-02-10	66	1
	희망사회당	이수양	1981-05-22	25	2
대전	한나라당	이정희	1948-08-27	57	1
	민주노동당	김진화	1968-04-12	38	2
울산	열린우리당	성인수	1952-10-05	53	1
	민주노동당	이현숙	1964-09-09	41	2
경기	열린우리당	김형식	1933-05-27	73	1
	희망사회당	김보화	1980-08-21	25	2
강원	열린우리당	서정목	1925-10-08	80	1
	민주노동당	조화연	1975-06-13	30	2
충북	열린우리당	경석수	1939-11-02	66	1
	민주노동당	손한수	1973-01-08	33	2
충남	열린우리당	서중철	1939-06-24	66	1
	민주노동당	김혜영	1965-07-12	40	2
전북	열린우리당	강대선	1937-04-05	69	1
	민주노동당	최승희	1970-01-10	36	2
전남	열린우리당	유원목	1935-09-20	70	1
	민주노동당	김혜숙	1976-09-22	29	2
경북	한나라당	채옥주	1944-06-20	61	1
	민주노동당	권대성	1971-09-20	34	2
경남	열린우리당	최춘용	1942-09-06	63	1
	민주노동당	정유진	1978-10-16	27	2
제주	열린우리당	김치하	1936-09-26	69	1
	민주노동당	홍순아	1969-09-23	36	2

• 당선인

구분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한나라당	김진성	1939-03-02	67	1
	민주노동당	이수정	1972-01-01	34	2
부산	열린우리당	하선규	1946-03-20	60	1
	민주노동당	김영희	1963-01-03	43	2
대구	열린우리당	박정희	1941-02-14	65	1
	한나라당	이경호	1961-05-01	45	2
인천	열린우리당	이명숙	1947-02-12	59	1
	한나라당	지정구	1966-02-02	40	2
광주	민주당	조광향	1944-11-01	61	1
	열린우리당	이명자	1950-09-15	55	2
대전	한나라당	이정희	1948-08-27	57	1
	국민중심당	권형례	1963-09-26	42	2
울산	한나라당	김철욱	1954-03-15	52	1
	민주노동당	이현숙	1964-09-09	41	2
경기	열린우리당	김형식	1933-05-27	73	1
	민주노동당	송영주	1972-09-23	33	2
강원	한나라당	유순임	1946-11-18	59	1
	민주노동당	최원자	1964-01-10	42	2
충북	열린우리당	최미애	1950-09-26	55	1
	한나라당	강태원	1968-04-18	38	2
충남	한나라당	이선자	1944-01-02	62	1
	한나라당	황화성	1957-03-10	49	2
전북	열린우리당	이영조	1940-06-28	65	1
	민주노동당	오은미	1965-07-13	40	2
전남	민주당	박부덕	1943-05-07	63	1
	열린우리당	국영애	1960-10-03	45	2
경북	한나라당	채옥주	1944-06-20	61	1
	민주노동당	김숙향	1969-12-15	36	2
경남	한나라당	임경숙	1944-12-26	61	1
	민주노동당	김미영	1964-02-27	42	2
제주	한나라당	김미자	1945-01-29	61	1
	민주노동당	김혜자	1966-12-29	39	2



■ 구·시·군 의원

• 후보자

구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강동구(마)	국민중심당	이종한	1929-11-03	76	1
	동작구(마)	민주노동당	이근혜	1980-10-27	25	2
부산	북구(나)	무소속	구성희	1935-03-06	71	1
	부산진구(나)	열린우리당	이상호	1979-07-17	26	2
대구	수성구(가)	무소속	엄재윤	1932-03-05	74	1
	수성구(다)	민주노동당	김성년	1977-06-23	28	2
인천	남구(바)	민주당	차배갑	1937-03-20	69	1
	남동구(라)	무소속	조충연	1975-06-02	30	2
광주	북구(나)	무소속	안병조	1934-08-20	71	1
	남구(나)	민주노동당	이승기	1977-11-26	28	2
대전	대덕구(가)	무소속	이상만	1936-03-20	70	1
	중구(라)	민주노동당	탁현배	1974-07-11	31	2
울산	동구(다)	무소속	김정웅	1942-02-10	64	1
	남구(가)	무소속	유왕도	1977-04-26	29	2
경기	고양시(사)	무소속	조동원	1927-09-09	78	1
	용인시(마)	민주노동당	박해웅	1980-11-14	25	2
강원	춘천시(마)	무소속	김윤태	1932-03-11	74	1
	인제군(가)	무소속	김도형	1977-01-19	29	2
충북	영동군(다)	민주당	김복기	1934-01-11	72	1
	청주시(나)	민주노동당	두지연	1979-03-15	27	2
충남	청양군(가)	무소속	정낙기	1925-05-25	81	1
	천안시(나)	민주노동당	주은아	1976-11-13	29	2
전북	김제시(나)	무소속	이근택	1931-12-11	74	1
	정읍시(바)	무소속	최동명	1978-08-25	27	2
전남	고흥군(가)	열린우리당	김복수	1931-03-29	75	1
	여수시(다)	열린우리당	박재호	1977-07-20	28	2
경북	김천시(마)	무소속	전재수	1932-12-17	73	1
	경주시(사)	무소속	황호연	1980-04-24	26	2
경남	고성군(나)	무소속	양기욱	1933-01-10	73	1
	거제시(다)	무소속	이영호	1980-10-05	25	2

주: 선거구명 표기 : 예) 강동구마선거구 → 강동구(마)

· 당선인

구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성북구(아)	열린우리당	김용선	1934-06-28	71	1
	마포구(아)	한나라당	강성국	1978-12-21	27	2
부산	기장군(가)	무소속	김만선	1935-03-14	71	1
	영도구(가)	한나라당	황보승희	1976-08-05	29	2
대구	달서구(다)	한나라당	박병래	1936-08-31	69	1
	달서구(아)	한나라당	김주범	1976-08-01	29	2
인천	옹진군(나)	열린우리당	김영철	1940-04-20	66	1
	남동구(가)	열린우리당	박강석	1972-03-20	34	2
광주	동구(나)	민주당	고수용	1942-11-11	63	1
	북구(나)	열린우리당	신수정	1973-01-19	33	2
대전	동구(나)	열린우리당	김무길	1941-11-23	64	1
	서구(바)	한나라당	한수영	1974-03-16	32	2
울산	중구(다)	한나라당	박문태	1947-01-01	59	1
	동구(가)	민주노동당	박문옥	1975-12-16	30	2
경기	수원시(차)	한나라당	김광수	1929-10-10	76	1
	과천시(나)	민주노동당	황순식	1977-12-15	28	2
강원	원주시(라)	한나라당	오세환	1939-08-08	66	1
	원주시(바)	한나라당	김동희	1970-07-07	35	2
충북	충주시(가)	한나라당	곽호종	1936-10-26	69	1
	청주시(라)	한나라당	최진현	1971-09-07	34	2
충남	서천군(가)	국민중심당	이경직	1936-04-13	70	1
	연기군(가)	국민중심당	유용철	1972-06-23	33	2
전북	남원시(나)	열린우리당	최형식	1936-07-18	69	1
	익산시(나)	열린우리당	김대중	1973-12-20	32	2
전남	여수시(나)	열린우리당	정한태	1939-01-31	67	1
	순천시(사)	민주노동당	신화철	1970-12-15	35	2
경북	군위군(나)	한나라당	심철	1939-10-15	66	1
	영주시(나)	한나라당	이동기	1968-08-10	37	2
경남	진주시(나)	한나라당	이갑술	1934-12-05	71	1
	마산시(마)	민주노동당	송순호	1970-03-05	36	2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 후보자

구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광진구	한나라당	박의양	1937-01-07	69	1
	관악구	민주노동당	김주현	1976-05-11	30	2
부산	수영구	한나라당	김수옥	1934-11-02	71	1
	강서구	민주노동당	임봉	1979-02-10	27	2
대구	달성군	한나라당	정명자	1940-06-07	65	1
	서구	민주노동당	정소영	1975-11-13	30	2
인천	중구	한나라당	김창복	1943-06-02	62	1
	부평구	민주당	이수진	1978-10-20	27	2
광주	광산구	민주당	선택희	1941-03-10	65	1
	북구	민주노동당	최영순	1981-03-09	25	2
대전	중구	한나라당	송권	1939-12-01	66	1
	중구	열린우리당	정은일	1980-11-13	25	2
울산	중구	열린우리당	김동용	1936-09-20	69	1
	중구	민주노동당	홍인수	1970-03-01	36	2
경기	성남시	한나라당	김숙배	1936-01-04	70	1
	안산시	한나라당	박선희	1980-01-10	26	2
강원	춘천시	열린우리당	유연경	1940-01-03	66	1
	원주시	민주노동당	변동현	1979-04-18	27	2
충북	청주시	열린우리당	안혜자	1941-05-27	65	1
	제천시	민주노동당	박상은	1974-10-06	31	2
충남	공주시	열린우리당	최익상	1930-06-28	75	1
	보령시	열린우리당	박향수	1978-12-02	27	2
전북	김제시	열린우리당	탁태균	1929-10-25	76	1
	완주군	열린우리당	국윤택	1975-11-20	30	2
전남	완도군	열린우리당	임철	1931-08-09	74	1
	목포시	민주노동당	문현숙	1976-03-08	30	2
경북	영주시	한나라당	박준홍	1936-04-22	70	1
	상주시	국민중심당	황경란	1973-03-17	33	2
경남	사천시	한나라당	임호정	1939-11-10	66	1
	양산시	열린우리당	박윤정	1979-02-28	27	2

· 당선인

구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1:최고령 2:최연소
서울	동작구	한나라당	김동연	1937-06-04	68	1
	영등포구	열린우리당	송수희	1975-11-24	30	2
부산	수영구	한나라당	김수옥	1934-11-02	71	1
	금정구	열린우리당	박인영	1977-07-10	28	2
대구	달성군	한나라당	정명자	1940-06-07	65	1
	달서구	열린우리당	이유경	1968-10-19	37	2
인천	중구	한나라당	김창복	1943-06-02	62	1
	계양구	열린우리당	김유순	1965-09-09	40	2
광주	광산구	민주당	선택희	1941-03-10	65	1
	서구	열린우리당	고선란	1965-08-18	40	2
대전	중구	한나라당	송권	1939-12-01	66	1
	중구	열린우리당	정은일	1980-11-13	25	2
울산	중구	한나라당	장정옥	1959-12-09	46	1
	중구	민주노동당	홍인수	1970-03-01	36	2
경기	수원시	한나라당	홍기현	1939-01-10	67	1
	남양주시	한나라당	신정수	1972-08-05	33	2
강원	춘천시	열린우리당	유연경	1940-01-03	66	1
	원주시	열린우리당	용정순	1965-02-09	41	2
충북	청주시	열린우리당	안혜자	1941-05-27	65	1
	충주시	한나라당	홍진옥	1962-09-06	43	2
충남	논산시	국민중심당	김정희	1939-03-19	67	1
	연기군	열린우리당	박영송	1973-04-20	33	2
전북	남원시	민주당	김광자	1941-12-29	64	1
	익산시	민주노동당	김은숙	1969-05-25	37	2
전남	영암군	민주당	신락현	1941-07-11	64	1
	영광군	민주당	홍경희	1966-07-13	39	2
경북	영주시	한나라당	박준홍	1936-04-22	70	1
	청송군	한나라당	조태경	1971-11-21	34	2
경남	사천시	한나라당	김유자	1942-06-10	63	1
	양산시	열린우리당	박윤정	1979-02-28	27	2



(6) 학력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 시·도지사

(단위 : 명)

구분	계	미 기 재	무학 (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학교 수료	대재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재	대학원 졸
합계	66 (16)	- (-)	- (-)	- (-)	- (-)	- (-)	- (-)	- (-)	2 (-)	5 (-)	- (-)	2 (-)	21 (4)	4 (-)	- (-)	32 (12)
서울	8 (1)	-	-	-	-	-	-	-	-	-	-	1	2	2	-	3 (1)
부산	3 (1)	-	-	-	-	-	-	-	-	-	-	-	-	-	-	3 (1)
대구	5 (1)	-	-	-	-	-	-	-	-	1	-	-	4 (1)	-	-	-
인천	4 (1)	-	-	-	-	-	-	-	-	1	-	1	1	-	-	1 (1)
광주	4 (1)	-	-	-	-	-	-	-	-	1	-	-	2 (1)	1	-	-
대전	6 (1)	-	-	-	-	-	-	-	2	-	-	-	1	-	-	3 (1)
울산	3 (1)	-	-	-	-	-	-	-	-	-	-	-	1	-	-	2 (1)
경기	4 (1)	-	-	-	-	-	-	-	-	-	-	-	1 (1)	-	-	3
강원	4 (1)	-	-	-	-	-	-	-	-	2	-	-	2 (1)	-	-	-
충북	4 (1)	-	-	-	-	-	-	-	-	-	-	-	1	-	-	3 (1)
충남	4 (1)	-	-	-	-	-	-	-	-	-	-	-	1	-	-	3 (1)
전북	4 (1)	-	-	-	-	-	-	-	-	-	-	-	1	-	-	3 (1)
전남	4 (1)	-	-	-	-	-	-	-	-	-	-	-	1	1	-	2 (1)
경북	2 (1)	-	-	-	-	-	-	-	-	-	-	-	-	-	-	2 (1)
경남	4 (1)	-	-	-	-	-	-	-	-	-	-	-	3	-	-	1 (1)
제주	3 (1)	-	-	-	-	-	-	-	-	-	-	-	-	-	-	3 (1)

주: ()는 당선인 수임.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구분	계	미 기 재	무학 (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학교 수료	대재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재	대학원 졸
합계	848 (230)	17 (1)	2 (-)	-	16 (3)	4 (-)	10 (3)	6 (3)	83 (24)	40 (6)	2 (-)	37 (6)	297 (76)	20 (6)	44 (16)	270 (86)
서울	103 (25)	5	-	-	1	-	-	-	5	3 (1)	-	6 (2)	32 (8)	3 (1)	8 (2)	40 (11)
부산	44 (16)	1 (1)	-	-	-	-	-	-	4 (1)	5	-	-	16 (7)	-	6 (4)	12 (3)
대구	22 (8)	-	-	-	-	-	-	-	2 (1)	1	-	-	7 (1)	3 (1)	-	9 (5)
인천	39 (10)	1	-	-	2	-	-	-	7 (2)	3 (1)	-	2 (1)	17 (4)	2 (1)	1	4 (1)
광주	23 (5)	-	-	-	-	-	-	-	1	1	-	-	7 (1)	-	4	10 (4)
대전	20 (5)	-	-	-	1	-	-	-	-	1	-	1	6 (2)	-	1	10 (3)
울산	15 (5)	-	-	-	-	-	-	-	3 (1)	1	-	1	6 (3)	-	-	4 (1)
경기	134 (31)	2	1	-	3	1	1	2	11 (4)	11 (2)	-	7 (1)	48 (9)	1 (1)	6 (2)	40 (12)
강원	65 (18)	-	1	-	2	2	3 (1)	-	17 (5)	1	1	7 (2)	18 (5)	-	3 (2)	10 (3)
충북	37 (12)	-	-	-	-	-	1 (1)	-	7 (2)	3 (1)	-	-	11 (4)	1	2	12 (4)
충남	59 (16)	-	-	-	2 (1)	1	1	2 (2)	3	-	-	1	26 (5)	2 (1)	1 (1)	20 (6)
전북	63 (14)	4	-	-	2	-	-	-	4 (1)	3	1	2	26 (4)	2	2 (1)	17 (8)
전남	65 (22)	-	-	-	-	-	1	1	7 (4)	1	-	3	22 (9)	1	4 (2)	25 (7)
경북	81 (23)	3	-	-	-	-	-	-	4 (2)	6 (1)	-	4	22 (7)	2	5 (2)	35 (11)
경남	78 (20)	1	-	-	3 (2)	-	3 (1)	1 (1)	8 (1)	-	-	3	33 (7)	3 (1)	1	22 (7)



■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미 기 재	무학 (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학교 수료	대재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재	대학원 졸
합계	2,068 (655)	59 (9)	5 (1)	-	40 (5)	7 (1)	56 (15)	36 (10)	272 (61)	68 (15)	5 (2)	189 (55)	741 (228)	63 (24)	149 (66)	378 (163)
서울	314 (96)	15 (2)	2 (1)	-	4 (1)	-	7 (2)	3 (1)	22 (2)	9 (1)	-	38 (10)	104 (29)	10 (5)	31 (13)	69 (29)
부산	111 (42)	1	-	-	2	-	3 (1)	2 (1)	10 (4)	3	-	8 (2)	41 (13)	7 (2)	10 (4)	24 (15)
대구	60 (26)	5 (2)	-	-	-	-	3 (1)	1	1	3 (1)	-	3 (2)	20 (9)	2 (2)	6 (3)	16 (6)
인천	107 (30)	3	-	-	1	-	3 (1)	3 (2)	12	9	-	15 (6)	37 (15)	4 (1)	7	13 (5)
광주	53 (16)	2 (1)	-	-	-	-	-	-	-	3	-	4 (1)	19 (3)	3	6 (2)	16 (9)
대전	56 (16)	1	-	-	-	-	2 (1)	2 (1)	2	1 (1)	-	7 (2)	20 (3)	2 (1)	3 (1)	16 (6)
울산	43 (16)	2	-	-	1	-	2 (2)	-	10 (2)	-	-	3 (1)	14 (5)	-	3 (3)	8 (3)
경기	352 (108)	10 (1)	-	-	10 (2)	3	6 (1)	1	34 (9)	11 (2)	-	39 (13)	118 (25)	10 (6)	35 (19)	75 (30)
강원	112 (36)	1	-	-	4	-	4 (3)	2 (1)	30 (8)	4 (2)	1	12 (4)	25 (7)	1	10 (5)	18 (6)
충북	87 (28)	1	-	-	2	-	3	1 (1)	25 (6)	4 (2)	1 (1)	6 (2)	28 (10)	-	4 (1)	12 (5)
충남	130 (34)	4 (2)	1	-	8 (1)	1	3 (1)	1	28 (7)	7 (2)	-	15 (2)	43 (13)	-	4 (2)	15 (4)
전북	115 (34)	6	1	-	3	2	2 (1)	5 (1)	19 (4)	2	1	8 (2)	47 (16)	6 (3)	1	12 (7)
전남	133 (46)	4 (1)	-	-	1	-	6	6 (2)	15 (3)	5 (2)	-	7 (3)	62 (20)	1 (1)	8 (4)	18 (10)
경북	146 (50)	2	1	-	1	1 (1)	5 (1)	4	29 (7)	4 (1)	1	6 (1)	57 (24)	4 (1)	9 (4)	22 (10)
경남	141 (48)	2	-	-	2	-	4	1	24 (7)	1 (1)	-	9 (3)	52 (20)	9 (2)	7 (2)	30 (13)
제주	108 (29)	-	-	-	1 (1)	-	3	4	11 (2)	2	1 (1)	9 (1)	54 (16)	4	5 (3)	14 (5)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미 기 재	무학 (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학교 수료	대재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재	대학원 졸
합계	211 (78)	6 (-)	3 (1)	- (-)	6 (2)	- (-)	6 (3)	- (-)	25 (7)	6 (3)	2 (-)	12 (4)	86 (34)	7 (1)	10 (3)	42 (20)
서울	35 (10)	3	-	-	-	-	-	-	4	1	-	-	15 (4)	3 (1)	1	8 (5)
부산	9 (5)	-	-	-	1	-	1	-	1	1 (1)	-	-	3 (2)	-	-	2 (2)
대구	7 (3)	-	-	-	-	-	-	-	-	1	-	-	3 (2)	-	-	3 (1)
인천	10 (3)	-	-	-	-	-	-	-	1	-	1	1 (1)	4	-	-	3 (2)
광주	10 (3)	-	-	-	-	-	-	-	1	-	1	-	4 (2)	1	1	2 (1)
대전	9 (3)	-	-	-	-	-	-	-	2	-	-	2 (1)	-	-	3 (1)	2 (1)
울산	7 (3)	-	-	-	-	-	-	-	1 (1)	-	-	-	2 (1)	-	-	4 (1)
경기	32 (11)	-	1 (1)	-	-	-	2 (1)	-	3	1 (1)	-	3 (1)	13 (4)	2	2 (1)	5 (2)
강원	7 (4)	-	-	-	-	-	-	-	3 (2)	-	-	1 (1)	3 (1)	-	-	-
충북	8 (3)	-	-	-	-	-	-	-	2	1 (1)	-	-	4 (1)	-	-	1 (1)
충남	13 (4)	-	-	-	2	-	1 (1)	-	1	-	-	2	5 (1)	-	-	2 (2)
전북	12 (4)	-	-	-	-	-	1	-	1	-	-	-	6 (4)	1	-	3
전남	12 (5)	-	2	-	2 (2)	-	-	-	-	-	-	-	5 (1)	-	2 (1)	1 (1)
경북	11 (5)	-	-	-	1	-	-	-	2 (1)	-	-	1	5 (3)	-	-	2 (1)
경남	11 (5)	-	-	-	-	-	-	-	-	-	-	2	7 (5)	-	1	1
제주	18 (7)	3	-	-	-	-	1 (1)	-	3 (3)	1	-	-	7 (3)	-	-	3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미 기 재	무학 (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학교 수료	대재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재	대학원 졸
합계	7,995 (2,513)	518 (115)	32 (9)	6 (1)	371 (98)	89 (24)	484 (145)	153 (39)	1,747 (479)	296 (64)	15 (6)	803 (320)	2,443 (823)	82 (25)	293 (121)	663 (244)
서울	1,100 (366)	180 (40)	6 (3)	1	21 (9)	13 (5)	54 (16)	15 (5)	146 (42)	48 (11)	3 (2)	138 (69)	314 (107)	11 (4)	45 (20)	105 (33)
부산	485 (158)	48 (11)	2 (1)	-	13 (2)	5 (1)	26 (13)	8 (1)	83 (25)	12 (1)	2 (1)	64 (29)	143 (40)	7 (3)	25 (11)	47 (19)
대구	292 (102)	18 (5)	2 (2)	-	16 (4)	2 (1)	32 (12)	5 (1)	46 (10)	9 (3)	-	34 (16)	82 (28)	2	14 (8)	30 (12)
인천	293 (97)	42 (11)	1	-	11 (5)	3 (3)	20 (5)	8	69 (21)	14 (2)	1	24 (12)	83 (31)	3 (1)	3 (2)	11 (4)
광주	187 (59)	10 (1)	1 (1)	-	3 (1)	1	3 (1)	1	22 (8)	11 (4)	-	26 (8)	71 (20)	3	9 (3)	26 (12)
대전	184 (55)	23 (5)	3	1	9	-	8 (1)	3 (2)	24 (7)	5 (1)	1	21 (7)	57 (20)	4 (2)	4 (2)	21 (8)
울산	100 (43)	6 (1)	-	-	-	-	2 (2)	1	27 (10)	4	-	9 (3)	39 (23)	1	3 (3)	8 (1)
경기	1,141 (364)	66 (9)	1	-	28 (7)	5	45 (12)	16 (8)	199 (51)	42 (4)	4 (2)	143 (47)	389 (142)	10 (1)	75 (36)	118 (45)
강원	519 (146)	11 (3)	5	1 (1)	28 (7)	7 (1)	29 (5)	10 (2)	145 (39)	19 (6)	1	52 (17)	146 (46)	6 (3)	12 (3)	47 (13)
충북	379 (114)	5 (1)	3 (1)	2	27 (7)	6 (3)	32 (8)	14 (5)	128 (30)	15 (3)	-	21 (9)	90 (35)	5 (2)	9 (3)	22 (7)
충남	542 (152)	18 (2)	1	-	60 (15)	10 (3)	50 (14)	14 (2)	162 (40)	17 (3)	-	38 (15)	123 (33)	1 (1)	8 (2)	40 (22)
전북	579 (173)	35 (12)	2	-	39 (6)	7 (2)	27 (6)	7 (2)	131 (36)	20 (5)	1	41 (16)	195 (67)	5 (1)	24 (6)	45 (14)
전남	599 (211)	17 (6)	2 (1)	-	33 (13)	10 (2)	49 (17)	13 (1)	148 (52)	25 (10)	1 (1)	45 (14)	213 (77)	5 (1)	8 (4)	30 (12)
경북	867 (247)	15 (1)	3	1	48 (10)	14 (1)	66 (17)	26 (8)	223 (56)	38 (7)	-	74 (30)	271 (86)	8 (5)	25 (8)	55 (18)
경남	728 (226)	24 (7)	-	-	35 (12)	6 (2)	41 (16)	12 (2)	194 (52)	17 (4)	1	73 (28)	227 (68)	11 (1)	29 (10)	58 (24)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미 기 재	무학 (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학교 수료	대재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재	대학원 졸
합계	1,025 (375)	38 (13)	10 (2)	- (-)	63 (23)	6 (2)	61 (23)	10 (3)	269 (101)	26 (9)	16 (5)	91 (39)	327 (104)	14 (7)	30 (10)	64 (34)
서울	164 (53)	16 (7)	-	-	7 (1)	-	10 (1)	1 (1)	29 (10)	6 (2)	1	12 (5)	57 (14)	3 (2)	9 (3)	13 (7)
부산	63 (24)	5 (4)	1 (1)	-	6 (2)	1	5 (2)	1	12 (5)	-	-	3 (1)	19 (2)	5 (2)	-	5 (5)
대구	26 (14)	-	-	-	4 (3)	-	2 (1)	-	7 (4)	1 (1)	-	1	10 (4)	-	1 (1)	-
인천	37 (15)	3	-	-	-	-	1	-	14 (7)	-	1	6 (4)	8 (4)	1	1	2
광주	29 (9)	2	-	-	1	-	-	-	4 (1)	1	1	5 (2)	11 (3)	1	1 (1)	2 (2)
대전	25 (8)	1	1	-	-	-	1	-	6 (3)	1	1 (1)	1 (1)	9 (2)	-	2	2 (1)
울산	18 (7)	1 (1)	-	-	1	-	-	-	4 (2)	1	1 (1)	2	6 (2)	-	1	1 (1)
경기	149 (53)	2 (1)	3	-	5 (2)	1	10 (6)	3	34 (11)	7 (2)	4 (1)	13 (5)	53 (19)	1 (1)	4 (1)	9 (4)
강원	50 (23)	-	-	-	4 (1)	3 (1)	3 (2)	2 (1)	22 (12)	-	-	4 (1)	10 (4)	1 (1)	1	-
충북	36 (17)	-	-	-	5 (3)	-	4 (3)	-	11 (5)	1	-	2	9 (4)	-	-	4 (2)
충남	88 (26)	3	-	-	12 (4)	-	6 (1)	1	20 (4)	2	2	10 (4)	24 (10)	-	-	8 (3)
전북	71 (24)	2	-	-	4 (1)	-	6 (2)	2	21 (7)	1 (1)	1	9 (4)	15 (4)	1	4 (3)	5 (2)
전남	94 (32)	1	3 (1)	-	4	-	7 (2)	-	29 (10)	1	3 (2)	8 (5)	31 (10)	-	2	5 (2)
경북	93 (37)	-	1	-	6 (5)	-	2 (1)	-	30 (8)	-	1	9 (5)	39 (14)	-	1	4 (4)
경남	82 (33)	2	1	-	4 (1)	1 (1)	4 (2)	- (1)	26 (12)	4 (3)	-	6 (2)	26 (8)	1 (1)	3 (1)	4 (1)



(7) 재산신고액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 시·도지사

(단위 : 명)

구분	계	채무(-)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 10억원	10억원 ~ 30억원	30억원 ~ 50억원	50억원 ~ 70억원	7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300억원	300억원 이상
합계	66 (16)	- (-)	- (-)	- (-)	1 (-)	- (-)	4 (-)	2 (-)	23 (5)	16 (3)	14 (6)	3 (2)	- (-)	1 (-)	2 (-)	- (-)
서울	8 (1)	-	-	-	1	-	1	-	2	1	2	1 (1)	-	-	-	-
부산	3 (1)	-	-	-	-	-	-	-	-	1	1 (1)	-	-	1	-	-
대구	5 (1)	-	-	-	-	-	-	2	2	2	1 (1)	-	-	-	-	-
인천	4 (1)	-	-	-	-	-	-	1	1	1	1 (1)	-	-	-	-	-
광주	4 (1)	-	-	-	-	-	-	1	-	2	2 (1)	1	-	-	-	-
대전	6 (1)	-	-	-	-	-	1	-	2 (1)	2	1	-	-	-	-	-
울산	3 (1)	-	-	-	-	-	-	-	1 (1)	1	1	-	-	-	-	-
경기	4 (1)	-	-	-	-	-	-	-	2 (1)	-	1	-	-	-	1	-
강원	4 (1)	-	-	-	-	-	-	-	3	1 (1)	-	-	-	-	-	-
충북	4 (1)	-	-	-	-	-	-	1	1	1	-	1 (1)	-	-	-	-
충남	4 (1)	-	-	-	-	-	-	-	2	-	2 (1)	-	-	-	-	-
전북	4 (1)	-	-	-	-	-	-	-	1	2 (1)	1	-	-	-	-	-
전남	4 (1)	-	-	-	-	-	1	-	1	2 (1)	-	-	-	-	-	-
경북	2 (1)	-	-	-	-	-	-	-	1 (1)	1	-	-	-	-	-	-
경남	4 (1)	-	-	-	-	-	1	-	3 (1)	-	-	-	-	-	-	-
제주	3 (1)	-	-	-	-	-	-	-	-	1	1 (1)	-	-	-	1	-

주) ()는 당선인 수임.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구분	계	채무(-)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 10억원	10억원 ~ 30억원	30억원 ~ 50억원	50억원 ~ 70억원	7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300억원	300억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이상										
합계	848 (230)	5 (1)	10 (3)	6 (-)	7 (1)	2 (1)	74 (3)	55 (8)	330 (80)	183 (61)	135 (55)	25 (10)	9 (4)	2 (1)	5 (2)	- (-)
서울	103 (25)	1	-	2	-	-	3	2	33 (4)	35 (10)	19 (9)	6 (2)	1	-	1	-
부산	44 (16)	-	-	-	-	-	1	2 (1)	20 (4)	8 (3)	10 (6)	1 (2)	2	-	-	-
대구	22 (8)	1	1	-	-	-	3 (1)	2	5 (1)	5 (4)	5 (2)	-	-	-	-	-
인천	39 (10)	-	1	-	-	-	3 (1)	4	18 (1)	7 (3)	4 (3)	1 (1)	1 (1)	-	-	-
광주	23 (5)	-	-	-	-	-	3	6	9 (3)	3 (2)	2	-	-	-	-	-
대전	20 (5)	-	-	-	-	-	-	2	12 (4)	4 (1)	2	-	-	-	-	-
울산	15 (5)	-	-	-	-	-	2	2 (1)	3	4 (2)	3 (2)	1	-	-	-	-
경기	134 (31)	1	-	-	2	-	13	7	52 (14)	28 (7)	23 (7)	5 (1)	1 (1)	-	2 (1)	-
강원	65 (18)	-	1	-	2	1	6	6 (1)	28 (10)	15 (7)	6	-	-	-	-	-
충북	37 (12)	-	-	-	-	-	2	2 (1)	16 (7)	11 (3)	6 (1)	-	-	-	-	-
충남	59 (16)	1 (1)	1	1	-	-	5	1	22 (7)	12 (3)	12 (3)	2 (1)	1	-	1 (1)	-
전북	63 (14)	-	1 (1)	2	-	1 (1)	14 (1)	2	23 (4)	6 (1)	9 (4)	3 (1)	1 (1)	1 (1)	-	-
전남	65 (22)	-	4 (2)	-	1 (1)	-	5	4 (1)	24 (7)	14 (3)	12 (7)	1 (1)	-	-	-	-
경북	81 (23)	1	-	1	-	-	8	3 (1)	32 (7)	14 (4)	16 (9)	3 (2)	2	-	1	-
경남	78 (20)	-	1	-	2	-	6	10 (2)	33 (7)	17 (8)	6 (2)	2 (1)	-	1	-	-



■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채무(-)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 10억원	10억원 ~ 30억원	30억원 ~ 50억원	50억원 ~ 70억원	7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300억원	300억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이상										
합계	2,068 (655)	15 (2)	64 (9)	31 (11)	47 (12)	4 (1)	219 (34)	214 (35)	874 (268)	319 (134)	225 (112)	36 (23)	10 (8)	5 (4)	4 (2)	1 (-)
서울	314 (96)	1	3 (1)	2	2	-	31 (5)	20 (2)	135 (29)	64 (28)	38 (17)	8 (7)	5 (4)	4 (3)	-	1
부산	111 (42)	-	2	-	1	-	4	12 (1)	47 (14)	20 (8)	17 (12)	4 (3)	1 (1)	1 (1)	2 (2)	-
대구	60 (26)	1	-	2 (2)	1	-	3	4	19 (7)	14 (7)	12 (6)	3 (3)	1 (1)	-	-	-
인천	107 (30)	1	3 (1)	2	-	-	11 (1)	15 (2)	52 (14)	10 (5)	13 (7)	-	-	-	-	-
광주	53 (16)	-	1	-	-	-	3	9 (1)	25 (8)	9 (4)	6 (3)	-	-	-	-	-
대전	56 (16)	1	1	-	-	-	4 (1)	5 (1)	22 (8)	13 (4)	8 (2)	2	-	-	-	-
울산	43 (16)	1	1	-	-	-	8 (2)	5 (2)	20 (7)	3 (1)	5 (4)	-	-	-	-	-
경기	352 (108)	1	7 (2)	4 (2)	3 (1)	-	32 (2)	39 (7)	158 (52)	55 (19)	44 (19)	7 (3)	1 (1)	-	1	-
강원	112 (36)	2	7	1	2	-	15 (5)	16 (1)	51 (18)	13 (8)	5 (4)	-	-	-	-	-
충북	87 (28)	-	2	2	1	-	10 (1)	9 (2)	43 (12)	11 (7)	8 (5)	1 (1)	-	-	-	-
충남	130 (34)	1	3	3 (1)	5 (1)	1	14 (2)	8 (2)	55 (13)	21 (7)	19 (8)	-	-	-	-	-
전북	115 (34)	1	7	2 (1)	7 (1)	2 (1)	17 (3)	15 (2)	45 (15)	9 (7)	8 (4)	2	-	-	-	-
전남	133 (46)	1	10 (3)	5	9 (3)	-	20 (4)	16 (3)	50 (17)	12 (8)	8 (6)	2 (2)	-	-	-	-
경북	146 (50)	1	7 (1)	2 (1)	8 (4)	-	20 (3)	14 (4)	54 (21)	20 (7)	14 (5)	4 (3)	2 (1)	-	-	-
경남	141 (48)	2 (1)	6	5 (3)	2 (1)	-	20 (3)	17 (3)	60 (25)	17 (5)	10 (7)	1	-	-	1	-
제주	108 (29)	1 (1)	4 (1)	1 (1)	6 (1)	1	7 (2)	10 (2)	38 (8)	28 (9)	10 (3)	2 (1)	-	-	-	-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채무(-)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 10억원	10억원 ~ 30억원	30억원 ~ 50억원	50억원 ~ 70억원	7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300억원	300억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이상										
합계	211 (78)	2 (1)	4 (1)	5 (4)	4 (1)	- (-)	35 (4)	14 (4)	65 (21)	40 (15)	30 (21)	7 (5)	2 (-)	1 (-)	2 (1)	- (-)
서울	35 (10)	1 (1)	-	-	-	-	5	-	14 (3)	8 (3)	4 (3)	-	1	1	1	-
부산	9 (5)	-	-	-	-	-	-	1	5 (2)	2 (2)	1 (1)	-	-	-	-	-
대구	7 (3)	-	-	-	-	-	1	-	1	2	3 (3)	-	-	-	-	-
인천	10 (3)	-	-	-	-	-	3	3 (1)	3 (2)	-	-	1	-	-	-	-
광주	10 (3)	-	-	-	-	-	4 (1)	1	3 (1)	2 (1)	-	-	-	-	-	-
대전	9 (3)	1	-	-	-	-	1	-	6 (2)	-	1 (1)	-	-	-	-	-
울산	7 (3)	-	-	-	-	-	1	1 (1)	3	1 (1)	-	1 (1)	-	-	-	-
경기	32 (11)	-	1	1 (1)	-	-	7	1 (1)	6 (2)	7	4 (4)	3 (2)	1	-	1 (1)	-
강원	7 (4)	-	1	-	-	-	-	-	2 (1)	3 (2)	-	1 (1)	-	-	-	-
충북	8 (3)	-	-	1 (1)	-	-	2	1	3 (2)	1	-	-	-	-	-	-
충남	13 (4)	-	-	-	1	-	1	2	3 (1)	3 (1)	3 (2)	-	-	-	-	-
전북	12 (4)	-	-	1 (1)	1	-	2	1	2	1 (1)	3 (1)	1 (1)	-	-	-	-
전남	12 (5)	-	-	1 (1)	1 (1)	-	-	1	2 (1)	5 (1)	2 (1)	-	-	-	-	-
경북	11 (5)	-	-	1	-	-	2 (1)	1	3 (1)	1	3 (3)	-	-	-	-	-
경남	11 (5)	-	1 (1)	-	-	-	1	-	6 (1)	2 (2)	1 (1)	-	-	-	-	-
제주	18 (7)	-	1	-	1	-	5 (2)	1 (1)	3 (2)	2 (1)	5 (1)	-	-	-	-	-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채무(-)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 10억원	10억원 ~ 30억원	30억원 ~ 50억원	50억원 ~ 70억원	7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300억원	300억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이상											
합계	7,995 (2,513)	64 (10)	244 (57)	141 (33)	158 (46)	18 (7)	1,022 (208)	968 (256)	3,567 (1,124)	1,016 (405)	697 (315)	73 (35)	19 (12)	6 (4)	2 (1)	- (-)	
서울	1,100 (366)	4 (3)	10 (1)	6 (1)	9 (3)	-	96 (18)	101 (25)	503 (163)	188 (79)	155 (60)	23 (11)	5 (3)	-	-	-	
부산	485 (158)	3 (1)	13 (1)	1	1	-	75 (10)	51 (17)	228 (72)	59 (28)	51 (29)	3 (1)	-	-	-	-	
대구	292 (102)	-	2	2	2	1	23 (4)	27 (4)	153 (49)	42 (21)	36 (20)	4 (4)	-	-	-	-	
인천	293 (97)	1 (1)	4 (1)	1 (1)	1 (1)	1 (1)	38 (7)	44 (13)	129 (41)	44 (15)	28 (16)	1	-	1	-	-	
광주	187 (59)	1	9 (1)	3 (2)	3	1	24 (6)	41 (8)	82 (31)	14 (4)	8 (6)	-	1 (1)	-	-	-	
대전	184 (55)	-	4 (2)	3	1	1 (1)	30 (4)	22 (8)	90 (27)	19 (6)	11 (6)	1 (1)	2	-	-	-	
울산	100 (43)	1 (1)	3	1	2 (1)	1	11 (4)	18 (4)	44 (24)	12 (5)	5 (2)	1 (1)	1 (1)	-	-	-	
경기	1,141 (364)	3	29 (8)	12 (3)	4 (1)	1	129 (28)	117 (31)	466 (141)	196 (70)	155 (68)	19 (7)	6 (4)	3 (2)	1 (1)	-	
강원	519 (146)	5	19 (9)	14 (3)	7 (3)	1 (1)	63 (10)	73 (19)	231 (64)	69 (26)	35 (10)	2 (1)	-	-	-	-	
충북	379 (114)	10 (2)	13 (2)	3 (1)	3 (1)	-	52 (15)	43 (9)	172 (51)	50 (18)	29 (12)	2 (2)	1	1 (1)	-	-	
충남	542 (152)	5 (1)	20 (1)	13 (3)	8 (1)	1	73 (15)	59 (18)	255 (69)	61 (23)	40 (18)	6 (3)	-	-	1	-	
전북	579 (173)	7 (2)	21 (8)	14 (3)	23 (5)	-	99 (23)	94 (32)	246 (73)	49 (15)	24 (12)	2	-	-	-	-	
전남	599 (211)	9 (1)	34 (9)	20 (5)	33 (14)	5 (1)	98 (27)	81 (25)	250 (91)	46 (24)	21 (13)	1	1 (1)	-	-	-	
경북	867 (247)	9 (2)	38 (6)	31 (7)	26 (7)	2 (1)	112 (20)	109 (25)	384 (115)	90 (31)	57 (27)	7 (4)	1 (1)	1 (1)	-	-	
경남	728 (226)	6	25 (6)	17 (4)	35 (9)	3 (2)	99 (17)	88 (18)	334 (113)	77 (40)	42 (16)	1	1 (1)	-	-	-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채무(-)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이상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 10억원	10억원 ~ 30억원	30억원 ~ 50억원	50억원 ~ 70억원	7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300억원	300억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이상														
합계	1,025 (375)	12 (3)	22 (5)	6 (4)	14 (4)	3 (1)	167 (38)	122 (29)	445 (183)	111 (46)	100 (48)	16 (10)	3 (2)	4 (2)	- (-)	- (-)				
서울	164 (53)	-	-	-	-	-	20 (7)	19 (3)	75 (25)	22 (8)	22 (8)	3 (1)	1 (1)	2	-	-				
부산	63 (24)	-	1	-	-	-	11 (4)	4 (1)	34 (13)	5 (1)	7 (4)	1 (1)	-	-	-	-				
대구	26 (14)	-	-	-	1	-	3 (1)	2 (1)	12 (6)	5 (3)	2 (2)	1 (1)	-	-	-	-				
인천	37 (15)	-	-	-	-	-	10 (2)	5 (1)	17 (8)	3 (2)	2 (2)	-	-	-	-	-				
광주	29 (9)	1	1 (1)	-	1 (1)	-	6	6	6 (2)	3 (1)	5 (4)	-	-	-	-	-				
대전	25 (8)	-	1 (1)	1 (1)	-	-	4	4 (1)	6 (1)	3 (2)	6 (2)	-	-	-	-	-				
울산	18 (7)	-	1 (1)	-	-	-	4 (1)	5 (2)	6 (2)	1	1 (1)	-	-	-	-	-				
경기	149 (53)	2 (1)	3	1 (1)	1	-	20 (3)	19 (4)	67 (27)	13 (5)	17 (9)	4 (2)	2 (1)	-	-	-				
강원	50 (23)	3	-	-	-	-	13 (1)	5 (3)	18 (11)	5 (3)	5 (4)	-	-	1 (1)	-	-				
충북	36 (17)	1	1	-	1	-	6 (2)	3 (1)	17 (10)	4 (3)	3 (1)	-	-	-	-	-				
충남	88 (26)	3 (1)	1	-	1 (1)	-	14 (3)	9 (3)	37 (11)	12 (3)	10 (3)	1 (1)	-	-	-	-				
전북	71 (24)	1	3 (1)	2 (1)	2	-	17 (4)	10 (4)	29 (12)	5 (2)	2	-	-	-	-	-				
전남	94 (32)	1 (1)	4	-	5 (2)	2 (1)	19 (4)	7 (2)	37 (16)	11 (2)	6 (2)	2 (2)	-	-	-	-				
경북	93 (37)	-	2 (1)	2 (1)	1	-	13 (3)	11 (1)	46 (20)	9 (5)	6 (4)	2 (1)	-	1 (1)	-	-				
경남	82 (33)	-	4	-	1	1	7 (3)	13 (2)	38 (19)	10 (6)	6 (2)	2 (1)	-	-	-	-				



(8)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신고액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 시·도지사

(단위 : 명)

구분	계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계	66 (16)	- (-)	4 (-)	1 (-)	8 (-)	5 (-)	33 (13)	6 (-)	9 (3)
서울	8 (1)	-	-	-	3	1	1	-	3 (1)
부산	3 (1)	-	-	-	-	-	2 (1)	-	1
대구	5 (1)	-	1	-	-	-	3 (1)	1	-
인천	4 (1)	-	1	-	-	-	3 (1)	-	-
광주	4 (1)	-	-	-	1	-	1 (1)	2	-
대전	6 (1)	-	1	-	1	1	1 (1)	2	-
울산	3 (1)	-	-	-	1	-	1 (1)	1	-
경기	4 (1)	-	-	-	-	1	2 (1)	-	1
강원	4 (1)	-	-	1	-	-	3 (1)	-	-
충북	4 (1)	-	-	-	1	1	1	-	1 (1)
충남	4 (1)	-	-	-	-	1	1	-	2 (1)
전북	4 (1)	-	-	-	-	-	4 (1)	-	-
전남	4 (1)	-	1	-	-	-	3 (1)	-	-
경북	2 (1)	-	-	-	-	-	2 (1)	-	-
경남	4 (1)	-	-	-	1	-	3 (1)	-	-
제주	3 (1)	-	-	-	-	-	2 (1)	-	1

주: ()는 당선인 수임.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구분	계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계	848 (230)	9 (-)	77 (6)	50 (3)	123 (10)	102 (18)	349 (138)	73 (26)	65 (29)
서울	103 (25)	1	6	5	22 (1)	10 (1)	39 (16)	9 (3)	11 (4)
부산	44 (16)	1	2	2 (1)	7	8 (1)	14 (7)	2 (1)	8 (6)
대구	22 (8)	-	2	3 (1)	1	4 (2)	9 (5)	3	-
인천	39 (10)	-	5	2	6 (1)	3	15 (4)	6 (4)	2 (1)
광주	23 (5)	1	3	3	2	4 (1)	10 (4)	-	-
대전	20 (5)	1	-	3	1	3 (1)	9 (4)	2	1
울산	15 (5)	-	2	-	1	3	7 (5)	1	1
경기	134 (31)	1	14 (1)	5	21 (2)	17 (2)	58 (19)	8 (2)	10 (5)
강원	65 (18)	1	7	2	9	9 (1)	30 (16)	4 (1)	3
충북	37 (12)	-	-	4 (1)	2 (1)	4 (1)	20 (7)	6 (2)	1
충남	59 (16)	1	2	3	9	6 (2)	24 (8)	8 (2)	6 (4)
전북	63 (14)	1	9 (2)	3	10	7	25 (8)	4 (2)	4 (2)
전남	65 (22)	1	9 (1)	6	8 (3)	4 (3)	29 (11)	6 (3)	2 (1)
경북	81 (23)	-	7	1	13 (2)	9 (2)	34 (12)	7 (2)	10 (5)
경남	78 (20)	-	9 (2)	8	11	11 (1)	26 (12)	7 (4)	6 (1)



■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없음	50만원 미 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계	2,068 (655)	43 (3)	311 (54)	194 (39)	558 (152)	274 (101)	534 (220)	72 (40)	82 (46)
서울	314 (96)	9	41 (6)	26 (1)	75 (18)	46 (13)	84 (38)	15 (11)	18 (9)
부산	111 (42)	4	12 (1)	11	29 (10)	11 (3)	25 (13)	7 (5)	12 (10)
대구	60 (26)	2	3	3	13 (4)	11 (6)	21 (11)	1	6 (5)
인천	107 (30)	1	18	9 (1)	36 (11)	12 (6)	25 (8)	3 (2)	3 (2)
광주	53 (16)	1	7 (1)	3	15 (2)	8 (5)	11 (4)	5 (3)	3 (1)
대전	56 (16)	1	4 (2)	6	19 (8)	9 (3)	11 (2)	3 (1)	3
울산	43 (16)	2	5 (1)	2 (2)	10 (3)	8 (2)	15 (7)	1 (1)	-
경기	352 (108)	8 (1)	57 (14)	25 (6)	97 (25)	49 (19)	90 (31)	13 (7)	13 (5)
강원	112 (36)	1	16 (5)	18 (4)	27 (6)	21 (4)	26 (15)	3 (2)	-
충북	87 (28)	1	14 (2)	11 (2)	25 (7)	10 (3)	23 (12)	2 (1)	1 (1)
충남	130 (34)	1	22 (2)	14 (2)	35 (9)	19 (8)	34 (11)	3 (2)	2
전북	115 (34)	1	23 (2)	18 (6)	36 (9)	8 (4)	26 (11)	1	2 (2)
전남	133 (46)	4 (1)	32 (9)	14 (8)	42 (11)	12 (4)	23 (9)	2 (1)	4 (3)
경북	146 (50)	1	20 (3)	12 (3)	37 (14)	21 (7)	46 (20)	4 (1)	5 (2)
경남	141 (48)	4 (1)	22 (3)	11 (2)	35 (12)	17 (8)	43 (16)	4 (3)	5 (3)
제주	108 (29)	2	15 (3)	11 (2)	27 (3)	12 (6)	31 (12)	5	5 (3)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계	211 (78)	6 (-)	41 (8)	12 (6)	39 (14)	22 (8)	61 (26)	15 (9)	15 (7)
서울	35 (10)	3	5	-	6 (1)	5 (2)	8 (5)	4 (1)	4 (1)
부산	9 (5)	-	1 (1)	2 (1)	3	1 (1)	1 (1)	1 (1)	-
대구	7 (3)	-	1	-	1	1	-	3 (2)	1 (1)
인천	10 (3)	-	3	-	2 (1)	-	4 (2)	1	-
광주	10 (3)	-	3 (1)	-	1	3 (1)	2 (1)	-	1
대전	9 (3)	1	1	1 (1)	2	2 (1)	1 (1)	-	1
울산	7 (3)	-	-	-	2	1 (1)	4 (2)	-	-
경기	32 (11)	2	6 (1)	2	5 (2)	3 (1)	9 (4)	3 (3)	2
강원	7 (4)	-	1	-	3 (3)	-	3 (1)	-	-
충북	8 (3)	-	-	3 (1)	3 (2)	1	1	-	-
충남	13 (4)	-	4	1	1 (1)	1	5 (2)	-	1 (1)
전북	12 (4)	-	4 (1)	-	1 (1)	2	3 (1)	2 (1)	-
전남	12 (5)	-	2 (1)	-	4 (1)	1 (1)	5 (2)	-	-
경북	11 (5)	-	2 (1)	1 (1)	1	1	4 (1)	-	2 (2)
경남	11 (5)	-	2 (1)	-	1	-	6 (2)	-	2 (2)
제주	18 (7)	-	6 (1)	2 (2)	3 (2)	-	5 (1)	1 (1)	1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계	7,995 (2,513)	189 (27)	1,416 (320)	849 (226)	2,445 (737)	1,102 (371)	1,657 (654)	201 (102)	136 (76)
서울	1,100 (366)	37 (5)	151 (38)	108 (26)	317 (105)	141 (42)	291 (118)	30 (17)	25 (15)
부산	485 (158)	15 (1)	75 (13)	46 (15)	150 (43)	65 (22)	101 (43)	18 (12)	15 (9)
대구	292 (102)	8 (2)	41 (6)	27 (5)	92 (29)	46 (22)	62 (27)	9 (6)	7 (5)
인천	293 (97)	8 (1)	56 (18)	26 (7)	82 (19)	56 (23)	58 (27)	4 (1)	3 (1)
광주	187 (59)	7	50 (15)	22 (8)	54 (13)	15 (5)	34 (14)	3 (2)	2 (2)
대전	184 (55)	7 (1)	40 (11)	15 (5)	66 (20)	20 (5)	28 (10)	5 (2)	3 (1)
울산	100 (43)	1	8 (2)	11 (5)	28 (10)	20 (12)	27 (12)	1	4 (2)
경기	1,141 (364)	35 (4)	166 (38)	109 (28)	343 (111)	165 (52)	257 (100)	41 (21)	25 (10)
강원	519 (146)	8 (3)	89 (18)	51 (15)	179 (39)	75 (22)	105 (44)	9 (2)	3 (3)
충북	379 (114)	7 (2)	74 (20)	44 (13)	109 (31)	60 (17)	73 (24)	9 (5)	3 (2)
충남	542 (152)	15 (3)	98 (18)	64 (13)	173 (49)	73 (24)	99 (34)	12 (6)	8 (5)
전북	579 (173)	10 (1)	131 (34)	79 (18)	195 (63)	64 (20)	88 (32)	8 (2)	4 (3)
전남	599 (211)	9 (2)	137 (34)	73 (22)	178 (65)	86 (37)	103 (43)	7 (4)	6 (4)
경북	867 (247)	12	179 (33)	101 (23)	252 (73)	115 (33)	170 (62)	23 (13)	15 (10)
경남	728 (226)	10 (2)	121 (22)	73 (23)	227 (67)	101 (35)	161 (64)	22 (9)	13 (4)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계	1,025 (375)	38 (11)	181 (43)	102 (37)	299 (104)	132 (47)	218 (101)	31 (17)	25 (16)
서울	164 (53)	7 (1)	26 (4)	11 (6)	44 (11)	28 (7)	40 (18)	4 (4)	4 (2)
부산	63 (24)	2	11 (5)	5 (1)	17 (5)	10 (6)	16 (7)	1	1
대구	26 (14)	-	2	2 (2)	11 (7)	4 (1)	6 (4)	1	-
인천	37 (15)	-	12 (4)	6 (2)	7 (1)	4 (2)	7 (6)	1	-
광주	29 (9)	1	7 (1)	1 (1)	9 (2)	5 (2)	2 (1)	3 (2)	1
대전	25 (8)	1	2	5	8 (4)	1 (1)	7 (3)	-	1
울산	18 (7)	-	5 (3)	1	2	4 (1)	6 (3)	-	-
경기	149 (53)	10 (4)	17 (5)	22 (6)	45 (15)	21 (6)	27 (12)	3 (1)	5 (4)
강원	50 (23)	4	9 (3)	5 (2)	12 (6)	7 (4)	11 (6)	-	2 (2)
충북	36 (17)	1 (1)	10 (2)	3 (1)	12 (8)	2	6 (3)	2 (2)	-
충남	88 (26)	5 (2)	13 (3)	3 (1)	25 (5)	13 (3)	25 (10)	3 (1)	1 (1)
전북	71 (24)	-	22 (7)	9 (3)	21 (8)	7 (3)	9 (2)	2 (1)	1
전남	94 (32)	4 (2)	17 (2)	10 (6)	26 (8)	8 (2)	22 (8)	5 (2)	2 (2)
경북	93 (37)	2	16 (2)	12 (3)	33 (11)	9 (7)	15 (10)	1 (1)	5 (3)
경남	82 (33)	1 (1)	12 (2)	7 (2)	27 (13)	9 (2)	19 (8)	5 (3)	2 (2)



(9) 병역신고사항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 시·도지사

(단위 : 명)

구분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 (비대상)
합계	66 (16)	50 (12)	12 (4)	4 (-)
서울	8 (1)	6 (1)	-	2
부산	3 (1)	3 (1)	-	-
대구	5 (1)	5 (1)	-	-
인천	4 (1)	3	1 (1)	-
광주	4 (1)	3 (1)	-	1
대전	6 (1)	6 (1)	-	-
울산	3 (1)	1 (1)	1	1
경기	4 (1)	3	1 (1)	-
강원	4 (1)	4 (1)	-	-
충북	4 (1)	2 (1)	2	-
충남	4 (1)	4 (1)	-	-
전북	4 (1)	2	2 (1)	-
전남	4 (1)	2 (1)	2	-
경북	2 (1)	2 (1)	-	-
경남	4 (1)	3 (1)	1	-
제주	3 (1)	1	2 (1)	-

주) ()는 당선인 수임.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구분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 (비대상)
합계	848 (230)	674 (193)	151 (34)	23 (3)
서울	103 (25)	72 (16)	27 (8)	4 (1)
부산	44 (16)	35 (12)	8 (4)	1
대구	22 (8)	17(5) (5)	4 (2)	1 (1)
인천	39 (10)	27(9) (9)	9	3 (1)
광주	23 (5)	16(3) (3)	6 (2)	1
대전	20 (5)	15(4) (4)	4 (1)	1
울산	15 (5)	14 (4)	1 (1)	-
경기	134 (31)	112 (30)	17 (1)	5
강원	65 (18)	53 (14)	12 (4)	-
충북	37 (12)	31 (9)	5 (3)	1
충남	59 (16)	52 (16)	6	1
전북	63 (14)	46 (11)	16 (3)	1
전남	65 (22)	57 (21)	7 (1)	1
경북	81 (23)	65 (21)	16 (2)	-
경남	78 (20)	62 (18)	13 (2)	3



■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 (비대상)
합계	2,068 (655)	1,694 (539)	266 (84)	108 (32)
서울	314 (96)	248 (75)	44 (14)	22 (7)
부산	111 (42)	83 (36)	21 (4)	7 (2)
대구	60 (26)	44 (20)	11 (3)	5 (3)
인천	107 (30)	89 (28)	13 (1)	5 (1)
광주	53 (16)	40 (14)	7 (1)	6 (1)
대전	56 (16)	51 (14)	5(2) (2)	-
울산	43 (16)	34 (13)	2	7 (3)
경기	352 (108)	280 (85)	41 (13)	31 (10)
강원	112 (36)	93 (31)	16 (5)	3
충북	87 (28)	71 (22)	12 (5)	4 (1)
충남	130 (34)	108 (27)	18 (6)	4 (1)
전북	115 (34)	98 (29)	16 (5)	1
전남	133 (46)	105 (35)	26 (11)	2
경북	146 (50)	125 (42)	17 (7)	4 (1)
경남	141 (48)	128 (42)	10 (4)	3 (2)
제주	108 (29)	97 (26)	7 (3)	4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 (비대상)
합계	211 (78)	58 (16)	19 (6)	134 (56)
서울	35 (10)	13 (3)	2 (1)	20 (6)
부산	9 (5)	1 (1)	3	5 (4)
대구	7 (3)	1 (1)	-	6 (2)
인천	10 (3)	3 (1)	-	7 (2)
광주	10 (3)	2	1 (1)	7 (2)
대전	9 (3)	-	1	8 (3)
울산	7 (3)	2 (1)	1	4 (2)
경기	32 (11)	12 (5)	2	18 (6)
강원	7 (4)	1	-	6 (4)
충북	8 (3)	2 (1)	-	6 (2)
충남	13 (4)	4	2 (1)	7 (3)
전북	12 (4)	5 (1)	-	7 (3)
전남	12 (5)	1 (1)	2	9 (4)
경북	11 (5)	2	2 (1)	7 (4)
경남	11 (5)	2	2 (1)	7 (4)
제주	18 (7)	7 (1)	1 (1)	10 (5)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 (비대상)
합계	7,995 (2,513)	6,529 (2,076)	1,065 (327)	401 (110)
서울	1,100 (366)	811 (271)	192 (62)	97 (33)
부산	485 (158)	386 (126)	62 (21)	37 (11)
대구	292 (102)	236 (75)	40 (21)	16 (6)
인천	293 (97)	238 (76)	41 (17)	14 (4)
광주	187 (59)	138 (41)	27 (9)	22 (9)
대전	184 (55)	149 (47)	25 (4)	10 (4)
울산	100 (43)	86 (34)	7 (4)	7 (5)
경기	1,141 (364)	904 (301)	146 (45)	91 (18)
강원	519 (146)	437 (123)	66 (20)	16 (3)
충북	379 (114)	325 (99)	40 (14)	14 (1)
충남	542 (152)	459 (135)	74 (15)	9 (2)
전북	579 (173)	480 (152)	79 (18)	20 (3)
전남	599 (211)	491 (174)	95 (35)	13 (2)
경북	867 (247)	744 (215)	105 (25)	18 (7)
경남	728 (226)	645 (207)	66 (17)	17 (2)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 (비대상)
합계	1,025 (375)	223 (37)	55 (14)	747 (324)
서울	164 (53)	37 (2)	8 (2)	119 (49)
부산	63 (24)	10	7 (1)	46 (23)
대구	26 (14)	4 (2)	2 (1)	20 (11)
인천	37 (15)	7 (2)	-	30 (13)
광주	29 (9)	6	2	21 (9)
대전	25 (8)	7 (1)	2 (1)	16 (6)
울산	18 (7)	2	3 (1)	13 (6)
경기	149 (53)	38 (6)	9 (1)	102 (46)
강원	50 (23)	-	-	50 (23)
충북	36 (17)	4	1 (1)	31 (16)
충남	88 (26)	36 (6)	1	51 (20)
전북	71 (24)	11 (1)	9(1) (1)	51 (22)
전남	94 (31)	31 (7)	7(5) (5)	56 (19)
경북	93 (37)	25 (8)	2	66 (29)
경남	82 (33)	5	2	75 (33)



(10) 전과 건수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 전과건수별

(단위 : 명)

구분	대상자수	전과 건수별 후보자수						
		계	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계	12,213 (3,867)	1,324 (261)	993 (210)	248 (42)	56 (6)	14 (2)	13 (1)	
시·도지사	66 (16)	13 (2)	9 (2)	1	1	1	1	
구·시·군의 장	848 (230)	105 (14)	71 (12)	24 (2)	6	1	3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655)	221 (40)	171 (35)	39 (4)	9 (1)	-	2
	비례대표	211 (78)	13 (4)	9 (2)	4 (2)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2,513)	924 (193)	695 (152)	172 (33)	39 (5)	11 (2)	7 (1)
	비례대표	1,025 (375)	48 (8)	38 (7)	8 (1)	1	1	-

주) ()는 당선인 수임.

■ 전과기록 내용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대상자수	전과기록이 있는 대상자수	전과기록내역별 전과기록수									
			계			일반사범			선거사범			
			금고	징역	집행 유예	금고	징역	집행 유예	금고	징역	집행 유예	
계	12,213 (3,867)	1,324 (472)	89 (19)	404 (47)	1,296 (205)	86 (20)	402 (47)	1,247 (192)	3 (1)	2 (-)	49 (13)	
시·도지사	66 (16)	13 (2)	-	12 (2)	11	-	12 (2)	11	-	-	-	
구·시·군 의장	848 (230)	106 (14)	1	37 (2)	119 (12)	1	37 (2)	107 (8)	-	-	12 (4)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655)	221 (40)	12 (4)	90 (6)	186 (31)	11 (3)	90 (6)	176 (29)	1 (1)	-	10 (2)
	비례대표	211 (78)	13 (4)	1 (1)	-	16 (4)	1 (1)	-	15 (3)	-	-	1 (1)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2,513)	923 (404)	73 (13)	254 (36)	916 (152)	71 (15)	252 (36)	892 (146)	2	2	24 (6)
	비례대표	1,025 (375)	48 (8)	2 (1)	11 (1)	48 (6)	2 (1)	11 (1)	46 (6)	-	-	2



(11) 재산신고액 최고·최저 후보자 및 당선인

■ 시·도지사

• 후보자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소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한나라당	오세훈	3,619,837	열린우리당	강금실	△418,120
부산	열린우리당	오거돈	7,995,831	민주노동당	김석준	746,616
대구	한나라당	김범일	1,858,347	민주노동당	이연재	116,100
인천	한나라당	안상수	1,156,590	민주노동당	김성진	83,364
광주	한나라당	한영	3,685,603	민주노동당	오병윤	126,082
대전	열린우리당	염홍철	1,665,189	민주노동당	박춘호	40,000
울산	열린우리당	심규명	1,059,223	한나라당	박맹우	183,099
경기	열린우리당	진대제	17,482,216	민주노동당	김용한	106,245
강원	한나라당	김진신	732,608	국민중심당	유승규	250,800
충북	한나라당	정우택	3,755,695	민주노동당	배창호	86,919
충남	열린우리당	오영교	2,406,704	국민중심당	이명수	205,063
전북	민주당	정균환	1,045,250	민주노동당	염경석	245,000
전남	민주당	박준영	740,882	민주노동당	박응두	18,760
경북	열린우리당	박명재	537,700	한나라당	김관용	209,292
경남	민주노동당	문성현	437,851	열린우리당	김두관	47,564
제주	한나라당	현명관	27,032,841	열린우리당	진철훈	612,444

■ 구·시·군의 장

• 후보자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고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마포구	열린우리당	김충현	11,928,388	은평구	민주당	송재영	△70,762
부산	동구	한나라당	정현옥	5,699,812	영도구	민주당	한영중	37,000
대구	달성군	무소속	김문오	2,727,079	달성군	무소속	표명찬	△39,187
인천	중구	한나라당	박승숙	5,482,571	옹진군	무소속	김필우	△30,092
광주	동구	무소속	양희창	2,884,685	북구	민주노동당	오창규	-
대전	동구	무소속	박병호	1,855,116	대덕구	국민중심당	송인진	50,700
울산	남구	열린우리당	임동호	3,794,697	동구	열린우리당	김원배	15,000
경기	구리시	한나라당	지범석	12,480,600	광주시	무소속	손동원	△300,392
강원	평창군	무소속	박정렬	2,034,862	태백시	무소속	장경덕	△564,489
충북	증평군	한나라당	김영호	2,023,944	충주시	무소속	최실경	-
충남	태안군	국민중심당	진태구	22,153,278	연기군	무소속	김부유	△83,495
전북	고창군	민주당	이강수	7,447,982	임실군	무소속	김진억	△2,429,721
전남	나주시	무소속	신정훈	△103,863	나주시	무소속	신정훈	△103,863
경북	문경시	무소속	박인원	20,088,073	울릉군	한나라당	최수일	△74,391
경남	사천시	무소속	정만규	8,662,629	거창군	열린우리당	최용환	△241,550



• 당선인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고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도봉구	한나라당	최선길	4,260,283	동대문구	한나라당	홍사립	249,120
부산	동구	한나라당	정현옥	5,699,812	강서구	한나라당	강인길	71,660
대구	동구	한나라당	이재만	1,680,614	북구	한나라당	이종화	46,021
인천	중구	한나라당	박승숙	5,482,571	옹진군	한나라당	조운길	6,373
광주	서구	민주당	전주연	777,776	광산구	민주당	전갑길	202,371
대전	대덕구	한나라당	정용기	535,026	동구	한나라당	이장우	194,006
울산	중구	한나라당	조용수	1,555,013	동구	무소속	정천석	72,199
경기	평택시	한나라당	송명호	12,020,788	군포시	한나라당	노재영	126,700
강원	속초시	한나라당	채용생	949,476	화천군	한나라당	정갑철	58,090
충북	옥천군	열린우리당	한용택	1,003,080	보은군	열린우리당	이향래	52,547
충남	태안군	국민중심당	진태구	22,153,278	공주시	국민중심당	이준원	△6,906
전북	고창군	민주당	이강수	7,447,982	임실군	무소속	김진억	△2,429,721
전남	화순군	민주당	전형준	4,384,306	나주시	무소속	신정훈	△103,863
경북	성주군	한나라당	이창우	3,673,934	영덕군	한나라당	김병목	92,174
경남	진해시	한나라당	이재복	4,791,305	김해시	한나라당	김종간	50,500

■ 시·도의원

• 후보자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고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강서구(2)	열린우리당	도충락	30,052,651	성동구(3)	민주당	정금영	△483,410
부산	금정구(1)	한나라당	백종현	12,852,321	강서구(2)	무소속	김국정	△209,780
대구	달서구(6)	한나라당	유병노	6,474,259	수성구(1)	무소속	유동열	△112,000
인천	부평구(4)	한나라당	최종귀	2,706,605	계양구(1)	민주당	손덕기	△60,709
광주	동구(1)	열린우리당	양혜명	2,670,234	북구(1)	한나라당	한상택	△22,379
대전	동구(2)	열린우리당	최영훈	3,690,798	서구(3)	국민중심당	윤용대	△48,250
울산	울주군(3)	한나라당	김춘생	2,907,080	동구(1)	민주노동당	장세동	△19,205
경기	부천시(1)	무소속	박희자	16,960,187	연천군(1)	열린우리당	조봉안	△128,559
강원	춘천시(1)	한나라당	황철	2,708,694	양양군(2)	무소속	김돈일	△156,368
충북	청원군(1)	한나라당	한창동	3,590,635	괴산군(2)	민주노동당	조대식	△235,300
충남	계룡시(2)	열린우리당	정구철	2,854,719	보령시(1)	무소속	양창용	△1,384,400
전북	부안군(1)	무소속	최훈열	4,342,428	전주시(4)	무소속	이완구	△796,018
전남	해남군(1)	민주당	김석원	3,698,357	완도군(2)	열린우리당	우암식	△357,415
경북	영천시(2)	한나라당	김수용	6,503,198	의성군(2)	한나라당	안순덕	△247,486
경남	김해시(3)	무소속	김천영	10,201,047	합천군(2)	무소속	김윤철	△297,400
제주	제주도(1)	한나라당	신관홍	3,143,299	제주도(2)	무소속	고석현	△1,128,222



• 당선인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고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금천구(1)	한나라당	이종학	9,021,040	동작구(1)	한나라당	김동훈	△41,856
부산	금정구(1)	한나라당	백종현	12,852,321	수영구(1)	한나라당	강성태	58,446
대구	달서구(6)	한나라당	유병노	6,474,259	북구(4)	한나라당	김충환	△82,814
인천	부평구(4)	한나라당	최종귀	2,706,605	부평구(1)	한나라당	강문기	△12,357
광주	북구(1)	민주당	진선기	2,318,500	광산구(2)	민주당	유재신	94,931
대전	대덕구(1)	한나라당	박희진	2,359,769	동구(2)	한나라당	오영세	-
울산	울주군(3)	한나라당	김춘생	2,907,080	남구(2)	한나라당	박순환	30,413
경기	양평군(2)	한나라당	정인영	5,556,704	양주시(1)	한나라당	이항원	△104,865
강원	춘천시(1)	한나라당	황철	2,708,694	양구군(1)	한나라당	이기찬	13,500
충북	청원군(1)	한나라당	한창동	3,590,635	충주시(2)	한나라당	심홍섭	23,267
충남	논산시(2)	국민중심당	송영철	2,565,302	예산군(1)	한나라당	고남종	△254,276
전북	익산시(4)	민주당	김연근	2,405,686	완주군(2)	열린우리당	소병래	△582,796
전남	해남군(1)	민주당	김석원	3,698,357	여수시(1)	민주당	김종철	△219,094
경북	영천시(2)	한나라당	김수용	6,503,198	의성군(2)	한나라당	안순덕	△247,486
경남	함양군(1)	한나라당	임창호	2,758,895	합천군(2)	무소속	김윤철	△297,400
제주	제주도(1)	한나라당	신관홍	3,143,299	제주도(17)	민주노동당	안동우	△286,763

■ 비례대표 시·도의원

• 후보자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소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민주당	김용재	10,894,236	한나라당	나은화	△8,000
부산	한나라당	김주익	1,061,099	열린우리당	장민호	65,212
대구	한나라당	유영은	2,521,844	민주노동당	정은정	11,500
인천	열린우리당	김사연	4,581,391	민주당	한윤제	23,000
광주	민주당	김남일	955,000	민주당	송은미	-
대전	국민중심당	권형례	1,829,402	열린우리당	정옥진	△4,660
울산	한나라당	서정희	4,831,059	열린우리당	이미영	278
경기	열린우리당	김형식	18,326,619	민주노동당	송영주	△62,643
강원	한나라당	김동자	3,128,811	한나라당	지명옥	△24,884
충북	국민중심당	김미나	628,000	한나라당	강태원	△96,615
충남	열린우리당	이명례	2,047,000	국민중심당	지재돈	△279,473
전북	열린우리당	김동길	3,463,467	민주노동당	최승희	△105,395
전남	민주당	양승일	2,845,396	민주노동당	고송자	△116,397
경북	한나라당	최윤희	2,430,098	한나라당	손영호	△95,000
경남	열린우리당	이은지	1,080,346	민주노동당	김미영	△42,741
제주	민주당	방문추	2,988,753	열린우리당	김미리	△116,000



• 당선인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소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한나라당	하지원	1,974,000	한나라당	나은화	△8,000
부산	한나라당	김주익	1,061,099	민주노동당	김영희	198,037
대구	한나라당	유영은	2,521,844	열린우리당	박정희	1,078,997
인천	한나라당	김소림	420,548	한나라당	지정구	65,000
광주	민주당	김남일	955,000	민주당	조광향	-
대전	국민중심당	권형례	1,829,402	열린우리당	김인식	123,665
울산	한나라당	서정희	4,831,059	민주노동당	이현숙	95,614
경기	열린우리당	김형식	18,326,619	민주노동당	송영주	△62,643
강원	한나라당	김동자	3,128,811	민주노동당	최원자	150,132
충북	한나라당	최광옥	475,692	한나라당	강태원	△96,615
충남	열린우리당	이명례	2,047,000	한나라당	황화성	382,582
전북	열린우리당	김동길	3,463,467	민주노동당	오은미	△75,994
전남	민주당	양승일	2,845,396	민주노동당	고송자	△116,397
경북	한나라당	최윤희	2,430,098	민주노동당	김숙향	46,495
경남	열린우리당	이은지	1,080,346	민주노동당	김미영	△42,741
제주	민주당	방문추	2,988,753	한나라당	김원근	37,726

■ 구·시·군의원

• 후보자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소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강남구(가)	한나라당	이학기	6,521,044	강서구(라)	한나라당	김경자	△314,200
부산	연제구(가)	한나라당	김홍재	4,620,024	남구(바)	무소속	이호승	△122,120
대구	달성군(가)	한나라당	정종태	4,796,886	북구(가)	무소속	김종문	△1,445,965
인천	계양구(라)	무소속	윤혁상	8,429,081	서구(마)	한나라당	안생준	△1,376,367
광주	북구(마)	민주당	구희호	5,083,974	남구(다)	열린우리당	정만수	△662,035
대전	서구(라)	국민중심당	김형식	6,877,774	중구(다)	한나라당	이운우	△670,006
울산	중구(나)	한나라당	박래환	6,753,426	울주군(다)	열린우리당	김지호	△979,056
경기	의왕시(가)	한나라당	이동수	11,257,120	안산시(라)	무소속	오창석	△2,124,136
강원	횡성군(나)	무소속	이대균	4,558,122	강릉시(다)	무소속	김홍규	△2,048,013
충북	충주시(나)	무소속	유호담	7,976,566	옥천군(나)	한나라당	김재철	△283,258
충남	계룡시(가)	국민중심당	김정순	10,950,739	태안군(나)	한나라당	김진묵	△567,021
전북	전주시(파)	민주당	성은순	3,906,816	완주군(라)	열린우리당	임원규	△484,787
전남	여수시(바)	열린우리당	박정채	5,964,933	장흥군(가)	무소속	박상현	△1,993,369
경북	안동시(다)	한나라당	배원섭	7,494,041	구미시(다)	한나라당	이갑선	△3,991,731
경남	김해시(가)	열린우리당	김영립	5,218,754	밀양시(라)	무소속	박희덕	△724,376



• 당선인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소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강남구(가)	한나라당	이학기	6,521,044	강서구(라)	한나라당	김경자	△314,200
부산	연제구(가)	한나라당	김홍재	4,620,024	강서구(나)	한나라당	김행곤	△43,000
대구	달성군(가)	한나라당	정종태	4,796,886	달서구(아)	한나라당	김주범	1,300
인천	중구(나)	한나라당	공상오	2,731,518	서구(마)	한나라당	안생준	△1,376,367
광주	북구(마)	민주당	구희호	5,083,974	남구(가)	민주당	박상길	△99,850
대전	서구(마)	한나라당	황웅상	3,306,122	중구(다)	한나라당	이운우	△670,006
울산	중구(나)	한나라당	박래환	6,753,426	울주군(가)	무소속	한성울	△126,998
경기	의왕시(가)	한나라당	이동수	11,257,120	남양주시(가)	열린우리당	이광호	△192,145
강원	속초시(가)	한나라당	김성근	3,069,698	강릉시(다)	무소속	김홍규	△2,048,013
충북	충주시(나)	무소속	유호담	7,976,566	옥천군(나)	한나라당	김재철	△283,258
충남	천안시(가)	열린우리당	전종한	3,730,633	공주시(나)	국민중심당	김선태	△128,256
전북	익산시(다)	열린우리당	김영배	2,477,097	완주군(라)	열린우리당	임원규	△484,787
전남	여수시(바)	열린우리당	박정채	5,964,933	완도군(나)	열린우리당	정은상	△1,707,028
경북	안동시(다)	한나라당	배원섭	7,494,041	구미시(다)	한나라당	이갑선	△3,991,731
경남	김해시(가)	열린우리당	김영립	5,218,754	의령군(라)	한나라당	김안수	△703,366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 후보자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소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관악구	한나라당	차정희	8,670,000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성북구 용산구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임재원 유민희 백금자 조재훈 김혜숙	-
부산	북구	열린우리당	이선주	3,029,216	동구	한나라당	김종성	△20,600
대구	수성구	한나라당	정영순	3,128,467	달서구	민주노동당	정미란	△120,368
인천	서구	한나라당	고월출	1,178,532	연수구	한나라당	서연희	12,051
광주	남구	열린우리당	최민순	1,955,898	북구	열린우리당	홍인화	△200,000
대전	유성구	국민중심당	안필웅	2,850,000	동구	열린우리당	이나영	△60,000
울산	중구	한나라당	장정옥	1,988,123	동구	한나라당	나은숙	△12,800
경기	용인시	한나라당	박원동	5,543,788	평택시	한나라당	최정애	△490,776
강원	평창군	한나라당	최귀녀	8,988,325	화천군	열린우리당	심성숙	△8,500
충북	옥천군	한나라당	박찬정	1,828,381	진천군	민주노동당	이해자	△142,543
충남	천안시	한나라당	서경원	4,945,095	태안군	국민중심당	최우평	△110,194
전북	정읍시	열린우리당	은문숙	1,596,663	김제시	민주노동당	김영미	△188,880
전남	고흥군	민주당	서향자	4,684,623	나주시	민주당	강정숙	△1,087,899
경북	경산시	한나라당	기숙란	8,369,686	청도군	한나라당	최혜주	△147,000
경남	합천군	열린우리당	정영희	3,541,554	통영시	열린우리당	정연순	△556,382



• 당선인

(단위 : 천원)

구분	최 고				최 소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재산신고액
서울	강동구	한나라당	박혜옥	5,476,662	서대문구	열린우리당	문군자	6,000
부산	북구	열린우리당	이선주	3,029,216	중구	한나라당	이영숙	23,000
대구	수성구	한나라당	정영순	3,128,467	달서구	열린우리당	이유경	39,000
인천	서구	한나라당	고월출	1,178,532	연수구	한나라당	서연희	12,051
광주	남구	열린우리당	최민순	1,955,898	북구	열린우리당	홍인화	△200,000
대전	유성구	한나라당	윤보현	1,557,880	동구	열린우리당	이나영	△60,000
울산	중구	한나라당	장정옥	1,988,123	동구	한나라당	나은숙	△12,800
경기	용인시	한나라당	박월동	5,543,788	안성시	한나라당	이종숙	△80,670
강원	평창군	한나라당	최귀녀	8,988,325	춘천시	열린우리당	유연경	31,000
충북	옥천군	한나라당	박찬정	1,828,381	제천시	열린우리당	양순경	-
충남	천안시	한나라당	서경원	4,945,095	태안군	국민중심당	최우평	△110,194
전북	정읍시	민주당	문영소	722,125	고창군	민주당	이옥순	△58,683
전남	고흥군	민주당	서향자	4,684,623	나주시	민주당	강정숙	△1,087,899
경북	경산시	한나라당	기숙란	8,369,686	고령군	한나라당	김순분	△72,715
경남	거제시	한나라당	김정자	3,290,509	사천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

(12) 득표수 최다·최소당선인

■ 구·시·군의 장

(단위 : 표)

구분	선거구명	득표수	성명	1:최다, 2:최소
서울	강남구	167,373	맹정주	1
	중구	28,897	정동일	2
부산	부산진구	109,253	하계열	1
	중구	11,713	이인준	2
대구	달서구	164,031	곽대훈	1
	중구	22,452	윤순영	2
인천	부평구	107,038	박윤배	1
	옹진군	4,359	조윤길	2
광주	북구	77,083	송광운	1
	동구	22,738	유태명	2
대전	서구	98,878	가기산	1
	대덕구	29,472	정용기	2
울산	남구	78,218	김두겸	1
	북구	27,560	강석구	2
경기	수원시	226,023	김용서	1
	가평군	10,813	양재수	2
강원	원주시	64,344	김기열	1
	양구군	6,068	전창범	2
충북	청주시	123,717	남상우	1
	단양군	6,936	김동성	2
충남	천안시	101,021	성무용	1
	계룡시	7,744	최홍묵	2
전북	전주시	108,164	송하진	1
	무주군	7,473	홍낙표	2
전남	여수시	57,681	오현섭	1
	곡성군	8,096	조형래	2
경북	포항시	127,480	박승호	1
	울릉군	3,321	정윤열	2
경남	창원시	124,228	박원수	1
	의령군	10,582	김채용	2



■ 시·도의원

(단위 : 표)

구분	선거구명	득표수	성명	1:최다, 2:최소
서울	강남구(2)	45,116	김진수	1
	중구(1)	10,761	안희성	2
부산	동래구(1)	44,676	현영희	1
	강서구(2)	4,737	조용원	2
대구	북구(3)	38,890	이재술	1
	중구(1)	11,022	유규하	2
인천	연수구(1)	31,740	이재호	1
	옹진군(2)	1,300	이상철	2
광주	광산구(2)	22,762	유재신	1
	동구(1)	8,659	서인봉	2
대전	유성구(1)	23,945	송재용	1
	대덕구(3)	9,990	심준홍	2
울산	남구(1)	25,022	윤명희	1
	동구(2)	7,461	이재현	2
경기	용인시(4)	48,670	조양민	1
	연천군(1)	3,735	박영철	2
강원	원주시(2)	36,142	이인섭	1
	양양군(2)	2,007	임용식	2
충북	청주시(2)	29,623	이대원	1
	증평군(2)	930	연만흠	2
충남	천안시(4)	24,643	정종학	1
	계룡시(2)	2,755	조치연	2
전북	군산시(2)	25,986	문면호	1
	무주군(1)	1,758	황정수	2
전남	목포시(2)	32,398	이호균	1
	강진군(2)	2,961	이종현	2
경북	경주시(1)	50,163	이상효	1
	울릉군(2)	978	정무용	2
경남	마산시(3)	38,125	황태수	1
	고성군(1)	4,510	정종수	2
제주	제주도(16)	7,048	강창식	1
	제주도(21)	2,129	한기환	2

주) 선거구명 표시 : 예) 강남구제2선거구 → 강남구(2)

■ 구·시·군 의원

(단위 : 표)

구분	선거구명	득표수	성명	1:최다, 2:최소
서울	강남구(라)	17,002	김세현	1
	중구(나)	2,384	고문식	2
부산	동래구(가)	11,955	김진성	1
	중구(나)	1,327	이두성	2
대구	달서구(마)	11,822	김재관	1
	중구(나)	1,826	이진모	2
인천	연수구(나)	13,887	곽종배	1
	옹진군(나)	654	김영철	2
광주	북구(가)	6,948	심재섭	1
	동구(가)	2,178	홍기월	2
대전	서구(마)	11,276	황용상	1
	동구(라)	2,657	김종성	2
울산	남구(가)	9,789	박선구	1
	울주군(다)	3,091	조충제	2
경기	용인시(라)	16,610	신승만	1
	연천군(나)	1,428	김선기	2
강원	원주시(바)	7,195	김동희	1
	양구군(나)	464	정창수	2
충북	청주시자	8,051	김현기	1
	증평군(나)	483	연구현	2
충남	천안시(다)	6,593	김동욱	1
	계룡시(가)	837	유보선	2
전북	익산시(아)	5,211	김병욱	1
	남원시(마)	785	김근식	2
전남	순천시(라)	4,289	김대희	1
	곡성군(나)	931	김정곤	2
경북	포항시(마)	8,488	박문하	1
	울릉군(가)	558	배상용	2
경남	진주시(라)	9,246	구자경	1
	거창군(나)	746	오병권	2

주) 선거구명 표시 : 예) 강남구라선거구 → 강남구(라)



(13) 득표율 최고·최저 당선인

■ 구·시·군의 장

(단위 : 표)

구분	선거구명	득표율	성명	1:최다, 2:최소
서울	강남구	78.06	맹정주	1
	관악구	44.42	김효겸	2
부산	동구	-	정현옥	1(후보자1인)
	금정구	51.10	고봉복	2
대구	북구	80.84	이종화	1
	달성군	50.62	이종진	2
인천	서구	63.07	이학재	1
	옹진군	44.08	조윤길	2
광주	동구	53.49	유태명	1
	광산구	36.82	전갑길	2
대전	서구	54.76	가기산	1
	대덕구	38.75	정용기	2
울산	중구	75.29	조용수	1
	동구	41.67	정천석	2
경기	파주시	71.27	유화선	1
	오산시	33.70	이기하	2
강원	화천군	69.39	정갑철	1
	삼척시	32.20	김대수	2
충북	괴산군	61.88	임각수	1
	단양군	36.22	김동성	2
충남	천안시	62.95	성무용	1
	금산군	37.36	박동철	2
전북	순창군	72.60	강인형	1
	군산시	28.37	문동신	2
전남	강진군	76.05	황주홍	1
	곡성군	38.08	조형래	2
경북	경주시	84.44	백상승	1
	영양군	28.63	권영택	2
경남	하동군	-	조유행	1(후보자1인)
	밀양시	40.70	엄용수	2

■ 시·도의원

(단위 : 표)

구분	선거구명	득표율	성명	1:최다, 2:최소
서울	강남구(1)	82.47	박홍식	1
	중구(1)	40.71	안희성	2
부산	동래구(1)	76.29	현영희	1
	강서구(2)	39.21	조용원	2
대구	수성구(4)	83.89	이동희	1
	달성군(2)	50.37	김영식	2
인천	연수구(1)	71.65	이재호	1
	옹진군(2)	28.58	이상철	2
광주	광산구(1)	62.52	강박원	1
	서구(2)	41.97	김동식	2
대전	서구(4)	55.45	조신행	1
	대덕구(3)	40.52	심준홍	2
울산	남구(1)	75.65	윤명희	1
	동구(1)	31.81	송시상	2
경기	성남시(6)	77.87	이태순	1
	가평군(2)	35.94	육도수	2
강원	속초시(1)	74.05	이병선	1
	철원군(2)	32.90	김영철	2
충북	제천시(1)	67.47	이종호	1
	괴산군(2)	33.68	오용식	2
충남	홍성군(2)	77.76	이은태	1
	서산시(1)	27.00	이창배	2
전북	진안군(2)	64.01	이상문	1
	무주군(1)	19.92	황정수	2
전남	목포시(1)	74.42	황정호	1
	강진군(2)	27.43	이종현	2
경북	경주시(1)	81.19	이상효	1
	영양군(2)	24.67	이상용	2
경남	진주시(3)	78.95	강갑중	1
	고성군(1)	24.71	정종수	2
제주	제주도(12)	55.78	양대성	1
	제주도(26)	21.63	현우범	2



■ 구·시·군의원

(단위 : 표)

구분	선거구명	득표율	성명	1:최다, 2:최소
서울	강서구(바)	58.69	황준환	1
	강서구(가)	10.68	신낙형	2
부산	부산진구(바)	51.62	김병환	1
	기장군(가)	9.43	정인호	2
대구	수성구(마)	51.43	김진환	1
	서구(나)	9.64	박재술	2
인천	부평구(다)	54.92	이익성	1
	강화군(가)	9.73	이상설	2
광주	남구(라)	29.25	박춘수	1
	북구(마)	8.69	이은방	2
대전	서구(다)	36.72	고경근	1
	중구(가)	10.4	하재봉	2
울산	동구(나)	46.14	천기옥	1
	울주군(다)	11.92	조충제	2
경기	수원시(자)	56.24	명규환	1
	부천시(나)	11.01	한상호	2
강원	강릉시(바)	42.75	김희목	1
	삼척시(가)	7.79	김원중	2
충북	청주시(아)	44.19	남동우	1
	옥천군(나)	8.73	황규상	2
충남	연기군(라)	39.38	이경대	1
	서천군(나)	8.1	김창규	2
전북	익산시(다)	35.43	김영배	1
	군산시(아)	7.37	장덕종	2
전남	순천시(다)	49.6	정병희	1
	영광군(나)	8.78	김봉환	2
경북	구미시(가)	43.08	박세채	1
	영주시(라)	9.01	홍성욱	2
경남	김해시(다)	44.64	김홍진	1
	함양군(가)	8.42	강대수	2

(14) 득표차 최대·최소 당선인

■ 구·시·군의 장

(단위 : 표)

구분	선거구명	성명	득표수	2위득표수	득표차	1:최다, 2:최소
서울	강남구	맹정주	167,373	38,265	129,108	1
	중구	정동일	28,897	14,089	14,808	2
부산	동구	정현옥	39,754	-	-	1(1인후보)
	중구	이인준	11,713	10,700	1,013	2
대구	달서구	곽대훈	164,031	25,245	138,786	1
	서구	윤진	51,814	39,212	12,602	2
인천	부평구	박윤배	107,038	29,481	77,557	1
	옹진군	조윤길	4,359	2,979	1,380	2
광주	북구	송광운	77,083	47,191	29,892	1
	서구	전주언	43,831	37,279	6,552	2
대전	서구	가기산	98,878	54,911	43,967	1
	대덕구	정용기	29,472	16,964	12,508	2
울산	남구	김두겸	78,218	28,300	49,918	1
	북구	강석구	27,560	23,682	3,878	2
경기	수원시	김용서	226,023	96,956	129,067	1
	가평군	양재수	10,813	10,437	376	2
강원	강릉시	최명희	56,982	12,452	44,530	1
	영월군	박선규	11,170	10,563	607	2
충북	청주시	남상우	123,717	84,417	39,300	1
	진천군	유영훈	13,152	12,334	818	2
충남	천안시	성무용	101,021	35,211	65,810	1
	연기군	이기봉	15,794	15,784	10	2
전북	전주시	송하진	108,164	73,138	35,026	1
	장수군	장재영	8,034	7,249	785	2
전남	목포시	정종득	54,611	24,231	30,380	1
	곡성군	조형래	8,096	8,018	78	2
경북	경주시	백상승	103,777	19,118	84,659	1
	영양군	권영택	3,827	3,632	195	2
경남	하동군	조우행	28,317	-	-	1(1인후보)
	창녕군	김종규	15,774	15,709	65	2



■ 시·도의원

(단위 : 표)

구분	선거구명	성명	득표수	2위득표수	득표차	1:최다, 2:최소
서울	강남구(2)	김진수	45,116	9,917	35,199	1
	중구(1)	안희성	10,761	8,777	1,984	2
부산	동래구(1)	현영희	44,676	13,886	30,790	1
	중구(2)	구동희	6,084	5,315	769	2
대구	북구(3)	이재술	38,890	9,790	29,100	1
	달성군(2)	김영식	12,587	12,402	185	2
인천	연수구(1)	이재호	31,740	12,556	19,184	1
	옹진군(2)	이상철	1,300	1,279	21	2
광주	광산구(2)	유재신	22,762	12,402	10,360	1
	동구(1)	서인봉	8,659	7,550	1,109	2
대전	서구(4)	조신행	18,911	9,124	9,787	1
	동구(2)	오영세	12,128	8,999	3,129	2
울산	남구(1)	윤명희	25,022	8,052	16,970	1
	동구(1)	송시상	9,035	8,894	141	2
경기	용인시(4)	조양민	48,670	17,391	31,279	1
	연천군(1)	박영철	3,735	2,721	1,014	2
강원	강릉시(1)	최재규	31,038	9,245	21,793	1
	태백시(2)	김연식	3,951	3,949	2	2
충북	제천시(1)	이종호	22,817	10,999	11,818	1
	옥천군(1)	이규완	6,643	6,591	52	2
충남	천안시(4)	정종학	24,643	11,222	13,421	1
	태안군(2)	강철민	3,771	3,735	36	2
전북	군산시(2)	문면호	25,986	20,227	5,759	1
	무주군(1)	황정수	1,758	1,746	12	2
전남	목포시(1)	황정호	28,201	9,695	18,506	1
	강진군(2)	이종현	2,961	2,841	120	2
경북	경주시(1)	이상효	50,163	11,618	38,545	1
	울릉군(1)	이상태	1,847	1,835	12	2
경남	마산시(3)	황태수	38,125	12,427	25,698	1
	합천군(1)	문준희	7,391	7,281	110	2
제주	제주도(8)	김병립	3,380	1,692	1,688	1
	제주도(20)	허진영	2,359	2,267	92	2

■ 구·시·군의원

(단위 : 표)

구분	선거구명	성명	득표수	2위득표수	득표차	1:최다, 2:최소
서울	강남구(가)	권철규	8,025	2,008	6,017	1
	금천구(다)	서복성	3,412	3,404	8	2
부산	부산진구(다)	홍순태	5,718	2,783	2,935	1
	강서구(나)	신정식	1,799	1,766	33	2
대구	수성구(라)	박민호	5,846	2,227	3,619	1
	서구(나)	박재술	2,378	2,375	3	2
인천	계양구(라)	원관석	6,976	4,390	2,586	1
	동구(나)	이한만	1,885	1,882	3	2
광주	남구(가)	김만곤	3,778	2,300	1,478	1
	광산구(라)	박석원	2,964	2,913	51	2
대전	유성구(나)	이흥기	10,101	5,770	4,331	1
	중구(가)	하재봉	2,722	2,652	70	2
울산	중구(나)	권순정	6,328	4,072	2,256	1
	울주군(나)	최인식	4,666	4,560	106	2
경기	고양시(타)	박윤희	7,571	3,327	4,244	1
	포천시(나)	이병욱	3,347	3,342	5	2
강원	강릉시(마)	권혁기	2,978	1,959	1,019	1
	화천군(가)	이태호	904	899	5	2
충북	청주시(바)	박종룡	6,060	3,472	2,588	1
	충주시(가)	곽호종	1,459	1,458	1	2
충남	연기군(라)	김선무	3,391	2,255	1,136	1
	아산시(라)	조기행	1,825	1,805	20	2
전북	전주시(타)	최찬욱	3,476	2,542	934	1
	부안군(다)	하인호	1,143	1,140	3	2
전남	영암군(가)	박영배	2,820	1,806	1,014	1
	구례군(나)	최성욱	1,057	1,048	9	2
경북	구미시(가)	전인철	5,293	1,956	3,337	1
	안동시(다)	김성진	2,303	2,300	3	2
경남	마산시(다)	정광식	5,674	2,078	3,596	1
	하동군(가)	정종채	943	940	3	2



(15) 후보자 사퇴, 등록무효 후보자수

(단위 : 명)

구분	계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록무효	사 퇴	등록무효	사 퇴	등록무효	사 퇴	등록무효	사 퇴
합 계	48	1	7	4	2	15	12	3	4
서울	3	-	1	1	-	1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3	1	-	-	-	1	1	-	-
광주	2	-	1	-	-	-	-	1	-
대전	-	-	-	-	-	-	-	-	-
울산	1	-	-	-	-	-	1	-	-
경기	3	-	-	-	-	1	1	-	1
강원	4	-	1	-	-	1	1	1	-
충북	-	-	-	-	-	-	-	-	-
충남	3	-	-	1	-	-	1	1	-
전북	3	-	1	-	-	-	2	-	-
전남	11	-	1	2	-	3	3	-	2
경북	5	-	2	-	-	2	1	-	-
경남	10	-	-	-	2	6	1	-	1
제주	-	-	-	-	-	-	-	-	-

(16) 무투표 및 후보자1인 선거구

■ 무투표 선거구

· 시·도의원 : 13개 선거구(13명)

구분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부산	동래구(2)	한나라당	조길우 (曹吉宇)	남	1944-01-13 (62세)
	기장군(1)	한나라당	홍성률 (洪性律)	남	1947-04-29 (59세)
대구	서구(2)	한나라당	강 황 (姜 滉)	남	1945-03-06 (61세)
	북구(1)	한나라당	장경훈 (張景勳)	남	1945-08-03 (60세)
	북구(4)	한나라당	김충환 (金忠煥)	남	1961-09-08 (44세)
	수성구(2)	한나라당	김대현 (金大玼)	남	1971-04-06 (35세)
	달서구(5)	한나라당	지용성 (池龍星)	남	1948-06-01 (58세)
울산	중구(3)	한나라당	김재열 (金在烈)	남	1961-03-23 (45세)
경북	구미시(1)	한나라당	백천봉 (白千峯)	남	1957-03-28 (49세)
	구미시(4)	한나라당	이용석 (李容錫)	남	1946-08-21 (59세)
	봉화군(1)	한나라당	박노욱 (朴魯旭)	남	1960-10-16 (45세)
경남	진주시(2)	한나라당	최진덕 (崔震德)	남	1957-01-29 (49세)
	하동군(2)	한나라당	박영일 (朴英一)	남	1955-03-17 (51세)



· 구·시·군의원 : 2개 선거구(4명)

구분	구시군명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대구	남구	나선거구	한나라당	김동원 (金東園)	남	1962-10-19 (43세)
		나선거구	한나라당	우정택 (禹淸澤)	남	1944-07-13 (61세)
울산	북구	다선거구	한나라당	유재건 (柳在鍵)	남	1961-02-05 (45세)
		다선거구	민주노동당	유인목 (柳寅牧)	남	1961-12-30 (44세)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 31개 선거구(31명)

구분	선거구명(구시군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부산	서구	한나라당	백경선 (白京仙)	여	1957-02-21 (49세)
	동구	한나라당	남선영 (南鮮英)	여	1950-11-09 (55세)
	기장군	한나라당	박정은 (朴晶恩)	여	1955-02-13 (51세)
대구	중구	한나라당	김영숙 (金永淑)	여	1955-01-20 (51세)
	남구	한나라당	곽동주 (郭東株)	남	1963-03-04 (43세)
	달성군	한나라당	정명자 (鄭明子)	여	1940-06-07 (65세)
인천	강화군	한나라당	강혜영 (姜蕙英)	여	1958-06-24 (47세)
경기	양평군	한나라당	박기선 (朴基宣)	여	1958-06-22 (47세)
강원	삼척시	한나라당	설미순 (薛美順)	여	1949-03-18 (57세)
	양양군	한나라당	전정남 (金正男)	여	1956-12-27 (49세)
	양구군	한나라당	김미옥 (金美玉)	여	1941-07-08 (64세)
전북	진안군	열린우리당	한은숙 (韓銀淑)	여	1960-07-12 (45세)
	무주군	열린우리당	이복란 (李福蘭)	여	1948-01-29 (58세)
전남	진도군	민주당	한승주 (韓昇珠)	여	1955-05-13 (51세)
	함평군	민주당	김영중 (金永鍾)	남	1944-07-04 (61세)
	울릉군	한나라당	김정숙 (金貞淑)	여	1945-05-21 (61세)
	문경시	한나라당	김헌중 (金憲中)	여	1950-03-04 (56세)
	예천군	한나라당	이순희 (李舜姬)	여	1947-05-25 (59세)
경북	청도군	한나라당	신경숙 (辛敬淑)	여	1960-06-17 (45세)
	고령군	한나라당	김순분 (金順粉)	여	1954-02-06 (52세)
	성주군	한나라당	유귀옥 (柳貴玉)	여	1952-03-20 (54세)
	칠곡군	한나라당	한향숙 (韓香淑)	여	1964-04-15 (42세)

구분	선거구명(구시군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경북	군위군	한나라당	김정애 (金貞愛)	여	1956-07-08 (49세)
	청송군	한나라당	조태경 (趙泰璟)	여	1971-11-21 (34세)
	영양군	한나라당	한옥철 (韓玉哲)	여	1957-09-27 (48세)
	영덕군	한나라당	윤유자 (尹有子)	여	1956-04-02 (50세)
	봉화군	한나라당	강석희 (姜錫姬)	여	1948-01-13 (58세)
경남	함안군	한나라당	탁옥순 (卓玉順)	여	1952-07-18 (53세)
	창녕군	한나라당	손선애 (孫仙愛)	여	1947-01-01 (59세)
	산청군	한나라당	권민수 (權玟秀)	여	1942-06-26 (63세)
	거창군	한나라당	강평자 (姜平子)	여	1944-10-08 (61세)

■ 후보자 1인 선거구

구분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부산	동구	한나라당	정현옥(鄭顯玉)	남	1941-11-27(64세)
경남	하동군	한나라당	조유행(曹由幸)	남	1946-09-09(59세)



선거비용

(1)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시·도지사

(단위 : 천원)

구분	제4회 지방선거	제3회 지방선거	증가율(%)	비고
합계	22,264,000	17,022,000	30.8	
서울	3,452,000	2,938,000	17.5	
부산	1,493,000	1,077,000	38.6	
대구	1,155,000	768,000	50.4	
인천	1,180,000	815,000	44.8	
광주	621,000	508,000	22.2	
대전	636,000	484,000	31.4	
울산	527,000	410,000	28.5	
경기	3,490,000	2,554,000	36.6	최다
강원	1,179,000	944,000	24.9	
충북	1,173,000	701,000	67.3	
충남	1,290,000	879,000	46.8	
전북	1,272,000	894,000	42.3	
전남	1,293,000	1,177,000	9.9	
경북	1,473,000	1,317,000	11.8	
경남	1,590,000	1,208,000	31.6	
제주	440,000	348,000	26.4	최소

■ 구·시·군의 장

(단위 : 천원)

구분	선거구수	최 다		최 소		평 균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서울	25	노원구	239,000	중구	132,000	192,640
부산	16	부산진구	198,000	강서구	108,000	15,500
대구	8	달서구	234,000	중구	120,000	171,250
인천	10	부평구	226,000	옹진군	101,000	156,800
광주	5	북구	207,000	동구	127,000	165,200
대전	5	서구	215,000	유성구	144,000	165,200
울산	5	남구	174,000	북구	128,000	145,600
경기	31	수원시	341,000	가평군	107,000	176,549
강원	18	원주시	173,000	화천군, 양구군	100,000	176,667
충 북	12	청주시	246,000	증평군	99,000	128,167
충 남	16	천안시	219,000	계룡시	102,000	128,125
전 북	14	전주시	248,000	무주군, 장수군	102,000	134,786
전 남	22	여수시	178,000	구례군	104,000	122,000
경 북	23	포항남구	225,000	울릉군	95,000	128,609
경 남	20	마산시	208,000	산청군	109,000	137,850



■ 지역구 시·도의원

(단위 : 천원)

구분	선거구수	최 다		최 소		평 균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서울	96	강서(1)외 4개	55,000	중구(1)외 3개	47,000	51,136
부산	42	동래(1)외 1개	56,000	중구(1)외 3개	43,000	49,191
대구	26	북구(3)외 1개	56,000	중구(1)	44,000	50,193
인천	30	부평(1)외 1개	55,000	옹진(1)외 1개	41,000	49,100
광주	16	광산(2)	57,000	동구(1)	46,000	49,188
대전	16	유성(1)	55,000	동구(1)외 7개	48,000	49,688
울산	16	남구(1)외 1개	50,000	북구(1)	45,000	47,438
경기	108	용인처인(1)외 1개	60,000	연천(1)	42,000	50,362
강원	36	원주(1)외 1개	55,000	양양(2)외 1개	41,000	44,695
충북	28	청주상당(2)	56,000	증평(2)	41,000	45,786
충남	34	천안(4)	56,000	계룡(2)	42,000	46,324
전북	34	군산(2)	55,000	진안(1)외 9개	42,000	46,059
전남	46	목포(2)외 2개	54,000	곡성(1)외 6개	42,000	44,761
경북	50	경주(1)	55,000	영양(2)외 2개	41,000	45,960
경남	48	창원(1)외 4개	54,000	의령(2)외 4개	42,000	47,105
제주	29	제주시(1)외 10개	43,000	제주시(2)외 17개	42,000	42,380

주) 선거구명 표시 : 예) 유성제선거구 → 유성(1)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천원)

구분	제4회 지방선거	제3회 지방선거	증가율(%)	비 고
서울	549,000	402,000	36.6	
부산	223,000	152,000	46.7	
대구	166,000	119,000	39.5	
인천	170,000	116,000	46.6	
광주	111,000	84,000	32.1	
대전	113,000	82,000	37.8	
울산	95,000	71,000	33.8	
경기	578,000	383,000	50.9	최다
강원	116,000	104,000	11.5	
충북	115,000	89,000	29.2	
충남	138,000	104,000	32.7	
전북	135,000	106,000	27.4	
전남	139,000	125,000	11.2	
경북	175,000	149,000	17.4	
경남	198,000	143,000	38.5	
제주	68,000	59,000	15.3	최소



■ 구·시·군의원

(단위 : 천원)

구분	선거구수	최 다		최 소		평 균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서울	162	노원(다)외 1개	47,000	중구(나)	38,000	41,803
부산	69	북구(가)외 1개	45,000	중구(가)외 7개	38,000	40,740
대구	43	달서구(가)	47,000	중구(가)외 4개	39,000	41,396
인천	42	남구(가)외 3개	45,000	옹진(가)외 1개	36,000	41,620
광주	19	북구(가)외 1개	46,000	남구(가)	39,000	42,737
대전	22	서구(마)	46,000	동구(가)외 1개	39,000	42,228
울산	16	남구(가)외 1개	45,000	북구(가)	40,000	42,438
경기	148	수원영통(하)외 2개	49,000	연천(가)외 2개	37,000	42,710
강원	51	춘천(다)외 2개	42,000	양양(나)외 1개	36,000	38,451
충북	45	청주홍덕(마)	45,000	제천(라)외 2개	36,000	38,800
충남	60	천안(라)	49,000	연기(나)	36,000	38,784
전북	72	군산(아)외 1개	43,000	남원(나)외 4개	36,000	38,125
전남	83	순천(사)	42,000	화순(나)	36,000	37,892
경북	101	포항(마)외 1개	43,000	김천(나)외 10개	36,000	38,179
경남	95	김해(바)	47,000	통영(나)외 13개	36,000	38,822

주) 선거구명 표시 : 예) 달서구가선거구 → 달서구(가)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천원)

구분	선거구수	최 다		최 소		평 균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서울	25	노원구	67,000	중구	42,000	55,840
부산	16	부산진구의 1	56,000	중구의 1	38,000	46,938
대구	8	달서구	65,000	중구	40,000	51,250
인천	10	부평구	64,000	옹진군	36,000	48,500
광주	5	북구	58,000	동구	41,000	49,400
대전	5	서구	61,000	동구의 2	47,000	50,200
울산	5	남구	53,000	북구	43,000	46,400
경기	31	수원시	88,000	연천군의 1	38,000	52,775
강원	18	원주	50,000	고성군의 4	37,000	39,778
충북	12	청주시	67,000	단양군의 3	37,000	41,584
충남	16	천안시	61,000	계룡시의 1	37,000	41,625
전북	14	전주시	67,000	진안군의 4	37,000	42,358
전남	22	여수시	51,000	곡성군의 2	37,000	40,046
경북	23	포항시남구	61,000	울릉군	36,000	41,348
경남	20	창원시	61,000	의령군의 1	37,000	43,400



(2) 선거비용제한액별 선거구수

■ 시·도지사

(단위 : 명)

구분	계	11억원 미만	11억원 이상 12.5억원 미만	12.5억원 이상 13억원 미만	13억원 이상 14.5억원 미만	14.5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합계	16	4	4	3	-	3	2
서울	1	-	-	-	-	-	1
부산	1	-	-	-	-	1	-
대구	1	-	1	-	-	-	-
인천	1	-	1	-	-	-	-
광주	1	1	-	-	-	-	-
대전	1	1	-	-	-	-	-
울산	1	1	-	-	-	-	-
경기	1	-	1	-	-	-	1
강원	1	-	-	-	-	-	-
충북	1	-	1	-	-	-	-
충남	1	-	-	1	-	-	-
전북	1	-	-	1	-	-	-
전남	1	-	-	1	-	-	-
경북	1	-	-	-	-	1	-
경남	1	1	-	-	-	1	-
제주	1	1	-	-	-	-	-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구분	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합계	230	-	2	142	58	22	6
서울	25	-	-	2	14	9	-
부산	16	-	-	8	8	-	-
대구	8	-	-	3	2	3	-
인천	10	-	-	4	5	1	-
광주	5	-	-	1	3	1	-
대전	5	-	-	2	2	1	-
울산	5	-	-	3	2	-	-
경기	31	-	-	16	8	1	6
강원	18	-	-	15	3	-	-
충북	12	-	1	9	1	1	-
충남	16	-	-	15	-	1	-
전북	14	-	-	11	2	1	-
전남	22	-	-	19	3	-	-
경북	23	-	1	18	3	1	-
경남	20	-	-	16	2	2	-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억3천만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억6천만원 이상 1억9천만원 미만	1억9천만원 이상 2억2천만원 미만	2억2천만원 이상
합계	16	2	4	3	3	1	3
서울	1	-	-	-	-	-	1
부산	1	-	-	-	-	-	1
대구	1	-	-	-	1	-	-
인천	1	-	-	-	1	-	-
광주	1	-	1	-	-	-	-
대전	1	-	1	-	-	-	-
울산	1	1	-	-	-	-	-
경기	1	-	-	-	-	-	1
강원	1	-	1	-	-	-	-
충북	1	-	1	-	-	-	-
충남	1	-	-	1	-	-	-
전북	1	-	-	1	-	-	-
전남	1	-	-	1	-	-	-
경북	1	-	-	-	1	-	-
경남	1	-	-	-	-	1	-
제주	1	1	-	-	-	-	-

■ 시·도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4.4천만원 미만	4.4천만원 이상 4.8천만원 미만	4.8천만원 이상 5.2천만원 미만	5.2천만원 이상 5.6천만원 미만	5.6천만원 이상
합계	655	-	151	129	235	125	15
서울	96	-	-	4	54	38	-
부산	42	-	4	8	21	7	2
대구	26	-	2	4	14	6	2
인천	30	-	-	6	13	9	-
광주	16	-	-	4	10	1	1
대전	16	-	-	-	14	2	-
울산	16	-	-	8	8	-	-
경기	108	-	5	13	52	30	8
강원	36	-	22	8	-	6	-
충북	28	-	12	6	9	-	1
충남	34	-	6	18	7	2	1
전북	34	-	12	9	9	4	-
전남	46	-	25	13	5	3	-
경북	50	-	20	15	7	8	-
경남	48	-	14	13	12	9	-
제주	29	-	29	-	-	-	-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4,5천만원 미만	4,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5천만원 미만	5,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합계	230	78	54	32	21	24	21
서울	25	-	2	2	4	11	6
부산	16	2	5	3	4	2	-
대구	8	-	2	2	1	2	1
인천	10	3	1	1	2	2	1
광주	5	-	1	1	2	1	-
대전	5	-	-	4	-	-	1
울산	5	-	2	2	1	-	-
경기	31	3	9	6	2	4	7
강원	18	13	2	2	1	-	-
충북	12	7	3	1	-	-	1
충남	16	5	9	1	-	-	1
전북	14	7	4	1	1	-	1
전남	22	15	4	2	1	-	-
경북	23	13	6	2	1	-	1
경남	20	10	4	2	1	2	1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구분	계	3.4천만원 미만	3.4천만원 이상 3.7천만원 미만	3.7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4.3천만원 미만	4.3천만원 이상 4.6천만원 미만	4.6천만원 이상
합계	1,028	-	39	422	343	192	32
서울	162	-	-	12	102	41	7
부산	69	-	-	17	40	12	-
대구	43	-	-	5	29	7	2
인천	42	-	2	7	16	17	-
광주	19	-	-	1	7	9	2
대전	22	-	-	2	8	11	1
울산	16	-	-	-	8	8	-
경기	148	-	-	15	50	66	17
강원	51	-	2	37	12	-	-
충북	45	-	3	30	7	5	-
충남	60	-	1	47	9	1	2
전북	72	-	5	51	14	2	-
전남	83	-	1	77	5	-	-
경북	101	-	11	68	20	2	-
경남	95	-	14	53	16	11	1



(3) 정치자금 회계보고 제출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제출마감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대상 후보자수	제출 후보자수	미제출 후보자수	제3회 지방선거 미제출후보자수
합 계	11,658	11,627	31	25
시·도지사	66	66	-	-
구·시·군의 장	848	847	1	2
시·도의원	지역구	2,068	2,064	4
	비례대표	70	70	-
	교육의원	14	14	-
구·시·군	7,995	7,969	26	21
의원	597	597	-	-

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수임.

■ 선거비용제한액 및 보전액

(단위 : 천원)

구분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지출액	보전청구액	공제액	보전대상액	
합 계	691,288,000 (445,639,000)	406,186,357 (184,142,000)	271,193,213	71,096,041	200,097,172 (39,849,000)	
시·도지사	99,887,000 (61,964,000)	45,623,818 (25,575,000)	37,701,366	4,383,510	33,317,856 (11,538,000)	
구·시·군의 장	126,710,000 (80,540,000)	83,094,045 (45,482,000)	60,668,280	13,855,518	46,812,762 (7,017,000)	
시·도의원	지역구	98,653,000 (55,294,000)	71,955,763 (28,015,000)	58,033,905	15,415,748	42,618,157 (4,062,000)
	비례대표	15,755,000 (13,142,000)	6,574,148 (3,246,000)	6,746,789	495,856	6,250,933 (2,215,000)
	교육의원	727,000	591,307	472,600	79,154	393,446
구·시·군	320,956,000 (234,783,000)	189,159,241 (81,824,000)	100,611,007	35,995,297	64,615,710 (15,017,000)	
의원	28,600,000	9,188,035	6,959,266	870,958	6,088,308	

주1, ()는 제3회 지방선거를 말함.

주2, 보전대상액은 확정된보전제한액과 보전유예액이 포함된 금액임.

■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및 지출액(신고액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선거비용제한액			지출액			
	제3회 지방선거	제4회 지방선거	증가율	제3회 지방선거	제4회 지방선거	증가율	
시·도지사	1,063,875	1,513,439	42.3	464,991	691,270	48.7	
구·시·군의 장	105,277	149,599	42.1	60,642	98,104	61.8	
시·도의원	지역구	35,860	47,797	33.3	18,298	34,862	90.5
	비례대표	143,000	225,071	57.4	36,469	93,916	157.5
	교육의원	-	51,929	-	-	42,236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8,023	40,276	43.7	9,772	23,737	142.9
	비례대표	-	48,311	-	-	15,520	-

■ 선거비용지출액 최다·최소후보자(신고액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최 다				최 소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시·도지사	경기 진대제 (우리당, 낙)	3,490,000	3,159,334	90.5	서울 이태희 (한미준, 낙)	3,452,000	13,006	0.4
구·시·군의 장	수원 염태영 (우리당, 낙)	341,000	305,418	89.6	용산 김중완 (무소속, 낙)	156,000	350	0.2
시·도의원	지역구 수원<2> 이호근 (우리당, 낙)	57,000	54,392	95.4	성남<7> 김진철 (우리당, 낙)	53,000	140	0.3
	비례대표 경기 한나라당 (당)	578,000	529,020	91.5	서울 희망사회당 (낙)	549,000	10	0.1
	교육의원 교육의원<2> 강무중 (당)	56,000	52,060	93.0	교육의원<5> 강길정 (낙)	48,000	33,105	69.0
구·시·군 의원	지역구 용인시다 주경희 (민노당, 낙)	48,000	47,843	99.7	광명시다 박옥용 (한미준, 낙)	44,000	300	0.7
	비례대표 경기 수원 민노당 (당)	88,000	82,338	93.6	관악구 민주당 (낙)	62,000	15	0.0

주1, 지출액이 0원인 경우 제외, 주2, 선거구명 표기 : 예) 수원제2선거구 → 수원<2>

주3, 당선·낙선표기 : 예) 당선 → (당)



■ 선거비용지출률 최다·최소후보자(신고액 기준)

· 시·도지사

(단위: 천원, %)

구분	후보자 수	최 다				최 소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서울	8	오세훈 (한나라당, 당)	3,452,000	2,791,817	80.9	이태희 (한미준, 낙)	3,452,000	13,006	0.4
부산	3	오거돈 (우리당, 낙)	1,493,000	1,420,087	95.1	김석준 (민노당, 낙)	1,493,000	531,525	35.6
대구	5	이재용 (우리당, 낙)	1,155,000	1,085,643	94.0	박승국 (국중당, 낙)	1,155,000	116,112	10.1
인천	4	최기선 (우리당, 낙)	1,180,000	965,308	81.8	김성진 (민노당, 낙)	1,180,000	183,906	15.6
광주	4	조영택 (우리당, 낙)	621,000	611,256	98.5	한영 (한나라당, 낙)	621,000	183,009	29.5
대전	6	박성효 (한나라당, 낙)	636,000	549,831	86.5	박춘호 (민노당, 낙)	636,000	43,015	6.8
울산	3	노옥희 (민노당, 낙)	527,000	455,044	86.3	심규명 (우리당, 낙)	527,000	423,188	80.3
경기	4	진대제 (우리당, 낙)	3,490,000	3,159,334	90.5	박정일 (민주당, 낙)	3,490,000	57,805	1.7
강원	4	이창복 (우리당, 낙)	1,179,000	920,415	78.1	유승규 (국중당, 낙)	1,179,000	47,544	4.0
충북	4	한범덕 (우리당, 낙)	1,173,000	961,072	81.9	배창호 (민노당, 낙)	1,173,000	30,371	2.6
충남	4	오영교 (우리당, 낙)	1,129,000	1,116,662	86.6	이용길 (민노당, 낙)	1,129,000	125,248	9.7
전북	4	김원주 (우리당, 당)	1,272,000	993,797	78.1	엄경석 (민노당, 낙)	1,272,000	141,549	11.1
전남	4	서범석 (우리당, 낙)	1,293,000	1,223,253	94.6	박용두 (민노당, 낙)	1,293,000	167,429	12.9
경북	2	박명재 (우리당, 낙)	1,474,000	1,308,836	88.8	김관용 (한나라당, 당)	1,474,000	1,100,966	74.7
경남	4	김두관 (우리당, 낙)	1,590,000	1,560,018	98.1	김재주 (국중당, 낙)	1,590,000	69,458	4.4
제주	3	김태환 (무소속, 당)	440,000	369,430	84.0	현명관 (한나라당, 낙)	440,000	338,974	77.0

주) 지출액이 0원인 경우 제외

· 구·시·군의 장

(단위 : 천원, %)

구분	후보자 수	최 다			최 소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서울	103	도봉구 이동진 (우리당, 낙)	182,000	181,009	99.5	용산구 김중완 (무소속, 낙)	156,000	350	0.2
부산	44	서구 박극제 (한나라당, 낙)	133,000	128,928	96.9	강서구 조명래 (무소속, 낙)	108,000	2,070	1.9
대구	22	달성군 김문오 (무소속, 낙)	131,000	119,069	90.9	달서구 강신우 (민노당, 낙)	234,000	50,095	21.4
인천	39	서구 이학재 (한나라당, 당)	183,000	170,647	93.2	계양구 윤창호 (민주당, 낙)	169,000	13,557	8.0
광주	23	광산구 이상갑 (우리당, 낙)	172,000	167,184	97.2	북구 김천국 (한나라당, 낙)	207,000	13,648	6.6
대전	20	유성구 진동규 (한나라당, 당)	144,000	140,348	97.5	중구 박태우 (무소속, 낙)	161,000	36,938	22.9
울산	15	남구 김두겸 (한나라당, 당)	174,000	152,877	87.9	북구 이재경 (무소속, 낙)	128,000	52,606	41.1
경기	134	평택시 유성 (우리당, 낙)	189,000	189,429	100.2	군포시 조용민 (무소속, 낙)	157,000	4,150	2.6
강원	65	고성군 김원기 (무소속, 낙)	102,000	97,283	95.4	원주시 김광립 (무소속, 낙)	173,000	4,865	2.8
충북	37	청원군 김병국 (무소속, 낙)	129,000	118,519	91.9	충주시 최실경 (무소속, 낙)	157,000	30,572	19.5
충남	59	천안시 임형재 (국중당, 낙)	219,000	262,112	119.7	천안시 양승연 (무소속, 낙)	219,000	1,048	0.5
전북	63	정읍시 강광 (무소속, 당)	139,000	138,212	99.4	남원시 황의돈 (무소속, 낙)	132,000	3,966	3.0
전남	65	목포시 정종득 (민주당, 당)	165,000	156,798	95.0	보성군 김중표 (한미준, 낙)	113,000	11,062	9.8
경북	81	김천시 김정국 (무소속, 낙)	141,000	138,491	98.2	구미시 신수식 (무소속, 낙)	192,000	17,916	9.3
경남	78	사천시 정만규 (무소속, 낙)	127,000	125,832	99.1	마산시 이상기 (국중당, 낙)	208,000	4,101	2.0

주) 지출액이 0원인 경우 제외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천원, %)

구분	후보자 수	선거비용 제한액	최 다			최 소		
			정당명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정당명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서울	35	549,000	민주노동당	518,079	94.4	희망사회당	10	-
부산	9	223,000	열린우리당	210,483	94.4	민주당	760	0.3
대구	7	166,000	한나라당	132,029	79.5	국민중심당	5,156	3.1
인천	10	170,000	한나라당	112,710	66.3	민주당	3,500	2.1
광주	10	111,000	열린우리당	85,788	77.3	한나라당	441	0.4
대전	9	113,000	열린우리당	110,124	97.5	민주노동당	10,683	9.5
울산	7	95,000	한나라당	87,266	91.9	민주노동당	41,903	44.1
경기	32	578,000	한나라당	529,020	80.2	국민중심당	660	0.1
강원	7	116,000	한나라당	106,489	91.8	열린우리당	67,240	58.0
충북	8	115,000	열린우리당	89,232	77.6	국민중심당	20,147	17.5
충남	13	138,000	열린우리당	131,820	95.5	민주노동당	28,460	20.6
전북	12	135,000	민주당	119,795	88.7	열린우리당	36,322	26.9
전남	12	139,000	민주노동당	128,403	92.4	열린우리당	49,284	35.5
경북	11	175,000	한나라당	158,693	90.7	민주당	214	0.1
경남	11	198,000	한나라당	159,336	80.5	민주노동당	53,145	26.8
제주	18	68,000	열린우리당	59,159	87.0	민주당	26,346	38.7

주) 지출액이 0원인 경우 제외

· 구 시 · 도의원

(단위 : 천원, %)

구분	후보자 수	최 다			최 소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서울	314	노원구<6> 곽종상 (민주당, 낙)	53,000	53,451	100.8	강서구<2> 최두성 (민주당, 낙)	55,000	2,420	4.4
부산	111	북구<4> 김종원 (우리당, 낙)	48,000	47,937	99.9	동래구<2> 조길우 (한나라당, 당)	53,000	3,361	6.3
대구	60	동구 오세호 (우리당, 낙)	47,000	45,907	97.7	수성구<1> 오동석 (희망사회당, 낙)	51,000	2,951	5.8
인천	107	서구<2> 김용인 (민주당, 낙)	54,000	53,277	98.7	남구<3> 최인철 (무소속, 낙)	50,000	1,992	4.0
광주	53	서구<2> 정병수 (우리당, 낙)	48,000	47,621	99.2	북구<1> 한상택 (한나라당, 낙)	51,000	10,475	20.5
대전	56	서구<5> 오정섭 (한나라당, 당)	48,000	46,063	96.0	대덕구<2> 김도한 (무소속, 낙)	48,000	6,592	13.7
울산	43	동구<2> 이재현 (민노당, 당)	46,000	45,674	99.3	남구<4> 엄공용 (희망사회당, 낙)	48,000	6,281	13.1
경기	352	안양시<1> 장경순 (한나라당, 당)	53,000	53,903	101.7	성남시<7> 김진철 (우리당, 낙)	53,000	140	0.3
강원	112	원주시<1> 이종근 (우리당, 낙)	55,000	52,288	95.1	인제군<2> 한상철 (무소속, 낙)	42,000	6,730	16.0
충북	87	청주시<1> 김현문 (무소속, 낙)	51,000	50,532	99.1	괴산군<2> 정봉환 (무소속, 낙)	42,000	972	2.3
충남	130	계룡시<2> 정구철 (우리당, 낙)	42,000	42,615	101.5	서천군<1> 차광규 (무소속, 낙)	44,000	4,757	10.8
전북	115	순창군<2> 김병윤 (우리당, 당)	42,000	41,782	99.5	완주군<2> 고성수 (무소속, 낙)	45,000	2,625	5.8
전남	133	무안군<1> 박석면 (우리당, 낙)	44,000	45,388	103.2	담양군<2> 조관훈 (무소속, 낙)	43,000	493	1.1
경북	146	김천시<2> 이순희 (무소속, 낙)	47,000	46,994	100.0	구미시<4> 이용석 (한나라당, 당)	48,000	3,945	8.2
경남	141	산청군<1> 노용수 (무소속, 낙)	42,000	42,748	101.8	하동군<2> 박영일 (한나라당, 당)	43,000	188	0.4
제주	108	제주도<3> 고정식 (무소속, 낙)	42,000	42,338	100.8	제주도<19> 이석진 (민주당, 낙)	42,000	4,208	10.0

주1, 지출액이 0원인 경우 제외, 주2, 선거구명 표기 : 예) 노원구제6선거구 → 노원구(6)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천원, %)

구분	후보자 수	최 다			최 소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서울	164	동대문구 (우리당)	55,000	48,954	89.0	관악구 (민주당)	62,000	150	0.0
부산	63	부산진구 (우리당)	56,000	48,907	95.9	사상구 (민노당)	49,000	40	0.1
대구	26	달서구 (우리당)	65,000	39,999	61.5	서구 (국중당)	48,000	156	0.3
인천	37	남동구 (민주당)	54,000	41,998	77.8	계양구 (한나라당)	52,000	84	0.2
광주	29	북구 (우리당)	58,000	51,775	89.3	북구 (민노당)	58,000	4,400	7.6
대전	25	서구 (우리당)	61,000	55,781	91.4	유성구 (국중당)	47,000	1,827	3.9
울산	18	남구 (한나라당)	53,000	47,339	89.3	동구 (민노당)	45,000	905	2.0
경기	149	수원시 (민노당)	88,000	82,338	93.6	광주시 (우리당)	46,000	466	1.0
강원	50	춘천시 (한나라당)	48,000	35,894	74.8	홍천군 (우리당)	39,000	55	0.1
충북	36	제천시 (우리당)	42,000	35,586	84.7	음성군 (우리당)	40,000	439	1.1
충남	88	천안시 (우리당)	61,000	56,957	93.4	아산시 (우리당)	46,000	20	0.0
전북	71	익산시 (민노당)	51,000	50,712	99.4	군산시 (민노당)	49,000	1,760	3.6
전남	94	순천시 (우리당)	49,000	48,942	99.9	완도군 (우리당)	38,000	609	1.6
경북	93	포항시 (한나라당)	61,000	59,870	98.1	김천시 (민주당)	43,000	300	0.7
경남	82	진해시 (우리당)	43,000	41,000	95.3	거창군 (한나라당)	39,000	2,053	5.3

주) 지출액이 0원인 경우 제외

· 구·시·군의원

(단위 : 천원, %)

구분	후보자 수	최 다				최 소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서울	1,100	강서구<가> 배운호 (한나라당, 낙)	45,000		104.0	은평구<다> 구학규 (무소속, 낙)	42,000	560	1.3
부산	485	북구<나> 이순영 (우리당, 낙)	40,000		99.4	중구<나> 박의석 (무소속, 낙)	38,000	1,000	2.6
대구	292	중구<나> 김동철 (한나라당, 당)	40,000		95.3	수성구<라> 김익준 (우리당, 낙)	42,000	5,500	13.1
인천	293	연수구<가> 황윤용 (한나라당, 당)	41,000		104.4	서구<라> 함창린 (무소속, 낙)	44,000	685	1.6
광주	187	서구<가> 이춘문 (우리당, 낙)	42,000		95.4	북구<나> 서경복 (무소속, 낙)	44,000	1,425	3.2
대전	184	서구<바> 이정숙 (무소속, 낙)	44,000		98.3	대덕구<다> 안병옥 (무소속, 낙)	43,000	988	2.3
울산	100	중구<가> 정사균 (무소속, 낙)	43,000		99.5	북구<나> 김재근 (무소속, 낙)	41,000	2,616	6.4
경기	1,141	고양시<다> 최우일 (한나라당, 낙)	44,000		104.2	광명시<다> 박우용 (한미준, 낙)	44,000	300	0.7
강원	519	춘천시<마> 신종백 (우리당, 낙)	38,000		96.7	철원군<가> 최학산 (무소속, 낙)	38,000	2,071	5.4
충북	379	청주시<다> 정우철 (우리당, 낙)	43,000		99.5	충주시<사> 최남석 (무소속, 낙)	39,000	2,984	7.6
충남	542	천안시<바> 장기수 (우리당, 당)	45,000		100.3	논산시<나> 조경연 (무소속, 낙)	40,000	1,430	3.6
전북	579	군산시<다> 장익상 (우리당, 낙)	39,000		99.9	무주군<가> 김명순 (무소속, 낙)	37,000	1,486	4.0
전남	599	여수시<가> 서완석 (우리당, 당)	39,000		99.0	영광군<가> 김천식 (무소속, 낙)	39,000	980	2.5
경북	867	경주시<다> 김창환 (무소속, 낙)	39,000		103.2	안동시<다> 김덕환 (무소속, 낙)	42,000	480	1.1
경남	728	진주시<나> 유재수 (민노당, 낙)	42,000		102.4	하동군<다> 김현용 (무소속, 낙)	37,000	610	1.6

주) 지출액이 0원인 경우 제외



• 제주도교육의원

(단위 : 천원, %)

구분	후보자 수	최 다				최 소			
		선거구명 후보자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선거구명 후보자명 (당 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지출률
제주	14	교육의원<3> 김봉익 (낙)	50,000	47,833	95.7	교육의원<4> 이성무 (낙)	49,000	33,614	68.6

(4) 선거비용보전

■ 총 괄

(단위 : 천원, %)

구분	후보자수 (정당수)	보전대상자수			보전율	제3회 지방선거			
		계	100%	50%		후보자수	보전대상자수	보전율	
합계	12,227 (11,658)	7,675 (7,172)	6,137 (5,634)	1,538	62.8 (61.5)	10,918 (10,798)	9,830 (9,721)	90.0 (90.0)	
시·도지사	66	39	34	5	59.1	55	32	58.2	
구·시·군의 장	848	597	517	80	70.4	750	532	70.9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1,799	1,537	262	87.0	1,531	1,291	84.3
	비례대표	211 (70)	179 (46)	179 (46)	-	84.8 (65.7)	209 (89)	152 (42)	72.7 (47.2)
	교육의원	14	14	14	-	100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4,343	3,152	1,191	54.3	8,373	7,824	93.4
	비례대표	1,025 (597)	704 (334)	704 (334)	-	68.7 (55.9)	-	-	-

주1) 비례대표지방의원의 ()안의 수는 정당수를 말함.

주2) 보전 미청구 후보자 :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3), 비례대표시 도의회의원선거 (1), 비례대표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 (42)

■ 선거별 보전

(단위 : 천원, %)

구분	보전청구액	공제금액	보전대상액	보전비율(%)	
합계	271,193,213 (1,325,011)	71,096,041 (171,504)	200,097,172 (1,153,506)	73.8	
시·도지사	37,701,366 (966,702)	4,383,510 (112,396)	33,317,856 (854,304)	88.4	
구·시·군의 장	60,668,280 (101,622)	13,855,518 (23,209)	46,812,762 (78,413)	77.2	
시·도 의원	지역구	6,746,789 (146,669)	495,856 (135,890)	6,250,933 (135,890)	92.7
	비례대표	58,033,905 (32,259)	15,415,748 (8,569)	42,618,157 (23,690)	73.4
	교육위원	6,959,266 (20,836)	870,958 (2,608)	6,088,308 (18,228)	87.5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100,611,007 (23,166)	35,995,297 (8,288)	64,615,710 (14,878)	64.2
	지역구	472,600 (33,757)	79,154 (5,654)	393,446 (28,103)	83.3

주1, 공제금액에는 50%보전대상후보자(1,538명)에 대한 청구액대비 50%공제한 금액(16,990,081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주2, ()는 평균임.



■ 정당별 보전

(단위 : 천원)

구분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한미준	무소속	
합계	199,703,726	65,447,796	76,535,067	18,110,504	8,901,566	5,301,403	7,864	25,399,526	
시·도지사	33,317,856	16,031,861	12,821,118	2,188,824	1,150,549	839,720	-	285,784	
구·시·군의 장	46,812,762	15,582,745	16,019,992	4,137,339	1,143,358	1,543,587	-	8,385,741	
시·도 의원	지역구	42,618,157	13,671,150	14,073,383	3,947,236	1,657,400	1,272,110	-	7,996,878
	비례대표	6,250,933	2,165,246	2,004,350	410,722	1,541,720	128,895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64,615,710	15,225,298	29,528,169	6,734,148	2,973,482	1,415,626	7,864	8,731,123
	비례대표	6,088,308	2,771,496	2,088,055	692,235	435,057	101,465	-	-

■ 보전대상액 최다·최소

(단위 : 천원)

구분	최다				최소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명, 당·낙)	보전청구액	보전대상액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명, 당·낙)	보전청구액	보전대상액	
시·도지사	경기	진대제 (우, 낙)	2,840,547	2,748,106	광주	오병운 (노, 낙)	250,370	105,387	
구·시·군의 장	경기	염태영 (우, 낙)	279,174	247,852	서울	전재갑 (무, 낙)	16,702	10,579	
	수원시				종로구				
시·도 의원	지역구	서울	이한기 (한, 당)	50,719	45,006	부산	조길우	880	850
		강서구<2>			동래구<2>				
	비례대표	경기	한나라당	529,020	528,286	제주	민주당	26,419	25,251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봉추 (낙)	40,392	34,738	교육의원	이성무 (낙)	25,957	21,474	
	<3>				<4>		서울	김양모	
구·시·군 의원	지역구	강동구<라>		41,089	34,986	전남	김승일 (무, 낙)	5,262	1,176
		영암군<나>							
비례대표	경기	민 주 노동당	82,338	81,723	서울	한나라당	20	20	
	수원시				양천구				

주, 지출액이 0원인 경우 제외

■ 보전을 최다·최소

(단위 : 천원, %)

구분	최다					최소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낙)	보전 청구액	보전 대상액	보전을	선거구명	후보자명 (정당명, 당·낙)	보전 청구액	보전 대상액	보전에 비율	
시·도지사	서울	오세훈 (한,당)	2,380,221	2,354,950	98.9	광주	오병운 (노,낙)	250,370	105,387	42.1	
구·시·군의 장	전남	고길호 (무,당)	90,888	90,888	100.0	경북	최근성 (노,낙)	84,282	20,422	24.2	
시·도 의원	지역 구	경남	박정민 (우,낙)	25,959	25,959	100.0	대구	장경훈 (한,당)	762	762	-
	비 례 대 표	경기	민주당	126,000	126,000	100.0	대전	국 민 중심당	93,515	45,696	48.9
	교 육 의 원	교육의원 제2	강무중 (당)	30,569	29,468	96.4	교육의원 제4	김형탁 (낙)	36,969	2,6401	71.4
구·시·군 의원	지역 구	전남	정동택 (민,당)	18,696	18,696	100.0	경북	김재환 (무,낙)	7,250	7,250	-
비 례 대 표	서울	열 린 우리당	47,316	47,316	100.0	경기	민 주	14,324	2,928	20.4	
	강서구					성남시	노동당				



■ 보전비용 공제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계	시·도지사	구·시·군 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합 계	71,096,041 (100.0)	4,383,510 (100.0)	13,855,518 (100.0)	15,415,748 (100.0)	495,856 (100.0)	79,154 (100.0)	35,995,297 (100.0)	870,958 (100.0)
50% 보전에 따른 감액	16,990,082 (23.9)	1,164,004 (26.6)	3,168,317 (22.9)	2,930,395 (19.0)	-	-	9,727,366 (27.0)	-
소 계	54,105,959 (76.1)	3,219,506 (73.5)	10,687,201 (77.1)	495,856 (81.0)	12,485,353 (100.0)	79,154 (100.0)	26,267,931 (73.0)	870,958 (100.0)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7,326,092 (10.3)	199,042 (4.5)	1,214,433 (8.8)	1,796,412 (11.65)	-	15,397 (19.5)	4,096,426 (11.4)	4,382 (0.5)
회계보고서 보고 누락	33,401 (0.1)	-	18,518 (0.1)	1,579	-	-	12,535	769 (0.1)
허위보고	200,793 (0.3)	29,784 (0.7)	12,067 (0.1)	58,708 (0.4)	-	-	100,234 (0.3)	-
위법선거운동 지출	255,700 (0.4)	24,197 (0.6)	60,290 (0.4)	63,827 (0.4)	5,723 (1.2)	544 (0.7)	100,664 (0.3)	455 (0.1)
기부행위제한 위반 지출	30,974	700	1,204	6,774	-	-	22,052	244
법정수당 실비의 지출	504,595 (0.7)	25,347 (0.6)	100,519 (0.7)	108,194 (0.7)	10,433 (2.10)	385 (0.5)	241,787 (0.7)	17,930 (2.1)
적법영수증· 증빙서류 미첨부	977,174 (1.4)	73,750 (1.7)	164,382 (1.2)	226,762 (1.5)	606 (0.1)	100 (0.1)	506,383 (1.4)	5,191 (0.6)
후보자자신의 물품 등 사용비용 등	202,005 (0.3)	458	12,064 (0.1)	54,734 (0.4)	290 (0.1)	-	133,967 (0.4)	492 (0.1)
무상제공에 의한 미지출	67,554 (0.1)	-	14,244 (0.1)	16,592 (0.1)	-	-	36,628 (0.1)	90
통상거래(임차) 가격 초과	35,241,865 (49.6)	2,084,044 (47.5)	6,996,436 (50.5)	8,043,488 (52.2)	439,488 (88.6)	46,277 (58.5)	16,985,461 (47.2)	646,671 (74.3)
선거운동용외 물품구입등	1,445,758 (2.0)	387,472 (8.8)	266,811 (1.9)	232,839 (1.5)	6,776 (1.4)	899 (1.1)	524,294 (1.5)	26,667 (3.1)
시의전화 등 정보이용요금	437,291 (0.6)	8,114 (0.2)	110,794 (0.8)	132,494 (0.9)	-	-	183,971 (0.5)	1,918 (0.2)
기 타	7,382,757 (10.4)	386,598 (8.8)	1,715,439 (12.4)	1,742,950 (11.3)	32,540 (6.6)	15,552 (19.7)	3,323,529 (9.2)	166,149 (19.1)

■ 선거별 선거비용보전

• 시·도지사

(단위 : 명, 천원, %)

구분	후보자수		제한액(A)	보전대상(B)	보전유예	보전제한	보전비율 (B/A)
	등록	보전대상					
합계	66	39	51,125,000	33,317,856	576,009	-	65.2
서울	8	2	6,904,000	4,788,146	-	-	69.4
부산	3	3	4,479,000	2,371,691	-	-	53.0
대구	5	2	2,310,000	1,508,830	-	-	65.3
인천	4	2	2,360,000	1,563,942	576,009	-	66.3
광주	4	3	1,863,000	1,031,080	-	-	55.3
대전	6	3	1,908,000	1,034,470	-	-	54.2
울산	3	3	1,581,000	927,471	-	-	58.7
경기	4	2	6,980,000	5,314,219	-	-	76.1
강원	4	2	2,358,000	1,586,445	-	-	67.3
충북	4	2	2,346,000	1,366,492	-	-	58.2
충남	4	3	3,870,000	2,558,490	-	-	66.1
전북	4	2	2,544,000	1,544,354	-	-	60.7
전남	4	2	2,586,000	1,961,956	-	-	75.9
경북	2	2	2,946,000	2,042,164	-	-	69.3
경남	4	3	4,770,000	2,874,893	-	-	60.3
제주	3	3	1,320,000	843,214	-	-	63.9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천원, %)

구분	후보자수		제한액(A)	보전대상(B)	보전유예	보전제한	보전비율 (B/A)
	등록	보전대상					
합계	848	597	88,185,000	46,812,762	231,101	107,384	53.1
서울	103	65	12,379,000	7,175,515	16,372	-	58.0
부산	44	36	5,451,000	2,785,379	-	-	51.1
대구	22	18	2,991,000	1,607,446	2,027	-	53.7
인천	39	28	4,336,000	2,062,247	-	100	47.6
광주	23	16	2,650,000	1,389,031	-	-	52.4
대전	20	17	2,784,000	1,512,897	-	-	54.3
울산	15	14	2,041,000	859,885	-	-	43.9
경기	134	84	14,619,000	7,812,159	69,972	-	53.4
강원	65	47	5,545,000	2,677,275	62,626	-	48.3
충북	37	29	3,667,000	1,838,310	8,601	-	50.1
충남	59	46	5,950,000	3,318,554	14,623	15,739	55.8
전북	63	37	5,112,000	2,962,972	-	-	58.0
전남	65	50	6,061,000	3,403,799	56,880	91,545	56.2
경북	81	59	7,462,000	3,555,331	-	-	47.6
경남	78	51	7,137,000	3,851,962	-	-	54.0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천원, %)

구분	보전대상 정당수	제한액(A)	보전대상(B)	보전유예	보전제한	보전비율 (B/A)
합계	46	9,801,000	6,250,933	-	-	63.8
서울	4	2,196,000	1,385,550	-	-	63.1
부산	3	669,000	371,855	-	-	55.6
대구	2	332,000	250,392	-	-	75.4
인천	2	340,000	189,894	-	-	55.6
광주	2	222,000	104,483	-	-	47.1
대전	3	339,000	232,483	-	-	68.6
울산	2	190,000	119,472	-	-	62.9
경기	4	2,308,000	1,410,639	-	-	61.1
강원	3	348,000	240,615	-	-	69.1
충북	2	230,000	163,702	-	-	71.2
충남	3	414,000	317,324	-	-	76.6
전북	3	405,000	334,549	-	-	82.6
전남	3	417,000	251,783	-	-	60.4
경북	3	525,000	279,062	-	-	56.6
경남	3	594,000	397,097	-	-	66.9
제주	4	272,000	202,033	-	-	74.3



·시·도의원

(단위 : 명, 천원, %)

구분	후보자수		제한액(A)	보전대상(B)	보전유예	보전제한	보전비율 (B/A)
	등록	보전대상					
합계	2,068	1,799	85,774,000	42,618,157	103,189	68,517	49.7
서울	314	265	13,541,000	6,729,291	12,002	-	49.7
부산	111	101	4,961,000	2,394,562	-	-	48.3
대구	60	48	2,393,000	1,143,076	160	-	47.8
인천	107	89	4,345,000	2,107,989	6,469	1,380	48.5
광주	53	45	2,215,000	1,190,364	510	-	53.7
대전	56	50	2,484,000	1,364,507	1,336	-	54.9
울산	43	38	1,799,000	991,486	4,281	-	55.1
경기	352	290	14,535,000	7,123,999	30,497	2,738	49.0
강원	112	105	4,688,000	2,026,211	3,030	-	43.22
충북	87	74	3,359,000	1,531,035	-	-	45.6
충남	130	113	5,230,000	2,565,401	23,283	4,283	49.1
전북	115	99	4,529,000	2,351,948	830	21,882	51.9
전남	133	121	5,397,000	2,938,984	588	-	54.5
경북	146	133	6,071,000	2,971,573	8,383	38,234	48.9
경남	141	129	6,032,000	3,177,774	11,060	-	52.7
제주	108	99	4,195,000	2,009,957	760	-	47.9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천원, %)

구분	보전대상 정당수	제한액(A)	보전대상(B)	보전유예	보전제한	보전비율 (B/A)
합계	334	16,230,000	6,088,308	600	-	37.5
서울	49	2,764,000	1,027,258	-	-	37.6
부산	23	1,118,000	293,973	-	-	26.3
대구	9	475,000	39,469	-	-	8.3
인천	15	767,000	194,462	600	-	25.4
광주	9	453,000	239,245	-	-	52.8
대전	8	408,000	164,936	-	-	40.4
울산	7	332,000	120,020	-	-	36.2
경기	46	2,673,000	1,135,460	-	-	42.5
강원	20	814,000	267,282	-	-	32.9
충북	16	697,000	310,839	-	-	44.6
충남	25	1,062,000	404,019	-	-	38.0
전북	23	1,050,000	603,410	-	-	57.5
전남	28	1,151,000	496,887	-	-	43.2
경북	26	1,115,000	338,704	-	-	30.4
경남	30	1,351,000	452,344	-	-	33.5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천원, %)

구분	후보자수		제한액(A)	보전대상(B)	보전유예	보전제한	보전비율 (B/A)
	등록	보전대상					
합계	7,995	4,343	174,036,000	64,614,710	244,997	57,699	37.1
서울	1,100	623	26,071,000	10,035,998	81,980	5,797	38.5
부산	485	272	11,088,000	4,373,725	-	-	39.4
대구	292	142	5,904,000	2,392,184	12,880	-	40.5
인천	293	164	6,826,000	2,568,087	3,074	5,650	37.6
광주	187	89	3,799,000	1,555,035	-	-	40.9
대전	184	86	3,614,000	1,402,851	-	-	38.8
울산	100	66	2,818,000	1,232,617	10,796	-	43.7
경기	1,141	606	25,878,000	10,094,012	77,779	2,142	39.0
강원	519	226	8,678,000	2,669,705	6,394	-	30.8
충북	379	198	7,679,000	2,366,824	-	-	30.8
충남	542	281	10,877,000	3,457,234	2,890	315	31.8
전북	579	337	12,820,000	4,759,346	4,418	18,654	37.1
전남	599	394	14,955,000	5,719,626	1,430	-	38.2
경북	867	437	16,641,000	5,794,362	20,127	-	34.8
경남	728	422	16,388,000	6,194,104	23,229	25,141	37.8

• 제주도교육의원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 후보자수	보전대상 후보자수	선거비용 제한액	보전 대상금액	보전 유예액	확정보전 제한액	보전비율
제주	14	14	727,000	393,446	-	-	54.1

(5) 점자형 선거공보 부담

(단위 : 천원, %)

구분	후보자수	제출자수	청구자수	부담청구액	부담액	평균부담액	부담율	
합계	12,227	1,994	1,927	1,435,817	615,127	319	42.8	
시·도지사	66	51	51	309,158	125,070	2,452	40.5	
구·시·군의 장	848	386	378	406,505	173,458	459	42.7	
시·도 의원	지역구	2,068	449	439	199,519	93,167	212	46.7
	비례대표	211 (70)	(17)	(17)	89,258	26,957	1,586	30.2
	교육의원	14	10	10	5,570	3,860	386	69.3
구·시·군 의원	지역구	7,995	1,030	995	386,722	177,416	178	45.9
	비례대표	1,025 (597)	(51)	(50)	39,085	15,199	304	38.9

주, 비례대표지방의원의 경우 ()안의 수는 정당수를 말함.



투표

(1) 선거별 투표현황

■ 시·도지사

(단위 : 명, 표, %)

구분	선거인수(A)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B/A)	유효투표율 (C/B)
		계(B)	유효투표수(C)	무효투표수(D)			
합계	37,064,282	19,118,177	18,857,606	260,571	17,946,105	51.6	98.6
서울	7,983,648	3,977,842	3,946,826	31,016	4,005,806	49.8	99.2
부산	2,845,104	1,378,618	1,365,745	12,873	1,466,486	48.5	99.1
대구	1,885,043	915,060	906,681	8,379	969,983	48.5	99.1
인천	1,940,403	859,506	850,819	8,687	1,080,897	44.3	99.0
광주	1,014,620	469,316	464,718	4,598	545,304	46.3	99.0
대전	1,077,468	532,568	528,041	4,527	544,900	49.4	99.1
울산	790,289	417,200	413,324	3,876	373,089	52.8	99.1
경기	7,918,828	3,695,552	3,655,509	40,043	4,223,276	46.7	98.9
강원	1,160,977	681,633	668,326	13,307	479,344	58.7	98.0
충북	1,126,282	616,053	605,324	10,729	510,229	54.7	98.3
충남	1,503,240	838,462	819,260	19,202	664,778	55.8	97.7
전북	1,429,632	827,387	809,921	17,466	602,245	57.9	97.9
전남	1,513,912	973,820	946,796	27,024	540,092	64.3	97.2
경북	2,087,709	1,284,342	1,251,721	32,621	803,367	61.5	97.5
경남	2,375,265	1,373,815	1,350,243	23,572	1,001,450	57.8	98.3
제주	411,862	277,003	274,352	2,651	134,859	67.3	99.0

■ 구·시·군의 장

(단위 : 명, 표, %)

구분	선거인수(A)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B/A)	유효투표율 (C/B)
		계(B)	유효투표수(C)	무효투표수(D)			
합계	36,652,420	18,847,220	18,521,381	325,839	17,805,200	51.4	98.3
서울	7,983,648	3,979,458	3,925,003	54,455	4,004,190	49.8	98.6
부산	2,845,104	1,379,003	1,350,190	28,813	1,466,101	48.5	97.9
대구	1,885,043	915,313	901,612	13,701	969,730	48.6	98.5
인천	1,940,403	859,878	839,693	20,185	1,080,525	44.3	97.7
광주	1,014,620	469,456	462,903	6,553	545,164	46.3	98.6
대전	1,077,468	532,761	525,837	6,924	544,707	49.4	98.7
울산	790,289	417,328	411,573	5,755	372,961	52.8	98.6
경기	7,918,828	3,696,932	3,651,228	45,704	4,221,896	46.7	98.8
강원	1,160,977	681,797	669,922	11,875	479,180	58.7	98.3
충북	1,126,282	616,208	605,116	11,092	510,074	54.7	98.2
충남	1,503,240	838,731	820,078	18,653	664,509	55.8	97.8
전북	1,429,632	827,554	808,848	18,706	602,078	57.9	97.7
전남	1,513,912	973,980	948,606	25,374	539,932	64.3	97.4
경북	2,087,709	1,284,671	1,254,330	30,341	803,038	61.5	97.6
경남	2,375,265	1,374,150	1,346,442	27,708	1,001,115	57.9	98.0



■ 시·도의원

(단위 : 명, 표, %)

구분	선거인수(A)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B/A)	유효투표율 (C/B)
		계(B)	유효투표수(C)	무효투표수(D)			
합계	36,207,648	18,678,607	18,288,800	389,807	17,529,041	51.6	97.9
서울	7,983,648	3,977,835	3,910,579	67,256	4,005,813	49.8	98.3
부산	2,706,782	1,307,615	1,278,591	29,024	1,399,167	48.3	97.8
대구	1,454,279	710,523	696,678	13,845	743,756	48.9	98.1
인천	1,940,403	859,506	845,498	14,008	1,080,897	44.3	98.4
광주	1,014,620	469,335	460,726	8,609	545,285	46.3	98.2
대전	1,077,468	532,522	524,125	8,397	544,946	49.4	98.4
울산	730,345	386,561	379,299	7,262	343,784	52.9	98.1
경기	7,918,828	3,695,638	3,636,123	59,515	4,223,190	46.7	98.4
강원	1,160,977	681,608	664,978	16,630	479,369	58.7	97.6
충북	1,126,282	616,064	602,920	13,144	510,218	54.7	97.9
충남	1,503,240	838,432	814,362	24,070	664,808	55.8	97.1
전북	1,429,632	827,363	802,168	25,195	602,269	57.9	97.0
전남	1,513,912	973,826	941,810	32,016	540,086	64.3	96.7
경북	1,940,452	1,200,260	1,171,242	29,018	740,192	61.9	97.6
경남	2,294,918	1,324,510	1,287,226	37,284	970,408	57.7	97.2
제주	411,862	277,009	272,475	4,534	134,853	67.3	-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명, 표, %)

구분	선거인수(A)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B/A)	유효투표율 (C/B)
		계(B)	유효투표수(C)	무효투표수(D)			
합계	37,064,282	19,117,594	18,763,078	354,516	17,946,688	51.6	98.1
서울	7,983,648	3,977,664	3,923,671	53,993	4,005,984	49.8	98.6
부산	2,845,104	1,378,567	1,355,610	22,957	1,466,537	48.5	98.3
대구	1,885,043	915,017	902,868	12,149	970,026	48.5	98.7
인천	1,940,403	859,584	847,713	11,871	1,080,819	44.3	98.6
광주	1,014,620	469,336	462,909	6,427	545,284	46.3	98.6
대전	1,077,468	532,553	525,325	7,228	544,915	49.4	98.6
울산	790,289	417,208	411,092	6,116	373,081	52.8	98.5
경기	7,918,828	3,695,521	3,649,260	46,261	4,223,307	46.7	98.7
강원	1,160,977	681,527	662,756	18,771	479,450	58.7	97.2
충북	1,126,282	616,058	600,519	15,539	510,224	54.7	97.5
충남	1,503,240	838,330	814,416	23,914	664,910	55.8	97.1
전북	1,429,632	827,360	802,509	24,851	602,272	57.9	97.0
전남	1,513,912	973,786	941,194	32,592	540,126	64.3	96.7
경북	2,087,709	1,284,347	1,251,679	32,668	803,362	61.5	97.5
경남	2,375,265	1,373,740	1,340,642	33,098	1,001,525	57.8	97.6
제주	411,862	276,996	270,915	6,081	134,866	67.3	97.8



■ 구·시·군의원

(단위 : 명, 표, %)

구분	선거인수(A)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B/A)	유효투표율 (C/B)
		계(B)	유효투표수(C)	무효투표수(D)			
합계	36,581,991	18,810,506	18,316,928	493,578	17,771,485	51.4	97.4
서울	7,983,648	3,979,586	3,897,185	82,401	4,004,062	49.8	97.9
부산	2,845,104	1,378,998	1,341,582	37,416	1,466,106	48.5	97.3
대구	1,850,867	899,067	874,939	24,128	951,800	48.6	97.3
인천	1,940,403	859,869	839,734	20,135	1,080,534	44.3	97.7
광주	1,014,620	469,452	456,089	13,363	545,168	46.3	97.2
대전	1,077,468	532,756	520,266	12,490	544,712	49.4	97.7
울산	754,036	397,124	388,322	8,802	356,912	52.7	97.8
경기	7,918,828	3,696,738	3,604,811	91,927	4,222,090	46.7	97.5
강원	1,160,977	681,748	659,317	22,431	479,229	58.7	96.7
충북	1,126,282	616,212	597,977	18,235	510,070	54.7	97.0
충남	1,503,240	838,530	809,892	28,638	664,710	55.8	96.6
전북	1,429,632	827,533	802,379	25,154	602,099	57.9	97.0
전남	1,513,912	974,010	939,998	34,012	539,902	64.3	96.5
경북	2,087,709	1,284,693	1,247,289	37,404	803,016	61.5	97.1
경남	2,375,265	1,374,190	1,337,148	37,042	1,001,075	57.9	97.3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명, 표, %)

구분	선거인수(A)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B/A)	유효투표율 (C/B)
		계(B)	유효투표수(C)	무효투표수(D)			
합계	35,111,347	17,869,097	17,457,426	411,671	17,242,250	50.9	97.7
서울	7,983,648	3,979,032	3,895,096	83,936	4,004,616	49.8	97.9
부산	2,580,604	1,241,031	1,220,561	20,470	1,339,573	48.1	98.4
대구	1,556,906	745,838	734,194	11,644	811,068	47.9	98.4
인천	1,886,704	824,305	811,075	13,230	1,062,399	43.7	98.4
광주	1,014,620	469,471	461,910	7,561	545,149	46.3	98.4
대전	1,077,468	532,727	524,994	7,733	544,741	49.4	98.5
울산	790,289	417,322	410,226	7,096	372,967	52.8	98.3
경기	7,850,538	3,653,952	3,592,147	61,805	4,196,586	46.5	98.3
강원	1,063,190	612,997	594,470	18,527	450,193	57.7	97.0
충북	1,126,282	616,209	597,807	18,402	510,073	54.7	97.0
충남	1,503,240	838,652	800,587	38,065	664,588	55.8	95.5
전북	1,384,899	793,147	767,795	25,352	591,752	57.3	96.8
전남	1,451,040	926,938	888,529	38,409	524,102	63.9	95.9
경북	1,650,076	975,597	947,308	28,289	674,479	59.1	97.1
경남	2,191,843	1,241,879	1,210,727	31,152	949,964	56.7	97.5



(2) 투표소수

■ 설치장소별

(단위 : 개)

구분	계	학 교	읍면동 등 관공서 사무소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합계	13,106 (813)	6,558 (574)	1,794 (58)	796 (32)	769 (12)	3,189 (137)
서울	2,201 (161)	727 (93)	360 (12)	100 (2)	44 (2)	970 (52)
부산	869 (49)	285 (29)	180 (8)	51 (4)	7 (-)	346 (8)
대구	566 (58)	270 (50)	105 (2)	37 (-)	7 (1)	147 (5)
인천	582 (55)	263 (42)	107 (5)	34 (2)	38 (-)	140 (6)
광주	328 (37)	167 (11)	50 (2)	20 (3)	1 (1)	90 (20)
대전	326 (24)	176 (21)	54 (2)	12 (1)	3 (-)	81 (-)
울산	271 (19)	132 (11)	36 (1)	11 (-)	17 (1)	75 (6)
경기	2,511 (205)	1,374 (169)	264 (11)	167 (5)	162 (1)	544 (19)
강원	660 (20)	352 (12)	65 (3)	72 (2)	98 (-)	73 (3)
충북	464 (11)	253 (10)	65 (-)	26 (-)	24 (-)	96 (1)
충남	723 (36)	465 (26)	63 (3)	27 (2)	60 (3)	108 (2)
전북	653 (16)	380 (13)	98 (1)	37 (1)	28 (1)	110 (-)
전남	881 (19)	528 (12)	100 (1)	79 (2)	85 (2)	89 (2)
경북	947 (48)	594 (33)	99 (2)	57 (5)	39 (-)	158 (8)
경남	896 (45)	522 (34)	137 (5)	54 (1)	41 (-)	142 (5)
제주	228 (10)	70 (8)	11 (-)	12 (2)	115 (-)	20 (-)

주, ()내는 당해 투표구 관할구역을 벗어나 인근 투표구에 설치한 투표소로서 본수에 포함

■ 설치층수별

(단위 : 개)

구분	계	설치층별 투표소수					임차투표소수
		소계	지하	1층	2층	3층이상	
합계	13,106	13,106	108	12,573	343	82	2,846
서울	2,201	2,201	68	2,009	84	40	1,104
부산	869	869	9	813	41	6	326
대구	566	566	-	557	8	1	139
인천	582	582	11	531	33	7	28
광주	328	328	-	328	-	-	89
대전	326	326	1	318	7	-	82
울산	271	271	2	248	20	1	69
경기	2,511	2,511	13	2,386	95	17	444
강원	660	660	-	659	1	-	15
충북	464	464	-	458	5	1	51
충남	723	723	-	722	1	-	74
전북	653	653	-	645	4	4	121
전남	881	881	1	864	15	1	55
경북	947	947	-	947	-	-	123
경남	896	896	3	860	29	4	120
제주	228	228	-	228	-	-	6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단위 : 개, 명)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수										투표도우미	
	계	없음	소계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통로	도움벨	점자유도 블록	장애인 화장실	기타	투표소 수	인원
합계	13,106	4,286	14,571	340	52	6,759	154	1,486	1,168	326	13,090	51,867
서울	2,201	812	2,091	128	8	743	39	200	46	115	2,198	8,969
부산	869	373	993	17	2	389	-	132	67	13	869	2,516
대구	566	87	719	22	5	356	17	132	100	-	566	2,164
인천	582	146	770	28	1	346	3	128	116	2	580	2,398
광주	328	106	356	3	-	146	-	51	40	10	328	1,511
대전	326	-	546	21	5	313	2	73	104	28	326	1,304
울산	271	16	353	10	2	239	11	33	42	-	271	700
경기	2,511	1,037	2,853	84	19	1,227	30	261	168	27	2,511	10,383
강원	660	336	860	2	-	305	9	121	79	8	660	2,717
충북	464	-	588	4	2	443	2	52	85	-	464	1,917
충남	723	238	844	2	-	455	4	45	98	2	716	2,819
전북	653	211	698	6	-	329	14	54	41	43	653	2,682
전남	881	518	947	4	3	316	1	66	29	10	881	3,565
경북	947	190	1,050	4	1	688	14	44	68	41	947	3,825
경남	896	165	644	5	3	295	8	77	64	27	892	3,333
제주	228	51	259	-	1	169	-	17	21	-	228	1,064

(3) 부재자 투표

■ 일반현황

(단위 : 명, 개, %)

구분	선거인수 (A)	투표수 (B)	부재자		부재자		투표율 (D/C)
			신고인수(C)	비율(C/A)	투표수(D)	비율(D/B)	
합계	37,064,282	19,118,177	894,243	2.4	808,214	4.2	90.4
서울	7,983,648	3,977,842	166,145	2.1	151,534	3.8	91.2
부산	2,845,104	1,378,618	61,908	2.2	56,946	4.1	92.0
대구	1,885,043	915,060	43,023	2.3	39,316	4.3	91.4
인천	1,940,403	859,506	41,608	2.1	38,511	4.5	92.6
광주	1,014,620	469,316	27,866	2.7	24,222	5.2	86.9
대전	1,077,468	532,568	25,694	2.4	23,319	4.4	90.8
울산	790,289	417,200	18,596	2.4	16,752	4.0	90.1
경기	7,918,828	3,695,552	163,268	2.1	148,467	4.0	90.9
강원	1,160,977	681,633	34,414	3.0	30,653	4.5	89.1
충북	1,126,282	616,053	30,039	2.7	27,383	4.4	91.2
충남	1,503,240	838,462	40,463	2.7	36,779	4.4	90.9
전북	1,429,632	827,387	46,075	3.2	40,931	4.9	88.8
전남	1,513,912	973,820	57,673	3.8	50,089	5.1	86.8
경북	2,087,709	1,284,342	59,626	2.9	52,975	4.1	88.8
경남	2,375,265	1,373,815	66,625	2.8	60,158	4.4	90.3
제주	411,862	277,003	11,220	2.7	10,179	3.7	90.7



■ 설치장소별

(단위 : 개)

구분	계	구시군 위원회 설치수							기관·시설 설치수			
		소계	위원회 사무실	구시군청	읍면동 사무소	공공기관 단체의시설	대학교	기타	소계	병원	교도소 구치소	요양소 수용소
합계	509 (302)	409 (151)	39 (-)	102 (-)	74 (63)	159 (66)	9 (8)	26 (14)	100 (-)	16 (-)	49 (-)	35 (-)
서울	38 (12)	33 (6)	2	13	5 (3)	10	3 (3)	-	5	2	3	-
부산	20 (2)	17 (1)	1	12	-	1	1 (1)	2	3	-	2	1
대구	12 (2)	9 (1)	-	6	-	2 (1)	-	1	3	-	2	1
인천	21 (16)	18 (8)	3	6	8 (8)	1	-	-	3	-	1	2
광주	8 (2)	6 (1)	1	3	-	1	-	1 (1)	2	1	1	-
대전	11 (4)	7 (2)	-	4	-	2 (1)	1 (1)	-	4	1	1	2
울산	6 (-)	5	-	4	-	-	-	1	1	-	1	-
경기	112 (108)	101 (54)	-	33	25 (25)	41 (28)	-	2 (1)	11	1	7	3
강원	73 (90)	64 (45)	3	2	13 (11)	37 (25)	-	9 (9)	9	1	5	3
충북	22 (8)	17 (4)	2	7	2 (2)	4 (1)	1 (1)	1	5	-	2	3
충남	35 (12)	22 (6)	4	1	3 (2)	12 (3)	-	2 (1)	13	1	5	7
전북	24 (2)	17 (1)	8	1	-	4	1	3 (1)	7	2	4	1
전남	40 (12)	27 (6)	4	3	4 (3)	15 (3)	-	1	13	3	4	6
경북	43 (12)	32 (6)	2	4	4 (2)	18 (2)	2 (2)	2	11	1	6	4
경남	38 (18)	29 (9)	8	3	9 (6)	8 (2)	-	1 (1)	9	3	4	2
제주	6 (2)	5 (1)	1	-	1 (1)	3	-	-	1	-	1	-

주) 투표관리관 설치수는 ()로 내서하고 본수에 포함


개표
(1) 정당별득표**■ 시·도지사**

(단위 : 표)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5,106,984	10,418,021	1,709,452	1,099,592	345,295	4,790	7,188	-	166,284
서울	1,077,890	2,409,760	304,565	117,421	14,111	4,790	4,481	-	13,808
부산	329,470	895,214	-	141,061	-	-	-	-	-
대구	191,131	636,057	-	35,497	8,764	-	-	-	35,232
인천	200,650	526,932	44,339	78,898	-	-	-	-	-
광주	157,756	18,461	239,884	48,617	-	-	-	-	-
대전	217,273	231,489	6,442	14,899	55,231	-	2,707	-	-
울산	47,579	261,361	-	104,384	-	-	-	-	-
경기	1,124,317	2,181,677	148,409	201,106	-	-	-	-	-
강원	148,302	471,613	29,028	-	19,383	-	-	-	-
충북	185,426	361,157	-	39,095	19,646	-	-	-	-
충남	178,169	379,420	-	52,417	209,254	-	-	-	-
전북	389,436	62,922	295,891	61,672	-	-	-	-	-
전남	181,756	55,444	640,894	68,702	-	-	-	-	-
경북	290,358	961,363	-	-	-	-	-	-	-
경남	343,137	852,377	-	135,823	18,906	-	-	-	-
제주	44,334	112,774	-	-	-	-	-	-	117,244



■ 구·시·군의 장

(단위 : 표)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4,277,001	9,396,305	1,530,908	648,353	403,464	482	4,176	-	2,250,127
서울	975,037	2,286,077	337,950	92,492	2,727	482	-	-	219,673
부산	311,024	884,686	2,648	19,287	-	-	-	-	132,545
대구	84,158	673,965	-	15,425	-	-	-	-	128,064
인천	181,147	483,513	67,639	83,050	-	-	-	-	24,344
광주	138,445	6,257	218,063	42,132	-	-	-	-	58,006
대전	142,788	254,124	-	7,572	90,630	-	-	-	30,723
울산	50,325	226,512	-	70,604	-	-	-	-	64,132
경기	942,320	2,060,766	177,049	137,600	27,219	-	-	-	306,274
강원	188,466	347,567	2,945	13,118	-	-	-	-	117,826
충북	221,313	307,553	-	-	11,242	-	-	-	65,008
충남	190,690	320,872	744	2,739	268,309	-	-	-	36,724
전북	314,741	8,663	256,964	43,024	-	-	2,659	-	182,797
전남	264,127	11,839	466,143	21,860	-	-	1,517	-	183,120
경북	71,425	752,198	-	23,695	-	-	-	-	407,012
경남	200,995	771,713	763	75,755	3,337	-	-	-	293,879

■ 시·도의원

(단위 : 표)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4,329,794	9,291,686	1,602,034	507,157	408,610	-	-	6,039	2,143,480
서울	1,084,610	2,284,441	338,629	38,203	1,914	-	-	1,293	161,489
부산	207,942	849,930	-	65,921	-	-	-	-	154,798
대구	41,787	523,602	-	-	-	-	-	1,802	129,487
인천	216,797	480,053	52,270	61,946	996	-	-	-	33,436
광주	157,319	3,740	231,638	28,099	-	-	-	-	39,930
대전	148,108	243,375	1,842	4,797	112,942	-	-	-	13,061
울산	48,435	197,163	-	76,347	-	-	-	617	56,737
경기	1,022,497	2,141,824	150,115	75,537	21,678	-	-	-	224,472
강원	180,582	355,950	-	6,633	-	-	-	-	121,813
충북	192,052	317,065	814	3,997	15,818	-	-	2,327	70,847
충남	168,076	321,477	6,844	751	255,262	-	-	-	61,952
전북	346,742	7,054	313,289	30,223	-	-	-	-	104,860
전남	241,552	736	493,045	16,549	-	-	-	-	189,928
경북	70,209	714,023	-	8,340	-	-	-	-	378,670
경남	121,863	751,267	-	76,598	-	-	-	-	337,498
제주	81,223	99,986	13,548	13,216	-	-	-	-	64,502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단위 : 표)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합계	4,056,367	10,086,354	1,863,239	2,263,051	436,774	7,583	5,112	44,598
서울	837,329	2,243,473	409,801	391,209	19,522	7,583	5,112	9,642
부산	266,735	891,119	27,159	170,597	-	-	-	-
대구	113,543	700,790	-	80,755	7,780	-	-	-
인천	175,031	490,415	58,864	116,147	-	-	-	7,256
광주	131,433	21,907	228,531	76,569	-	-	-	4,469
대전	139,436	243,789	-	46,074	96,026	-	-	-
울산	60,282	240,638	-	110,172	-	-	-	-
경기	814,896	2,149,158	235,954	396,113	29,908	-	-	23,231
강원	165,785	412,791	-	84,180	-	-	-	-
충북	176,206	325,155	-	74,303	24,855	-	-	-
충남	165,462	336,622	-	70,469	241,863	-	-	-
전북	318,578	61,787	302,373	119,771	-	-	-	-
전남	215,129	53,116	553,336	119,613	-	-	-	-
경북	161,452	937,104	25,431	110,872	16,820	-	-	-
경남	242,988	855,777	-	241,877	-	-	-	-
제주	72,082	122,713	21,790	54,330	-	-	-	-

■ 구·시·군의원

(단위 : 표)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합계	3,544,024	8,317,356	1,575,921	1,072,826	390,755	455	2,708	2,189	3,410,937
서울	837,298	2,089,026	417,528	174,215	12,618	108	-	-	366,638
부산	231,374	784,721	835	75,123	-	-	-	-	249,529
대구	83,175	585,368	-	22,988	-	-	-	-	183,408
인천	173,365	456,898	59,846	73,382	3,195	-	-	-	73,048
광주	135,352	-	199,494	57,357	-	-	772	667	62,447
대전	124,906	215,067	8,225	15,058	114,932	-	-	-	42,078
울산	34,578	193,284	-	77,229	-	-	-	-	83,231
경기	791,525	1,908,203	187,866	294,269	20,600	160	15	-	402,173
강원	131,747	289,316	2,335	20,193	-	-	-	545	215,181
충북	152,035	266,665	2,382	31,372	8,602	-	-	977	135,944
충남	140,858	262,883	4,786	22,636	230,389	-	-	-	148,340
전북	321,220	2,332	255,652	41,642	-	-	677	-	180,856
전남	200,097	1,776	436,572	26,664	419	-	1,244	-	273,226
경북	64,698	592,838	-	29,918	-	-	-	-	559,835
경남	121,796	668,979	400	110,780	-	187	-	-	435,003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단위 : 표)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합계	4,196,455	9,422,971	1,792,908	1,655,305	376,675	-	-	-
서울	895,428	2,177,809	455,781	359,291	-	-	-	-
부산	262,635	824,306	-	133,620	-	-	-	-
대구	113,959	590,681	-	28,564	990	-	-	-
인천	191,099	487,167	48,422	84,387	-	-	-	-
광주	136,410	-	241,595	83,905	-	-	-	-
대전	145,824	250,814	-	30,112	98,244	-	-	-
울산	61,918	249,199	-	99,109	-	-	-	-
경기	926,754	2,225,037	141,983	295,116	3,257	-	-	-
강원	173,048	385,020	3,004	33,398	-	-	-	-
충북	198,827	343,717	-	41,789	13,474	-	-	-
충남	175,422	336,397	-	25,385	257,058	-	-	-
전북	312,452	35,688	316,358	103,297	-	-	-	-
전남	237,368	5,640	571,813	73,708	-	-	-	-
경북	125,626	720,619	13,952	84,091	3,020	-	-	-
경남	239,685	790,877	-	179,533	632	-	-	-

(2) 개표소 설치장소

(단위 : 개)

구분	계	설치개수			설치장소별 개표소수				
		개표소	제1개표소	제2개표소	구시군청 회의실	체육관 학교강당	시군 구민회관	민방위 교육장	기타
합계	259	241	9	9	13	221	16	-	9
서울	33	17	8	8	3	27	1	-	2
부산	16	16	-	-	-	16	-	-	-
대구	8	8	-	-	1	6	-	-	1
인천	11	9	1	1	1	9	-	-	1
광주	5	5	-	-	-	4	-	-	1
대전	5	5	-	-	-	4	-	-	1
울산	5	5	-	-	-	5	-	-	-
경기	44	44	-	-	1	37	5	-	1
강원	18	18	-	-	-	17	-	-	1
충북	13	13	-	-	2	11	-	-	-
충남	16	16	-	-	-	16	-	-	-
전북	15	15	-	-	-	11	4	-	-
전남	22	22	-	-	-	18	4	-	-
경북	24	24	-	-	4	19	1	-	-
경남	20	20	-	-	1	17	1	-	1
제주	4	4	-	-	-	4	-	-	-



무효투표 분석

(1) 무효투표관련규정(「공직선거법」 제179조)

■ 일반투표

- 1호.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호.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호. 2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4호.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호.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6호.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7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8호. 선거인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
- 9호. 도장으로 표를 한 것
- 10호. 기타(일반투표)

■ 부재자 투표

- 11호. 부재자투표의 경우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12호. 부재자투표의 경우 회송용봉투가 봉합되지 아니한 것
- 13호.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
- 14호. 부재자투표소투표자의 회송용봉투에 본인 여부의 확인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15호. 기타(부재자투표)

(2) 무효투표예시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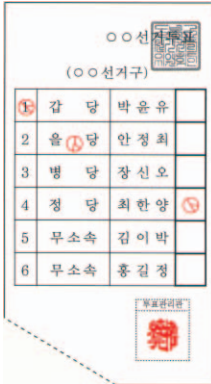
투표관리관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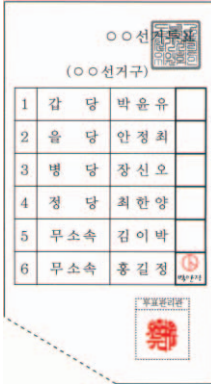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공명선거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선거투표
(○○선거구)

1	갑	당	박윤유	
2	을	당	안정최	
3	병	당	장신오	
4	정	당	최한양	
5	무소속		김이박	
6	무소속		홍길정	

투표관리관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



(3) 무효투표 사유별 분석

(단위: 명, 표)

구 분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인수	37,064,282	36,652,420	36,207,648	37,064,282	36,581,991	35,111,347
투 표 수(A)	19,118,177	18,847,220	18,678,607	19,117,594	18,810,506	17,869,097
유효투표수(B)	18,857,606	18,521,381	18,288,800	18,763,078	18,316,928	17,457,426
무효투표수(C) (C/A, %)	260,571 (1.4)	325,839 (1.7)	389,807 (2.1)	354,516 (1.9)	493,578 (2.6)	411,671 (2.3)
일반투표 계	244,522	307,004	369,859	337,014	473,291	392,776
1호	48	62	107	135	131	80
2호	171,488	184,326	259,401	253,545	220,855	283,730
3호	49,953	70,463	66,854	56,367	211,986	73,466
4호	13,065	19,312	17,969	14,892	18,666	20,306
5호	1,664	2,276	2,145	2,178	2,713	2,564
6호	842	1,453	1,102	963	1,793	1,209
7호	1,229	1,891	1,492	1,452	2,359	1,604
8호	192	222	188	314	363	244
9호	1,405	2,531	1,556	1,499	2,809	2,669
10호	4,636	24,468	19,045	5,669	11,616	6,904
부재자투표 계	16,049	18,835	19,948	17,502	20,287	18,895
11호	78	126	91	58	77	66
12호	506	531	692	480	752	561
13호	2,794	3,135	3,334	3,046	3,481	3,281
14호	2,216	2,434	2,546	2,358	2,839	2,196
15호	10,455	12,609	13,285	11,560	13,138	12,791



제 4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총람

PAIRIT 3

● ● ● 선거별 · 후보자별 득표

제1절 | 당선인 명부(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제2절 | 시·도지사 선거

제3절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제4절 | 시·도의원 선거(지역구·비례대표)

제5절 |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

제6절 | 구·시·군의원 선거(지역구·비례대표)

제1절

당선인명부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 시도지사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서울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1961년(45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16대 국회의원 역임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 (최고위원) 역임	2,409,760 (61.1)
부산	한나라당	 허남식(許南植) 1949년(57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부산광역시장	895,214 (65.6)
대구	한나라당	 김범일(金範鎔) 1950년(55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사) 졸업	산림청장 대구광역시정무부시장	636,057 (70.2)
인천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 1946년(60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제15대 국회의원 동양그룹종합조정실 사장	526,932 (61.9)
광주	민주당	 박광태(朴光泰) 1943년(62세)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광주광역시장 제14,15,16대 국회의원	239,884 (51.6)
대전	한나라당	 박성효(朴城孝) 1955년(51세)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231,489 (43.8)
울산	한나라당	 박맹우(朴孟雨) 1950년(55세)	동의대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경상남도 함안군수	261,361 (63.2)
경기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1951년(54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15,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선거)	2,181,677 (59.7)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강원	한나라당	 김진선(金振鎭) 1946년(59세)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강원도지사	471,613 (70.6)
충북	한나라당	 정우택(鄭宇澤) 1953년(53세)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3년 졸업 (경제학박사)	제15, 16대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	361,157 (59.7)
충남	한나라당	 이완구(李完九) 1950년(55세)	미시건 주립대학교 대학원형사정책학과 2년졸업(이학석사)	충남북경찰청장 제15, 16대 국회의원	379,420 (46.3)
전북	열린우리당	 김완주(金完柱) 1946년(60세)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행정학과 졸업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대표회장 전주시장(재선)	389,436 (48.1)
전남	민주당	 박준영(朴峻瑩) 1946년(59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정치학 박사)	중앙일보 뉴욕특파원 김대중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	640,894 (67.7)
경북	한나라당	 김관용(金寬容) 1942년(63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민선1,2,3기 구미시장	961,363 (76.8)
경남	한나라당	 김태호(金台鎬) 1962년(43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거창군수 경상남도지사	852,377 (63.1)
제주	무소속	 김태환(金泰煥) 1942년(64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117,244 (42.7)

■ 구시군장

· 서울시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종로구	한나라당	 김충용(金忠勇) 1939년(67세)	경희대학교 약학과 4년 졸업	종로구약사회장 종로구청장	36,958 (53.5)
중구	한나라당	 정동일(鄭東一) 1954년(51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3학기 재학	제3대 중구의회 의원 제5·6대 서울시의회 의원	28,897 (53.0)
용산구	한나라당	 박장규(朴長圭) 1935년(71세)	명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민선 2,3대 용산구청장 용산구의회 의장	54,325 (57.4)
성동구	한나라당	 이호조(李浩組) 1945년(61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성동구청장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72,591 (55.7)
광진구	한나라당	 정승학(鄭承鶴) 1953년(52세)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3기 재학중	후지제록스호남(주)대표이사 사장(전) (사)한국청소년운동연합 부총재	68,932 (49.4)
동대문구	한나라당	 홍사립(洪思立) 1945년(61세)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現 동대문구청장 前 한나라당 동대문을 지구당 사무국장	95,634 (63.1)
중랑구	한나라당	 문병권(文秉權) 1950년(56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중랑구청장 영등포구청장권한대행	98,111 (63.9)
성북구	한나라당	 서찬교(徐贊敎) 1943년(63세)	국민대학교 대학원졸업	現 성북구청장	107,039 (59.0)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강북구	한나라당	 김현풍(金顯豊) 1941년(64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졸업 (의학박사학위취득)	민선3기강북구청장 (사)강북문화원장	72,832 (55.1)
도봉구	한나라당	 최선길(崔仙吉) 1939년(66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민선노원구청장 (주)광동제약사장	82,996 (56.8)
노원구	한나라당	 이노근(李老根) 1954년(52세)	경기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수료	서울시 시정개혁단장(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전)	121,683 (51.3)
은평구	한나라당	 노재동(盧載東) 1941년(64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은평구청장(현) 서울시 4대의회 의원(전)	100,465 (58.5)
서대문구	한나라당	 현동훈(玄東勳) 1959년(47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대문구청장 변호사	82,962 (60.8)
마포구	한나라당	 신영섭(申英燮) 1955년(50세)	미국 뉴욕주립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고려대 대학원 초빙교수	72,538 (47.5)
양천구	한나라당	 이훈구(李勳九) 1949년(57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1학년 재학중	양천구의회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장	85,701 (45.9)
강서구	한나라당	 김도현(金道鉉) 1943년(63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4학년 중퇴	문화체육부 차관 한나라당 강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110,008 (52.7)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구로구	한나라당	 양대웅(梁大雄) 1942년(64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現, 도시 과학)대학원 졸업	구로구청장 서울시 환경기획관	105,469 (65.1)
금천구	한나라당	 한인수(韓仁洙) 1946년(60세)	연세대 경제대학원 1학기 재학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의원(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56,709 (58.6)
영등포구	한나라당	 김형수(金亨洙) 1947년(58세)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 (약학석사)	영등포구 약사회장 영등포구청장	108,157 (67.3)
동작구	한나라당	 김우중(金禹仲) 1942년(63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졸업	민선제2,3대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위원장	93,054 (56.6)
관악구	한나라당	 김효겸(金孝謙) 1953년(52세)	경북대학 건축과 1년재학	관악구의회의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92,447 (44.4)
서초구	한나라당	 박성중(朴成重) 1958년(47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서초구 부구청장 서울시 공보관	121,297 (74.6)
강남구	한나라당	 맹정주(孟廷柱) 1947년(58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제기획원 예산총괄심외관 (행정고시 10회 합격) 국무총리실 경제행정 조정관	167,373 (78.1)
송파구	한나라당	 김영순(金榮順) 1949년(56세)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정무2차관 전문직여성연맹회장 (BPW)	132,904 (56.4)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강동구	한나라당	 신동우(申東雨) 1953년(52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2년 졸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강동구청장	123,320 (71.2)

• 부산광역시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중구	무소속	 이인준(李仁俊) 1950년(56세)	미기재	부산광역시 초대, 2대 시의원 민선2기, 3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1,713 (52.3)
서구	한나라당	 박극제(朴克濟) 1951년(54세)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1학기 재학중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장 부산광역시 3,4대의원	32,157 (59.5)
동구	한나라당	 정현옥(鄭顯玉) 1941년(64세)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부산광역시의회 초대, 2대시의원 역임 부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현)	39,754 (1인후보)
영도구	한나라당	 어윤태(魚允泰) 1946년(60세)	고려대학교졸업	LG그룹 고문 LG스포츠 대표이사 사장	33,740 (54.3)
부산진구	한나라당	 하계열(河桂烈) 1945년(60세)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청와대비서실 행정관 부산진구청장	109,253 (70.3)
동래구	한나라당	 최찬기(崔贊起) 1952년(54세)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 대학원 재학중 (국제학박사 과정)	(재)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 각막은행장 부산 YMCA 이사장	54,322 (51.1)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남구	한나라당	 이종철(李鍾喆) 1944년(62세)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부산광역시의회 보시환경위원장 역임 대연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78,173 (68.0)
북구	한나라당	 이성식(李成植) 1949년(56세)	부산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77,664 (67.2)
해운대구	한나라당	 배덕광(裴德光) 1948년(57세)	경성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101,390 (70.8)
기장군	한나라당	 최현돌(崔賢亨) 1949년(56세)	부경대학교 행정대학원 1년 재학중	부산광역시 시의원 역임 기장군수	25,631 (72.9)
사하구	한나라당	 조정화(趙政和) 1964년(41세)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전략기획 보좌역 엄호성 의원 국회입법 보좌관	82,878 (65.8)
금정구	한나라당	 고봉복(高奉福) 1946년(60세)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시의회의의원(3선) 민정당 금정지구당 사무국장	52,303 (51.1)
강서구	한나라당	 강인길(姜仁吉) 1959년(47세)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3학기 재학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13,887 (52.8)
연제구	한나라당	 이위준(李渭俊) 1943년(63세)	동아대학교 원예과 졸업	제4대 연제구의회 의장(전반기)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60,523 (72.7)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수영구	한나라당	 박현욱(朴煥煜) 1955년(51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 경영 지역학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동아대학교 ROTC 총동문회 부회장	50,559 (76.0)
사상구	한나라당	 윤덕진(尹德辰) 1937년(68세)	부산고등학교 졸업	한나라당 운영위원 사상구청장	61,752 (63.8)

• 대구광역시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중구	한나라당	 윤순영(尹順永) 1952년(53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 행정석사 졸업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민족시인이상화고택보존운동 본부 상임공동대표	22,452 (64.6)
동구	한나라당	 이재만(李在晩) 1959년(47세)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	한나라당 시당 운영부위원장 낙동 경제포럼 선임 연구원	102,181 (80.4)
서구	한나라당	 윤진(尹震) 1946년(59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서구의회 초대, 2대의장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위원장	51,814 (56.9)
남구	한나라당	 임병현(林炳憲) 1953년(52세)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대구광역시 남구청 부구청장(3년)	50,622 (73.3)
북구	한나라당	 이종화(李宗和) 1949년(56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대구광역시 공보관 대구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127,142 (80.8)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수성구	한나라당	 김형렬(金亨烈) 1959년(46세)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석사)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123,943 (80.0)
달서구	한나라당	 광대훈(郭大勳) 1955년(50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대구광역시 행정관리국장 달서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164,031 (80.1)
달성군	한나라당	 이종진(李鍾鎭) 1950년(56세)	대구농림고등학교 졸업	달성군 부군수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장	31,780 (50.6)

· 인천광역시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중구	한나라당	 박승숙(朴承淑) 1937년(69세)	인천여자고등학교 졸업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대한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시지회장	17,745 (51.9)
동구	한나라당	 이화용(李和容) 1951년(55세)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 3년중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한나라당 윤리위원	17,031 (56.3)
남구	한나라당	 이영수(李榮洙) 1950년(55세)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국일운수 대표사원 역임 정당인	75,681 (54.6)
연수구	한나라당	 남무교(南武交) 1941년(64세)	성광상업고등학교 (현 선인고등학교) 졸업	인천광역시 제2,3,4대 교육위원 인천광역시 지방행정 동우회 부회장	51,344 (58.9)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남동구	한나라당	 윤태진(尹泰進) 1948년(58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제2,3대 인천광역시의원 남동구청장(재임)	71,146 (58.3)
부평구	한나라당	 박윤배(朴允培) 1952년(54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부평구청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장	107,038 (59.6)
계양구	한나라당	 이익진(李翼振) 1940년(65세)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인천광역시의원 계양구청장	54,182 (60.1)
서구	한나라당	 이학재(李鶴宰) 1964년(41세)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서구청장 청년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회장	71,346 (63.1)
강화군	무소속	 안덕수(安德壽) 1946년(60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 2년수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농림부 차관보	18,601 (53.8)
옹진군	한나라당	 조윤길(趙潤吉) 1949년(56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재학	옹진군 기획 감사실장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국장	4,359 (44.1)

• 광주광역시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동구	민주당	 유태명(劉泰明) 1943년(62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자치행정학과 석사 졸업	새천년민주당 동구 부위원장 現)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22,738 (53.5)
서구	민주당	 전주언(全周彦) 1948년(58세)	전남대학교행정 대학원 졸	동구청 부구청장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	43,831 (43.2)
남구	민주당	 황일봉(黃一奉) 1957년(48세)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박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38,951 (51.0)
북구	민주당	 송광운(宋光運) 1953년(52세)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전라남도행정부지사 광산구청장	77,083 (52.8)
광산구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1957년(48세)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박사)	제16대 국회의원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	35,460 (36.8)

• 대전광역시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동구	한나라당	 이장우(李莊雨) 1965년(41세)	대전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국회 정책보좌관 한나라당대전시당 대변인	35,853 (41.5)
중구	한나라당	 이은권(李殷權) 1958년(47세)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강창희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한나라당 중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45,776 (46.0)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서구	한나라당	 가기산(賈基山) 1942년(64세)	대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98,878 (54.8)
유성구	한나라당	 신동규(陳東圭) 1958년(48세)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졸업	대덕대학 교수 유성구청장	44,145 (53.0)
대덕구	한나라당	 정용기(鄭容基) 1962년(44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한나라당 지방자치 지도위원 2002년한나라당이회창 대통령후보보좌역	29,472 (38.8)

• 울산광역시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중구	한나라당	 조용수(趙鏞洙) 1953년(53세)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졸업 (행정학석사)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내무위원장 중구청장	65,492 (75.3)
남구	한나라당	 김두겸(金斗謙) 1958년(48세)	경남대학교 화학과 졸업	제3대 남구의회의장 울산시의회내무위원장역임	78,218 (63.8)
동구	무소속	 정천석(鄭千錫) 1952년(54세)	경남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남도의원 전국유휴유협회 부회장	31,237 (41.7)
북구	한나라당	 강석구(姜錫求) 1960년(45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국제통상정책 전공, 경제학석사)	울산광역시의회 내무위원장 (사)울산중소기업협회 부회장	27,560 (50.2)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울주군	한나라당	 엄창섭(嚴昌燮) 1940년(65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법학사)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울주군수	37,742 (52.3)

· 경기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수원시	한나라당	 김용서(金容西) 1941년(65세)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2년 재학중	수원시의회의장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집행위원	226,023 (65.3)
성남시	한나라당	 이대엽(李大燁) 1935년(71세)	해인대학 법률학과 (현 경남대학교) 졸업	제11,12,13대 국회의원 민선3기 성남시장	177,531 (54.0)
의정부시	한나라당	 김문원(金文元) 1941년(65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의정부 시장 11대 · 13대 국회의원	82,886 (64.4)
안양시	한나라당	 신중대(慎重大) 1947년(59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행정고시 합격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141,888 (62.2)
부천시	한나라당	 홍건표(洪建杓) 1945년(61세)	인천고등학교 졸업	제18대 부천시장 부천시 공무원 근무(32년)	161,219 (59.1)
광명시	한나라당	 이효선(李孝善) 1955년(51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2년 수료	경기도의회 광명역 활성화 대책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장	56,713 (50.8)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평택시	한나라당	 송명호(宋明鎬) 1955년(50세)	미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졸업 (사회복지학석사)	평택시장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법정대학행정학과)	73,844 (53.7)
양주시	무소속	 임중빈(任忠彬) 1944년(62세)	건국대학교 행정학과(2년) 중퇴	양주 부군수 양주시장	23,154 (38.5)
동두천시	한나라당	 최용수(崔龍秀) 1945년(60세)	청량종합고등학교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졸업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	16,511 (50.7)
안산시	한나라당	 박주원(朴柱源) 1958년(47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99,999 (51.2)
고양시	한나라당	 강현석(姜賢錫) 1952년(53세)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한나라당 기획조정국장 고양시장	195,714 (66.2)
과천시	한나라당	 여인국(余仁國) 1955년(50세)	미국 미시건대학 도시계획대학원 졸업	과천시장 경기도 환경국장	17,753 (69.8)
의왕시	한나라당	 이형구(李亨九) 1945년(60세)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축산과 4년 졸업	오산, 광주시 부시장 의왕시장	34,087 (64.2)
구리시	열린우리당	 박영순(朴榮舜) 1948년(58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구리시장(관선7대, 민선2대)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 보전회 이사	29,572 (43.4)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남양주시	한나라당	 이석우(李錫雨) 1948년(58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학 졸업 (행정학 석사)	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 남양주시 부시장	80,715 (55.0)
오산시	한나라당	 이기하(李奇夏) 1965년(41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중 (교육학 박사과정)	한나라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5,284 (33.7)
화성시	한나라당	 최영근(崔永根) 1959년(46세)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NGO정책 3학기 휴학	경기도청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장	65,386 (66.3)
시흥시	한나라당	 이연수(李蓮洙) 1954년(52세)	경기대 행정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시흥미래발전포럼 대표 시흥·안산 경찰서장	53,786 (49.7)
군포시	한나라당	 노재영(盧載榮) 1951년(55세)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군포시의회의장(2대) 경기도의회의원 (보사환경위원장)	50,696 (49.2)
하남시	한나라당	 김황식(金晁植) 1950년(55세)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제16대 국회의원 증권감독원 근무	21,140 (40.8)
파주시	한나라당	 유화선(柳和善) 1948년(58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한국경제(와우) TV대표이사 사장 파주시장	68,828 (71.3)
여주군	한나라당	 이기수(李起洙) 1949년(56세)	한경대학교 전자 정부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고양시부시장	20,928 (51.6)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이천시	한나라당	 조병돈(趙炳敦) 1949년(57세)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이천시 부시장 경기도 건설본부장	36,249 (55.2)
용인시	한나라당	 서정석(徐挺碩) 1949년(56세)	산토토마스대학교 대학원 졸업 (정치학박사)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장	132,129 (53.5)
안성시	한나라당	 이동희(李東熙) 1944년(62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년 중퇴	2004년 제7기 농림부 중앙농정 심의위원회 위원 2004년 농민신문발표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영향을 끼친 100인에 선정	34,332 (54.2)
김포시	한나라당	 강경구(姜暎求) 1947년(59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년 중퇴	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34,988 (45.9)
광주시	한나라당	 조억동(趙億東) 1956년(49세)	광주종합고등학교 졸업(현 광주중앙 고등학교)	제3·4대 광주시 의회의원(4대전반기의장) 경기도축우연합회장	41,098 (57.0)
포천시	한나라당	 박윤국(朴允國) 1956년(50세)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졸업	경기도 유럽통상촉진단 대표의원 초대 포천시장	32,454 (55.2)
연천군	한나라당	 김규배(金奎培) 1947년(58세)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 졸업	제3,4대 경기도의회 의원 민선3기 연천군수	11,417 (50.8)
양평군	무소속	 한택수(韓澤洙) 1947년(59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졸업 (도시행정학석사)	경기도청 기획행정실장 민선3기 양평군수	21,044 (50.3)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가평군	무소속	 양재수(梁在秀) 1940년(66세)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법학과 졸업	경기도의회의원 가평군수	10,813 (37.2)

· 강원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춘천시	한나라당	 이광준(李光濬) 1955년(50세)	미국 위스컨신 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2년)	춘천시 부시장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43,369 (42.2)
원주시	한나라당	 김기열(金起烈) 1942년(63세)	원주대학(현 상지 대학교)수료	평창군수 원주시장	64,344 (61.1)
강릉시	한나라당	 최명희(崔明熙) 1955년(51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강릉시 부시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56,982 (62.6)
동해시	한나라당	 김학기(金鶴基) 1947년(58세)	강원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5학기 재학	행정자치부 강원도지역 협력관 행정자치부 운영지원팀 부이사관	16,769 (39.4)
삼척시	한나라당	 김대수(金大壽) 1941년(64세)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주) 동우제약 공장장 삼척대학교 총장	12,535 (32.2)
태백시	한나라당	 박종기(朴宗基) 1948년(58세)	북평고등학교 졸업	태백시 부시장 강원도청 의회 총무담당관	12,515 (46.0)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정선군	한나라당	 유창식(劉承植) 1953년(52세)	정선농업고등학교 졸업(현 정선정보 공업고등학교)	정선군남면장 강원도의회의원	12,963 (52.9)
속초시	한나라당	 채용생(蔡龍生) 1953년(52세)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속초시부시장 강원도청 관광문화국장	21,301 (63.4)
고성군	한나라당	 함형구(咸炯九) 1948년(58세)	원주대학 행정학과 4년 졸업	강원도 내무국장 춘천시 부시장	8,903 (48.4)
양양군	한나라당	 이진호(李鎭浩) 1946년(59세)	동국대 농림경제학과 졸업	농촌지도직공무원(20년) 양양군수	9,861 (59.3)
인제군	한나라당	 박삼래(朴參來) 1951년(55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학년 재학	인제군의회의장 인제군생활체육협의회회장	9,713 (54.4)
홍천군	한나라당	 노승철(盧承喆) 1943년(62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	홍천군 부군수 홍천군수	18,503 (56.0)
횡성군	한나라당	 한규호(韓奎鎬) 1951년(55세)	강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1학기 재학)	횡성군부군수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10,318 (43.6)
영월군	한나라당	 박선규(朴善圭) 1957년(49세)	영월고등학교 졸업	주천면장 영월읍장	11,170 (50.1)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평창군	한나라당	 권혁승(權赫昇) 1952년(54세)	진부고등학교 졸업	평창군수 취임(민선2기) 평창군수 취임(민선3기)	10,657 (46.4)
화천군	한나라당	 정갑철(鄭甲澈) 1945년(61세)	성동공고 3년 중퇴	화천군수 화천중실고 동문회장	8,868 (69.4)
양구군	한나라당	 전창범(全昌範) 1953년(53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양구군 부군수	6,068 (51.4)
철원군	한나라당	 정호조(鄭暲祚) 1947년(58세)	신철원종합 고등학교 졸업	전국쌀농업대책위원회 위원 동송농협장(2선)	12,728 (51.9)

• 충청북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청주시	한나라당	 남상우(南相宇) 1945년(61세)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도시및 지역 계획과 졸업(석사)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123,717 (59.4)
충주시	한나라당	 한창희(韓昌熙) 1954년(52세)	고려대학교 정책 과학대학원 졸업 (정치학석사)	한나라당 충주시지구당 위원장 충주시장	49,294 (60.2)
제천시	한나라당	 엄태영(嚴泰永) 1958년(48세)	세명대학교 경영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학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 협력회 회장 제천시장	34,014 (57.4)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단양군	한나라당	 김동성(金東成) 1948년(57세)	제천고등학교 졸업	단양군 내무과장 단양군 관광과장	6,936 (36.2)
청원군	한나라당	 김재욱(金在彥) 1948년(58세)	청주기계공업 고등학교 졸업	청원군 부군수 충청북도청 자치행정국장	19,226 (36.9)
영동군	열린우리당	 정구복(鄭求福) 1957년(49세)	대전 개방대학교 (현.한밭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영동군의회 의원 영동군의회 의장	15,612 (54.0)
보은군	열린우리당	 이향래(李香來) 1950년(55세)	충북과학대학 졸업	충청북도의원 마로농협조합장	10,868 (48.6)
옥천군	열린우리당	 한용택(韓龍澤) 1949년(57세)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장(전)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후원회장(현)	13,903 (45.6)
음성군	무소속	 박수광(朴秀光) 1946년(59세)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1년 중퇴	음성군수(현) JCI Korea 충북지구 회장	16,716 (44.3)
진천군	열린우리당	 유영훈(劉永勳) 1955년(51세)	진천중학교 졸업	충북도의회제5대부위원장(전) 진천군푸드뱅크대표(현)	13,152 (47.7)
괴산군	무소속	 임각수(林各洙) 1947년(58세)	국민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사)	대통령비서실 총무관리과장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장	14,375 (61.9)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중평군	무소속	 유명호(柳明昊) 1942년(64세)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제5대충북도의회의원 중평군수	8,317 (58.3)

· 충청남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천안시	한나라당	 성무용(成武鏞) 1943년(62세)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상학과 4년 졸업	제14대 국회의원 천안시장	101,021 (63.0)
공주시	국민중심당	 이준원(李峻遠) 1965년(41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	계룡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28,348 (47.4)
보령시	한나라당	 신준희(申俊熙) 1938년(68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한나라당보령시지구당위원장 보령시장(민선2기)	24,390 (47.6)
아산시	한나라당	 강희복(姜熙福) 1942년(64세)	경원대학교 일반 대학원 도시계획 학과 졸업(공학박사)	아산군수 순천향대학교수(초빙)	40,264 (55.2)
서산시	열린우리당	 조규선(曹圭宣) 1949년(57세)	단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서산시장 전국 시장군수 협회 공동회장	25,231 (42.0)
태안군	국민중심당	 진태구(陳泰龜) 1945년(60세)	건국대학교 원예학과 졸업	태안군수 서신수협조합장	16,021 (47.0)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금산군	국민중심당	 박동철(朴東喆) 1952년(54세)	승전대 지역개발 대학원 졸업	행자부 예산담당 서기관 금산군수 권한대행	11,762 (37.4)
연기군	국민중심당	 이기봉(李基鳳) 1936년(69세)	조치원농업고등학교 1년 중퇴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기군수	15,794 (40.5)
논산시	국민중심당	 임성규(林聲奎) 1939년(66세)	고려대학교 농예화학과 졸업	충청남도의회의원 논산시장	28,744 (51.1)
계룡시	국민중심당	 최홍묵(崔鴻默) 1949년(57세)	대전상업고등학교 (현 우송고등학교) 2년 중퇴(명예졸업)	계룡출장소 의용소방대장 제1대 계룡시장	7,744 (51.2)
부여군	한나라당	 김무환(金茂煥) 1948년(57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회 정책연구위원(1급공무원) 부여군수	20,750 (51.1)
서천군	열린우리당	 나소열(羅紹烈) 1959년(47세)	서강대학교 대학원졸업 (정치학석사)	서천군수 노무현대통령후보 정무보좌역	18,177 (49.8)
홍성군	한나라당	 이종건(李鍾乾) 1942년(64세)	구항초등학교 졸업	홍성군 부군수 충청남도의회 의원	19,078 (44.1)
청양군	국민중심당	 김시환(金是煥) 1942년(63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청양군수	11,140 (53.4)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예산군	한나라당	 최승우(崔昇佑) 1941년(64세)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한나라당예산지구당 위원장	23,454 (54.0)
당진군	열린우리당	 민중기(閔宗基) 1951년(55세)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천안시 부시장 당진군수	22,886 (41.7)

• 전라북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전주시	열린우리당	 송하진(宋河珍) 1952년(54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지방분권 지원단장	108,164 (50.9)
군산시	민주당	 문동신(文東信) 1938년(68세)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농업기반공사 사장 군산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31,078 (28.4)
익산시	열린우리당	 이한수(李漢洙) 1960년(45세)	원광대학교 경영 대학원 경영관리 학과 졸업	제6,7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주공업대학 겸임교수	49,654 (41.2)
정읍시	무소속	 강광(姜 廣) 1936년(69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새정치국민회의정읍시상임고문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협의회회장	21,253 (35.5)
남원시	민주당	 최중근(崔中根) 1940년(66세)	한양대학교 토목 공학과 박사과정 6기 재학	한국 수자원 공사 사장 현대엔지니어링 회장	23,198 (47.4)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김제시	무소속	 이건식(李建植) 1944년(61세)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졸업 (경제석사)	금만 농어촌 연구소 이사장 고건사랑 우민회 전북 도지부 고문	22,414 (41.3)
완주군	민주당	 임정엽(林呈燁) 1959년(47세)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 정무국장 아태평화재단 기획조정실장	21,149 (52.3)
진안군	열린우리당	 송영선(宋永先) 1951년(55세)	장충고등학교 졸업	전라북도농업경영인연합회장 4대,5대 전라북도의회의원	7,840 (46.0)
무주군	무소속	 홍낙표(洪洛杓) 1954년(51세)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대,5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열린우리당 도당 부위원장	7,473 (45.6)
장수군	무소속	 장재영(張在英) 1945년(61세)	농협대학 농업협동조합과 졸업	장수축산업협동조합 13,14,15대 조합장 42대 장수군수	8,034 (50.0)
임실군	무소속	 김진익(金鎭億) 1940년(66세)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제4,5,6대 전라북도 도의원 제6대 전라북도의회위원장	7,945 (38.0)
순창군	열린우리당	 강인형(姜仁馨) 1946년(59세)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	순창군수 전라북도자치행정국장	13,801 (72.6)
고창군	민주당	 이강수(李康洙) 1951년(54세)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	고창군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교수	21,586 (58.6)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부안군	민주당	 이병학(李丙學) 1957년(49세)	전주대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제5·7대 전라북도의원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 위원장	17,012 (46.4)

· 전라남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목포시	민주당	 정종득(丁鍾得) 1941년(65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제10회 공인회계사 시험합격 벽산그룹 부회장	54,611 (62.8)
여수시	민주당	 오현섭(吳炫燮) 1950년(55세)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제1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라남도 행정, 정무 부지사 역임	57,681 (47.8)
순천시	민주당	 노관규(盧官圭) 1960년(45세)	순천매산고등학교 졸업	김대중총재 특별보좌역 대검중앙수사부 검사	51,066 (49.5)
나주시	무소속	 신정훈(辛正勳) 1964년(41세)	고려대학교 정경 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제5, 6대 전남도의원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연대 상임대표	29,526 (54.9)
광양시	민주당	 이성웅(李聖雄) 1942년(64세)	전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광양시장	28,744 (49.8)
담양군	민주당	 이정섭(李正燮) 1948년(57세)	담양 농업고등학교 졸업	담양읍장 담양군 민원봉사 과장	13,762 (47.9)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장성군	무소속	 유두석(俞斗錫) 1950년(56세)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도시계획 학5학기)휴학중	건설교통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건설교통부 이사관(2급)명예퇴직	13,937 (51.3)
곡성군	무소속	 조형래(趙亨來) 1949년(56세)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곡성낙농육우협회장(초대) 곡성군 민선초대군수	8,096 (38.1)
구례군	열린우리당	 서기동(徐沂東) 1949년(56세)	서울경동고등학교 졸업	11대 구례읍장 열린우리당 구례군 당원협의회회장	8,970 (47.8)
고흥군	민주당	 박병중(朴炳宗) 1954년(52세)	순천제일대학 졸업	고흥축협 11, 12대 조합장 제7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27,167 (53.3)
보성군	민주당	 정중해(鄭鍾亥) 1947년(59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기획예산처 부이사관 전라남도 경제협력관	17,998 (55.4)
회순군	민주당	 전형준(全亨俊) 1956년(50세)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다산건설(주) 대표이사 (사)회순발전연구회 회장	24,710 (63.5)
장흥군	무소속	 김인규(金仁圭) 1953년(52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년 졸업	광주지방 검찰청 장흥지청장 한국농업경영인전남 연합회 법률고문	11,387 (43.3)
강진군	민주당	 황주홍(黃柱洪) 1952년(54세)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박사	새천년민주당 강진군 완도군지구당 위원장 강진군수	17,684 (76.1)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완도군	열린우리당	 김종식(金鍾植) 1950년(55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목포부시장 역임 행시 24회	18,163 (52.8)
해남군	민주당	 박희현(朴희炫) 1944년(61세)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년 휴학	전남도의회의원 해남군수	27,288 (56.0)
진도군	열린우리당	 박연수(朴連洙) 1948년(57세)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진도군 부군수(진)	10,600 (49.3)
영암군	열린우리당	 김일태(金逸太) 1944년(61세)	광주대학교 법정학부 졸업	새천년 민주당 국정자문위원 제3대 전라남도 교육 위원회 의장	16,691 (53.7)
무안군	열린우리당	 서삼석(徐參錫) 1959년(46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NGO 협동과정) 휴학	무안군수 전라남도의원 5,6대	20,760 (58.1)
영광군	무소속	 강종만(姜鍾晩) 1954년(51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영광군의회 제 2,3대 의원(제3대 의장) 전라남도 의회 제 7대의원	17,816 (51.9)
함평군	무소속	 이석형(李錫炯) 1958년(47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민선2,3기 함평군수	14,314 (60.3)
신안군	무소속	 고길호(高吉鎬) 1945년(61세)	목포과학대학 관광경영정보학과 졸업	전라남도의회 의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목포지구 자문위원	15,331 (53.1)



· 경상북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포항시	한나라당	 박승호(朴承浩) 1957년(48세)	중국사회과학원 법학박사과정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봉화군수	127,480 (61.0)
울릉군	무소속	 정윤열(鄭胤烈) 1942년(63세)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군위군 부군수 경북도청 총무과장	3,321 (46.6)
경주시	한나라당	 백상승(白相承) 1935년(70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석사)	서울특별시 부시장 경주시장	103,777 (84.4)
김천시	한나라당	 박보생(朴寶生) 1951년(55세)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휴학중	김천시청 행정지원국장 고속철도 김천역 유치 행정지원단장	36,031 (50.1)
안동시	한나라당	 김휘동(金暉東) 1944년(61세)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안동시장	57,947 (69.1)
구미시	한나라당	 남유진(南宥鎭) 1953년(53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북 청송군수 구미시 부시장	98,758 (75.9)
영주시	한나라당	 김주영(金宙榮) 1948년(57세)	미국미시건대대학원 응용경제학석사과정 졸업(82.8~84.5)	경제기획원 예산실 건설 환경/교육·문화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경영기획단장	33,488 (55.5)
영천시	한나라당	 손이목(孫貳睦) 1949년(57세)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영천시장 중앙초등학교 총동창회장	26,241 (48.5)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상주시	한나라당	 이정백(李廷白) 1950년(55세)	상주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북도의회부의장 상주축협조합장(3선)	22,176 (36.1)
문경시	한나라당	 신현국(申鉉國) 1952년(54세)	Asian Inst. of Tech(AIT)(3년, 환경공학박사)	대구지방환경청장 역임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26,970 (60.5)
예천군	한나라당	 김수남(金秀男) 1943년(63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체육학과 졸업	예천군수(민선, 2기.3기)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장	19,125 (58.6)
경산시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1956년(50세)	미남가주대 행정대학원(2년) 졸업(행정학 석사)	경산시장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56,848 (66.9)
청도군	한나라당	 이원동(李元東) 1948년(57세)	계성고등학교 졸업	청도군수권한대행 청도군수	18,018 (61.7)
고령군	무소속	 이태근(李泰根) 1947년(58세)	영남대학교 철학과 2년 재학	제2대. 3대 고령군수 제1대 경상북도의회의원	10,689 (52.9)
성주군	한나라당	 이창우(李昌雨) 1938년(68세)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북도의원(내무위원장) 성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15,270 (57.8)
칠곡군	한나라당	 배상도(裴相都) 1939년(67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칠곡군수	20,393 (46.9)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군위군	무소속	 박영언(朴永彦) 1939년(67세)	청구대학졸업 (현 영남대학교)	영양·영천·군위군수(관선) 민선군위군수(2,3기)	7,318 (40.5)
의성군	무소속	 김복규(金福圭) 1940년(66세)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의성군수 내무부 지방 재정국근무	18,553 (45.7)
청송군	한나라당	 윤경희(尹敬熙) 1959년(46세)	위덕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경상북도의회의원 청송군생활체육협회장	9,396 (51.2)
영양군	한나라당	 권영택(權英澤) 1962년(43세)	경북대학교 산업 대학원 산업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영양여자중고등학교 이사장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3,827 (28.6)
영덕군	한나라당	 김병목(金炳睦) 1952년(54세)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휴학	영덕군수 경상북도 해양수산 과장	17,309 (65.2)
봉화군	한나라당	 김희문(金熙文) 1955년(50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한나라당경북도당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6,7대의원	9,862 (43.6)
울진군	한나라당	 김용수(金容守) 1940년(66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공동대표	14,405 (44.7)

· 경상남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창원시	한나라당	 박완수(朴完洙) 1955년(50세)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1979년 제23회 행정 고등고시 합격 창원시장	124,228 (68.1)
마산시	한나라당	 황철곤(黃喆坤) 1954년(52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박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장(역) 마산시장	122,692 (72.6)
진주시	한나라당	 정영석(鄭永錫) 1946년(59세)	진주농림 고등 전문학교 졸업 (현진주산업대학교)	경상남도 내무국장 진주시장	101,369 (71.1)
진해시	한나라당	 이재복(李在福) 1947년(59세)	성균관대학교 졸업	덕산장학회 이사장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35,770 (51.8)
통영시	한나라당	 진의장(陳義丈) 1945년(61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통영시장	30,662 (51.4)
고성군	한나라당	 이학렬(李鶴烈) 1952년(54세)	미국텍사스주립대 학교 공학박사과정 3년졸업(공학박사)	민선3대 고성군수 해군사관학교 교수	15,900 (48.6)
사천시	한나라당	 김수영(金守英) 1945년(60세)	육군사관학교 졸업	경남도의회 사무처장 사천시장	23,725 (42.2)
김해시	한나라당	 김종간(金鍾侃) 1951년(55세)	김해농업고등학교 (현 김해생명과학 고등학교) 졸업	김해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제5대 경남도의회 내무환경위원장	81,005 (54.5)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밀양시	열린우리당	 엄용수(嚴龍洙) 1965년(41세)	연세대 상대 경영학과 졸업	밀양청년회의소 회장 밀양대 겸임교수	23,261 (40.7)
거제시	한나라당	 김한겸(金汗謙) 1949년(56세)	통영수산고등전문 학교졸업(현 경상 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경상남도의회의원 4선 경남도의회 부의장	33,858 (45.6)
의령군	무소속	 김채용(金采溶) 1949년(56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자치부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10,582 (50.3)
함안군	무소속	 신석규(陳碩圭) 1948년(57세)	경상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함안군수(47, 48대) 국회의원 보좌관	18,004 (53.9)
창녕군	무소속	 김중규(金鍾奎) 1949년(57세)	영산초등학교 졸업	창녕군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15,774 (43.4)
양산시	무소속	 오근섭(吳근燮) 1947년(58세)	양산초등학교 졸업	양산대학 설립 초대이사장 양산시장	41,433 (48.7)
하동군	한나라당	 조유행(曹由幸) 1946년(59세)	창원대학교경영 행정대학원(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졸업(행정학석사)	하동군 부군수 하동군수	28,317 (1인후보)
남해군	한나라당	 하영제(河榮帝) 1954년(52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진주 부시장 제40대남해군수	17,858 (55.7)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함양군	열린우리당	 천사령(千士寧) 1943년(63세)	동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공안행정 학과(행정학석사)	경찰청 방법국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이사	14,315 (53.2)
산청군	한나라당	 이재근(李在根) 1953년(53세)	진주고등학교 2년 중퇴	한나라당조직국장 한나라당연수원교수	10,850 (47.1)
거창군	한나라당	 강석진(姜錫振) 1959년(46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이회창 총재 · 대통령 후보 보좌역 거창군수	24,218 (70.3)
합천군	한나라당	 심의조(沈義祚) 1938년(67세)	초계중학교 졸업	합천군수 합천 농지개량 조합장	17,693 (52.2)